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656-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상표법)

Comparative Study on the Domestic and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Trademark Law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 상표법 -

A Study on Legal System

Comparative Study on the Domestic and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 Trademark Law -

2018. 12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프라사업의 기초연구활성화 중, “법 · 제도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 법 · 제도 연구: 상표법”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참 여 연 구 원
· 연 구 책 임 자 : 전성태(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 여 연 구 원 : 문병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Summary

요약문

○ 지식재산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체계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제 정보는 계속하여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따라 생성, 변화, 발전하고 있으나, 조문 · 판례 · 정책 등 각 정보들이 도처에 분산되어 지식재산제도에 대한 체계적 · 입체적 분석이 곤란하다.

○ 또한, 종래의 연구가 공급자 위주의 쟁점별 법제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정보 수요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법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적 측면의 고민도 필요하다.

○ 이에 본 연구는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 정책, 연구 및 사업수행 등 여러 목적에 활용 가능한 현행법에 관한 기본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표법」에 대응하여 중국, 인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법률의 비교, 조문별 판례 조사,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조문대조, 판례분석, 정책조사로 구분된다. 우선 조문 대조 부분에서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의 상표 관련 법 조문을 연계하고, 해당 법조문의 번역문을 정리하여 각국의 법률 해석 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판례분석 부분에서 우리나라 「상표법」에 관한 법률의 조문과 연계하여 국외 주요 판례를 엄선하여, 사실관계, 법적쟁점, 판시사항, 해설의 순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책조사 부분에서 상표와 관련한 중국, 인도, 베트남의 정책동향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다양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기초 정보로서 적재적소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Summary

Abstract

○ It is essential to keep paying attention on external environments and understand legal system based on institutions in order to organiz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onsistently. Even though legal informations have been created, modified, and developed in respond to changes in intellectual property field, those informations are scattered every here and there, thereby it is quite difficult to analyze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systematically.

○ Furthermore, prior researches contain informations in accordance with issues that are selected by provider. Accordingly, deliberation on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s, which is focused on demand of consumers, is also required.

○ This research is aimed to obtain raw legal data, which are able to be used flexibly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legislation, policy-making, research and business. Therefore, this research researches and analyzes vast amounts of informations in respect to laws, policies and legal cases in not only Korea, but also China, India and Vietnam.

○ This research is consisted of law comparison, cases analysis and policy research. At first, laws are matched in compliance with similarity in order to identify different legislative attitudes. For cases analysis, significant cases relating to trademarks are introduced and arranged in sequence of background, legal issue, opinion, explanation. Lastly, for policy research, informations about policies and trends relating to trademarks in each country are arranged in order of the provision of Korean Trademark Act to predict tendency of policies and legislation in those countries.

○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ut to use as basic information, which is accessible to public and available for diverse purposes in the future for well-functioning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ONTENTS

제1장 국가별 상표 관련 법령 개관 ····· 1

제1절 중국 ····· 3
Ⅰ. 중국 상표제도 개관 ····· 3
Ⅱ. 중국의 상표법 개정 동향 ····· 7
Ⅲ. 중국의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현황 ····· 13
제2절 인도 ····· 15
Ⅰ. 인도 상표제도 개관 ····· 15
Ⅱ. 인도의 상표법 개정 동향 ····· 21
Ⅲ. 인도의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현황 ····· 21
제3절 베트남 ····· 23
Ⅰ. 베트남 상표제도 개관 ····· 23
Ⅱ.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 개정 동향 ····· 26
Ⅲ. 베트남의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현황 ····· 26
제4절 소결 ····· 28

제2장 국가별 상표법 조문대조표 ····· 31

제3장 국가별 상표 관련 판례 ····· 311

제1절 중국 ····· 313
Ⅰ. 상품의 동일 · 유사 판단 기준에 관한 봉제용 초크사건
(最高人民法院(2013)行提字第16号) ····· 313
Ⅱ. 상표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에 대한 판단
(上海知的財産権法院 (2015)滬知民終字第161号民事判決書) ····· 318
Ⅲ. 상표등록 전용권 침해에 근거한 민사소송의 시효기간의 산정기준
(上海知的財産権法院(2015)沪知民終字第6号) ····· 323
Ⅳ. 상표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北京知识产权法院 民事判决书 (2017) 京 73 民终 1991号) ····· 326
Ⅴ.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침해행위 방조에 대한 판단
(中华人民共和国上海知识产权法院 民事判决书 (2018)沪73民终277号) ·· 328
Ⅵ. 선사용 상표에 대한 악의적 선점에 대한 판단
(北京市高级人民 法院民事判决书(2017)京行终 5085号) ····· 331

Ⅶ. 저명상표 희석화에 대한 판단 기준
(北京知识产权法院 民事判决书(2014) 京知民初字第 143号) ····· 333
Ⅷ. 기업 명칭의 약칭에 대한 모용출원이 문제된 상표행정분쟁 사건
(最高人民法院(2013)行提字第23号) ····· 335
Ⅸ. 외국에서 작성 · 공증한 상표 사용의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의 판단
(最高人民法院(2013)行提字19号) ····· 338
Ⅹ. 행정법규 위반이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의 권리주장에 미치는 영향
(天最高人民法院民事裁定書(2013)民申字第723号) ····· 341
Ⅺ. 상표권 침해상품을 판매한 점포의 임대인에 대한 연대책임의
인정 여부(广州市中級人民法院(2014)穗中法知民終字第707号) ····· 345
Ⅻ. 상표의 선사용 항변에 관한 분쟁
(北京市朝陽区人民法院(2014)朝民初字第25490号) ····· 349
ⅩⅢ. 유명상표가 보호되는 상품의 범위에 관한 분쟁
(京市高級人民法院(2014)高行終字第661号) ····· 352
제2절 인도 ····· 357
Ⅰ. Freudenberg Gala Household Product Pvt. Ltd. vs GEBI Products
(The Bombay high Court(2017)) ····· 357
Ⅱ. Sunil Mittal & Anr. vs. Darzi on Call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2017)) ····· 361
Ⅲ.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vs M/S Prius Auto
Industries Limited(THE SUPREME COURT OF INDIA(2017)) ···· 366
Ⅳ. Industria De Diseno Textile Sa vs. Oriental Cuisines PVT
Ltd. & Ors.(2015. 5.19,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CS(OS) No.1472/2013) ····· 370
Ⅴ. D.M. Entertainment Pvt. Ltd. vs. Baby Gift House and Ors.
(2010. 4.29,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CS(OS) No.893/2002) ····· 375
Ⅵ. P.K. Sen vs. Exxon Mobile Corporation And Anr.
(2017. 1. 4,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FAO(OS) No.290/2016 & CM No.37465/2016) ····· 380
Ⅶ. Philip Morris Products S.A & Anr vs Sameer & Ors.
(2014. 3.10,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 384

Ⅷ. Tata Sons Limited v. Greenpeace International (2011. 1.28,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CS(OS)1407/2010) ····· 389
IX. Sri Krishna Sweets Private Limited. v Mr.M.Murali (2017. 8.23, CMA. No.2266 of 2017, THE HIGH COURT OF JUDICATURE AT MADRAS) ····· 392
X. Bhole Baba Milk Food Industries Ltd. v. Parul Food Specialities (P) Ltd.(2011.10.17, FAO(OS) 109/2011, 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 398
XⅠ. Cartier International Ag vs. Gaurav Bhatia (2016. 4. 1, CS(OS) No.1317/2014, 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 401
XII. Coca-Cola Company & Anr vs Glacier Water Industries Ltd. (2018. 2.28, CS(COMM) 1290/2016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 404
XIII. Lupin Ltd. v Johnson & Johnson(2014.12.23, LAWS(BOM)-2014-12-148, HIGH COURT OF BOMBAY) ····· 407
제3절 베트남 ····· 411
Ⅰ. 관용상표에 해당하는 등록상표 권리행사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 411
Ⅱ.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 ····· 413
Ⅲ. 상표 「Tan Tan」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415
Ⅳ. 상표 「BACTRIM」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419
Ⅴ. 상표 「NEU PAPSIN」에 대한 위조의약품 수입 사건 ····· 421
Ⅵ. 상표 「BUDGET」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423
Ⅶ. 상표 「TRUNG DUONG」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424
Ⅷ. 상표 「MILIKET」 등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426
Ⅸ. 상표 「TRYMO」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428

제4장 국가별 상표 관련 정책동향 ····· 431

제1절 중국 ····· 433
Ⅰ. 중국 상표국, '제6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 발표 ··· 433
Ⅱ.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난(济南) 상표심사협력센터 설립 ····· 434

Ⅲ. 중국 상표국, 상표사용 증거 제출에 관한 설명 발표 ····· 435
Ⅴ. 중국 상표국, 마드리드 국제등록 전자출원 개시 공고 ····· 438
Ⅵ.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3개년 계획 발표 ····· 439
Ⅶ. 중국 국무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개편 ·· 440
Ⅷ.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상표 등록기간 단축 계획 소개 · 442
Ⅸ.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 발표 ····· 443
Ⅹ.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 발표 ····· 444
Ⅺ. 중국 국무원, 2017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발표 ··· 445
Ⅻ.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 전자출원 서비스대상 확대 ····· 447
ⅩⅢ.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거래센터 설립 ···· 447
ⅩⅣ. 중국 상표국, '상표 심사 및 심리 표준' 개정 ····· 449
Ⅹ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누적 상표출원 건수 등
천만 건 돌파 발표 ····· 450
ⅩⅥ.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에 관한
의견 공표 ····· 451
ⅩⅦ.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국 최초 소리상표 등록 결정 ····· 452
ⅩⅧ.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쓰촨성 등에 지방 최초의
상표출원수리처 설립 ····· 453
ⅩⅨ.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등록증명 발급방식 변경에 관한
공고」 발표 ····· 454
ⅩⅩ.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이스라엘과 상호 협력에 합의 ·· 455
제2절 인도 ····· 456
Ⅰ. 인도 델리 최고법원,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게 루이비통 위조상품
검사의무 명령 ····· 456
Ⅱ. 인도 특허청, '2015-2016 연례보고서' 발표 ····· 457
Ⅲ. 인도 산업정책진흥정책국, 2017년 상표 규칙 공표 ····· 458
Ⅳ. 인도 산업정책진흥국, 영국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459
Ⅴ. 인도 산업정책진흥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과 산업재산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460
Ⅵ. 인도 특허청, 상표출원 접수증의 발행 절차 자동화 발표 ····· 461
Ⅶ. 인도 상무부, 새로운 국가지식재산정책 발표 ····· 461

Ⅷ. 인도의 연속(시리즈) 상표 제도 ····· 462
Ⅸ. 인도의 미등록 주지상표의 보호 ····· 463
Ⅹ. 인도에서 외국어(일본어) 상표의 취급 ····· 464
Ⅺ. 인도의 상표이의신청제도 ····· 465
Ⅻ. 인도에서의 상표의 콘센트(동의)제도 ····· 465
ⅩⅢ. 인도의 상표 라이선스계약의 유의점 ····· 466
ⅩⅣ. 인도의 「상표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케팅 캠페인」 조사보고서 발간 ·· 466
제3절 베트남 ····· 468
Ⅰ.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소,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과 협력 각서 체결 ·· 468
Ⅱ. 한국 특허청, 정부 간 협력으로 베트남의 지식재산 한류 보호 ····· 469
Ⅲ. 베트남 국가지식재산청, 프랑스 지식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 ····· 470
Ⅳ. 베트남 특허청, 일본 농림수산성과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각서 서명 ··· 470
Ⅴ. 베트남 과학기술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MOU 체결 ····· 471
Ⅵ.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 472
Ⅶ. 베트남의 유명상표 인증 절차 ····· 472
Ⅷ. 베트남에서 한글상표 등록 ····· 473
Ⅸ. 베트남에 있어서 외국어 상표의 취급 ····· 475
Ⅹ. 베트남에서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근거한 상표출원과
직접 출원의 동향 ····· 476
Ⅺ. 상표의 선사용권 ····· 478
Ⅻ. 베트남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 478

표 목차

제1장

| 표 1-1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한 행정구제 ····· 6
| 표 1-2 |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죄의 유형 ····· 7
| 표 1-3 | 인도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죄의 유형 ····· 20
| 표 1-4 | 우리나라 상표법과 중국 · 인도 · 베트남 상표 법령의 주요내용 비교 28

제4장

| 표 4-1 | 인도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 458
| 표 4-2 | 상표출원서류의 형식(서식TM-A 제6항) ····· 465
| 표 4-3 | 2017 베트남 재산권 지수(IPRI) ····· 472

그림 목차

제3장

| 그림 3-1 |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표 ····· 314
| 그림 3-2 | 달러 멘디의 실사와 “달러 멘디 인형” ····· 362
| 그림 3-3 | “ZARA” 상표와 “ZARA TAPAS BAR” 상표 ····· 371
| 그림 3-4 | 달러 멘디의 실사와 “달러 멘디 인형” ····· 377
| 그림 3-5 | Philip Morris Products S.A. “말보로(Marlboro)” 상표 및 지정 상품 분류 ····· 385
| 그림 3-6 | 피고 게임의 스크린샷 ····· 390
| 그림 3-7 |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표 ····· 393
| 그림 3-8 |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표 ····· 399

제4장

| 그림 4-1 | 베트남에서 출원 가능한 한글 디자인 글씨체 ····· 474
| 그림 4-2 | 출원 가능한 영문추가 된 한글 표장 ····· 475
| 그림 4-3 | 그림이 추가된 한글 상표 ····· 475

알아두기

- 본 보고서는 향후 국가별 지식재산 제도의 법령-판례-정책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작성된 기초자료로서 우리나라의 「상표법」 조문을 기초로 국가별(중국, 인도, 베트남) 상표 관련 법령 조문과 조문별 판례,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상표법」 조문을 기준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의 상표 관련 법령상 상응하는 조문이 없는 경우에는 조문비교표에서 빈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조문비교표 번역문은 특허청 공식번역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우리나라 법률의 경우 현행 「상표법」(법률 제15581호, 2018년 4월 17일,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표 관련 법령 개관

제1절 중국

제2절 인도

제3절 베트남

제4절 소결

제1절

중국

Ⅰ 중국 상표제도 개관

1. 중국 상표제도의 기본원칙

중국은 상표와 관련해 등록주의와 심사주의,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상표법 제3조는 "상표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한 상표는 등록상표이며, 상표등록인은 상표권을 부여 받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주의는 상표권이 등록을 거쳐 취득된다는 것을 말하며, 상표의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상표법의 규정에 부합되기만 하면 허가를 거쳐 등록할 수 있고 출원인은 출원한 상표권을 취득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중국은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했거나 또는 방식심사결정한 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는 심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를 견지하고 있는데, 2인 또는 2인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같은 날에 상표등록 출원하는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 전에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한 표장

중국 상표법은 제9조 제1항에서 '등록을 출원하는 상표는 현저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는 표장은 다음과 같다.

① 중국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장, 군가, 훈장 등과 동일 또는 근사하거나, 중앙 국가기관 명칭, 표지, 소재지의 특정 지역의 명칭 또는 표지성 건축물의 명칭·도형과 동일한 경우
② 외국의 국가명칭·국기·국장·군기 등과 동일하거나 근사한 경우. 단 해당 정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 간 국제조직의 명칭·깃발·표지 등과 동일 또는 근사한 경우. 단 해당 조직이 동의했거나 공중이 용이하게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제를 나타내거나 보증하는 정부의 표지·검사인과 동일 또는 근사한 경우. 단 권리를 수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적십자, 홍신월(红新月)의 명칭 또는 표지와 동일 또는 근사한 경우
⑥ 민족차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⑦ 기만성이 있어, 공중이 상품 품질 등의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하여 용이하게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⑧ 사회주의 도덕 풍조를 해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이 있는 경우
⑨ 현(县)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중이 알고 있는 외국지명

한편, 식별력이 결여된 것으로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표장은 다음과 같다.

① 단지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형식만 있는 경우
② 단지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표시한 경우
③ 기타 현저한 특징이 부족한 경우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중국 상표법은 제57조에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제57조 제1항)

②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근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제57조 제2항)
③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제57조 제3항)
④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의 위조(제57조 제4항)
⑤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등록상표의 교환(제57조 제5항)
⑥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돕는 경우(제57조 제6항)
⑦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제57조 제7항)

이와 관련해, 2002년 10월 시행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분쟁 사건에 관한 사법해석 제1조는 개정전 상표법 제52조제5호(현행 제3차 개정 상표법 제57조 제7항)의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분쟁 사건에 관한 사법해석

제1조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에 속한다.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자호로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눈에 잘 띄도록 사용함으로써 관련 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② 타인이 등록한 저명상표 또는 그 주요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위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관련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국은 다양한 관할당국을 통한 행정구제, 법원 소송을 통한 민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구제의 경우에는 증거에 대한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데 비해 사법구제의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증거의 제시가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증거 공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진행할 경우에는 모방품, 위조상품의 유형에 따라 각각 대응하는 행정기관에 구제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의 각 행정구 지방정부에 각각의 관할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으로서 각 지방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침해행

위를 구성하는 상품 및 그 상품의 제조 또는 등록상표표시의 위조에 사용하는 전용설비의 몰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고 행정수단에의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 표 1-1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한 행정구제

구 분	주 요 내 용
구제대상	• 모방품·조악품을 제조·판매하여 타인의 상표를 침해·도용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관할기관	• 침해행위 발생지 또는 침해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소재지의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국
관할권한	•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의 조사 • 당사자의 침해활동과 관련한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 •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활동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실시 • 침해활동과 관련한 물품을 검사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한 물품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압류
처벌수단	• 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령 •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을 제조하거나 등록상표의 표지를 위조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 · 폐기 •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 • 5년 내에 2회 이상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했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는 경우, 엄하게 처벌 •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인 것을 모르고 합법적으로 취득 · 판매한 경우 판매정지를 명령

그리고 세관이나 공안에 의해서도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특히 공안은 주로 상표권을 침해한 위법범죄활동을 억제하고 단속하며,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기술감독국, 판권국 및 세관 등의 주 업무부처에서 통보한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 또는 물품에 대하여 입건하여 수사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답변을 통지한다.

한편, 세관을 통한 행정구제의 보호대상은 상표권을 침해한 수출입 화물이다. 이와 관련해 상표권자는 중국 세관총국에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관 등기절차는 의무제도는 아니나, 세관에 침해품의 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등기하여 두면 권리자의 이익을 편리하게 보호할 수 있다. 세관의 압류절차는 청구에 의한 압류절차 및 직권에 의한 압류 절차가 있다. 청구에 의한 압류 절차는 지식재산권자가 피의침해품을 수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세관에 압류 청구를 하는 것에 의해서 진행된다. 직권에 의한 압류 절차는 세관이 권리자에 의해서 세관 등기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구제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의 민사구제는 ① 본안 전 소송으로서 침해행위 정지명령, 증거보전조치, ② 임시조치(가처분), ③ 침해금지청구, ④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제3차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는데, 악의적인 상표권침해행위이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산정한 손해배상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를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구제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상표법이 규정하는 모든 상표권 침해행위가 모두 죄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중국은 타인이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만이 죄가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 행위를 범했을지라도 그 정도가 엄중할 때, 영업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일 경우에만 이를 형사죄로서 다루고 있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중국의 형사구제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2 |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죄의 유형

구 분	법 률	주 요 내 용
등록상표 도용	형법 제213조	• 상표권자 허가를 받지 않고 동종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로서 그 정도가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 벌금 부과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	형법 제214조	•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임을 명백히 알고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 벌금 부과 • 이러한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 금액이 대단히 큰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병과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	형법 제215조	•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또는 위조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표지를 판매하였고 그 정도가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 감독에 처하고 벌금 부과 • 이러한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 행위의 정도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벌금 병과

Ⅱ 중국의 상표법 개정 동향

중국은 개혁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현대적인 상표법 체계를 갖추고자 1982년 8월 23일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이 상표법은

1993년 2월 22일자로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1년 10월 27일자로 상표법이 2차 개정되었다. 상표법 2차 개정의 목적은 상표관리 강화와 상표의 품질 제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 사회주의 하에서 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특히 세계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상표권 보호와 권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WTO/TRIPS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이 제고되고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증가를 위한 국가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국의 상표권 출원 ·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2013년 상표 출원건수는 188만 1,500건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14.15%만큼 증가하였고, 등록상표는 723만 7,900건에 달해 2012년에 이어 세계 1위 상표 등록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상표 출원 및 등록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번거로운 등록절차, 저명상표에 대한 규정과 현실 적용의 차이, 빈번한 악의적인 선등록, 규범화되지 않은 상표대리 활동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2003년부터 6년간 연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 작성 및 심의를 거친 끝에 2013년 8월 30일에 상표법 개정안 심의를 통과시켰고, 2014년 5월 1일자로 개정상표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2013년 3차 개정 상표법은 총 8장, 7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표 등록출원, 심사, 등록결정, 상표권 존속기간, 등록상표의 무효 · 관리, 양도, 상표권의 보호 등 상표권의 창출 · 보호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류 1출원 방식의 채택 및 전자문서 양식의 출원 허용

제3차 개정 상표법은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복수 상품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표등록출원서 등의 관련 서류를 서면 형식 이외에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중국은 특히 지식재산 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상표출원 · 등록의 편리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최근 2018년 8월에는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개시하기도 하였다.

제2차 개정 상표법		제3차 개정 상표법	
제20조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류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상품분류표에 따라 등록 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② 상표등록출원인은 1건 출원으로 다수 류의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없음		제22조	③ 상표등록출원 등의 관련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소리상표 제도의 도입,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금지

그리고 제3차 개정 상표법은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는 표장으로서 소리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를 상표의 태양 중에 하나로서 포함시킴에 따라 종래에 '시각적 표장'으로 한정하였던 구문을 제3차 개정 상표법에서 삭제하였다.

한편, 종래에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제3차 개정 상표법은 ①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를, ② 그 타인과 거래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선사용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가, ③ 타인의 선사용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④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상표를 거절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다.

제2차 개정 상표법		제3차 개정 상표법	
제8조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문자·도형·자모·숫자·입체표지와 색채의 조합 및 이러한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모든 시각적 표지는 모두 상표로서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문자·도형·자모·숫자·입체표지·색채의 조합 및 소리 등과 이러한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모든 표지는 모두 상표로서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없음		제15조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미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출원인이 그 타인과 전항 규정 이외의 계약, 업무거래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있어 그 타인의 상표의 존재를 명확히 알았고, 또한 그 타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한다.

3. 상표권 등록의 효과와 갱신 절차

중국에서 종래에 상표등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연장

기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3차 개정 상표법은 출원인과 상표권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갱신출원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상표법상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갱신하려면, 존속기간의 만료 전 12개월 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연장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래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권의 경우 그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었는데, 제3차 개정 상표법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수용하여 이러한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상표법상 상표사용 허가는 그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되었다.

제3차 개정 상표법은 선사용권과 관련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출원 이전에, 또한 상표권자의 사용 이전에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영향력을 획득했어야 하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어야 한다. 그리고 선사용권자는 원래 사용하던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된다.

제2차 개정 상표법		제3차 개정 상표법	
제38조	①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제40조	①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기간만료 전 12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6개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없음		제43조	③ 타인에게 자신의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인은 자신의 상표사용허가를 상표국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하며, 상표국이 공고한다. 상표사용허가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없음		제59조	③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을 출원하기 전에,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보다 먼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하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는 그 사용자가 원 사용의 범위 내에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으나, 사용자에게 적당한 구별표지를 부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상표권에 대한 보호 강화

중국은 상표권의 창출 외에도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법적 결과물로서 제3차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신설 · 개정하였다. 우선 제3차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보호를 위해 지방공상행정관리국 등 행정기관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강화하였다. 즉, ① 금형과 같은 공구의 몰수 요건이 "위조에만 사용되는 공구"에서 "위조하는데 주로 사용된 도구"로 완화되었고, ②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세분화되고 상향되었으며, ③ 5년 이내에 2회 이상 상표권 침해를 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양형이 강화되었다.

제3차 개정 상표법은 또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수정하였는데, 종래에는 권리자가 자신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 가운데 선택적으로 배상액 산정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①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함
②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함
③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표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함
④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의 이익, 상표 사용료를 모두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300만 위안 이하로 배상판결

특히 제3차 개정법에서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새로이 명시되었다. 즉, 개정법은 악의적인 상표권침해행위이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기 63조 ①항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를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차 개정 상표법		제3차 개정 상표법	
제53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처리할 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침해품 및 침해품의 제조, 등록상표 표지의 위조에만 사용되는 공구를 몰수, 폐기하며 또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60조	②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단속시, 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령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을 제조 또는 등록상표의 표지를 위조하는데 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 또는 폐기 처분하고, 위법매출액이 5만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법매출액이 없거나 5만위안 미만인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	①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침해자가 침해기간동안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 기간 동안 침해행위로 받은 손해로 하고,	제63조	①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하고,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표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악의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여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에 의하여 확정한 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규정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상황에 근거하여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허여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손실·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등록상표의 허가사용료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상황에 근거하여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허여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없음		제63조	③ … 악의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여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에 의하여 확정한 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5. 저명상표 보호제도의 개선

중국의 제3차 개정 상표법은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 즉 저명상표의 보호에 관해서도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가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 권리자가 저명상표 보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련된 상표사건을 처리하는데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로서 인정을 진행한다.

개정법은 저명상표와 관련하여 저명상표 인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표 관련 사건의 유형 및 그 관할 부서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하였으며, 저명상표를 광고에 표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제2차 개정 상표법		제3차 개정 상표법	
없음		제13조	①관련 공중에게 잘 알려진 상표가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 권리자가 저명상표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없음		제14조	① 저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련된 상표사건을 처리하는데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로서 인정을 진행한다. ⑤ 생산 또는 경영자는 “저명상표”의 글자형태를 상품·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사용하거나 광고·선전·전시회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없음		제53조	이 법 제14조제5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의 과태료에 처한다.

Ⅲ 중국의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현황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설립에 관한 협약을 포함해 총 26개의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조약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 국제조약들을 WIPO 설립협약을 제외하고,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체계, 지식재산 국제등록, 지식재산 분류체계의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조약 외에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주요 국제조약으로서 상표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는 조약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들은 조약에 가입한 개별 국가 내에서 당해 국가의 법률에 의해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나 혹은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法源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국가가 세계무역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조약들과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 가입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당해 국가의 관련 국내 법률을 검토하는 것과 동일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중국이 상표와 관련해 가입한 국제조약을 살펴보면, 중국은 우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지식재산 보호체계와 관련한 조약 중에서 상표와 관련해서는 산업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만 1984년 12월 19일에 가입하였고, 싱가포르 조약이나 상표법조약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싱가포르 조약의 원서명국으로서 조약의 성안에 직접 참여하고 2007년 1월 29일에 동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국은 상표법조약에 대하여도 동 조약의 원서명국으로서 1994년 10월 28일에 동 조약에 서명을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약의 비준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지식재산 국제등록과 관련한 조약 중에서 상표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에는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에는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지식재산 분류체계와 관련한 조약 중에서 상표와 관련해서는 상품 ·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에는 1994년 5월 5월에 가입하였으나, 상표 도형요소의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는 아직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다.

한편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불가분의 부속서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도 일괄 가입 방식으로 가입하여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구 분	조 약	한국	중국	비 고
설립조약	WIPO 설립에 관한 협약	◎	◎	1980년 3월 3일 가입
지식재산 보호체계	원산지 표시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X	X	
	올림픽 상징물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X	X	
	산업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	1984년 12월 19일 가입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X	2007년 1월 29일 서명
	상표법조약	◎	X	1994년 10월 28일 서명
지식재산 국제등록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	X	X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X	◎	1989년 7월 4일 가입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	1995년 9월 1일 가입
지식재산 분류체계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	◎	1994년 5월 5일 가입
	상표 도형요소의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 협정	◎	X	
기 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협정)	◎	◎	2001년 12월 11일 가입

◎ : 조약 가입 • 비준을 완료하였고, 당해 조약이 해당 국가에서 발효함
X : 조약 가입 • 비준을 완료하지 않음

제2절

인도

Ⅰ 인도 상표제도 개관

1. 인도에서 상표의 보호범위

인도는 색채만의 상표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표로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상표의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유사 상표에 대해서 연속 상표(Series Trademark)로서 연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 상표제도와는 다른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상표의 보호는 상표 전체에 대한 보호를 해주며 유사 상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출원 또는 등록에 의해서 거절되지 않을 뿐 시리즈로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도 상표법과는 차이가 있다.

2.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한 표장

상표등록에 관한 절대적 거절이유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6조에서 식별력 없는 상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및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등록을 허여해주지 않음으로 절대적 거절이유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는 상표법 제9조에서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과 다른 규정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다.

즉, 인도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절대적 거절이유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및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인도 상표법 제9조 2항은 인도 국민의 계급 또는 종파의 종교 적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이를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도 상표법 제9조상 상표 등록에 관한 절대적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①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즉, 어떤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할 수 없는 것
② 거래상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의도하는 목적, 가치, 원산지 또는 해당 상품 생산의 시기 또는 서비스 제공의 시기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다른 특성을 의미하는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③ 현행 언어에 있어서 또는 선의의 확립한 거래 관행에 있어서 관습화된 표장 또는 표 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④ 공중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일 때
⑤ 인도 국민의 계급 또는 종파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⑥ 중상적 또는 외설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⑦ 그 사용이 1950년 상징 및 명칭(부정사용 방지) 법 (Emblems and Names (Prevention of Improper Use) Act)에 의해 금지되고 있을 때
⑧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유래된 상품의 형상
⑨ 기술적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의 형상
⑩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한편, 상표등록에 관한 상대적 거절이유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7조 1항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열거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 역시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선행 상표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상표법은 주지, 저명성의 판단 등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해석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기준이 제시되어 판단하고 있는데 비해서 인도 상표법은 주지에 대한 기준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인도 상표법 제11조상 상표 등록에 관한 상대적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① 선행하는 상표와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가 유사하거나

② 선행하는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공중에게 선행하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선행상표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혼동을 포함한다.

③ 선행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다른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된 선행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행하는 상표가 인도에서 주지 상표이며, 후행 상표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 상표의 식별력 또는 평판을 해치거나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우려가 잇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④ 업으로서 사용되는 미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법률에 의해서 상표 사용을 재해야 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상표 사용을 제재해야 하는 경우

상대적 거절 이유는 위에서처럼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거절 이유로서 선행 상표와 동 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는 상표 및 상품이 동일 유사한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이와 같은 제재를 두고 있다.

또한 상표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상표가 주지 상표인 경우 또는 사용의 정당한 이유 없이 식별력을 해치거나 평판을 해치는 경우라면 비록 상품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거절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품과 연관되어 의미가 있으나 상표가 주지해지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과의 관련성이 적더라도 오인 혼동의 여지가 있으며 타인 의 상표의 평판이나 식별력을 해치는 것 역시 막을 필요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거절 이유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법과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서 역시 상표 등록이 거절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인도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등록거절의 절대적 사유 (1) 다음의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 식별력이 없는 상표, 즉, 어떤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할 수 없는 것 (b) 당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의도하는 목적, 가치, 지리적 원산지, 혹은 당해 상품의 생산 시기나 당해 서비스의 제공 시기, 또는 기타 특성들을 상거래상 표시하는 표장이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c) 현행 언어에 있어서 또는 선의의 확립한 거래 관행에 있어서 관용하는 표장이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다만, 등록출원일 이전에 사용의 결과로써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나 주지상표일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 공중을 속이거나 혼동을 야기하기 위한 성질의 표장 (b) 인도 국민의 여하한 계급이나 종파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여하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로 구성된 표장 (c) 중상적 혹은 외설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장 (d) 해당 표장의 사용이 인도의 1950년 엠블럼명칭법(부정사용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표장 (3) 다음의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 해당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상품의 형상 (b) 기술적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의 형상 (c)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본 조항의 목적상, 해당 상표가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은 등록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인도 상표법은 제29조에서 등록상표의 침해에 관해 규정하면서,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허락 사용에 의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표장을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로서 사용하면 등록 상표의 침해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아닌

자가 업으로 표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등록 상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등록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인도 상표법은 또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아도 등록 상표의 평판이 높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표장을 사용하여 해당 등록 상표의 식별력이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를 끼치는 이른바 희석화 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침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도는 상표법에서 법원 소송을 통한 민사구제와 형사구제 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데, 형사구제는 민사구제에 비해 그 입증책임이 엄격하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인도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완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인도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절차로서 대표적으로 세관을 통한 구제가 있는데, 인도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품의 지식재삭권 집행규칙에 의해 권리자의 신청이 있다면 침해 물품들을 압류하거나 통관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가 신청을 하여야 이런 절차가 개시되며 이러한 신청은 전자통신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관은 상표권 침해 의심물품이 지식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되면 해당 물품들을 모두 폐기 처분한다.

다음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구제로서, 인도 상표법은 제134조와 135조에서 ① 금지명령, ② 손해배상, ③ 부당이득의 반환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금지명령과 함께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는 침해하는 표지 및 표장의 말소를 위한 인도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를 통해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증거의 보전, 가처분 금지를 할 수 있다. 한편, 인도에서의 금지명령은 본질적인 금지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법정에서 권리 침해가 인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가처분과 비슷한 형태로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서 잠정적인 구제책으로 금지명령을 중간 판결로 내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구제를 살펴보면, 인도에서 민사구제와 형사구제는 그 구제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형벌은 침해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내려지며 금지명령등 중간 명령은 형사 절차에서 내려지지 않고, 그 입증책임이 민사 절차보다 엄격하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는 국가적 형벌을 가하는 형사 절차보다 그나마 절차가 간단하고 유리한 민사 절차를 많이 택하게 되는데, 형사 기소가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단 기소를 하고 추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인도는 상표법 제103조에서 제109조에 걸쳐 형사구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각 조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3 | 인도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죄의 유형

구 분	법 률	주 요 내 용
허위 상표, 거래 표시 등의 사용	상표법 제103조	• 상표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 등은 사기의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5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 부과 • 다만,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금고 혹은 50,000 루피 미만의 벌금 부과
허위 상표 등을 사용한 상품 • 서비스의 판매 • 제공	상표법 제104조	• 허위 상표나 거래 표시 등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합리적 예방조치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5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 부과 • 다만,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금고 혹은 50,000 루피 미만의 벌금 부과
재범, 누범에 대한 가중 벌칙	상표법 제105조	• 상표법 제103조 및 제104조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재차 유죄가 선고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 부과 • 다만,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금고 혹은 100,000 루피 미만의 벌금 부과
허위의 상표 등록 표시	상표법 제107조	• 등록상표가 아닌 표장에 대하여 등록상표라는 취지의 표시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
영업소와 상표 등록청의 관련성에 대한 허위 표시	상표법 제108조	• 상표청과 공식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인시킬 만한 용어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등록부에의 허위 기재	상표법 제109조	• 상표등록부에 허위 기재를 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Ⅱ 인도의 상표법 개정 동향

인도는 1940년에 처음으로 상표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Common Law에 의해서 상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그 이후에 1940년 11월 3일에 상표법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1042년 1월 6일에 동 법이 시행됨으로써 상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서 다루게 되었다.

인도는 상표법을 1941년에 개정하고 1943년에도 이를 개정하였는데, 1943년 개정 시에 특허청의 일부로서 존재하던 상표사무국을 별도의 기관으로서 분리하여 특허사무국과 상표사무국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도혹 하였다. 그 이후 1958년에 상표법(Trade Marks Act, 1940)은 새로운 상표법(Trade & Merchandise Marks Act, 1958)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법이 1959년 11월 25일에 발효되면서 상표에 관하여는 동 법을 따르게 되었다.

그 뒤에 인도의 상표법은 1999년에 이르러 새로운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9)으로 다시 개정되었고, 동 법률은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에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인도는 2002년에는 상표법 시행 규칙(The Trade Marks Rules)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서 파리 조약 및 TRIPS 협정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상표법을 운영하면서 2013년에는 마드리드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2010년 9월에 일부 개정된 인도의 제3차 개정 상표법은 총 13장, 15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상표의 등록출원과 심사,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의 효력 및 사용, 등록상표의 양도, 침해 구제절차 등 상표권의 창출 · 보호 · 집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상표법 시행규칙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Ⅲ 인도의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현황

인도에서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상표에 관해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 즉 인도가 상표와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들을 살펴보면, 우선 인도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1975년 1월 31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인도는 지식재산 보호체계와 관련한 조약들 중에서 상표와 관련해서는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1998년 9월 7일에 가입하였고, 올림픽 상징물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에는 1983년 9월 19일에 동 조약에 대한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인도는 상표의 등록 · 보호 등에 관한 주요한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싱가포르 조약과 상표법조약에는 아직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인도는, 지식재산 국제등록과 관련한 조약들 중에서 상표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에는 아직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하여는 마드리드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고 마드리드 의정서에만 2013년 4월 8일에 가입하였다.

한편 인도는 지식재산 분류체계에 관한 조약들 중에서 상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는 동 조약의 원서명국으로 1995년 1월 1일에 조약에 가입하여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구 분	조 약	한국	인도	비 고
설립조약	WIPO 설립에 관한 협약	◎	◎	1975년 1월 31일 가입
지식재산 보호체계	원산지 표시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X	X	
	올림픽 상징물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X	◎	1983년 9월 19일 비준 1983년 6월 30일 서명
	산업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	1998년 9월 7일 가입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X	
	상표법조약	◎	X	
지식재산 국제등록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	X	X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X	X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	2013년 4월 8일 가입
지식재산 분류체계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	X	
	상표 도형요소의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 협정	◎	X	
기 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협정)	◎	◎	1995년 1월 1일 가입

◎ : 조약 가입 • 비준을 완료하였고, 당해 조약이 해당 국가에서 발효함
X : 조약 가입 • 비준을 완료하지 않음

제2절

베트남

Ⅰ 베트남 상표제도 개관

1. 베트남에서 상표의 보호범위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서 상표란 서로 상이한 기관이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종류는 상표, 집합적 표장, 인증표장, 연합표장, 주지표장, 상호, 지리적표시가 있다.

이 중에서 상표는 서로 상이한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표장을 지칭하며, 집합적 표장은 표장의 소유자인 기관의 구성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기관의 구성원의 것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인증표장은 원산지, 재료, 원료 및 상품 제조 방법이나 서비스 제공 방법, 품질, 정확도, 안전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타 특성과 관련한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표장의 소유자가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표장의 사용을 허가한 표장을 가리킨다, 그리고 연합 표장은 동일한 소유자에 의해 등록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장이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또는 상호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한다.

한편,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상호의 보호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호는 사업에 사용되는 기관이나 개인의 표시로서, 그러한 표시를 가지는 사업체를 동일한 사업 영역 및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업체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장의 정의 및 상표의 보호범위와 관련해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입체상표의 출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2.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한 표장

베트남의 경우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하여 지식재산권법 제74조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표장에 대한 내용, 즉 부등록사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법 제7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등록사유에 관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73조를 살펴보면, 동 조항은 표장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표식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① 국기, 국가 표상과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② 국가기관, 정책기관, 사회 · 정책 기관, 사회 · 정책 전문기관, 베트남 또는 국제기구의 사회기관 또는 사회 · 전문기관의 승락이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의 엠블럼, 깃발, 표장, 전체 명칭, 약어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③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국가적 영웅 또는 유명인의 실명, 가명, 필명 또는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④ 봉인이 국제기관에 의해 증명 표장으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될 수 없는 사인으로서, 국제기관의 증명 봉인, 제어 봉인, 보증 봉인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⑤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기능, 목적, 품질, 가치 또는 기타 특징에 관해 소비자를 현혹, 혼동 또는 기만할 수 있는 표식

3. 상표권의 존속기간

베트남의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 증명서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10년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한히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 증명서의 경우에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무한한 유효기간을 갖는다.

4.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제129조에서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는데, 동법은 상표권 직접 침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되는 간접 침해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표장과 함께 등록된 리스트 내의 것들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 보호되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관하여 그 사용이 혼동을 야기한다면 표장과 함께 등록된 리스트 내의 것들과 유사 또는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호받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③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관하여 그 사용이 혼동을 야기한다면 표장과 함께 등록된 리스트 내의 것들과 동일, 유사 또는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호받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④ 공지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 또는 그 표시의 사용자와 공지된 표장 소유권자 사이에 관계에 관하여 잘못된 인상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관해 그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공지된 표장을 갖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유사 또는 비관련된 것들을 포함하는 임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지된 표장의 해석 또는 문자적 해석의 형태의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이러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베트남은 행정적 보호로서 세관에 의한 수출입 통제,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베트남 세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상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을 임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의심이 가는 상품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대상이 되는 상품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탁하고 해당 상품의 통관절차 정지를 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제214조에서 행정적 벌칙 및 구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은 경고, 벌금 등의 행정적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베트남은 지식재산권법 제202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구제 절차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① 지식재산권 침해의 강제적 중단, ② 공개적 교정 및 사과의 강제, ③ 민사적 채무 이행의 강제, ④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도구의 파기 등을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제199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에 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민사적, 행정적 보상 책임 이외에 형사적 보상 책임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과 관할 인민고등법원이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즉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벌금과 구금이 있는데, 베트남 형사법 제171조에 따라 누구든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거나 사용할 경우, 베트남 화폐로 20,000,000동에서 200,000,000동의 행정 또는 형사 벌금이 부과되며, 범죄 행위가 심각한 경우, 6개월에서 3년간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Ⅱ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 개정 동향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제정한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나아가, 2005년 지식재산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발명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2005년 지식재산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Ⅲ 베트남의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현황

베트남에서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상표에 관해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 즉 베트남이 상표와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을 살펴보면, 우선 베트남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1976년 7월 2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였는데, 실제로는 베트남이 1976년에 통일된 이후에 1981년 4월 7일에 동 조약을 승계한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지식재산 보호체계와 관련한 조약들 중에서 상표와 관련해서는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만 1949년 3월 8일에 가입하였고, 다른 국제조약에는 전혀 가입하고 있지 않다. 베트남은 법적으로 1949년에 파리협약에 가입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 협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이 1976년에 통일된 이후에 1981년 4월 7일에 동 조약을 승계한 것이다.

또한 베트남은 지식재산 국제등록과 관련한 조약들 중에서 상표와 관련해서는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에는 아직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하여는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마드리드 협정의 경우에는 베트남이 1976년에 통일된 이후에 1981년 4월 7일에 동 조약을 승계한 것이고, 마드리드 의정서의 경우에는 베트남이 2006년 4월 11일에 동 조약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베트남은 지식재산 분류체계에 관한 조약들 중에 상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에는 2007년 1월 11일에 조약에 가입하여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구 분	조 약	한국	베트남	비 고
설립조약	WIPO 설립에 관한 협약	◎	◎	1981년 4월 7일 조약 승계
지식재산 보호체계	원산지 표시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X	X	
	올림픽 상징물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X	X	
	산업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	1981년 4월 7일 조약 승계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X	
	상표법조약	◎	X	
지식재산 국제등록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	X	X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X	◎	1981년 4월 7일 조약 승계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	2006년 4월 11일 가입
지식재산 분류체계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	X	
	상표 도형요소의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 협정	◎	X	
기 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TRIPS 협정)	◎	◎	2007년 1얼 11일 가입

◎ : 조약 가입·비준을 완료하였고, 당해 조약이 해당 국가에서 발효함
X : 조약 가입·비준을 완료하지 않음

제4절

소결

앞서 검토한 중국, 인도, 베트남의 상표법상 주요내용과 후술하는 조문대비표를 통해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의 상표 관련 법률의 세부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모두 상표권의 허여 · 보호, 구제를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표절차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항에 있어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상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각국의 상표체계 수준은 서로 다른데, 예를 들어 상표권 보호대상, 소송절차 등과 관련하여 인도와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비해 구체적이고 고도의 상표체계를 아직 완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각국은 자국의 상표환경에 따라 고유한 상표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는 직물과 관련한 상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베트남은 지리적 표시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표 1-4 | 우리나라 상표법과 중국 · 인도 · 베트남 상표 법령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중 국	인 도	베트남
상표권 보호대상	색채,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
단체표장	단체표장 보호 (정관 제출)	단체표장 보호 (별도 법률)	단체표장 보호 (정관 제출)	단체표장 보호
증명표장	증명표장 보호 (정관 제출)	증명표장 보호 (별도 법률)	증명표장 보호 (정관 제출)	증명표장 보호
상표등록 우선순위	선출원 (선의의 선사용 허용)	선출원 (선의의 선사용 허용)	선출원 (선의의 선사용 허용)	선출원 (선의의 선사용 허용)
조약 우선권 주장	6개월 내 출원시 우선권 인정	6개월 내 출원시 우선권 인정	6개월 내 출원시 우선권 인정	기간 내 출원시 우선권 인정
출원공고 이의신청	2개월 내, 누구나 신청	3개월 내, 이해당사자가 신청	3개월 내, 누구나 신청	-
상표권 존속기간	10년 (10년씩 갱신)	10년 (10년씩 갱신)	10년 (10년씩 갱신)	10년 (10년씩 갱신)

구 분	우리나라	중 국	인 도	베트남
존속기간 갱신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내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존속기간 만료 전 20개월 내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존속기간 만료 전 소정기간 내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
유명상표 보호	상표등록 거절 사유 (해외 유명상표 보호)	치명상표 보호 명시 (국내 유명상표 보호)	주지상표 보호 명시 (국내 유명상표 보호)	주지상표 보호 명시 (국내 유명상표 보호)
상표사용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설정 (단체표장, 증명표장 등 제외)	사용허락 계약에 의한 사용	사용허락 계약에 의한 사용	사용허락 계약에 의한 사용
상표사용권 등록	등록시에만 제3자에게 대항	등록시에만 제3자에게 대항	등록시에만 제3자에게 대항	-
심판절차	심판 유형별 세부절차 규정 (특허심판원 설치)	심판에 대한 세부절차 부재 (상표심사위원회 설립)	심판에 대한 세부절차 부재 (지식재산권 심판부 설치)	심판에 대한 세부절차 부재
소송절차	소송 유형별 세부절차 규정	소송에 대한 세부절차 부재	소송 유형별 관할법원 구분	소송에 대한 세부절차 부재
마드리드 상표등록	세부절차 및 특례 규정	세부절차 부재 (별도 법률)	세부절차 부재	세부절차 부재
구제절차	-	민사구제, 형사구제	민사구제, 형사구제	민사구제, 형사구제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침해 수준에 따른 형사책임 (누범 가중 처벌)	침해 수준에 따른 형사책임 (누범 가중 처벌)	3년 이하 징역 약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장

국가별 상표법 조문대조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상표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81호, 2018.4.17., 일부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2013.8.30., 제3차 개정]	인도 상표법 Trade Marks Act [1940년 제정, 2010년 일부개정]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지식재산권법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2005년 제정, 2009년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상표 관리 강화, 상표권 보호, 생산·경영자의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보장, 상표의 신용과 평가 유지,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1조 법규의 범위 본 법은 저작권, 저작권 관련 권리, 산업재산권, 식물신품종에 관한 권리 및 이러한 권리들의 보호에 관해 규정한다. 제5조 법의 적용 1. 본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법적 사항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본 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과 기타 법의 규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이 본 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	제4조 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 영업 활동 중 그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한다. ② 이 법의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도 적용한다. 제3조 ① 등록상표란 상표국의 등록심사 비준을 받은 상표를 말하며, 상품상표·서비스 상표·단체상표·증명상표를 포함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商标专用权)을 향유하며,	제2조 정의 및 해석 (1) 본 법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심판부"란 제83조에 의거해 설치되는 심판부를 말한다. (b) "양도"란 이해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서면 양도를 말한다. (c) "연합상표"란 본 법에 의거해 연합상표로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연합상표로서 등록될 필요가 있는 상표를 말	제3조 지식재산권의 대상 1. 저작권의 대상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들을 포함하고, 저작권 관련 권리는 공연, 음향 기록, 비디오 기록, 방송 프로그램,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 신호를 포함한다. 2. 산업재산권의 대상은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3.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의 대상은 식물신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② 이 법에서 단체상표(集体商标1)란 단체, 협회, 기타조직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를 말하며, 조직 구성원이 상업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조직에서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자격 표장(标志)을 뜻한다. ③ 이 법에서 증명상표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 능력을 갖춘 조직이 통제하고, 그 조직 이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④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정한다. 제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자, 도형, 자모, 숫자, 입체표장, 색체의 조합 및 소리 등의 어떠한 표장 및 상술한 요소의 조합에 대해 상표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 이 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포장, 용기 및 상품거래문서 상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상표를 광고 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 중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 쓰이는 행위를 말한다.	한다. (d) "심판관"이란 심판부의 심판관을 말한다. (e)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또는 서비스의 품질, 정확도 및 기타 특성들에 관하여 당해 표장의 소유자에 의해 증명된 표장으로서, 상거래상 당해 증명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제IX장에 따라 해당 증명표장의 소유자로서 당사자의 명의로 증명·등록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말한다. (f) "심판장"이란 심판부의 장을 말한다. (g) "단체표장"이란 당해 표장을 소유한 단체(1932년 인도 상사조합법상 조합을 의미하지 않음)의 구성원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말한다. (h) "기만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어떤 상표가 다른 상표와 너무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당해 상표는 문제가 된 다른 상표와 기만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i) "허위의 거래 표시"란 다음의 것들을 의미한다. (I) 그것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	품종 및 그 번식 물질이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법에서, 이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에 대해 기관이나 개인이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산업 재산권 및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4. 산업재산권은 기관이나 개인이 창작한 또는 소유한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이며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이다. 6.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권리의 소유자로부터 양도된 기관이나 개인 또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이다. 16. 상표는 서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여하한 표장을 의미한다. 17. 단체표장은 표장의 소유자인 기관의 구성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기관의 구성원의 것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18. 증명표장은 원산지, 재료, 원료 및 상품 제조 방법이나 서비스 제공 방법, 품질, 정확도, 안전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타 특성과 관련한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표장의 소유자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한 중요 사항을 속이거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 거래 표시 (II) 추가, 삭제 또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해 그것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 표시를 변경하여 그 변경에 의해 중요 사항을 속이거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 거래 표시 (III) 그것이 사용되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의 표준 야드 또는 표준 미터 이상의 야드 또는 미터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거나 의미하는 거래 표시 (IV)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장 또는 그 표장의 배열 또는 조합 (a) 그 상품이 실제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생산물 또는 물건이라고 오인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상품에 사용되는 표시 (b) 그 서비스가 실제의 제공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에 관해서 사용되는 표시 (V) 명칭 또는 명칭의 머리 글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명칭 또는 명칭의 머리 글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거래 표시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허위의 명칭 또는 명칭의 머리 글자 (a) 상표 또는 상표의 일부가 아닌 경우 (b)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가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표장의 사용을 허가한 표장이다. 19. 연합 표장은 동일한 소유자에 의해 등록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장이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또는 상호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된다. 20. 주지 표장은 베트남 영토 전체에 걸쳐 널리 알려진 표장이다. 21. 상호는 사업에 사용되는 기관이나 개인의 표시로서, 그러한 표시를 가지는 사업체를 동일한 사업 영역 및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업체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22. 지리적 표시는 특정 영역, 장소, 영역 또는 국가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인이다. 25. 보호 타이틀은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 표장,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산업재산권 및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의 설정에 대해 국가기관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부여한 서류이다. 제72조 보호받을 수 있는 표장의 일반적인 요건 표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1.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 단어, 그림, 3차원적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또는 그 조합일 것 2. 표장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게 하여야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쌍방에 관해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의 명칭 또는 명칭의 머리 글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해 그 사람의 승낙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c) 가공의 사람 또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영업을 선의로 영위하지 않는 사람의 명칭 또는 명칭의 머리 글자인 경우 본 법의 취지 하에서 거래 표시가 상표 또는 상표의 일부라는 사실은 허위의 거래 표시를 구성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j) 「상품」은 거래 또는 생산의 대상이 되는 것 모두를 말한다. (k) 「법무 심판관」(Judicial Member)은 본 법에 의해 그 자리에 임명된 심판부의 심판관을 의미하며 심판장 및 부심판장을 포함한다. (l) 「제한」(문법적 변화를 포함)은 상표의 소유자로서의 등록에 의해서 부여된 상표를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인도 내 또는 인도 국외에 있어서의 사용의 모양 또는 분야에 관한 배타적 권리의 제한을 포함한다. (m) 「표장」은 도형, 브랜드, 헤딩, 라벨, 티켓, 명칭, 서명, 말, 문자, 숫자, 상품의 형상, 포장, 또는 색채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	할 것 제79조 보호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의 일반적인 요건 지리적 표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이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역, 영역, 구역 또는 국가로부터 유래될 것 2.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이 그러한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역, 영역, 구역 또는 국가의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명성, 품질 또는 특징을 가질 것 제81조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의 명성, 품질 및 특성 1.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의 명성은 소비자에 의해 선택되고 알려진 정도를 통해 제품에 대해 가지는 소비자의 믿음을 기초로 결정된다. 2.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의 품질 및 특성은 적절한 테스팅 방법에 의해 기술적 수단이나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정량적 또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인식 가능한 하나 이상의 기준에 의해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n) 「심판관」(Member)은 심판부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을 의미하며, 심판장 및 부심판장을 포함한다. (o) 「명칭」은 약칭도 포함한다. (p) 「공고한다」는 등록관에 의해 발행되는 상표 공보에 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q) 「포장」은 케이스, 상자, 용기, 커버, 폴더, 저장기, 그릇, 작은 상자, 병, 포지, 라벨, 띠, 인하지폐, 릴, 테두리, 캅셀, 칼집, 뚜껑, 마개 및 코르크를 포함한다. (r) 「허락 사용」(permitted use)은 등록상표에 관한 다음의 상표의 사용을 말한다. (i)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한 등록사용자에 의한 사용으로서, (a) 거래 과정에 그 사람이 관여하며 (b) 상표 등록이 현재 존속하고 있으며 (c) 그 사람이 상표등록부에 등록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d) 등록 사용자의 등록이 따라야 할 조건 또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ii)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한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사용으로서, (a) 거래 과정에 그 사람이 관여하며 (b) 상표 등록이 현재 존속하고 있으며 (c) 해당 등록 소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하며 (d) 해당 사용자 및 상표 등록이 따라야 할	제82조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지리적 조건 1.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지리적 조건은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제품의 명성, 품질 및 특성에 기인하는 자연적 및 인간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2. 자연적 요소는 기후, 수위, 지형, 지대, 생태학적 시스템 및 기타 자연 조건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3. 인간적인 요소는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 공정 및 제조자의 숙련도와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제83조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리적 영역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리적 영역은 단어 및 지도에 의해 정확하게 결정된다. 제124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이용 5. 표장의 사용은 다음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a) 상품, 상품 패키지, 영업 또는 공급 서비스의 수단 및 영업 활동의 통신 서류에 보호받는 표장을 적용하는 것 b) 보호받는 표장을 갖는 상품을 유통, 또는 대여,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하는 것 c) 보호받는 표장을 갖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 6. 상호의 사용은 영업 활동에서 그 명칭 자체에 상호를 사용하고 거래 서류, 상점 서명, 물품, 상품 및 상품 패키지 및 서비스와 광고 수단에 그 상호를 표현함으로써 상업적 목적을 위해 임의의 행위를 실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조건 또는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s) 「소정의」는 본 법에 근거해 제정된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t) 「등록부」는 제6조(1)에 의한 상표등록부를 말한다. (u) 「등록된」(문법적 변화를 포함)은 본 법에 근거해 등록된 것을 말한다. (v) 상표에 관한 「등록 소유자」는 등록부에 상표의 소유자로서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w) 「등록상표」는 등록부에 실제로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표를 말한다. (x) 「등록 사용자」는 제49조에 의해 사용자로서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y) 「등록관」은 제3조에 의한 상표 등록관을 말한다. (z) 「서비스」는 잠재적 사용자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서비스이며, 은행, 통신, 교육, 융자, 보험, chit funds(상호부조 금융 조직), 부동산, 수송, 저장, 소재 처리, 가공, 전기 그 외의 에너지 공급, 기숙, 하숙, 연예, 오락, 건축, 수리, 뉴스 또는 정보의 전달 및 광고 등의 공업적 또는 상업적 사항의 영업에 관련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다. (za) 「거래 표시(trade description)」는 다음에 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기술, 기재	7. 지리적 표시의 사용은 다음의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a) 영업 활동 동안 상품 또는 상품 패키지, 사업 및 거래 서류에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를 부착시키는 것 b)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를 갖는 상품의 유통 또는 대여,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 c)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를 갖는 상품의 수입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또는 그 외의 표시를 말한다. (i) 상품의 수, 양, 치수, 용적 또는 중량 (ii) 거래에 대해 통상 이용되거나 인정되고 있는 분류에 따르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기준 (iii) 1940년 의약 및 화장품법(Drugs and Cosmetics Act)에 대해 정의된 「의약품」또는 1954년 부정 식품 방지법(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에 대해 정의된 「식품」에 속하는 상품의 용도 적합성, 강도, 기능 또는 작용 (iv)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제조, 생산 또는 제공된 장소, 국가 또는 그 시기 (v) 제조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주문자의 명칭 및 주소 또는 그 외의 동일성에 관한 표시 (vi)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의 방법 또는 서비스 제공의 방법 (vii) 상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viii) 현존하는 특허권, 특권, 또는 저작권의 대상인 상품 덧붙여 다음의 표시를 포함한다. (a) 상거래 관습에 의해서 전술한 내용에 대한 표시로 통상 생각할 수 있는 표장의 사용에 관한 표시 (b) 통관 신고서 또는 적하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상품에 관한 표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c) 앞에서 본 것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기타 표시 (zb) 「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형상, 그 포장 및 색채의 조합을 포함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i) 제XII장(제107조 제외)에 있어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소유자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과의 거래상 관계를 표시하거나 표시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사용하는 등록상표 또는 표장 (ii) 본 법의 다른 규정에 있어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소유자로서 또는 허락에 의한 사용자와의 거래상 관계를 표시하거나 표시할 목적으로 그 사람의 동일성의 표시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표장을 말하며,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zc) 「이전」은 법규에 의한 이전, 사망자의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 및 기타 방식으로의 이전으로서 양도가 아닌 것을 말한다. (zd) 「기술 심판관」은 법무 심판관이 아닌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심판관을 말한다. (ze) 「심판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등록관 또는 심판부를 말한다. (zf) 「부심판장」은 심판부의 부심판장을 말한다. (zg)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주지상표」는 해당 상품 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자 대부분에게 주지된 표장으로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해당 표장의 사용이 실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거래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오인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 (2) 동 법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a) 「상표」라고 할 때는 「단체표장」또는 「증명표장」도 포함한다. (b)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때는 표장이 인쇄된 표시 또는 다른 시각적인 표시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c)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때는, (i) 상품에 관해서는 물리적 관계 또는 기타 관계인가를 불문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ii) 서비스에 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제공 또는 실시에 대한 기술 또는 그 일부로서의 해당 표장의 사용을 말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d) 등록관은 제3조(2)에 의해 등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e) 상표등록청(Trade Marks Registry)은 상표등록청의 지국을 말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3) 동 법의 취지상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 영업자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기타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동 법의 취지상 「현존하는 등록상표」란 본 법 시행 직전의 1958년 무역 및 거래 표장법(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에 근거해서 등록된 상표를 포함한다.	
		제61조 단체표장에 대한 특별 규정 (1) 본 법의 규정들은 동 장에 따른 단체표장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식별하기 위한 단체표장에 관한 제2조(1)(zb)의 규정은, 상표의 소유자인 단체의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데 참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제69조 동 법상 증명표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증명표장에 대해서는 동 법의 다음 규정을 적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용하지 아니한다. (a) 제9조(1)(a) 및 (c) (b) 동 장이 적용될 것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c)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6조(2) (d) 제107조를 제외하고, 제XII장	
		제101조 상표 및 거래 표시의 사용의 의의 (1)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 또는 표장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a) 상표 등을 상품 자체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는 자 (b) 상표 등을 판매되는 상품, 판매를 위해 전시되는 상품 또는 기타 거래 또는 생산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상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자 (c) 판매되는 상품, 판매를 위해 전시되는 상품 또는 기타 거래 또는 생산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상품을, 상표, 표장 또는 거래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포장 또는 그 외의 것을 이용하여 포장하거나 첨부하는 자 (d) 상표, 표장 또는 거래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그 상표, 표장 또는 거래 표시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설명되고 있다고 보이는 방법으로, 상표, 표장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하는 자 (e)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표지, 광고, 송장, 상품 목록, 영업 서간, 영업 문서, 가격표, 기타 거래 서류에 상표 또는 표장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하는 한편, 사용된 상표 또는 표장 또는 거래 표시를 참조하여 요청되거나 주문된 것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상표, 표장 또는 거래 표시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또는 그 외의 것에 포함,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되거나 첨부 또는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②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	제69조 ① 상표등록·관리와 재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자율적으로 직무에 충실하게 국민에 봉사하여야 한다. ② 상표국·상표심사위원 및 상표등록·관리와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담당자는 상표 대리업무와 상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70조 증명표장의 등록 증명과 관련되는 종류의 상품거래 또는 증명과 관련되는 종류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람의 명의로는 증명표장으로서 표장을 등록 받을 수 없다.	제2조 적용 주체 본 법은 베트남 기관 및 국민, 본 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기관 및 국민에 대해 적용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87조 표장의 등록을 받을 권리 1. 기관 또는 개인은 그들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표장을 등록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제3자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교역에 법적으로 참여한 기관 또는 개인은, 제조업자가 제품에 대해 표장을 사용하지 않고 또 등록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제품에 이용하기 위해 표장을 등록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법적으로 설립된 집합 기관은 집합적 표장의 이용에 관한 법규에 따라 구성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도록 집합적 표장을 등록받을 권리를 갖는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식과 관련하여,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는 기관은 제조에 관련된 또는 관련 지역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교역에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의 집합이어야 한다. 4.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특성, 원산지 또는 다른 관련 기준을 증명 또는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은, 그 기관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교역이나 제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 증명 표장의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5. 둘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동 소유자가 되기 위해 표장을 함께 등록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러한 표장의 이용은 모든 공동 소유자를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위하여야 하고 또는 모든 공동 소유자가 제조 또는 교역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b) 그러한 표장의 이용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본 조의 제1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등록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등록 출원 후에도, 유산에 대한 서면 계약 또는 상속법에 의해 서면으로 기관 또는 개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양수인은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7. 표장 소유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표장을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으로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 조약의 가입국에 의해 보호되는 표장과 관련하여, 그러한 대표 또는 대리자는, 합법적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표장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한 표장을 등록받지 못한다.
			제88조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을 권리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을 권리는 국가에 속한다. 국가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관 및 개인, 그러한 기관 및 개인을 대표하는 집합적 기관 또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의 공공 기관이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용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그러한 지리적 표시의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제121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소유권자 1.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의 소유권자는 관할 기관에 의한 관련 산업재산권 대상의 보호권의 양수인인 기관 또는 개인이다. 표장의 소유권자는 그 표장의 보호권을 관할기관에 의해 허여받거나 합법적인 대리인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 등록된 표장 또는 널리 공지된 표장을 갖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다. 2. 상호의 소유권자는 영업 중에 그 상호를 법적으로 사용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다. 3. 영업비밀의 소유권자는 법적으로 영업비밀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기관 또는 개인이다. 양도된 업무의 이행 동안 양도된 업무를 실행하는 일방 또는 종업원에 의해 획득된 영업비밀은 당사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업무 양도인 또는 고용인에 귀속된다. 4.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의 소유권자는 국가이다. 국가는 관련 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보유되는 물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그 물품을 방출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국가는 지리적 표시를 관리할 권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가 허여된 모든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의 대표할 자격을 갖는 조직에게 그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권리를 허여해야 한다.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제60조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이나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제18조 ①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한 상표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를 처리해야할 경우, 법에 따라 설립한 상표 대리기관에 위		제89조 산업재산권 설정을 위한 등록 출원 1. 베트남의 기관, 개인,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 및 베트남 내의 제조 및 교역 회사를 가지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은 직접적으로 또는 베트남 내의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설정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2.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탁하여 처리해야만 한다. 제19조 ① 상표 대리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피대리인의 위탁에 의해 상표 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 사무만을 처리해야 한다. 대리과정 중에 알게 된 피대리인의 영업비밀(商业秘密)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② 의뢰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에 이 법에 규정된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관은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③ 상표 대리기관은 의뢰인이 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 제15조 또는 제3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의뢰를 수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상표 대리기관은 해당 상표등록 출원대리 서비스 이외에 기타 상표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베트남 내의 제조 및 교역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베트남 내의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설정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상표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하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제15조 ① 대리인 또는 대표인이 수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②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출원인과 해당 타인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계약, 업무 거래 관계	제145조 대리인 동 법에 의해 또는 동 법에 따라 등록관에 대해 선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상기 행위는,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정의 방법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할 수 있다. (a) 변호사 (b) 소정의 방법에 의해 상표 대리인으로서	제107조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대표권한 1. 보호권의 성립, 유지, 연장, 보정, 중단 및 무효화와 관련한 절차를 실행할 권한을 가지는 투자자는 서면 형식, 소위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임장은 다음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a) 본인 및 대리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b) 위임 범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나.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라 한다) 다. 제211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위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라 한다)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또는 기타 관계로 해당 타인의 상표존재를 알고 있고, 해당 타인이 이의를 제출한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8조 ①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한 상표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를 처리해야할 경우, 법에 따라 설립한 상표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야만 한다. 제19조 ① 상표 대리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피대리인의 위탁에 의해 상표 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 사무만을 처리해야 한다. 대리과정 중에 알게 된 피대리인의 영업비밀(商业秘密)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② 의뢰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에 이 법에 규정된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관은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③ 상표 대리기관은 의뢰인이 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 제15조 또는 제3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의뢰를 수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상표 대리기관은 해당 상표등록 출원대리 서비스 이외에 기타 상표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등록되어 있는 자 (c) 정식의 정규 복대리인	c) 위임장의 유효 기간 d) 위임장의 일자 dd) 본인의 서명 및 봉인(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유효기간이 없는 위임장은 무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료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8조(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07조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대표권한 1. 보호권의 성립, 유지, 연장, 보정, 중단 및 무효화와 관련한 절차를 실행할 권한을 가지는 투자자는 서면 형식, 소위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임장은 다음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a) 본인 및 대리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b) 위임 범위 c) 위임장의 유효 기간 d) 위임장의 일자 dd) 본인의 서명 및 봉인(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유효기간이 없는 위임장은 무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료된다.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追認)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제11조(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동일상표에 대해 공동으로 상표국에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상표권을 향유 및 행사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제87조부터 제97조까지)을 준용한다.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②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		제131조 기간의 연장 (1) 등록관에 대해 소정의 방법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신청에 근거하며, 지정기간의 만료일 전후를 불문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는 기간(본 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기간 제외)을 연장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관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교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1)의 규정은 등록관이 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당사자를 청문해야 함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본 조에 의한 등록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1.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5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1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		제130조 당사자의 사망 본 법에 따르는 절차(심판부 또는 법원에 있어서의 절차 제외)의 당사자가 절차의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관은 청구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권리 이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증거에 근거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등록관이 사망자의 권리가 생존한 당사자에 의해 충분히 대표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대행하게 하지 않고 절차의 속행을 허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제129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②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 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그 소속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상호주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55조 상호주의에 관한 규정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의해 지정한 국가 또는 국가 동맹의 회원국 또는 국가 연합 또는 정부간 기관이,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해서 자국의 국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등의 권리를 인도 국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등의 국민은 단독으로도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지 아니한다. (a)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상표의 소유자로서의 등록을 받는 것 (b)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양수인으로서의 등록을 받는 것 (c) 제49조에 의해 상표의 등록 사용자로서의	제2조 적용 주체 본 법은 베트남 기관 및 국민, 본 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기관 및 국민에 대해 적용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하거나 등록 사용자로서의 등록을 받는 것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분실·도난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	제22조 ① 상표 등록출원인은 상품 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와 상품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명칭을 기입하여 등록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상표 등록출원인은 한 번의 출원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 상표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③ 상표 등록출원 등 관련 문서를 서면방식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	제11조 ① 다음의 표장은 상표로 등록 할 수 없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치수로만 된 표장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 나타낸 표장 3. 기타 현저한 특징이 결여된 표장 ② 전항에서 열거한 표장이 사용을 통해 현저한 특징을 획득하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등록거절의 절대적 사유 (1) 다음의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 식별력이 없는 상표, 즉, 어떤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할 수 없는 것 (b) 당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의도하는 목적, 가치, 지리적 원산지, 혹은 당해 상품의 생산 시기나 당해 서비스의 제공 시기, 또는 기타 특성들을 상거래상 표시하는 표장이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c) 현행 언어에 있어서 또는 선의의 확립한 거래 관행에 있어서 관용하는 표장이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다만, 등록출원일 이전에 사용의 결과로써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나 주지상표일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 공중을 속이거나 혼동을 야기하기 위한 성질의 표장 (b) 인도 국민의 여하한 계급이나 종파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여하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로 구성된 표장 (c) 중상적 혹은 외설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장	제74조 표장의 식별력 1. 표장이 하나 이상의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요소, 또는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조합을 형성하는 많은 요소로 이루어지고 본 조의 제2항에 기재된 사이인 아닌 경우에, 그 표장은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2. 표장이 다음의 경우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표식인 경우에 그 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단순한 장치 및 기하학적 도형, 표식들이 널리 이용되고 표장으로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의 숫자, 문자 또는 단어 b) 널리 그리고 잦은 빈도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언어내의 표식, 심볼, 그림 또는 공통 명칭 c) 표식이 표장 등록 출원 이전에 사용을 통해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 장소, 제조 방법, 종류, 수량, 품질, 재산, 합성, 의도적인 목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기타 특징을 표시하는 표식 d) 사업의 법적 지위 및 활동 분야를 나타내는 표식 dd) 표식이 널리 사용되고 표장으로서 인식되는 경우 또는 표식이 본 법에 기재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d) 해당 표장의 사용이 인도의 1950년 엠블럼명칭법(부정사용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표장 (3) 다음의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 해당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상품의 형상 (b) 기술적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의 형상 (c)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본 조항의 목적상, 해당 상표가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은 등록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13조 화학원소의 명칭 및 국제적 독점불가 명칭의 등록 금지 다음의 단어들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으며, 이러한 단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 이는 제57조의 취지상 상황에 따라 충분한 이유가 부족하거나 잘못 기재되어 존속하고 있는 등록으로 간주한다. (a) 화학물질 또는 조제품과 관련되는 단일의 화학원소 또는 단일의 화합물(혼합물과는 구별됨)에 붙어 보통 사용되고 인정되고 있는 명칭인 단어 (b)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국제적 독점불가 명칭으로서 선언되어 등록관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수시로 공고되는 명칭 또는 상	바와 같이 집합적 표장 또는 증명 표장으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식 e)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 하에서 출원된 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출원을 포함하여, 이전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는 등록 출원을 기초로 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된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을 포함하는 표식이 아닐 것 g)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있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널리 이용되고 인식되고 있는 타인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h) 표장 등록 증명이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종료된 동일 또는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되었던 타인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으로서, 이때 상기 종료의 이유는 본 법의 제95조의 제1항의 제d호에 기재된 바에 따른 표장의 미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한다. i) 주지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표장의 사용이 주지 표장의 식별력을 침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표식의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기 명칭과 매우 유사한 단어 제32조 식별력 취득에 의한 등록의 보호 제9조(1)의 규정에 반하여 상표가 등록되었을 경우, 등록 후 해당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적 절차의 개시 전에, 그 사용의 결과로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식별력을 획득했을 경우 해당 등록은 무효라고 선언되지 않는다.	등록이 주지 표장의 영업권의 이익을 취할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이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지의 것으로 인식되는 타인의 등록된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k)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으로서, 그러한 표식의 이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표식 l) 보호되는 지리적 표상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으로서, 그러한 표식이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표식 m) 지리적 표상을 포함하는 지리적 영역으로부터 기원하지 않는 와인 및 주정과 관련한 이용을 위해 표식이 등록된 경우에, 와인 및 주정과 관련하여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상과 동일하거나 그 지리적 표상을 포함하거나 또는 그 지리적 표상의 의미 또는 표기로부터 번역될 수 있는 표식 n) 해당 표장 등록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는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을 기초로 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산업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표식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가.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유사한 상표 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	제7조 ① 상표의 등록출원 및 사용은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实信用原则)에 따라야 한다. ② 상표사용인은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상품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급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9조 ① 상표 등록출원을 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②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 표기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① 다음의 표장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국가(国歌), 군기, 군장(军徽), 군가, 훈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및 중앙 국가기관과 특정 장소의 명칭과 표장 또는 상징적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경우 2.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다만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깃발, 휘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다만 해당 조직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공중이 오해할 여지가	제9조 등록거절의 절대적 사유 (1) 다음의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 식별력이 없는 상표, 즉, 어떤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할 수 없는 것 (b) 당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의도하는 목적, 가치, 지리적 원산지, 혹은 당해 상품의 생산 시기나 당해 서비스의 제공 시기, 또는 기타 특성들을 상거래상 표시하는 표장이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c) 현행 언어에 있어서 또는 선의의 확립한 거래 관행에 있어서 관용하는 표장이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다만, 등록출원일 이전에 사용의 결과로써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나 주지상표일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 공중을 속이거나 혼동을 야기하기 위한 성질의 표장 (b) 인도 국민의 여하한 계급이나 종파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여하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로 구성된 표장 (c) 중상적 혹은 외설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장 (d) 해당 표장의 사용이 인도의 1950년 엠블	제73조 표장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표식 다음 표식은 표장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1. 국기, 국가 표상과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2. 국가기관, 정책기관, 사회·정책 기관, 사회·정책 전문기관, 베트남 또는 국제기구의 사회기관 또는 사회·전문기관의 승락이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의 엠블럼, 깃발, 표장, 전체 명칭, 약어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3.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국가적 영웅 또는 유명인의 실명, 가명, 필명 또는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4. 봉인이 국제기관에 의해 증명 표장으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될 수 없는 사인으로서, 국제기관의 증명 봉인, 제어 봉인, 보증 봉인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5.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기능, 목적, 품질, 가치 또는 기타 특징에 관해 소비자를 현혹, 혼동 또는 기만할 수 있는 표식 제80조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1. 베트남 내에서 상품의 일반 명칭이 된 표시, 명칭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마.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4. 통제를 나타내거나, 보증 부여를 나타내는 정부 당국의 표장·검증 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다만 수권(授權)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적십자", "적신월(紅新月)"의 명칭,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6. 민족 차별성을 띠는 경우 7. 기만성을 띠는 경우, 공중이 상품의 품질 등 특정 또는 생산지를 오인하기 쉬운 경우 8. 사회주의 도덕풍조를 해치거나 또는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 지명 또는 공중이 알고 있는 외국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미 등록된 지명을 사용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2조 입체표장을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 단지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연유한 형상이거나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의 형상 또는 상품이 본질적 가치를 갖게 하는 형상인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 ① 공중이 잘 알고 있는 상표는 상표권자가(持有人) 그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생각될 때에 본 규정에 근거하여 치명상표(驰名商标)(이하'유명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	럼명칭법(부정사용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표장 (3) 다음의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a) 해당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상품의 형상 (b) 기술적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의 형상 (c)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본 조항의 목적상, 해당 상표가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은 등록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11조 등록거절의 상대적 사유 (1)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a) 선행하는 상표와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유사하거나 (b) 선행하는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공중에게 선행하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선행상표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혼동을 포함한다. (2) 다음과 같은 상표로서, 선행하는 상표가 인도에서 주지상표이며, 후행상표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상표의 식별력 또는 평판을 해치거나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2.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외국의 지리적 표시 3. 사용 시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고 있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지리적 표시 4.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 제75조 주지 표장의 인식 기준 표장의 주지 상태를 고려할 때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표장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유명상표를 복제, 위조하거나 유명상품을 번역하여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③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복제, 위조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인, 유명상표의 등록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 ① 유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유명상표 인정에 필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유명상표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관련 공중에게 그 상표가 알려진 정도 2. 해당 상표의 사용 지속기간 3. 해당 상표의 어떠한 홍보업무 지속기간 및 정도와 지리적 범위 4. 해당 상표가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 해당 상표가 저명(驰名)한 기타 요소 ② 상표등록 심사 및 공상행정 관리부서 조사기관에서 상표법사건 처리과정 중 당사자가 이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표국은 심사 및 처리 사건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다.	(a) 선행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b) 다른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된 선행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 (3) 다음의 법률에 의해 인도 내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범위 내의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a) 업으로서 사용되는 미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법률(특히, 사칭 통용(passing off)에 관한 법률) (b) 저작권법 (4) 본 조는 선행상표권자 또는 기타 선행권리자가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등록관은 제12조에 따른 특별한 경우에 한해 해당 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설명 – 본 조의 적용상 선행하는 상표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등록상표 또는 제154조에 의한 조약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장된 우선권을 참작하여 해당 상표의 출원일보다 빠른 출원일을 가지는 것 (b)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일 또는 해당 출원과 관련되어 주장된 우선일 전에 주지상표로서 보호될 권리가 있는 상표 (5) (2) 및 (3)에 규정된 이유의 1 또는 2 이상에 관한 거절 이유에 대해 선행상표의 소유자	구입 또는 이용을 통해서 또는 광고를 통해서 표장을 인식하는 관련 소비자의 수 2.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서비스의 지역적 유통 범위 3.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판매 매출, 또는 공급되는 서비스나 판매된 상품의 양 4. 표장의 연속적인 사용 시간 5.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서비스의 영업권 범위 6. 표장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의 개체수 7. 표장을 주지의 상태로 인지하고 있는 국가의 개체수 8. 표장과 관련한 투자 자본 가치, 양도 가치, 라이센싱 비용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	③ 상표 심판처리 과정 중 당사자가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처리 사건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상표민사 및 행정사건 심리과정 중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은 심리 사건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생산・경영자는 치명상표(驰名商标) 문구를 상품 및 상품포장, 상품용기, 광고홍보, 전시 또는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① 대리인 또는 대표인이 수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②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출원인과 해당 타인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계약, 업무 거래 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해당 타인의 상표존재를 알고 있고, 해당 타인이 이의를 제출한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6조 ① 상표 중에 상품의 지리적 표시(地理标志)가 있으나, 상품이 해당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고 공중의	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이상, 상기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6) 등록관은 상표가 주지상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주지상표 여부를 판단한다. (i) 해당 상표의 사용 촉진의 결과로 얻은 인도 내 지식을 포함하여 관련 수요자간의 해당 상표에 대한 지식 또는 인식 (ii) 해당 상표의 사용에 대한 기간, 범위 및 지역 (iii) 해당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있어서의 광고 또는 선전 및 소개를 포함해 해당 상표의 사용 촉진에 대한 기간, 범위 및 지역 (iv) 본 법에 근거하는 해당 상표의 등록 또는 등록출원에 대한 기간 및 지역 및 해당 상표의 사용 또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범위 (v) 해당 상표에 관한 제 권리의 승소 집행 기록, 특히 해당 상표가 해당 기록에 근거하여 법원 또는 등록관에 의해 주지상표로서 인식된 범위 (7) 등록관은 규정 (6)의 적용시 상표가 관련 수요자간에 알려져 있는지 또는 주지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오인을 초래한 경우, 상표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이미 선의로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계속 유효하다. ② 전항의 지리적 표시란 어떤 상품이 어떤 지역에서 유래하고 해당 상품의 특정품질, 신용 및 기타 특징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적 요소 혹은 인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표장을 가리킨다. 제32조 상표 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한 선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등록 하지 못한다.	(i)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소비자의 수 (ii)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경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iii)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계 (8) 법원 또는 등록관에 의해, 상표가 인도 내 일정범위의 관련 수요자간에 주지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면 등록관은 본 법에 따른 등록에 있어 해당 상표를 주지상표라고 인정해야 한다. (9) 등록관은 상표가 주지상표인지 아닌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어떤 사항도 조건으로서 요구할 수 없다. (i) 인도 내 해당 상표가 사용 중일 것 (ii)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것 (iii) 인도 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위한 출원이 있었을 것 (iv) 해당 상표가, (a) 인도 내 주지하거나 (b) 인도 내 등록되어 있거나 (c) 인도 내 출원된 상표가, 인도 외 관할권 내에서 출원되었거나 할 것 (v) 해당 상표가 인도 내 수요자 전반에 주지인 것 (10) 상표 등록출원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데 있어 등록관은, (i)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부터 주지상표를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②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보호해야 하며 (ii) 해당 상표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지 참작해야 한다. (11) 상표가 등록관에 중요한 정보를 개시하고 선의로 등록되었을 경우 또는 상표에 대한 권리가 본 법의 시행 전에 선의의 사용을 통해서 취득되었을 경우, 본 법은 해당 상표가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 등록 또는 해당 상표 사용의 권리의 유효성을 일절 해치지 않는다. 제14조 현존하는 사람 또는 최근 사망자의 명칭 및 초상의 사용 현존하는 사람 또는 상표 등록출원일 전 20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암시를 주는 상표의 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등록관은 그 출원의 처리 전에 해당 상표에 나타나는 관계에 대해 그 현존하는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사망자의 법률상의 대표자로부터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출원인이 등록관에게 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동일·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말한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 ④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 간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선출원)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	제31조 2인 또는 2인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를 출원공고 결정하여 공고한다. 같은 날 상표 등록출원된 경우 먼저 사용된 상표에 대해 초보심사 결정을 하고 공고하며, 그 밖에 타인의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선의의 경합 사용 등의 경우의 등록 선의의 경합 사용의 경우 또는 등록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등록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해당 상표의 등록여부 불문) 2명 이상의 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등록에 대해서 등록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및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교부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90조 선출원주의 1. 동일한 발명을 등록하기 위해서 또는 서로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산업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또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로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등록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사람이 둘 이상을 출원한 경우에, 보호권은 보호권의 발행에 필요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 2. 무효로 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들 중에서 출원일 또는 최선 우선일이 가장 빠른 유효 출원에 대해서만 허여된다. 2. 둘 이상의 출원이 보호권의 발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함께 만족하고 출원일 또는 최선 우선권이 동일한 경우에, 보호권은 모든 출원인의 합의에 따라 출원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에 대해서만 허여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모든 출원에 대해 보호권 허여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제2조 ①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 상표국은 전국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②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상표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심판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조 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영업 활동 중 그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한다. ② 이 법의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도 적용한다. 제22조 ① 상표 등록출원인은 상품 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와 상품 명칭을 기입하여 등록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상표 등록출원인은 한 번의 출원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 상표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③ 상표 등록출원 등 관련 문서를 서면방식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등록출원 (1) 스스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의 소유자인 것을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관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2) 다른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 등록에 대해서 단일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각각의 류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 (3) (1)의 규정에 의한 각 출원은 출원인의 인도 내 주영업소 소재지 또는 공동 출원인 경우 인도 내 영업소를 가진 자로서 출원인으로 기재된 첫 번째 사람의 주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표등록청의 지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원인 또는 공동 출원인 중 어느 누구도 인도 내에서 영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상표등록청의 지국에 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4) 등록관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불수리 할 수 있으며, 명백한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정, 변경, 조건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5) 출원의 불수리 또는 조건부 수리의 경우, 등록관은 해당 불수리 또는 조건부 수리의 이유 및 그 결정에 이용한 자료를 서면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89조 산업재산권의 설정을 위한 등록 출원 1. 베트남의 기관, 개인,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 및 베트남 내의 제조 및 교역 회사를 가지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은 직접적으로 또는 베트남 내의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설정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2. 베트남에 영구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베트남 내의 제조 및 교역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베트남 내의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설정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다. 제100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1.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a) 규정된 형태로 작성된 신청서 b) 본 법의 제102조 내지 제10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요청하는 산업재산권 대상을 나타내는 서류, 샘플 및 정보 c)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위임장 d)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원인에게 양도된 경우에, 등록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dd)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 e) 미리 정해진 수수료 및 비용의 영수증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과 출원인 사이의 통신 서류 및 산업재산권 등록 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 단체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을 첨부해야 할 출원 (1) 단체표장의 등록출원에는 해당 단체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을 첨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한 규약은 해당 표장의 사용이 승인된 자, 해당 단체의 구성원 자격의 조건,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해당 표장의 사용 조건 및 그 외 소정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제71조 증명표장의 등록출원 (1) 증명표장의 소유자로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등록관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증명표장의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74조에 의해 제출되는 규약 초안을 첨부해야 한다. (2)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8조에 의한 출원과 동일하게 본 조에 의한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에 의한 출원 수리는 출원 절차 진행의 허가라고 해석하는 취지의 수정을 교부하여 적용한다. (3) 심판위원회는 본 조에 의한 출원에 대해 관련되는 상기 각 항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장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8조에 의한 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해야 하며, 상기 상표가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의 표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출원인이 동의한 경우에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으나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의 요청시에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a) 위임장 b) 등록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c)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 d) 출원서를 보충하는 기타 서류 3.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수리관청에 의해 증명되는 최초 출원서 사본 b) 다른 사람으로부터 획득된 경우에, 우선권의 양도증 제105조 표장 등록 출원에 대한 요건 1. 표장 등록 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표장을 나타내는 서류, 샘플, 및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한다: a) 표장의 샘플 및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리스트 b) 집합적 표장의 이용에 관한 규정 또는 증명 표장의 이용에 관한 규정 2. 표장의 샘플은 표장의 요소 및 표장의 포괄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기재되어야 하고, 표장이 상형 문자의 단어나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단어나 문구는 번역되어야 하며, 표장이 외국어의 문자의 단어나 문구를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74조 증명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의 제출 (1) 증명표장으로서 등록된 각 표장에 대해 그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이 상표등록청에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약에는 소유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증명하는 경우 및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등록관이 일반 또는 특별한 명령에 의해 추가사항을 요구하거나 허가한 그 외의 규정(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상품에 대해 증명을 하는 사항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 허락을 거절하는 경우 등록관에 대해 심판청구 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 포함)을 포함할 수 있다. 제출된 규약은, 제148조에 규정된 등록부와 동일하게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어야 한다. (2) 제출된 규약은 등록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관이 변경할 수 있다. (3) 등록관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청을 공고한다. 상기 공고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록관은 당사자에 대해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고 사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포함하는 경우에, 그 단어나 문구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3. 표장 등록 출원에 나열된 상품 또는 서비스는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 기관이 발행한, 니스 국제상품분류 협약에 따른 분류 리스트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4. 집합적 표장의 이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한다. a) 표장의 소유자인 집합적 기관의 명칭, 주소, 설립 근거 및 운영 b) 집합적 기관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조건 c) 표장의 사용이 허락된 기관 및 개인의 리스트 d) 표장 이용에 관한 조건 dd) 집합적 표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배상 5. 증명 표장의 이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a) 표장 소유자인 기관 또는 개인 b) 표장 이용 조건 c) 표장에 의해 증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 d) 표장의 이용을 감독하기 위한 방법 및 상품 및 서비스의 평가 방법 dd) 표장 보호 및 증명을 위해 표장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그 비용 제106조 지리적 표시 출원의 요건 1. 지리적 표시 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리적 표시를 나타내는 서류, 샘플, 및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한다. a) 지리적 표시의 명칭 또는 표식 b)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 c)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특정 특성 또는 품질, 또는 명성에 관한 설명 및 제품의 특정 특성 또는 품질, 또는 명성에 기여하는 자연적인 조건의 특징(이하에서는 특정 특성의 설명이라 한다) d)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역의 지도 d') 원산지가 외국인 경우,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 특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a) 제품의 원료,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인식 가능한 특성을 포함하는 제품에 관한 설명 b)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역을 결정하는 방법 c) 본 법의 제79조에 규정된 각각의 의미를 가지는 지역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거 d) 제조 및 프로세싱 지역, 그리고 제조 및 프로세싱 방법에 관한 설명 dd) 본 법의 제79조에 규정된 자연 조건과 제품의 특정 특성이나 품질 또는 명성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정보 e) 제품의 특정 특성이나 품질의 자체-제어 기구에 관한 정보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5.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기 위해 기재한 신고사항 및 제공하는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제29조 심사 과정 중에 상표국은 상표 등록출원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에게 설명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설명 또는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등록출원 (1) 스스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의 소유자인 것을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관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2) 다른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 등록에 대해서 단일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각각의 류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 (3) (1)의 규정에 의한 각 출원은 출원인의 인도 내 주영업소 소재지 또는 공동 출원인 경우 인도 내 영업소를 가진 자로서 출원인으로 기재된 첫 번째 사람의 주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표등록청의 지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원인 또는 공동 출원인 중 어느 누구도 인도 내에서 영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상표등록청의 지국에 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4) 등록관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불수리 할 수 있으며, 명백한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정, 변경, 조건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5) 출원의 불수리 또는 조건부 수리의 경우, 등록관은 해당 불수리 또는 조건부 수리의 이	제108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접수, 출원일 1.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적어도 다음의 서류 및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의해서 접수된다. a) 출원인 및 표장의 샘플, 표장 등록 출원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트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는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 신청서 b) 발명 등록 출원에 대한 보호 범위,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사진 또는 도면 세트를 포함하는 명세서,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에 대한 특정 특성의 설명 c) 규정된 수수료 및 비용의 영수증 2. 출원일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이 출원을 접수한 날 또는 국제조약하에서 출원된 출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 출원일이 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유 및 그 결정에 이용한 자료를 서면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22조 ① 상표 등록출원인은 상품 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와 상품 명칭을 기입하여 등록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상표 등록출원인은 한 번의 출원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 상표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③ 상표 등록출원 등 관련 문서를 서면방식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 1. 각각의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본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보호권만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공동적인 발명 사상을 형성하는 발명 그룹에 대한 하나의 발명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각각의 등록 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각 등록 출원은 다음의 경우에 몇 개의 산업디자인에 관한 하나의 산업디자인 특허에 대해 각각의 등록 출원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 a) 하나의 공통적인 발명 사상을 나타내고 공통되는 목적 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몇 개의 제품으로 이루어진 물품 세트의 산업디자인, b) 하나 이상의 다른 변형 예 즉, 공통적인 하나의 발명 사상을 나타내고 해당 산업디자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인과 큰 차이가 없는 산업디자인의 변형을 수반하는 산업디자인. 4. 각각의 등록 출원은 하나 이상의 서로 상이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표장과 관련된 하나의 표장 등록 증명서에 대해 각각의 등록 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제38조 ① 상표 등록출원인 또는 등록인은 상표출원 문서 또는 등록 서류상에 명백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 경정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의 범위 내에서 경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② 전항의 오류 경정은 상표 출원 문서 또는 등록 서류의 실질적 내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정정 및 보정 등록관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에 의한 등록출원의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의 언제라도 출원 중 또는 그와 관련한 오기의 정정 또는 출원의 보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2)에 의한 단일 출원이 보정에 의해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분할출원하였던 것으로 본다.	제115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보정, 보충, 분할 및 변경 1.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이 보호권에 대해 허여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할 때까지, 출원인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출원에 대해 보정 또는 보충을 할 수 있는 권리 b) 출원을 분할할 권리 c)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때까지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 2. 오기(誤記)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釋明) 4.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 5. 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d) 상속, 유증,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계약에 따른 양도에 의해서, 출원인에 관한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d') 발명 특허를 위한 발명 등록 출원을 실용신안 특허를 위한 발명 등록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권리 2. 본 조의 제1항에 개지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에 대한 보정 또는 보충은 공개된 또는 출원에서 특정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출원시의 등록 청구 대상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출원을 단일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분할 출원의 경우에, 분할된 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의 출원일이 된다.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	제38조 ① 상표 등록출원인 또는 등록인은 상표출원 문서 또는 등록 서류상에 명백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 경정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의 범위 내에서 경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② 전항의 오류 경정은 상표 출원 문서 또는	제22조 정정 및 보정 등록관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에 의한 등록출원의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의 언제라도 출원 중 또는 그와 관련한 오기의 정정 또는 출원의 보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2)에 의한 단일 출원이 보정에	제115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보정, 보충, 분할 및 변경 1.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이 보호권에 대해 허여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할 때까지, 출원인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출원에 대해 보정 또는 보충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2. 제5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등록 서류의 실질적 내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해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분할출원하였던 것으로 본다.	권리 b) 출원을 분할할 권리 c)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d) 상속, 유증,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계약에 따른 양도에 의해서, 출원인에 관한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d') 발명 특허를 위한 발명 등록 출원을 실용신안 특허를 위한 발명 등록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권리 2. 본 조의 제1항에 개지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에 대한 보정 또는 보충은 공개된 또는 출원에서 특정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출원시의 등록 청구 대상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출원을 단일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분할 출원의 경우에, 분할된 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의 출원일이 된다.
제42조(보정의 각하) ① 심사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우에는 그 결정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제41조에 따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① 단체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명표장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은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규약의 보정 제63조(1)에 의한 규약의 보정은, 보정이 끝난 규약을 등록관에 대해 제출하여 제64조에 따라 등록관에 의해 수리되어 공고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44조(출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3.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⑤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45조(출원의 분할) ①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보정, 보충, 분할 및 변경 1.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이 보호권에 대해 허여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할 때까지, 출원인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출원에 대해 보정 또는 보충을 할 수 있는 권리 b) 출원을 분할할 권리 c)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d) 상속, 유증,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계약에 따른 양도에 의해서, 출원인에 관한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d') 발명 특허를 위한 발명 등록 출원을 실용신안 특허를 위한 발명 등록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권리 2. 본 조의 제1항에 개지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에 대한 보정 또는 보충은 공개된 또는 출원에서 특정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출원시의 등록 청구 대상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출원을 단일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분할 출원의 경우에, 분할된 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의 출원일이 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	제25조 ① 상표 등록출원인이 외국에서 처음 상표 등록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중국에서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경우, 해당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상표 등록출원 시 제출한 서면으로 당해 취지를 주장한 성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3개월 이내에 처음 제출한 상표 등록출원 문서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면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을 넘기고도 상표 등록출원 문서의 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4조 조약국의 국민에 의한 등록출원에 관한 특별 규정 (1) 자국의 국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것과 동등의 권리를 인도 국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인도 이외의 국가 또는 국가 동맹의 회원국 또는 국가연합 또는 정부간 기관과의 조약, 협약 또는 협정의 이행의 관점에서,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본 법의 적용에 있어 해당 국가 등을 조약국 등으로 선언할 수 있다. (2) 조약국 등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그 법률상 대표자 또는 양수인이, 해당 조약국 등에서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인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동 법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경우, 해당 상표는 해당 조약국 등에서의 출원일에 등록된 것으로 보아, 동 법의 목적상 해당일을 등록일로 간주한다. (3) 상표등록출원이 2 이상의 조약국 등에 출원된 경우, 전항의 6개월의 기간은 그 중 최선의 출원일로부터 기산한다. (4) 동 법의 어떤 규정도 상표의 소유자에 대해 동 법에 따르는 상표등록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 회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91조 우선권 원칙 1.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출원인은 다음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는 경우에 동일한 대상의 보호를 위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a) 최초 출원이 베트남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가지는 국제 조약의 가입국, 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베트남과 합의한 국가에 출원되어야 한다. b) 출원인은 베트남 국민 또는 본 조항의 제a호에 기재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베트남 또는 본 조항의 제a호에 기재된 국가에 거주하거나 그 내부의 사업체 또는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우선권의 주장은 출원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하고, 수리관청이 증명한 최초 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d)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간 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2. 하나의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표장 출원에서, 출원인은 여러 가지 선행 출원을 기초로 다수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그러한 선행 출원들 및 해당 출원의 대응 내용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3. 우선권을 향유하는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최초 출원일과 동일한 우선일을 가진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당사국의 영역(領域)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①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으로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상품을 전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인은 우선권을 가진다. ② 전항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상표 등록출원 시 제출한 서면성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동시에 3개월 이내 상품을 전시한 박람회의 명칭, 전시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증거, 전시 기한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성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 넘기고도 증명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①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	제41조 등록상표에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③ 상표등록출원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등록출원 2.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⑦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⑧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실질 심사 1. 이하의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출원에서 청구된 대상의 보호 요건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위해서 또는 각각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a)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접수되고 실질 심사에 대한 청구가 규정대로 이루어진 발명 등록 출원 b)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접수된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 표장 등록 출원 및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 2. 배치설계 등록 출원은 실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1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30조 상표 등록출원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상품에서 이미 등록한 경우 또는 초보심사 결정한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상표국은 해당 상표의 출원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62조 특성 또는 중대성에 관한 오인이 배제되어야 하는 단체표장 단체표장이 공중에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단체표장 이외의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등록관은 등록출원과 관련되는 표장에 단체표장이라는 취지의 표	제109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방식 심사 1.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방식 유효성의 입증을 위해 형식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2.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다음 사항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출원 대상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시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 등록관에 의한 출원 및 규약의 수리 등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관은 출원을 규약과 함께 조건 없이 또는 상기 규약의 보정을 포함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부로 수리하거나 수리를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며, 수리했을 때는 해당 규약을 공고해야 한다.	c) 등록받을 권리가 둘 이상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들 중 일부가 출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원인이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d) 본 법의 제89조에 규정된 출원 모드에 반하여 출원된 경우 dd) 출원인이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의 제2항에 해당되는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흠결 치유 또는 불복의 기한 및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한다. b) 본조의 제a호에 규정된 바와 같은 불수리에 대한 정당한 불복을 하지 않거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 불수리 통지서를 송달한다. c) 집적회로 등록 출원의 경우에,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 증명서의 허여를 거절하는 통지서를 송달한다. d) 본조의 제a호에 규정된 바와 같은 불수리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거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였을 때 본조의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실행한다. 4. 본 조의 제2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본 조의 제3항 제d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재산권 등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록 출원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방식적으로 유효한 출원의 접수 통지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는 배치설계 출원의 경우에는 보호권을 허여하고 또 본 법의 제1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본 조의 제3항에 따라 거절된 표장 등록 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된다.
			제117조 보호권 허여 거절 1. 다음의 경우에 보호권 허여는 발명, 산업 디자인,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출원과 관련하여 거절된다. a) 출원에서 청구된 각각의 청구대상이 보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확신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b) 출원이 보호권 허여에 대한 모든 조건은 만족하나, 본 법의 제90조 제1항에 기재된 경우와 같은 최선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진 출원이 아닌 경우 c) 출원은 본 법의 제90조 제1항에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나, 모든 출원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2. 본 법의 제109조에 규정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치설계 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보호권이 거절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3.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이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보호권 허여 거절의 통지를 하며, 이때 그러한 거절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할 기간과 함께 거절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b) 본 항의 제a호에 규정된 거절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하지 않게 불복하는 경우에, 보호권 허여에 대한 거절 통지를 한다. c) 출원이닝 본 항의 제a호에 기재된 거절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다면, 보호권을 허여하고 그러한 보호권 허여를 본 법의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국가 등기소에 통지한다. 4. 보호권 허여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된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을 재심사한다.
제55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	제34조 출원이 기각되고 이를 공고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 등록출원인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해야하며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		제117조 보호권 허여 거절 1. 다음의 경우에 보호권 허여는 발명, 산업디자인,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출원과 관련하여 거절된다. a) 출원에서 청구된 각각의 청구대상이 보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확신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b) 출원이 보호권 허여에 대한 모든 조건은 만족하나, 본 법의 제90조 제1항에 기재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하는 경우에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준을 거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우와 같은 최선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진 출원이 아닌 경우 c) 출원은 본 법의 제90조 제1항에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나, 모든 출원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3.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이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다음 절차를 수행한다. a) 보호권 허여 거절의 통지를 하며, 이때 그러한 거절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할 기간과 함께 거절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b) 본 항의 제a호에 규정된 거절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하지 않게 불복하는 경우에, 보호권 허여에 대한 거절 통지를 한다. c) 출원이닝 본 항의 제a호에 기재된 거절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다면, 보호권을 허여하고 그러한 보호권 허여를 본 법의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국가 등기소에 통지한다. 4. 보호권 허여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된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을 재심사한다.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심사 과정 중에 상표국은 상표 등록출원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에게 설명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설명 또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원 공고 (1) 상표등록출원이 조건 없이 또는 조건부나 제한부로 수리되었을 경우, 등록관은 수리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출원 수리를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수리된 출원에 조건이나 제한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이들도 함께 공고해야 한다. 다만, 출원이 제9조(1) 및 제11조(1) 및 (2)가 적용되는 상표에 관한 것이거나 특별한 상황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관은 수리하기 전에 해당 출원을 공고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다음의 경우에, 재량에 의해 출원의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하의 (b)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원의 재공고에 갈음하여 해당 출원의 정정 또는 보정을 소정의 방법에 의해 공고할 수 있다. (a) 출원이 (1)에 의해 수리 전에 공고되었거나 (b) 출원의 공고 후, (i) 출원의 오기가 정정되거나 (ii) 제22조에 의해 원서의 보정이 인정되었을 경우	제99조 보호권과 관련한 결정의 공표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권의 허여, 보정, 중단, 무효화, 이전에 관한 모든 결정은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의해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110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공표 1.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접수된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다. 2. 발명 등록 출원은 적용 가능한 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19개월 내에, 또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가급적 조속히 공표되어야 한다. 3.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 표장 등록 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은 그 출원이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4. 배치설계 등록 출원은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하며, 그러한 출원에 포함된 비밀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접근은 권리 침해 관련 절차 완료 또는 보호권의 무효 절차 완료와 관련한 당사자 또는 기관에게만 허락된다.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권 및 배치설계 등록 출원에 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한 기본 정보는 보호권 허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상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59조(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이 조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38조 ① 상표 등록출원인 또는 등록인은 상표출원 문서 또는 등록 서류상에 명백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 경정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의 범위 내에서 경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② 전항의 오류 경정은 상표 출원 문서 또는 등록 서류의 실질적 내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제33조 초보심사 결정이 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권리자, 이해관계인은 이 법 제13조 제2항 및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 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21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1) 누구든지 등록출원의 공고 또는 재공고가 있던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심사관의 허가를 얻은 소정의 방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로서 총 1개월을 넘지 않는 추가기간 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소정의 방법에 의해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등록출원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자기의 출원을 이유 있게 하는 답변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했을 경우, 등록관은 그 부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4)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은 증거가 있을 경우,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관에게 그것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관은 제출자의 희망이 있을 경우, 그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등록관이 관계자의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증거 검토 후에 등록의 가부 및 등록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러한 조건이나 제한이 무	제112조 보호권 허여에 대한 제3자의 의견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 날로부터 보호권의 허여가 결정되는 날 이전까지, 제3자는 출원과 관련된 보호권의 허여 또는 거절에 관해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게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증거를 첨부할 수 있으며 또는 입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의 공급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엇인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관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않는 이의 사유에 대해서도 참작할 수 있다. (6) 이의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서의 부본의 송달을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한 출원인이 인도 내 주소지가 없으며 영업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등록관에 대한 절차 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담보가 지체 없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해당 이의신청 또는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 (7) 등록관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대한 오기의 정정 또는 보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제73조 증명표장의 등록에 대한 이의 등록관은 출원을 수리한 경우, 소정의 방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의 규정은 제18조에 의한 출원에서와 같이, 상기 표장의 등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정한다. ② 특허청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제131조제2항 중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중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은 "심사"로 본다.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 ① 초보심사 결정이 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의 진술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확인한 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은 등록을 허가 결정한 경우 상표 등록증을 발급하고 즉시 공고한다. 이의신청	제21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1) 누구든지 등록출원의 공고 또는 재공고가 있던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심사관의 허가를 얻은 소정의 방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로서 총 1개월을 넘지 않는 추가 기간 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소정의 방법에 의해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등록출원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자기의 출원을 이유 있게 하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국이 등록을 불허하여 피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0개월 내에 재심결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상표심사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라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이후 당연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답변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했을 경우, 등록관은 그 부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4)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은 증거가 있을 경우,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관에게 그것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관은 제출자의 희망이 있을 경우, 그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등록관이 관계자의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증거 검토 후에 등록의 가부 및 등록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러한 조건이나 제한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관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않는 이의 사유에 대해서도 참작할 수 있다. (6) 이의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서의 부본의 송달을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한 출원인이 인도 내 주소지가 없으며 영업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등록관에 대한 절차 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담보가 지체 없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해당 이의신청 또는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 (7) 등록관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대한 오기의 정정 또는 보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심사관합의체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제35조 ① 초보심사 결정이 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의 진술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확인한 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은 등록을 허가 결정한 경우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즉시 공고한다. 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1) 누구든지 등록출원의 공고 또는 재공고가 있던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심사관의 허가를 얻은 소정의 방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로서 총 1개월을 넘지 않는 추가기간 내에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소정의 방법에 의해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등록출원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자기의 출원을 이유 있게 하는 답변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③ 상표국이 등록을 불허하여 피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0개월 내에 재심결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상표심사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라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이후 당연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제35조 ① 초보심사 결정이 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의 진술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확인한 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3)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했을 경우, 등록관은 그 부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4)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은 증거가 있을 경우,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관에게 그것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관은 제출자의 희망이 있을 경우, 그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등록관이 관계자의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증거 검토 후에 등록의 가부 및 등록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러한 조건이나 제한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록관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않는 이의 사유에 대해서도 참작할 수 있다. (6) 이의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서의 부본의 송달을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한 출원인이 인도 내 주소지가 없으며 영업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등록관에 대한 절차 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담보가 지체 없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해당 이의신청 또는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 (7) 등록관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대한 오기의 정정 또는 보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은 등록을 허가 결정한 경우 상표 등록증을 발급하고 즉시 공고한다. 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국이 등록을 불허하여 피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0개월 내에 재심결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상표심사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라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원인이 소멸한 이후 당연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초보심사 결정이 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권리자, 이해관계인은 이 법 제13조 제2항 및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 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23조 등록 (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출원이 수리되고,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반대명령이 없는 한, 등록관은 해당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표가 제 15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 때에는, 해당 출원일을 등록일로 간주한다. (a)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혹은 (b)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된 경우 (2)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에 대해 상표등록청의 공인을 날인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다. (3) 상표등록이 출원인의 태만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관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출원인에게 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를 통지한 뒤,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4) 등록관은 오기 또는 분명한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서 등록부 또는 등록증을 보정할 수 있다.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와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72조(상표등록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 보호권의 유지 및 갱신 1. 발명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유지를 위해서는 소유자가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디자인 특허 또는 표장 등록 증명서의 갱신을 위해 사유자는 갱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보호권의 유지 및 갱신에 관한 요금 및 절차를 정부가 정한다.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특허청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등록 (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출원이 수리되고,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반대 명령이 없는 한, 등록관은 해당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표가 제 15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 때에는, 해당 출원일을 등록일로 간주한다. (a)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혹은 (b)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된 경우 (2)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에 대해 상표등록청의 공인을 날인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다. (3) 상표등록이 출원인의 태만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관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 뒤,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4) 등록관은 오기 또는 분명한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서 등록부 또는 등록증을 보정할 수 있다.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		제23조 등록 (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출원이 수리되고,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반대명령이 없는 한, 등록관은 해당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표가 제 15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 때에는, 해당 출원일을 등록일로 간주한다. (a)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혹은 (b)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된 경우 (2)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에 대해 상표등록청의 공인을 날인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다. (3) 상표등록이 출원인의 태만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관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 뒤,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기간 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낸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4) 등록관은 오기 또는 분명한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서 등록부 또는 등록증을 보정할 수 있다.	
제78조(수수료)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한다.	제72조 등록상표 출원과 기타 상표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비용을 납부해야하며, 구체적 요금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50조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 (1) 동 법에 근거하는 출원, 등록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등록관에 작위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등록관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상표등록청에 대한 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해당 서류는 상표청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지식재산 수수료 및 부과금 기관 및 개인은 본 법 및 관련 입법의 기타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절차를 수행할 때 수수료 및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잘못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2.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나. 제53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다. 제18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80조(상표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제41조 등록상표에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상표등록부 (1) 본 법의 목적상, 상표등록부라고 부르는 기록을 상표등록청 본부에 보관하며, 이 상표	제92조 등록부 1. 등록부에는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표장의 소유자(이하에서, 보호권 소유자라 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1.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① 상표 등록인은 상표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해당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② 허가를 받아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③ 타인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허가인은 해당 상표사용 허락을 상표국에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공고한다. 상표 사용허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록부에는 모든 등록상표들이 그 소유자의 이름・주소・설명, 양도・이전의 통지, 등록사용자의 이름・주소・설명, 등록상표와 관련한 조건・제한・기타사항들과 함께 규정된 바에 따라 등재되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관이 당해 기록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안전보호 조치를 전제로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양식으로 보관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제(2)항에 따라 당해 등록부의 전부 혹은 일부가 컴퓨터에 보존되는 경우, 본 법상 당해 등록부에의 등재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혹은 다른 전자양식으로 보존되는 여하한 등재를 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신탁 통지는, 그것이 명시적인지 묵시적 혹은 추정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등록부에 등재될 수 없으며, 이러한 통지는 상표등록관에 의해 수리될 수 없다. (5) 상표등록부는 상표등록관의 통제・관리하에 보관된다. (6) 상표등록부의 부본과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를 통해 정하는 제148조에 규정된 기타 문서들의 부본은 상표등록청의 각 사무소에 보관한다. (7) 본 법의 시행 시에 기존의 상표등록부는 제A부와 제B부 모두 본 법상 상표등록부에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	다), 발명, 산업디자인 및 배치설계의 창작자, 보호 대상, 범위 및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지리적 표시의 보호권은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운영 기관, 지리적 표시의 실시권을 가지는 기관 및 개인,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특징, 지리적 조건 및 해당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지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등록부는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설계 등록 증명서, 표장 등록 증명서 및 지리적 표시 등록 증명서를 포함한다. 제98조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등록 1.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가 등록은 본 법에 따른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표장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성립, 변경 및 이전에 관한 서면 기록이다. 2. 보호권 허여에 관한 결정, 보호권의 주요 내용, 및 보호권의 보정, 보호권의 무효화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산업재산권 이전 계약에 관한 결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등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3.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등록은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 의해 설립 및 유지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57조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의 권한 및 등록부의 경정의 권한 (1) 심판부 또는 등록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위원회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조건의 위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상표 등록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등록부에 있어서 등록 사항의 누락 또는 생략, 충분한 근거 없는 기재, 잘못되어 존속되고 있는 기재, 등록부에 있어서의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불비에 의한 피해자는, 심판부 또는 등록관에 대하여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사항을 기재하거나 말소 또는 변경하라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3) 심판위원회는 본 조에 따른 절차에 있어, 등록부의 경정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심판위원회는 소정의 방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뒤, 직권으로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심판부가 등록부의 경정을 명할 때는 소정의 방법에 의한 경정 통지를 등록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등록관은 상기대로 수령한 통지내용에 따라 등록부를 경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58조 등록부의 정정 (1) 등록 소유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관은 그에 따라 등록증을 보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등록증을 제출을 명할 수 있다. (a) 상표의 등록 소유자의 명칭, 주소 또는 그 외의 기재 또는 그 상표에 관한 다른 등록사항에 대한 오기의 정정 (b) 상표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칭, 주소 또는 그 외의 기재에 대한 변경 (c)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삭제 (d)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의 삭제 (2) 등록관은 등록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등록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등록 사용자의 명칭, 주소, 또는 그 외의 기재에 대해 오기를 정정하거나 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	제33조 초보심사 결정이 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권리자, 이해관계인은 이 법 제13조 제2항 및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이의가	제23조 등록 (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출원이 수리되고,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반대명령이 없는 한, 등록관은 해당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표가 제 15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 때에는, 해당 출원일을 등록일로 간주한다. (a)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여야 한다.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 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35조 ① 초보심사 결정이 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의 진술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확인한 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은 등록을 허가 결정한 경우 상표 등록증을 발급하고 즉시 공고한다. 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국이 등록을 불허하여 피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0개월 내에 재심결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	경우, 혹은 (b)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된 경우 (2)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에 대해 상표등록청의 공인을 날인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다. (3) 상표등록이 출원인의 태만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관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 뒤,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4) 등록관은 오기 또는 분명한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서 등록부 또는 등록증을 보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법원에 소를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상표심사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라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이후 당연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제5장 상표권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제33조 초보심사 결정이 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권리자, 이해관계인은 이 법 제13조 제2항 및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 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35조 ① 초보심사 결정이 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의 진술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확인한 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제6조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발생 및 성립 3.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성립된다. a)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 설계, 표장,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산업재산권은 본 법에서 규정된 등록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국가기관이 보호 타이틀의 허여를 결정하였을 때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하에서의 국제 등록의 승인 시에 발생하며, 주지의 표장과 관련하여, 소유권은 등록 절차와 무관하게 사용에 따라 성립된다. b) 상호에 관한 산업재산권은 상호의 법률적 사용에 따라 성립된다. c) 영업비밀에 관한 산업재산권은 영업비밀의 법률적 획득 및 비밀 유지를 기초로 성립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통지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은 등록을 허가 결정한 경우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즉시 공고한다. 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국이 등록을 불허하여 피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0개월 내에 재심결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상표심사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라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		d)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권리는 사업상 경쟁을 기초로 성립된다. 제118조 보호권 허여, 등록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이 본 법의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항 제b호에 속하지 않고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기관은 보호권 허여를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등기소에 통지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멸한 이후 당연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등록 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0조 ①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기간 만료 20개월 전에 규정에 따라 갱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매 갱신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직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표등록을 말소한다. ② 상표국은 등록을 갱신한 상표에 대해 공고해야 한다.	제25조 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말소 및 회복 (1) 본 법의 시행 후의 상표 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 갱신의 신청을 했을 경우, 등록관은 원 등록의 만료일 또는 최종 갱신등록 만료일(이 날을 본 조에 있어 최종 등록 만료일이라고 한다)로부터 10년간 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한다. (3) 상표의 최종 등록 만료일 이전에, 등록관은 등록 소유자에게 해당 만료일, 갱신 수수료 및 그 외의 조건에 대해 소정의 방법에 의해 통지해야 한다. 소정의 기간 만료시에 그러한 조건이 적법하게 충족되지 않은 경우, 등록관은 해당 상표를 등록부에서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가 해당 상표의 최종 등록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관은 해당 상표를 등록부에서 말소하지 않고, (2)의 규정에 의해 10년간 상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한다. (4) 등록관은 상표가 소정의 수수료의 불납으로 인해 등록부에서 말소된 경우, 상표의 최	제93조 보호권의 효력 1. 보호권은 베트남 영역 전체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2. 발명 특허는 특허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3. 실용신안 특허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4. 산업디자인 특허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5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5년의 기간 동안 2번 연속하여 갱신될 수 있다. 5.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갖는다: a) 출원일로부터 10년의 만료시, b)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배치설계를 세계적으로 최초 상업 실시한 날로부터 10년의 만료시, c) 배치설계의 창작일로부터 15년의 만료시. 6. 표장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10년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한히 갱신될 수 있다. 7. 지리적 표시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종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을 경과 후 및 1년 이내에 신청에 의해 소정의 방법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고 이에 대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상표를 통상의 상표와 같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등록부에 회복시켜 최종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갱신할 수 있다.	시작하여 무한한 유효기간을 갖는다. 제95조 보호권 효력의 종료 1. 보호권의 보호 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a) 소유자가 규정된 유지료 또는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b) 소유자가 수여된 보호권의 포기를 선언한 때 c)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법적 승계인 없이 사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 d) 표장이 보호기간 중단 신청에 앞서서 5년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소유자나 실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중단 신청 전의 3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재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dd) 집합적 표장과 관련한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집합적 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의 실시를 감독하지 못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e) 증명 표장과 관련한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증명 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규정의 실행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g)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에 기여하는 지리적 조건이 변화되어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잃어버린 경우 2. 보호권의 소유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유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기간의 만료시에, 보호권의 보호기간이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은 최초일로부터 직권에 의하여 중단될 것이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은 산업재산권 등기소에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보호권의 소유자가 본 조의 제1항 제b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포기하였을 때,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은 소유자의 포기서 접수일로부터 보호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결정한다. 4.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 본조의 제2항 제c, d, dd, e 및 g호에 규정된 경우에 보호권의 보호기간의 중단을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보호권의 보호기간의 중단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기초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은 보호권의 보호기간의 중단에 대한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한다. 5. 본 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표장의 국제 등록의 보호기간 중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제8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①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기간 만료 20개월 전에 규정에 따라 갱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매 갱신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직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표등록을 말소한다. ② 상표국은 등록을 갱신한 상표에 대해 공고해야 한다.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①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0조 ①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기간 만료 20개월 전에 규정에 따라 갱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매 갱신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직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표등록을 말소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② 상표국은 등록을 갱신한 상표에 대해 공고해야 한다.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①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2.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상품류	제23조 등록상표가 심사로 결정된 사용 범위 이외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해야 할 경우, 별도의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등록상표의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상표권의 소멸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나.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 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확정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부터 제70조까지,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	제9조 ① 상표 등록출원을 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등록에 의해 부여될 권리 (1) 본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상표로서 상표 등록이 유효한 경우, 상표의 등록 소유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해 상	제93조 보호권의 효력 1. 보호권은 베트남 영역 전체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2. 발명 특허는 특허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 표기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56조 상표권의 효력 발생은 해당 등록 결정된 상표와 사용을 지정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해당 상표의 침해에 대하여 본 법의 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1)의 규정에 의한 상표의 배타적 사용의 권리는 그 등록에 첨부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른다. (3) 2 이상의 사람이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상표들을 등록 소유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 상표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각 해당 상표권에 대해 상표등록부에 첨부된 조건 또는 제한이 기재된 경우는 제외함) 이들 공유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1 인이 등록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이들 중 1 인과 제 3자(허락 사용에 의한 등록 사용자 제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등록받은 것으로 본다. 제78조 증명표장의 등록에 의해서 부여될 권리 (1) 제34조, 제3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증명표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고 그 등록이 유효한 때는, 해당 소유자에 대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2) (1)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증명표장의 배타적 사용의 권리는 등록시에 첨부된 조건 및 제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3. 실용신안 특허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4. 산업디자인 특허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5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5년의 기간 동안 2번 연속하여 갱신될 수 있다. 5.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갖는다: a) 출원일로부터 10년의 만료시, b)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배치설계를 세계적으로 최초 상업 실시한 날로부터 10년의 만료시, c) 배치설계의 창작일로부터 15년의 만료시. 6. 표장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10년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한히 갱신될 수 있다. 7. 지리적 표시 등록 증명서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무한한 유효기간을 갖는다. 제123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소유권자의 권리 1. 산업재산권 대상의 소유권자는 다음의 재산권을 갖는다. a. 본 법의 제10장 및 제124조에 따라 산업재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산권 대상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을 허락할 권리 b. 본 법의 제125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상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c. 본 법의 제10장에 따라 산업재산권 대상을 처분할 권리 2. 본 법의 제121조의4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국가에 의해 허여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a. 지리적 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국가에 의해 허여 받는 기관은 본 조의 1(a)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타인에게 허락할 권리를 갖는다. b. 지리적 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국가에 의해 허여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은 본 조의 1(b)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제59조 ① 등록상표 중에 포함된 상품의 통용 명칭, 도형, 모델과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 또는 지명에 대해, 상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② 입체표장 등록상표 중에 상품 자체의 성질에 의한 형상이거나 기술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의 형상 또는 상품이 실직	제35조 명칭, 주소,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표시의 사용에 대한 예외 본 법의 어떤 규정도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에 대해서, 누군가의 자기의 명칭 또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자기의 영업 전주의 명칭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선의의 사용 또는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또는 품질 표시의 선의의 사용을 방해하는 권한을	제7조 지식재산권의 제한 1.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본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의 실시는 국가 이익, 공권 또는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기관이나 개인의 이익은 관련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적 가치를 표시하는 형상에 대해, 상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③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출원 전에 타인이 이미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상표권자보다 먼저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일정한 영향을 가진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사용자가 본래 사용범위 내에서 계속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나 적당한 구별 표시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주는 것은 아니다. 제36조 물품 또는 물질 또는 서비스의 명칭 또는 표시로서 사용된 단어에 대한 예외 (1) 상표등록은, 해당 상표가 물품 또는 물질 또는 서비스의 명칭 또는 표시이거나 이를 포함하는 문자로 이루어진 경우, 등록일 이후 그러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규정이 적용된다. (a) 상기 용어가 거래 당업자에게 해당 물품 또는 물질 또는 서비스의 명칭 또는 표시로서 주지하고 확립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상표의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와의 거래상 관련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증명표장의 경우) 소유자에 의해 증명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 (b) 그 물품 또는 물질이 특허권에 기해 제조되었으며, 해당 특허권의 소멸 후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상기 용어가 그 물품 또는 물질의 실용상 유일한 명칭이거나 표시인 경우 (2) 상기 규정 (1)의 단서 조항(a) 또는 (b)가 입증된 용어에 대하여, (a) 제57조에 따른 절차의 적용상, 해당 상표가 상기 용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3. 본 법과 관련하여 국가 방위, 안보, 국민 생활 및 기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실시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며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하나 이상의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적절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를 강제할 권리를 갖는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③ 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물품 또는 물질 또는 동종의 상품 또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 또는 동종의 서비스와 관련한 등록에 대해, 그 상표 등록은 등록부에 잘못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b) 그 상표에 관한 그 외의 법적 절차의 적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물질 또는 동종의 상품 또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 또는 동종의 서비스에 관해서, 규정 (1)의 (a)에 따라 사용이 주지되고 확립된 용어가 된 날 또는 (b)에 의한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i) 해당 상표가 상기 용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소유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권리 (ii) 해당 상표가 상기 용어 외의 다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상기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권리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제9조 ① 상표 등록출원을 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제11조 등록거절의 상대적 사유 (1)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②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 표기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상표 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한 선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등록 하지 못한다.	의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a) 선행하는 상표와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유사하거나 (b) 선행하는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공중에게 선행하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선행상표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혼동을 포함한다. (2) 다음과 같은 상표로서, 선행하는 상표가 인도에서 주지상표이며, 후행상표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상표의 식별력 또는 평판을 해치거나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a) 선행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b) 다른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된 선행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 (3) 다음의 법률에 의해 인도 내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범위 내의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a) 업으로서 사용되는 미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법률(특히, 사칭 통용(passing off)에 관한 법률) (b) 저작권법 (4) 본 조는 선행상표권자 또는 기타 선행권리자가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등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록관은 제12조에 따른 특별한 경우에 한해 해당 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설명 – 본 조의 적용상 선행하는 상표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등록상표 또는 제154조에 의한 조약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장된 우선권을 참작하여 해당 상표의 출원일보다 빠른 출원일을 가지는 것 (b)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일 또는 해당 출원과 관련되어 주장된 우선일 전에 주지상표로서 보호될 권리가 있는 상표 (5) (2) 및 (3)에 규정된 이유의 1 또는 2 이상에 관한 거절 이유에 대해 선행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이상, 상기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6) 등록관은 상표가 주지상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주지상표 여부를 판단한다. (i) 해당 상표의 사용 촉진의 결과로 얻은 인도 내 지식을 포함하여 관련 수요자간의 해당 상표에 대한 지식 또는 인식 (ii) 해당 상표의 사용에 대한 기간, 범위 및 지역 (iii) 해당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있어서의 광고 또는 선전 및 소개를 포함해 해당 상표의 사용 촉진에 대한 기간, 범위 및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지역 (iv) 본 법에 근거하는 해당 상표의 등록 또는 등록출원에 대한 기간 및 지역 및 해당 상표의 사용 또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범위 (v) 해당 상표에 관한 제 권리의 승소 집행 기록, 특히 해당 상표가 해당 기록에 근거하여 법원 또는 등록관에 의해 주지상표로서 인식된 범위 (7) 등록관은 규정(6)의 적용시 상표가 관련 수요자간에 알려져 있는지 또는 주지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i)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소비자의 수 (ii)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경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iii)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계 (8) 법원 또는 등록관에 의해, 상표가 인도 내 일정범위의 관련 수요자간에 주지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면 등록관은 본 법에 따른 등록에 있어 해당 상표를 주지상표라고 인정해야 한다. (9) 등록관은 상표가 주지상표인지 아닌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어떤 사항도 조건으로서 요구할 수 없다. (i) 인도 내 해당 상표가 사용 중일 것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ii)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것 (iii) 인도 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위한 출원이 있었을 것 (iv) 해당 상표가, (a) 인도 내 주지하거나 (b) 인도 내 등록되어 있거나 (c) 인도 내 출원된 상표가, 인도 외 관할권 내에서 출원되었거나 할 것 (v) 해당 상표가 인도 내 수요자 전반에 주지인 것 (10) 상표 등록출원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데 있어 등록관은, (i)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부터 주지상표를 보호해야 하며 (ii) 해당 상표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지 참작해야 한다. (11) 상표가 등록관에 중요한 정보를 개시하고 선의로 등록되었을 경우 또는 상표에 대한 권리가 본 법의 시행 전에 선의의 사용을 통해서 취득되었을 경우, 본 법은 해당 상표가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 등록 또는 해당 상표 사용의 권리의 유효성을 일절 해치지 않는다.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	제42조 ①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	제37조 등록 소유자에 의한 양도 및 영수증 교부의 권한 상표의 소유자로서 실제로 등록부에 등록되	제138조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총칙 1.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산업재산권 소유권자가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라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수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②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에 상표 등록인은 동일 상품에 등록한 유사 상표, 유사 상품에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도 함께 양도해야 한다. ③ 혼동을 초래하기 쉽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도에 대해 상표국은 등록결정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유를 설명한다. ④ 등록상표 양도를 비준한 이후 이를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권을 획득한다.	어 있는 자는, 본 법의 규정 및 등록부에 기재된 타인에게 귀속하는 권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상표를 양도하고, 그러한 양도의 대가에 대하여 유효한 영수증을 교부할 권한을 가진다. 제38조 등록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다른 법률의 반대 규정에 불구하고, 동 장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영업권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등록상표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40조 복수의 배타적 권리를 창출하는 양도 또는 이전의 제한 (1) 제38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상표의 양도 또는 이전의 결과, 다음 각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2 이상의 당사자에게 배타적 사용 권리가 존재하게 되어 그 권리의 행사로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면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성 및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a)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b)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c) 서로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서면 계약의 형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이하 산업재산권의 양도 계약이라 한다). 제139조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제약 1. 산업재산권 소유권자는 보호의 범위 내에 그의 권리를 단지 양도한다. 2. 지리적 표시의 권리는 양도하지 못 한다. 3. 상호에 대한 권리는 상호 하에서의 전체 영업 부동산 및 영업 활동의 이전을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4. 표장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표장을 갖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 또는 특성에 관한 혼동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된다. 5. 표장에 대한 권리는 그 표장에 관한 등록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제140조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의 내용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은 다음의 실질적인 규정을 가진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2. 양도의 기초 3. 양도 가격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48조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효과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상표의 양도 또는 이전의 결과, 당사자가 각각 가지는 배타적 사용의 권리에 대해, 인도로부터의 수출을 제외하고 인도 내에서의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인도 외의 시장에 수출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인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2 이상의 사람에 의해서는 행사할 수 없는 취지의 제한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양도 또는 이전을 본항에 의해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2) 등록상표를 양도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등록관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는 사정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등록관은 등록 소유자에 대해 해당 사건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및 상표의 유사여부에 비추어 당해 양도가 규정 (1)에 의해 무효인지 아닌지를 기재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된 증명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며, 그 증명서가 사기 또는 부실표시에 의해 취득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 (1)에 의한 양도의 유, 무효가 당해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 그 유, 무효에 대해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제 45조에 의한 해당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양도를 유효로 보는 증명서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1. 본 법의 제6조의3(a)에 기재된 등록에 근거하여 성립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은 산업재산권의 행정 관청에 의한 등록 시에만 유효하다. 2. 본 법의 제6조의3(a)에 기재된 등록에 근거하여 성립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유효하며 산업재산권의 행정 관청에 의한 등록 시에 제3자에게만 유효하다. 3.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싱 계약의 유효성은 허여권자의 산업재산권의 종결시에 종결된다. 제149조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를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상기 양식으로 만들어진 계약의 등록 요청서 2. 계약의 원본 또는 유효 사본 3. 보호 타이틀의 원본(산업재산권의 양도의 경우) 4. 산업재산권이 공동 소유권 하에 있는 경우 다른 공동 소유권자의 비동의에 대한 이유의 서면 설명서 및 공동 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5. 수수료 및 부과금의 영수증 6. 사건기록이 대표를 통해 제출되는 경우, 위임장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41조 배타적 권리의 분리 양도 또는 이전의 제한 제38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상표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즉,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양도 또는 이전의 결과, (a) 인도 내에서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인도 내에서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에 제한이 첨부된 배타권이 관련 당사자 1인에게 존재하고 (b) 인도 내에서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인도 내에서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에 제한이 첨부된 배타권이 다음 각목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전 항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대한 배타권이 또 다른 관련 당사자에게 존재하는 경우 (i)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ii)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iii) 해당 상품이나 동종의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해당 서비스나 동종의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다만, 상표를 양도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본 법 시행 이후 해당 상표가 자신 또는 이전 권리자에게 이미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50조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의 처리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에 대한 사건 기록의 수용 및 처리의 순서 및 절차는 정부가 제공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록관은 그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나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된 양도나 이전은 해당 허가가 사기 또는 부실표시에 의해 취득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한, 본 조 또는 제 40조에 의해 무효라고 보지 아니한다. 다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제 45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나 이전의 허가는 해당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 또는 이전의 경우 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제42조 영업권을 수반하지 않는 양도의 조건 상표의 양도는, 상표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상표가 사용되어 온 영업권 또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영업권을 수반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수인이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관이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등록관에 대해 양도의 공고에 관한 지시를 신청하여 등록관이 명하는 양식, 방법, 기간 내에 공고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설명 – 본 조의 적용상, 다음의 상표 양도는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영업권을 수반하는 양도로 간주한다. (a)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관계되는 양도로서,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관계하는 영업권의 이전이 수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반되는 경우 (b) 인도로부터의 수출상품 또는 인도 국외에서의 이용을 위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의 양도로서, 수출 영업권만을 수반하는 경우	
		제43조 증명표장의 양도성 및 이전성 증명표장은 등록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승인을 위해서는 등록관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서면에 의해 신청해야 한다.	
		제44조 연합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연합상표는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으며, 전체로서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본법의 규정에 따른 그 외 모든 적용에 있어서는 연합상표는 개별 상표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양도 및 이전의 등록 (1) 양도 또는 이전에 의해서 등록상표를 취득한 자는 등록관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자기의 권리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관은 신청의 수리 및 권원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거에 근거하여 양도 또는 이전의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양수인을 상표의 소유자로서 등록하고, 양도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양도 또는 이전의 효력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권리 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계가 관할법원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등록관은 해당 양도 또는 이전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2) 규정 (1)에 따른 등록관에게 한 신청 또는 그에 대한 명령에 대한 심판 청구 또는 제57조에 의한 신청 또는 그에 대한 명령에 대한 심판 청구의 목적을 제외하고, 규정 (1)에 의해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서류 또는 증서에 대하여 등록관 또는 심판부 또는 법원은, 상기 기관들에 의한 다른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양도 또는 이전에 의한 상표에 관한 권원의 입증에 있어, 이를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상표권의 분할)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은 제117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43조 ① 상표 등록인은 상표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해당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② 허가를 받아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48조 등록 사용자 (1) 상표의 등록 소유자 이외의 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등록 사용자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제47조 또는 해당 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상표의 허락 사용은 그 소유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되며,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한 사용으로	제141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에 관한 총칙 1.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산업재산권 소유권자의 허락을 의미한다. 2.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한다(이하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타인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허가인은 해당 상표사용 허락을 상표국에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공고한다. 상표 사용허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54조 양도 또는 이전의 권리를 갖지 않는 등록 사용자 본 법의 어떤 규정도 상표의 등록 사용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 가능한 상표의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 –상표의 등록 사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본 조의 취지상 양도 또는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a) 등록 사용자인 개인이 관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과 파트너십을 결성했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등록 사용자가 구성원으로 있는 기업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b) 등록 사용자인 기업의 조직에 그 후 변경이 있었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조직 변경 후의 기업은, 등록 사용자로서의 등록시 해당 기업의 파트너가 계속하여 변경 후의 기업의 파트너인 경우에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설명 – 상기의 설명의 적용상, 「기업」은 1932년 인도·파트너쉽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142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제약 1. 지리적 표시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 2. 집합 표장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집합 표장 소유권자의 일원이 아닌 기관 또는 개인에게 허여되어서는 안 된다. 3. 사용권 피허여권자는 허여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와 하위 라이센스 계약을 할 수 없다. 4. 표장 사용권 피허여권자는 상품 및 표장의 사용을 위한 계약 하에서 상품이 제조되었던 그 포장을 나타낼 의무를 가진다. 5. 배타적인 계약 하에서의 발명 라이센스는 본 법의 제136조의1에 따라 발명 소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발명을 사용할 의무를 가진다.
			제143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계약의 유형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은 다음의 유형일 수 있다: 1. 배타적 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사용권 피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한편 허여권자는 제3자와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결정할 수 없고, 피허여권자의 허락없이 산업재산권 대상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한다. 2. 비배타적 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싱의 범위 및 기간 내에 사용권 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또한 타인과 비배타적 계약을 결정할 모든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3.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하위 라이센스 계약은 다른 계약 하에서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권자인 허여권자의 계약이다.
			제144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 1.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은 다음의 실질적인 규정을 따른다. a) 허여권자 및 사용권자의 전체 성명 및 주소 b) 라이센스의 기본 c) 계약의 유형 d) 라이센스의 범위(사용 제한, 지역 제한) dd)라이센스 기간 e) 라이센스 가격 g) 허여권자 및 사용권자의 권리 및 의무 2.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은 사용권자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문, 특히 다음과 같이 허여권자의 권리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규정들은 가지지 않는다. a) 표장 이외의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권자가 향상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 무료 라이센스을 허여하거나 또는 허여권자에게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산업재산권 등록 또는 그 개선에 관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사용권자를 강요하는 것 b) 허여권자가 각 산업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이러한 상품을 수입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지 않는 지역에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조되는 상품을 사용권자가 수출하게 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것 c) 사용권자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조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할 목적 없이 허여권자에 의해 지정된 자 또는 허여권자로부터의 재료, 성분 또는 장비의 주어진 또는 모든 백분율을 사용권자가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것 d) 산업재산권 또는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의 유효성을 사용권자가 시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3. 본 조의 제2호의 경우를 참조하면 계약의 임의 기간은 직권상 무효가 될 수 있다.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43조 ① 상표 등록인은 상표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해당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② 허가를 받아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③ 타인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허가인은 해당 상표사용 허락을 상표국에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공고한다. 상표 사용허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8조 등록 사용자 (1) 상표의 등록 소유자 이외의 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등록 사용자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제47조 또는 해당 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본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상표의 허락 사용은 그 소유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되며,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①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상표등록출원일 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	제32조 상표 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한 선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등록 하지 못한다. 제59조 ① 등록상표 중에 포함된 상품의 통용 명칭, 도형, 모델과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 또는 지명에 대해, 상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② 입체표장 등록상표 중에 상품 자체의 성질에 의한 형상이거나 기술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품의 형상 또는 상품이 실질적 가치를 표시하는 형상에 대해, 상표권자는	제12조 선의의 경합 사용 등의 경우의 등록 선의의 경합 사용의 경우 또는 등록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등록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해당 상표의 등록여부 불문) 2명 이상의 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등록에 대해서 등록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및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교부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 묵인의 효과 (1) 선행 상표의 소유자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그 사용사실을 알면서 연속하는 5년간 이를 묵인했을 경우에는, 그 자는 해당 선행 상표에 근거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지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③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출원 전에 타인이 이미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상표권자보다 먼저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일정한 영향을 가진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사용자가 본래 사용범위 내에서 계속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나 적당한 구별 표시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아니한다. (a) 후행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선언을 신청하는 것 (b) 그와 같이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후행 상표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다만, 후행 상표의 등록이 선의로 출원되지 않았던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후행 상표의 소유자는 선행 상표가 이미 자신의 후행 상표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선행 상표의 사용 또는 선행 권리의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34조 기득권에 대한 예외 본 법의 어떤 규정도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에 대해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가진 사람에 의한 사용이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보다 앞서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전 권리자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용에 대해서, 이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a) 소유자 또는 그 전 권리자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의 상표를 사용한 날 (b) 소유자 또는 그 전 권리자의 명의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의상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를 등록 받은 날 또한 등록관은(그 사용이 입증되고 있을 때는) 전자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자의 상표의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100조(전용사용권 • 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 •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변경 •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변경 •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 • 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① 상표 등록인은 상표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해당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② 허가를 받아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③ 타인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허가인은 해당 상표사용 허락을 상표국에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공고한다. 상표 사용허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조 등록 사용자로서의 등록 (1) 상표의 등록 사용자로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등록 소유자 및 등록 사용자가 될 예정인 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서면에 의해 공동으로 등록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a) 등록 소유자 및 등록 사용자가 될 예정의 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상표의 허락 사용에 관한 계약서 또는 그 인증 등본, 및 (b)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관이 인정하는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선서서 (i) 등록 소유자와 등록 사용자가 될 예정인 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또는 발생시키려고 하는 관계에 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양자의 관계로부터 생기는 허락 사용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의 정도 및 등록 사용자가 될 예정의 사람이 유일한 등록 사용자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등록 사용자로서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그 외의 한정을 첨부하는 것이 양자의 관계의 조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항을 포함한다. (ii) 등록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iii)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허락 사용의 방법 또는 장소 또는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 제의된 조건 또는 한정 (iv) 허락 사용 기간의 유무 및 기한 첨부시 그 존속기간 및 (c) 등록관의 요구나 명령에 따른 추가 서류 또는 기타 증거 (2) 규정 (1)의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 등록관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등록 사용자가 될 예정인 자를 등록해야 한다. (3) 그 상표에 대해 그 밖에 등록 사용자가 있을 경우, 등록관은 새로운 등록 사용자의 등록사실을 그 밖에 등록 사용자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4) 등록관은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본조에 의한 신청을 위해 제공된 정보(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제외)가 거래상의 경쟁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포기할 수 있다.			제95조 보호권 효력의 종료 1. 보호권의 보호 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 a) 소유자가 규정된 유지료 또는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b) 소유자가 수여된 보호권의 포기를 선언한 때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c)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법적 승계인 없이 사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 d) 표장이 보호기간 중단 신청에 앞서서 5년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소유자나 실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중단 신청 전의 3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재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dd) 집합적 표장과 관련한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집합적 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의 실시를 감독하지 못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e) 증명 표장과 관련한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증명 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규정의 실행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g)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에 기여하는 지리적 조건이 변화되어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을 잃어버린 경우 2. 보호권의 소유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유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기간의 만료시에, 보호권의 보호기간이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은 최초일로부터 직권에 의하여 중단될 것이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기관은 산업재산권 등기소에 그러한 사실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기록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보호권의 소유자가 본 조의 제1항 제b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포기하였을 때,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은 소유자의 포기서 접수일로부터 보호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결정한다. 4.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수수료 및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 본조의 제2항 제c, d, dd, e 및 g호에 규정된 경우에 보호권의 보호기간의 중단을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보호권의 보호기간의 중단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기초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은 보호권의 보호기간의 중단에 대한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한다. 5. 본 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표장의 국제 등록의 보호기간 중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사용권자는 제95조제6항에 따른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③ 통상사용권자는 제97조제4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3조(포기의 효과)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04조(질권)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상표권의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① 이 법의 제57조에 나열한 등록상표권 침해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사건 처리 시, 침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면 즉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 제조·등록상표 표지의 위조에 주요하게 사용된 도구를 몰수·소각한다.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위법 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경영액이 없거나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에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년 내에 2회 이상 상표침해행위 또는 기타 엄중한 경위가 있을 경우에 법적 한도 내에서 엄벌해야 한다.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상표인지 모르고 판매하였거나,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하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다. ③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에 대한 쟁의에 관해	제135조 침해 또는 부정경쟁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구제 (1) 제134조에 의한 침해 또는 부정경쟁에 대한 소송에 대한 구제로서, 법원은 금지명령(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과 함께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는 침해하는 표지 및 표장의 말소를 위한 인도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2) 규정(1)에 의한 금지명령에는 다음의 각호에 관한 일방적 금지명령 또는 중간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a) 서류의 개시 (b) 침해 상품, 서류 또는 소송물과 관련된 기타 증거의 보전 (c) 최종적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또는 기타 금전적 구제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리하는 것의 제한 (3)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명목적 손해배상 제외)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의한 구제를 명할 수 없다. (a)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에 대한 침해 소송	제9조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있어서의 기관, 개인의 권리 및 책임 모든 기관, 개인은 그들 소유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및 책임을 가질 것이며, 본 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5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이용을 금지하는 권리 1. 산업재산권 내용의 소유권자 및 지리적 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허여받은 기관 또는 개인은 이러한 사용이 본 조의 2항 및 3항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산업재산권 내용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2. 산업재산권 내용의 소유권자 및 지리적 표시를 사용 또는 관리할 권리를 허여받은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의 행위를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a) 물품의 수입 또는 마케팅, 물품의 라이센스를 위한 과정을 수행하도록 정보를 전개하기 위해 또는 파일럿 물품, 평가, 분석, 조사 또는 교시를 위해, 또는 비상업적 목적 또는 개인적 필요를 위해 발명, 산업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당사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조정서의 효력 발생 이후 불이행한 경우에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b) 침해 소송에 에서 피고가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납득시켰을 경우 (i) 피고가 소송 대상 상표의 사용을 개시할 당시, 원고가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권자라는 사실 또는 원고가 허락된 방법에 의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등록 사용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및 (ii) 피고가 해당 상표에 관한 원고의 권리의 존재 및 내용을 안 즉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멈춘 경우 (c) 부정경쟁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납득시켰을 경우 (i) 피고가 소송 대상의 상표의 사용을 개시할 당시, 원고의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및 (ii) 피고가 원고의 상표의 존재 및 내용을 안 즉시, 소송 대상의 상표의 사용을 멈춘 경우	자인 또는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b) 물품이 표장 소유자 또는 그 사용권 피허여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외국 시장을 포함한 시장에 법률상 진입하였던 물품의 유통, 수입, 사용 개발 c) 베트남 지역에 단지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또는 통행하는 외국 차량의 작동을 유지시킬 목적만을 위해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을 사용하는 것 d) 본 법의 제134조에 따른 선사용자 권리를 갖는 자가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것 dd) 본 법의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국가 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발명을 사용하는 것 e)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g)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등록 출원일 전에 진정한 방식으로 보호받는 경우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h) 상품 및 서비스의 명의, 유형, 양, 질, 활용, 가치, 지리적 기원 및 다른 사양의 형상 표지를 진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65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할 예정인 등록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 명령 및 재산보전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98조 자기 보호권 1.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a)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취할 권리 b)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관, 개인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단, 사과, 공개적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 c)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d) 법적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중재자 또는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2.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또는 고객 또는 사회에 대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발견한 개인 및 기관은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들에 따라 침해 행위에 대해 처분해 줄 것을 국가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손해를 입거나 부정한 경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잇는 기관 및 개인은 본 법의 제202조에 기재된 민법상 배상을 국가의 해당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7조 임시적 수단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1. 이하의 임시적 수단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 재료, 원료 또는 그러한 상품의 제조나 교역을 위한 기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a. 압수 b. 압류 c. 봉인, 상태 변경이나 이동 금지 d. 소유권 이전 금지 2.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임시적 수단
			제208조 임시적 수단 적용 청구인의 의무 1. 임시적 수단 적용의 청구인은, 본 법의 제203조 제2항에 기재된 바에 따른 자료 및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본 법의 제206조 제2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청구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임시적 수단 적용의 청구인은 임시적 수단의 채무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그 채무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적 수단 적용의 청구인은 다음 형태들 중 하나로 보장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a) 임시적 수단 적용 대상 상품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러한 상품을 평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2천만 VND 이상의 금액을 예치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b) 은행 또는 기타 신용 기관에 의해 발행된 보증 서류의 제출
			제209조 임시적 수단의 적용 종료 1. 민사소송법의 제122조 제1항에 기재된 경우에 또는 임시적 수단의 채무자가 그러한 임시적 수단의 적용이 이유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 법원은 임시적 수단 적용의 중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임시적 수단 적용의 중단 경우에, 법원은 본 법의 제208조 제2항에 기재된 예치 금액의 청구인에게의 상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시적 수단 적용의 청구가 이유 없다면, 임시적 수단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청구인이 손해를 보상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제210조 임시적 수단 적용 기관 및 절차 임시적 수단 적용 기관 및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제1장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06조 임시적 수단의 적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소송 시작 또는 그 후에,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다음의 경우에 임시적 수단을 적용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a)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대한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b) 적절한 시간에 보호되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 및 관련 증거를 파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또는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원은 임시적 수단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본 조의 제1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인 수단을 적용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57조 다음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 경우,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1.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2.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3.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를 판매하는 경우 4.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무단 제조하거나, 위조·무단 제조한 등록상표의 표시를 판매하는 경우 5.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변경한 상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6. 타인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여 타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7. 타인의 등록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제29조 등록상표의 침해 (1)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허락 사용에 의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대해 상표로서 사용하면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한다. (2)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허락 사용에 의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다음의 각호와 같이 업으로서 표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등록상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한다. (a)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유사한 경우 (b)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c)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3) (2)의(c)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공중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추정해야	제129조 표장, 상호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다음의 행위는 표장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실시된다면 표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표장과 함께 등록된 리스트 내의 것들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 보호되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관하여 그 사용이 혼동을 야기한다면 표장과 함께 등록된 리스트 내의 것들과 유사 또는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호받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c.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관하여 그 사용이 혼동을 야기한다면 표장과 함께 등록된 리스트 내의 것들과 동일, 유사 또는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호받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d. 공지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 또는 그 표시의 사용자와 공지된 표장 소유권자 사이에 관계에 관하여 잘못된 인상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한다. (4)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허락 사용에 의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서 다음의 각호와 같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침해를 구성한다. (a)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b)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며 (c) 등록상표가 인도 내 평판이 높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표장을 사용하여 해당 등록상표의 식별력이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이에 해를 끼치는 경우 (5)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로서 또는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급하는 회사의 회사명 또는 회사명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한다. (6) 본 조의 적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a) 등록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붙이는 표시 행위 (b)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또는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c)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원에 관해 그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공지된 표장을 갖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유사 또는 비관련된 것들을 포함하는 임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지된 표장의 해석 또는 문자적 해석의 형태의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상호 하에서의 영업 활동 또는 영업 약속, 영업 개체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전에 사용하였던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의 행위는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a. 지리적 표시를 갖는 지리적 영역으로부터 물품이 기원하더라도 지리적 표시를 갖는 물품의 특성 및 질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물품에 대해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b. 명성 및 신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갖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c. 지리적 표시를 갖는 지리적 영역에서 기인하지 않아서 지리적 영역으로부터 기인하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물품에 대해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d) 등록상표를 영업 문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7) 등록상표를 영업 문서로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한다. 다만, 해당 상표의 사용시 그 사용이 상표권자 또는 라이센스에 의한 정당권원이 없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였어야 한다. (8) 다음 각호의 광고행위는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한다. (a) 공업 또는 상업과 관련한 선의의 관행에 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광고 (b)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해치는 광고 (c) 등록상표의 평판을 해치는 광고 (9) 문자로 구성되거나 문자를 포함한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소의 시각적 표현은 물론 구두 사용에 의해서도 침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본 조에 있어서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때는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d. 상품의 진정한 기원이 표시되거나 또는 지리적 표시가 “종류”, “유형”, “스타일”, “모방” 등과 같은 말이 수반되거나 또는 번역되어 사용되는 경우일 지라도,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는 지방에서 기원하지 않는 와인 또는 정신에 대해 와인 또는 정신의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제102조 상표의 위조 및 부정사용 (1) 다음의 1항에 해당하는 자는 상표를 위조한 것을 본다. (a) 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제조하는 자 (b) 변경, 추가, 소거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진정상표를 위조하는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부정사용 하는 것으로 본다. (a)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상품의 포장에 타인의 상표 또는 이와 매우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자 (b) 상표 소유자의 진정상품 이외의 상품을 포장 또는 충전할 목적으로, 소유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장을 첨부한 포장지를 사용하는 자 (3) (1)의 규정에 의한 위조된 상표 또는 (2)의 규정에 의해 부정사용 하는 상표는, 본 법에 있어 허위 상표라고 한다. (4) 상표의 위조 또는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의 부정사용에 대한 소송에 있어,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조 ① 이 법의 제57조에 나열한 등록상표권 침해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사건 처리 시, 침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면 즉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 제조・	제52조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록 사용자의 권리 (1)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권리의 침해가 있었을 때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소유자에게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이를 무시했을 경우) 등록 사용자는 자신이 등록 소유자인 것과 같이 자기의 명의로 등록 소유자를 (공동)원고로서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등록 사용자의 권리 의	제198조 자기 보호권 1.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a)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취할 권리 b)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관, 개인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단, 사과, 공개적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 c)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의 침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록상표 표지의 위조에 주요하게 사용된 도구를 몰수·소각한다.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위법 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경영액이 없거나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에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년 내에 2회 이상 상표침해행위 또는 기타 엄중한 경위가 있을 경우에 법적 한도 내에서 엄벌해야 한다.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상표인지 모르고 판매하였거나,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하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다. ③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에 대한 쟁의에 관해 당사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조정서의 효력 발생 이후 불이행한 경우에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는 등록 소유자의 권리 의무와 일치한다. (2)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피고 중 1인으로 추가된 등록 소유자는 직접 출두하여 심리에 참가하지 않는 한 소송 비용의 지불 의무는 없다.	해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d) 법적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중재자 또는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2.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또는 고객 또는 사회에 대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발견한 개인 및 기관은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들에 따라 침해 행위에 대해 처분해 줄 것을 국가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손해를 입거나 부정한 경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잇는 기관 및 개인은 본 법의 제202조에 기재된 민법상 배상을 국가의 해당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 ① 상표권자가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고소를 당한 침해자가 등록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변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권자에게 과거 3	제53조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허락 사용자 제2조(1)(r)(ii)에 의한 자는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제202조 민사적 구제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을 취급하는 이하의 민사적 구제를 취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의 강제적 중단 2. 공개적 교정 및 사과의 강제 3. 민사적 채무 이행의 강제 4. 손해에 대한 강제 배상 5. 상품, 재료 및 주 용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제조 또는 교역인 도구와 관련한 파기,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 또는 분배의 강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년 내에 해당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한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가 과거 3년 내에 해당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침해행위로 인한 기타 손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소당한 침해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하고,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상표 침해 상품제공자를 말할 수 있는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로서, 이때 그러한 분배 및 이용은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의한 권리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제63조 ①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에 의해 입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표허락 사용 비용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경위가 엄중한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액수에 1배 이상 3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한 지출을 포함한다. ②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미 전력을 다해 증거를 제공하였으나 침해행위 관련 장부·자료를 침해자가 장악한 상황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 관련 장부·자료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203조 소송관계자의 증거 의무 및 권리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의 원고 및 피고는 민사소송법의 제79조 및 본 조에 기재된 바에 따라 증거 의무 및 권리를 가진다. 2. 원고는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a) 저작권 등록 증명서,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 보호권의 유효한 사본, 또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국가 등기소, 산업디자인, 배치설계의 국립 등기소 및 보호 식물신품종의 국가 등기소로부터의 발췌문 b) 저작권 설정을 증명하는 필수 증거, 저작권 등록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관련 권리 증명서, 영업비밀, 상호 또는 공지된 표장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필수 증거 c) 이용 권리가 계약에 의해 라이센싱된 경우에, 대상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대한 라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자료일 경우에 인민법원은 권리인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결한다. ③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받은 실제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상표허락 사용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센싱 계약서 사본 3. 원고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4. 제조 공정에 관한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그의 제품이 보호 공정 이외의 공정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a) 보호 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이 신규한 경우 b) 보호 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은 신규하지 않으나, 보호 공정의 소유자는 피고의 제품이 보호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믿고 있고 합리적인 수단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용한 공정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경우 5.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그의 주장의 입증에 관한 증거가 다른 당사자의 제어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에 따라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그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법원이 강제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6.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원고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본 법의 제205조에 따라 그의 주장의 근거를 특정하여야 한다. 제204조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의해 유발된 손해를 결정하는 원칙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1. 침해에 의해 유발된 손해는 다음을 포함 한다. a) 재산상의 손실, 수입 및 이익의 감소, 영업 기회의 상실, 손실의 방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합리적인 대리인 비용 및 기타 명백한 손실을 포함하는 물리적 손실 b)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의 작가에게 입힌,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디자인의 작가 공연자에게 입힌, 그리고 증식자에게 입힌, 명예, 존엄성, 명성, 신망 및 기타 정신적 손실을 포함하는 정신적 손해 2. 손해 정도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205조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의해 유발된 손해의 결정에 관한 기본내용 1. 원고가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물리적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 그 원고는 다음들 중 하나를 기초로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a) 금액으로 결정된 총 물리적 손실에 더하여 원고의 이익 감소가 총 물리적 손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침해 결과로서 피고가 얻은 이익을 합산한다. b) 침해가 이루어진 행위와 균등한 범위에 대한 대상 지식재산의 이용 합의에 따라 대상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피고가 대상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지식재산의 실시권을 이전받을 때의 가치 c) 상기 본 조의 제a호 및 제b호에 따른 보상 금액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은 손실 정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5억 VND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에, 그 원고는 손해 정도에 따라 5백만 내지 5천만 VDN의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상기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손해에 추가하여,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대리인 고용에 대한 합리적 비용을 침해자가 지불할 것을 법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	제63조 ①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에 의해 입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표허락 사용 비용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경위가 엄중한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액수에 1배 이상 3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한 지출을 포함한다. ②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해 권리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자가 이미 전력을 다해 증거를 제공하였으나 침해행위 관련 장부·자료를 침해자가 장악한 상황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 관련 장부·자료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자료일 경우에 인민법원은 권리인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결한다. ③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받은 실제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상표허락 사용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2조 민사적 구제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을 취급하는 이하의 민사적 구제를 취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의 강제적 중단 2. 공개적 교정 및 사과의 강제 3. 민사적 채무 이행의 강제 4. 손해에 대한 강제 배상 5. 상품, 재료 및 주 용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제조 또는 교역인 도구와 관련한 파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기,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 또는 분배의 강제로서, 이때 그러한 분배 및 이용은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의한 권리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114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①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에 의해 입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표허락 사용 비용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경위가 엄중한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액수에 1배 이상 3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한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한 지출을 포함한다. ②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미 전력을 다해 증거를 제공하였으나 침해행위 관련 장부·자료를 침해자가 장악한 상황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 관련 장부·자료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자료일 경우에 인민법원은 권리인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결한다. ③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받은 실제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상표허락 사용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민법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제7장 심판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① 초보심사 결정이 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의 진술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확인한 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은 등록을 허가 결정한 경우 상표 등록증을 발급하고 즉시 공고한다. 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국이 등록을 불허하여 피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0개월 내에 재심결정을 해야 하며, 이	제91조 심판부에의 심판 청구 (1) 본 법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한 등록관의 명령 또는 결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 대상명령 또는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부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1)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 후에 청구된 심판은 수리되지 않는다. 다만, 심판 청구를 하려는 자가 해당 규정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심판부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리될 수 있다. (3) 심판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청구대상이 되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사본 1부와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해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상표심사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라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이후 당연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	제44조 ①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기 및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국은 해당 상표 등록의 무효를 선고한다.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 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은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한		제96조 보호권의 무효 1. 보호권은 다음의 경우에 전부 무효화될 수 있다: a) 등록 출원인이 등록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거나 그러한 권리(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및 표장에 관한)의 양도도 받지 않은 경우, b) 산업재산권의 대상이 보호권의 허여일에 보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보호권은 보호 그 보호권의 일부가 보호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무효화된다. 3.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수수료 및 요금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것인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4.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된 후 그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에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결정을 해야 하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심의결정 과정에 상대편 당사자가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45조 ①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인 등록의 경우 치명상표를 소유한 자는 5년의		납부한 경우에,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보호권의 무효화를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보호권의 무효화 신청 기간은 그 보호권의 지속 기간에 해당한다. 상표의 경우에, 보호권이 출원인의 기만행위로 인해 허여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간은 허여일로부터 5년이다. 4. 보호권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기초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감독 기관은 보호권의 전체 또는 부분적 무효화에 대한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한다. 5. 본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표장에 관한 국제 등록의 무효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상표심사위원회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신청을 받은 이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개월 내에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심의 결정 과정의 상대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③ 상표심사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라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이후 당연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제47조 ①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는 상표국이 공고하며, 해당 등록상표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결정 또는 재정은 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효선고 이전에 인민법원에서 진행 및 집행한 상표침해 사건의 판결, 재정, 합의서(调解书)와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진행 및 집행한 상표침해 사건의 처리결정, 이미 이행한 상표양도 또는 상표 사용허락 계약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상표 등록인이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침해 배상금, 상표 양도 비용, 상표 사용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공평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84조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해당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9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제43조 ① 상표 등록인은 상표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해당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② 허가를 받아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③ 타인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허가인은 해당 상표사용 허락을 상표국에 보고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공고한다. 상표 사용허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조 ① 상표 등록인이 등록상표 사용과정 중에 등록상표, 등록인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수정한 경우에, 지방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 내린다. 기간이 만료하여 시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② 등록상표가 해당 지정사용 상품의 통용 명칭으로 되었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단체 또는 개	제47조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의 말소 및 제한 (1) 다음의 각호를 이유로 피해를 입은 누군가에 의해, 등록관 또는 심판부에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는 등록부에서 말소될 수 있다. (a) 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등록사용자에 의한 사용의사로 판단하며, 상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어느 소유자에 의해서도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의 선의의 사용 사실이 없는 경우 (b) 상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상표가 실제로 등록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중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어느 소유자에 의해서도 선의의 상표 사용 사실이 없는 경우	제136조 발명 및 표장을 사용할 의무 1. 발명의 소유권자는 국방, 보안, 질병예방 상의 요구, 국민의 대우 및 영양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호받는 방법을 적용하거나 또는 기타 사회적 긴급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호받는 물품을 제조할 의무가 있다. 발명의 소유권자가 상기한 필요 중 어느 것이 발생될 때 그러한 의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기관은 본 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제공된 바와 같이 타인에게 발명의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다. 2. 표장의 소유권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표장의 소유권의 유효성은 본 법의 제95조에 따라 5년 이상의 계속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면 종결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경우 5.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6.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7.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나 소속 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 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단체표장의 설정등록 후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 ① 상표권자가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고소를 당한 침해자가 등록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항변을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권자에게 과거 3년 내에 해당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한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가 과거 3년 내에 해당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침해행위로 인한 기타 손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소당한 침해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하고,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상표 침해 상품제공자를 말할 수 있는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출원인이 제12조에 의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여 받았을 경우 또는 심판위원회가 그 사람에게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전에 또는 해당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소유자에 의한 해당 상표의 선의의 사용이 있는 경우, 심판위원회는 (a) 또는 (b)의 규정에 따른 상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i)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ii) 지정상품이나 동종의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지정서비스나 동종의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2)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심판부 또는 등록관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했을 때는 심판위원회는 상기 (a)의 상표에 대해 그 등록의 효력이 이러한 사용에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a) 인도 국내의 특정의 장소(수출되는 경우 제외)에서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외의 특정의 시장에 대해서 수출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내의 특정의 장소에서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또는 인도 국외의 특정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9. 증명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상표의 미사용에 관한 (1)의(b) 규정에 의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b) 특정 장소에서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수출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 12조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여 받았거나 심판위원회가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3) 상표의 불사용이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서, 인도 내의 상표 사용의 한정을 포함한 거래상의 특수 상황에 의한 것이어서 신청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를 포기할 의사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청인은 상표의 미사용에 대해 상기 (1)의 (b) 또는 (2)의 규정의 적용을 원용할 수 없다. 제68조 단체표장 등록을 말소하는 추가 이유 단체표장의 등록은 다음의 이유에 의해서도 말소할 수 있다. (a) 소유자 또는 허락 사용자에 의해 해당 단체표장이 사용된 방법이 공중에게 단체표장으로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b) 소유자가 해당 표장을 규제하는 규약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나.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준수하지 않았거나 상기 준수를 보증하지 못한 경우 설명 – 동 장의 적용상, 문맥상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락 사용자」란 해당 단체의 등록 단체표장의 사용이 허락된 단체 구성원을 말한다. 설명 – 본 법의 목적상, 상기의 설명에 의한 허락 사용자에 의한 단체표장의 사용은 그 등록 소유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한다. 제77조 증명표장의 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 피해자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관은 소유자에 대해 그 신청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준 후,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증명표장에 관한 등록부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a)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적격을 잃은 경우 (b) 소유자가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c) 상표 등록의 존속이 이미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d) 상표의 등록이 존속하는 경우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상 불가결한 경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⑥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⑦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1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 때부터 소멸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와 그 밖에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 또는 해당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122조(제척기간) ①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19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45조 ①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인 등록의 경우 치명상표를 소유한 자는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상표심사위원회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신청을 받은 이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개월 내에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심의 결정 과정의 상대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③ 상표심사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라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이후 당연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제2항·제3항 및 제21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5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중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4항·제5항, 제55조, 제87조제2항·제3항 및 제21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는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17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2.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5. 제214조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② 공유인 상표권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	제2조 ①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 상표국은 전국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②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상표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심판 사무를 담당하게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상표권자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21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와 그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 방식) ①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5.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 ①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 상표국은 전국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②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상표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심판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35조 ① 초보심사 결정이 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의 진술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확인한 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은 등록을 허가 결정한 경우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즉시 공고한다. 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국이 등록을 불허하여 피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제91조 심판부에의 심판 청구 (1) 본 법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한 등록관의 명령 또는 결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 대상명령 또는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부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1)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 후에 청구된 심판은 수리되지 않는다. 다만, 심판 청구를 하려는 자가 해당 규정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을 심판부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리될 수 있다. (3) 심판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청구대상이 되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사본 1부와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해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거절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일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0개월 내에 재심결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상표심사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라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이후 당연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2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26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나.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5조제2항 또는 제1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129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83조 심판부의 설치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본 법에 의해 또는 그에 기초하여 부여된 관할권, 권능 및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지적 소유권 심판부로 불리는 심판부를 설치한다. 제85조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으로서의 임명 자격 (1)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심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a) 고등법원의 판사이거나 판사였던 자 (b) 적어도 2년간 부심판장의 직위에 있던 자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2)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부심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a) 적어도 2년간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의 직위에 있던 자 (b) 인도 법무국의 심판관으로서 적어도 5년간 제1급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 (3)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법무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a) 인도 법무국의 직원으로서 적어도 3년간 제1급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 (b) 적어도 10년간 민사 법률 사무소에 있던 자 (4)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기술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a) 적어도 10년간 본 법 또는 1958 년 무역 및 거래 표장법 또는 양법에 시행 하에서, 심판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적어도 5년간 공동 등록관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 (b) 상표법에 있어, 적어도 10년간 증명된 전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 자 (5)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각 심판관은 (6)의 규정에 따라 인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6) 심판장의 임명은 인도 최고법원 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야 한다.	
		제86조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의 임기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의 심판관의 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기는 취임일로부터 5년 또는 다음의 연령에 이를 때까지 중 빠른 시점으로 한다. (a) 심판장 및 부심판장의 경우, 65세 (b) 심판관의 경우, 62세	
		제87조 일정한 경우 심판장의 직위를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부심판장 또는 최상급 심판관 (1) 심판장의 사망, 사임, 기타 사유에 의해 심판장 직이 공석이 된 때는, 해당 공석을 채우기 위해 부심판장 및 그 부재 때는 최상급 심판관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심판장이 임명되어 취임하는 날까지 심판장 직을 대행해야 한다. (2) 심판장이 부재, 병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심판장 및 그 부재 때는 최상급 심판관이, 심판장이 그 직무 수행을 재개하는 날까지 심판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8조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의 급료, 수당 및 그 외의 취업 조건 (1)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급료, 수당 및 그 외의 취업 조건(연금, 하사금 및 퇴직 수당 포함)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으로서 취임 직전에 정부의 관직에 있던 자는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외 심판관으로서 취임한 날에 해당 관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9조 사임 및 파면 (1)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은 인도 대통령에 대한 자필 신고서로서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은 인도 대통령에 의해 조기 퇴임이 허가되지 않는 이상, 해당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3월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또는 적법하게 임명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또는 임기 만료시 중 빠른 날까지 계속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은 자신에 대한 고소가 통지되고 대법원 판사에 의한 조사에서 그에 대해 진술할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진 뒤에, 입증된 부정행위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한 인도 대통령의 명령이 있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아니한다. (3) 중앙정부는, 규칙에 의해, (2)의 규정에 의한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 심판관의 부정행위 또는 무능력에 대한 조사절차를 규정한다.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2조에 따른 합의체(이하 “심판관합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4조 심판부의 구성 (1) 심판부는 심판장, 부심판장 및 중앙정부가 적당하다고 보는 인원의 기타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본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심판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의 관할권, 권능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법정은 법무 심판관 1명 및 기술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되며, 그 소재는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의해 지정한 장소로 한다. (3)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임명된 법정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의 직무에 더하여, 다른 법정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b) 심판관을 하나의 법정에서 다른 법정으로 전임시킬 수 있다. (c) 하나의 법정에 임명된 부 심판장,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에게 또 다른 법정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의 직무도 수행하도록 수권할 수 있다. (4) 법정이 구성되는 경우, 중앙정부는 수시로 고시에 의해 심판관단 간의 심판부의 업무 분담에 대해 규정을 제정하고, 각 법정이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5) 어떠한 사항이 법정에 할당된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심판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설명 —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상기「사항」이라는 표현은 제91조에 의한 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6) 한 법정의 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심판관은 심판장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진술해야 하며, 심판장은 그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1인 또는 그 이상의 심판관에게 의견을 들어, 처음 진술한 심판관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청문한 심판관의 다수 의견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1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4조 심판부의 구성 (1) 심판부는 심판장, 부심판장 및 중앙정부가 적당하다고 보는 인원의 기타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본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심판부의 관할권, 권능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법정은 법무 심판관 1명 및 기술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되며, 그 소재는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에 의해 지정한 장소로 한다. (3)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임명된 법정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의 직무에 더하여, 다른 법정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b) 심판관을 하나의 법정에서 다른 법정으로 전임시킬 수 있다. (c) 하나의 법정에 임명된 부 심판장,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에게 또 다른 법정의 법무 심판관 또는 기술 심판관의 직무도 수행하도록 수권할 수 있다. (4) 법정이 구성되는 경우, 중앙정부는 수시로 고시에 의해 심판관단 간의 심판부의 업무 분담에 대해 규정을 제정하고, 각 법정이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5) 어떠한 사항이 법정에 할당된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심판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설명 —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상기「사항」이라는 표현은 제91조에 의한 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한 법정의 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심판관은 심판장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진술해야 하며, 심판장은 그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1인 또는 그 이상의 심판관에게 의견을 들어, 처음 진술한 심판관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청문한 심판관의 다수 의견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34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35조(제척신청) 제134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4조 또는 제13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1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92조 심판부의 절차 및 권한 (1) 심판부는 1908년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해 구속되지는 않으나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본 법의 규정 및 그에 기초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 심리 장소 및 기일의 결정을 포함하여 해당 절차를 규정할 권한을 가진다. (2) 심판부는 본 법에 따르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과 관련하여 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1908년 민사소송법에 의해 민사법원에 부여된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a) 증거의 수리 (b) 증인 심문 촉탁서의 교부 (c) 공문서 기록의 청구 (d) 그 외 소정의 사항 (3) 심판부에서의 절차는 인도 형법 제 193조 및 제228조의 취지와 동법 제 196조의 적용에 따른 사법절차로 간주되며, 심판부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⑤ 제4항에 따른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1973년 인도 형사소송법 제 195조 및 동법 제XXVI장의 적용에 따른 민사법원으로 간주된다.	
제142조(참가) ①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관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를 결정하거나 구인(拘引)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	제66조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후에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표등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에 따라 소제기 이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92조 심판부의 절차 및 권한 (1) 심판부는 1908년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해 구속되지는 않으나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본 법의 규정 및 그에 기초하여 제정된 규칙에 따라 심리 장소 및 기일의 결정을 포함하여 해당 절차를 규정할 권한을 가진다. (2) 심판부는 본 법에 따르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과 관련하여 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1908년 민사소송법에 의해 민사법원에 부여된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a) 증거의 수리 (b) 증인 심문 촉탁서의 교부 (c) 공문서 기록의 청구 (d) 그 외 소정의 사항 (3) 심판부에서의 절차는 인도 형법 제 193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및 제228조의 취지와 동법 제 196조의 적용에 따른 사법절차로 간주되며, 심판부는 1973년 인도 형사소송법 제 195조 및 동법 제XXVI장의 적용에 따른 민사법원으로 간주된다. 제135조 침해 또는 부정경쟁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구제 (1) 제134조에 의한 침해 또는 부정경쟁에 대한 소송에 대한 구제로서, 법원은 금지명령(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과 함께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는 침해하는 표지 및 표장의 말소를 위한 인도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2) 규정(1)에 의한 금지명령에는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일방적 금지명령 또는 중간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a) 서류의 개시 (b) 침해 상품, 서류 또는 소송물과 관련된 기타 증거의 보전 (c) 최종적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또는 기타 금전적 구제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리하는 것의 제한 (3)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명목적 손해배상 제외)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의한 구제를 명할 수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없다. (a)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에 대한 침해 소송 (b) 침해 소송에 에서 피고가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납득시켰을 경우 (i) 피고가 소송 대상 상표의 사용을 개시할 당시, 원고가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권자라는 사실 또는 원고가 허락된 방법에 의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등록 사용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및 (ii) 피고가 해당 상표에 관한 원고의 권리의 존재 및 내용을 안 즉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멈춘 경우 (c) 부정경쟁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납득시켰을 경우 (i) 피고가 소송 대상의 상표의 사용을 개시할 당시, 원고의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및 (ii) 피고가 원고의 상표의 존재 및 내용을 안 즉시, 소송 대상의 상표의 사용을 멈춘 경우	
제145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1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46조(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관은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제147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합의체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같은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96조 사건을 하나의 법정에서 다른 법정으로 이송하는 심판장의 권한 어느 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원하는 경우 진술기회를 준 뒤 또는 해당 통지 없이 심판장의 직권에 의해 하나의 법정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처분권을 다른 법정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49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와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와 참가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主文)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 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 통지를 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0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같은 항에 따른 법원에 통보	제35조 ① 초보심사 결정이 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의 진술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확인한 후 공고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은 등록을 허가 결정한 경우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즉시 공고한다. 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 상표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표국이 등록을 불허하여 피이의신청자가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제113조 피고가 등록 무효의 항변을 하는 경우의 절차 (1) 제103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의 위반과 관련한 등록상표에 대해 피고가 해당 상표가 무효라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a) 법원이 피고의 항변에 대해 일응 수긍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하지 않고, 피고가 본 법에 근거해 심판부에 대해 해당 등록이 무효임을 이유로 등록부의 경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의 항변이 기록된 날로부터 3월간 해당 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 (b) 피고가 법원에 대해 소정의 기간 내 또는 법원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해당 신청사실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20개월 내에 재심결정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자와 피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할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자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④ 상표심사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라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이후 당연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입증한 때는 등록부의 경정에 대한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이후의 소송절차를 정지시켜야 한다. (c) 피고가 3개월 이내 또는 법원이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심판부에 대해 등록부의 경정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법원은 해당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당해 절차를 속행한다. (2) (1)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개시 전에,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 무효를 이유로 이미 등록부의 경정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심판위원회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원은 상기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고, 원고가 그의 등록 표장에 근거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상기 경정 신청의 결과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송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	
	제45조 ①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인 등록의 경우 치명상표를 소유한 자는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상표심사위원회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신청을 받은 이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124조 상표 등록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의 절차의 정지 등 (1) 상표 침해 소송에 있어,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a) 피고가, 원고의 상표 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b) 피고가 제30조(2)(e)에 의한 항변을 하고, 원고가 피고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개월 내에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심의 결정 과정의 상대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③ 상표심사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라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권리의 확정이 인민법원에서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중인 별개의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소멸한 이후 당연히 심사과정이 회복된다.	(i) 원고 또는 피고의 상표에 관한 등록부의 경정 절차가 등록관 또는 심판부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경정 절차의 최종 처분이 있을 때까지 절차를 정지한다. (ii) 등록부의 경정 절차가 계속 중에 있지 않고, 법원이 원고 또는 피고의 상표 등록 무효에 관한 주장에 대해 일응 수긍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의 무효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당사자가 심판부에 대해 등록부의 경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쟁점이 주장된 날로부터 3개월간 해당 사건의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2) 관련 당사자가, 규정 (1)(b)(ii)에 의한 3개월 내에 또는 법원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등록부의 경정 신청한 사실을 법원에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 절차의 최종 처리가 있을 때까지 소송 심리를 정지해야 한다. (3) 상기 3개월 이내 또는 법원이 허가한 연장기간 내에 등록부의 경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상표 등록의 효력에 관한 쟁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건의 다른 쟁점에 대해 소송절차를 속행한다. (4) (1) 또는(2)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의 경정 신청에 대한 최종 명령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법원은 그 명령이 상표 등록의 효력에 대한 쟁점에 관계하는 한, 그 명령에 부합하게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소송을 처리해야 한다. (5) 본 조에 의한 상표 침해 소송의 정지의 경우, 해당 정지 기간 중에도 중간 명령(금지명령, 계좌 보전 명령, 관재인 지정 명령 또는 재산 차압 명령 포함)을 할 수 있다.	
제152조(심판비용) ①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의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		제117조 변호 또는 고소의 비용 법원은 동 법에 따른 소송에 있어, 해당 사건의 모든 상황 및 당사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합리적이라고 보는 바대로,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 취지, 또는 원고에 대해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할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절차를 대리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절차를 대리하였더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3조제1항·제2항, 제142조 및 제143조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서 밟은 상표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거절결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결정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합의체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羈束)한다.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7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7조 상표 등록출원과 상표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共謀)하여 속임수를 써서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 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 심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당사자가 상표국의 출원 기각 결정, 등록 불허 결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출원기각 결정과 등록 불허결정, 재심결정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의 조사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 허가된 상표는, 상표 등록출원인이 상표권의 취득 시기는 초보심사 결정 공고 후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해당 상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등록결정을 하기 전까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인이 악의적으로 상표 등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제44조 ①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기 및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국은 해당 상표 등록의 무효를 선고한다.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 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국은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수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에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결정을 해야 하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심의결정 과정에 상대편 당사자가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46조 법정 기간이 만료되고 당사자가 상표국이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재정(裁定)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기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의 결정과 상표심사위원회 재심결정, 재정 결정(裁定)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54조 상표국이 등록상표의 취소 또는 취소불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서면으로 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 ① 법정 기간이 만료되고 당사자가 상표국이 결정한 등록상표 취소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재심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취소결정과 재심결정은 그래도 효력이 발생한다. ② 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이 이를 공고하며, 해당 등록상표는 공고일로부터 사용이 중지된다.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제36조 ①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당사자가 상표국의 출원 기각 결정, 등록 불허 결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의 재심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출원기각 결정과 등록 불허결정, 재심결정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의 조사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 허가된 상표는, 상표 등록출원인이 상표권의 취득 시기는 초보심사 결정 공고 후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해당 상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등록결정을 하기 전까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인이 악의적으로 상표 등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제134조 지방법원에 제기되어야 할 침해 소송 등 (1) 다음에 관해서는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지방법원보다 하급의 법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a) 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소송 (b) 등록상표의 권리에 관한 소송 (c) 등록 또는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 상표를 사용한 데 따른 부정경쟁(passing off)에 대한 소송 (2) 규정(1)(a) 및 (b)의 적용에 있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지방법원」이란 1908년 민사소송법 또는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기타 법률에 불구하고, 소송 또는 기타 절차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소송 또는 절차를 제기한 자 또는 그러한 자가 2 인 이상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또는 영업을 수행하거나 개인적 영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소재지가 있는 당사자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지방법원을 포함한다. 설명 — 규정(2)의 적용상, 「~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소유자 및 등록 사용자를 포함한다.	
제163조(피고적격)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제2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제117조 변호 또는 고소의 비용 법원은 동 법에 따른 소송에 있어, 해당 사건의 모든 상황 및 당사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합리적이라고 보는 바대로,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할 취지, 또는 원고에 대해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할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21조 상표의 국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		제120조 국제 출원 및 그 진행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고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약하에서 출원된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국제 출원이라고 한다. 2. 국제 출원 및 그 진행은 관련 국제 조약에 따른다. 3. 본 장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정부는 국제 출원에 대한 규정의 실행, 진행의 절차 및 순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7조(국제출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①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각각 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16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제168조에 따른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달일 등을 적은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해당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72조(사후지정) 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①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특허청장에게 내야 한다.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지식재산 수수료 및 부과금 기관 및 개인은 본 법 및 관련 입법의 기타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절차를 수행할 때 수수료 및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특허청장은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77조(절차의 무효) 특허청장은 제176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21조 상표의 국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4)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를 말하며,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는 이 법에 따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로 본다.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해당 상표의 취지로 본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증명표장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① 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등록상표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해당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라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4.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후에 발생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③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되거나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④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의2(2)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국제등록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4. 중복되는 지정상품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 ②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1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내에"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해당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본다.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본다.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8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록된 바에 따른다.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제1항 및 제209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상표권 분할의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96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권 및 질권"은 "질권"으로 본다.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상표등록부상 해당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103조를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적용할 경우 “상표권 • 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본다.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18조 또는 제2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1조 상표의 국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을 말한다)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제207조(심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등록상표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본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2. 제2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06조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따라 해당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122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출원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① 종전의 법(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해당 지정상품을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으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신청인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청장은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209조제3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20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5. 제214조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209조제2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적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적은 지정상품이 제211조에 따라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209조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1장 보칙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 공중 열람을 위한 규약의 공개 제63조(1)에 의한 규약은, 제148조에 규정의 등록부와 같이 공중의 열람에 제공한다. 제74조 증명표장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의 제출 (1) 증명표장으로서 등록된 각 표장에 대해 그 사용을 규제하는 규약이 상표등록청에 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약에는 소유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증명하는 경우 및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등록관이 일반 또는 특별한 명령에 의해 추가사항을 요구하거나 허가한 그 외의 규정(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상품에 대해 증명을 하는 사항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 허락을 거절하는 경우 등록관에 대해 심판청구 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 포함)을 포함할 수 있다. 제출된 규약은, 제148조에 규정된 등록부와 동일하게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어야 한다. (2) 제출된 규약은 등록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관이 변경할 수 있다. (3) 등록관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청을 공고한다. 상기 공고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록관은 당사자에 대해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고 사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제148조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서류 (1) 제49조(4)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소정의 조건에 따라 상표등록청에서 공중의 열람을 위해 개방된다. (a) 등록부 및 등록 사항의 근거가 된 서류 (b) 상표 등록에 대한 각 이의신청서, 등록관에 대한 경정 신청서, 이에 대한 답변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및 등록관에 대한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모든 선서서 또는 서류 (c) 제63조 또는 제74조에 근거해 기탁된 모든 규약 및 제66조 또는 제77조에 근거하는 그 규약 변경의 신청서 (d) 제147조에 의한 색인 (e) 관보 고시에 의해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그 외의 서류 다만, 상기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 컴퓨터에 보존되고 있을 때는 본 조에 의한 해당 등록부의 열람은 컴퓨터에 보존된 등록부의 관련 기재 사항을 출력하여 열람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등록관에게 신청하는 자는, 등록부 또는 (1)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인증 등본을 얻을 수 있다.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17조제2항에 따른 상표문서 전자화업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을 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		제6조 상표등록부 (1) 본 법의 목적상, 상표등록부라고 부르는 기록을 상표등록청 본부에 보관하며, 이 상표등록부에는 모든 등록상표들이 그 소유자의 이름·주소·설명, 양도·이전의 통지, 등록사용자의 이름·주소·설명, 등록상표와 관련한 조건·제한·기타사항들과 함께 규정된 바에 따라 등재되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관이 당해 기록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안전보호 조치를 전제로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또는 다른 전자양식으로 보관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제(2)항에 따라 당해 등록부의 전부 혹은 일부가 컴퓨터에 보존되는 경우, 본 법상 당해 등록부에의 등재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혹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④ 특허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⑤ 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⑥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⑦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4.17.>		은 다른 전자양식으로 보존되는 여하한 등재를 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신탁 통지는, 그것이 명시적인지 묵시적 혹은 추정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등록부에 등재될 수 없으며, 이러한 통지는 상표등록관에 의해 수리될 수 없다. (5) 상표등록부는 상표등록관의 통제·관리하에 보관된다. (6) 상표등록부의 부본과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를 통해 정하는 제148조에 규정된 기타 문서들의 부본은 상표등록청의 각 사무소에 보관한다. (7) 본 법의 시행 시에 기존의 상표등록부는 제A부와 제B부 모두 본 법상 상표등록부에 통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	
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143조 송달주소 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주소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령으로 정한다.		는, 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주소로 간주한다.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서류는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에 대한 송달주소에서 교부하거나 우편에 의해 해당 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	
제219조(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상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이후의 같은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3조 송달주소 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주소는, 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주소로 간주한다.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서류는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에 대한 송달주소에서 교부하거나 우편에 의해 해당 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제19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제143조 송달주소 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송달주소는, 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주소로 간주한다.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서류는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에 대한 송달주소에서 교부하거나 우편에 의해 해당 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21조(상표공보) ① 특허청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상표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9조 ① 상표 등록출원을 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②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 표기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제7조 ① 상표의 등록출원 및 사용은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实信用原则)에 따라야 한다.	제107조 허위의 상표 등록 표시에 대한 벌칙 (1) 어느 누구도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해서는	제213조 지적재산 위조 상품 1. 본 법에서 지칭하는 지적재산 위조 상품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아니 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상표사용인은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상품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급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미등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속여 사용한 경우 또는 미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이 법의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지방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이를 제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 명령을 하고, 통보한다.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 위법 경영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경영액이 없거나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을 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 된다. (a) 등록상표가 아닌 표장에 대해, 등록상표라는 취지의 표시 (b) 등록상표의 일부로서 분리 등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분리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았다는 취지의 표시 (c)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아닌 것에 대해, 등록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취지의 표시 (d) 등록부에 기재된 제한에 따라 배타적 사용의 권리가 미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등록상표의 배타적 사용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표시 (2) 규정 (1)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3) 본 조의 적용상, 인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면서 “등록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등록을 의미하는 기타 표현, 상징 또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부에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해당 용어, 기타 표현, 상징 또는 표지가 인도 이외의 국가의 법률 하에서 등록되어 효력을 가지는 등록상표임을 문자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문자의 크기가 적어도 해당 용어 등과 같은 크기로 표시된 경	본 조의 제2항에 기재된 위조 표장 상품 또는 위조 지리적 표시 상품(이하에서, 위조 표장 상품이라 한다) 그리고 본 조의 제3항에 기재된 약탈 상품을 의미한다. 2. 위조 표장 상품은, 지리적 표시의 운영 기관 또는 표장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품의 보호를 위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표장 또는 표식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그 포장이다. 3. 약탈 상품은 저작권 보유자 또는 관련 권리 보유자의 동의 없이 제조된 사본이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우 (b) 상기 기타 표현, 상징 또는 표지가, (a)에서 언급한 등록을 표시하는 것이 자명한 경우 (c) 인도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표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가 해당 국가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사용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만 사용되는 경우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① 제89조, 제92조, 제95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104조, 제110조제4항, 제1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60조, 제222조 및 제224조에 따른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게 하면 등록단체표장과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6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22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에 따른 결정서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장 벌칙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① 상표의 등록출원 및 사용은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实信用原则)에 따라야 한다. ② 상표사용인은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상품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급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허위 상표, 거래 표시 등의 사용에 대한 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기의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상표를 위조하는 자 (b)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부정사용 한 자 (c) 상표를 위조 또는 위조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타형, 판목, 기계, 금속판 또는 기타 기구를 제작, 처분 또는 소지하는 자 (d) 상품 또는 서비스에 허위의 거래 표시를 사용하는 자 (e) 제139조에 의한 상품의 제조국, 제조지, 생산국, 생산지 또는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 그 나라, 장소, 명칭 또는 주소를 허위표시 하는 자 (f) 제139조에 의해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 상품에 대해 그 원산지 표시를 위조, 변경 또는 소거하는 자 (g) 상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발시킨 자 다만, 법원은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금고 또는	제199조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은 그러한 침해의 특성 및 범위에 따라 민사적, 행정적 또는 형사적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2. 적절한 경우에, 국가 해당 기관은 임시 수단,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지적재산 관련 제어 수단, 및 예방 수단을 적용할 권리를 가지며,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들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적 벌칙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60조 ① 이 법의 제57조에 나열한 등록상표권 침해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사건 처리 시, 침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면 즉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 제조·등록상표 표지의 위조에 주요하게 사용된 도구를 몰수·소각한다.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위법 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경영액이 없거나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에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년 내에 2회 이상 상표침해행위 또는 기타 엄중한 경위가 있을 경우에 법적 한도 내에서		제200조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취급하는 기관 1. 법원, 검사기관, 시장 운영 국가기관, 세관, 경찰 및 모든 레벨의 시민 위원회는, 그들의 의무와 권한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의 적용은 법원의 권한이다. 적절한 경우에, 법원은 본 법 및 규정에 따른 임시 수단을 적용할 권한을 갖는다. 3. 행정적 구제의 적용은 검사기관의, 경찰서, 시장 운영 국가기관, 세관 및 모든 레벨의 시민 위원회의 권한에 포함된다. 적절한 경우에, 상기 국가 기관들은 예방적 수단을 적용할 권한을 가지며, 행정적 벌칙을 본 법 및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엄벌해야 한다.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상표인지 모르고 판매하였거나,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하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다. ③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에 대한 쟁의에 관해 당사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조정서의 효력 발생 이후 불이행한 경우에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0,000 루피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4조 허위 상표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벌칙 허위 상표 또는 허위의 거래 표시가 첨부되거나 제139조에 의해 상품의 제조국, 제조지, 생산국, 생산지 또는 제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은 상품이나 물건을 판매, 임대차하거나 판매를 위해 전시 또는 판매를 위해 임차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임차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 본 조에 위반하지 않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위반 당시 해당 상표 또는 거래 표시의 진정성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위반 사실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었던 경우 (b)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또는 고소인을 위해, 자신이 취득한 상품, 물건 또는 서비스를 입수한 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제공한 경우 (c) 기타 선의로 행동한 경우 다만, 법원은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금고 또는 50,000 루피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4.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국경 통제 수단의 적용은 세관의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
	제67조 ① 상표등록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일 상품에 해당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침해자에게 손실배상 이외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② 타인의 등록상표 표시를 위조·무단제조하거나, 위조·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시를 위조·무단 제조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침해자에게 손실배상 이외에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③ 등록상표의 상품이 위조품인줄 알고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침해자에게 손실배상 이외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2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7조 ① 상표의 등록출원 및 사용은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实信用原则)에 따라야 한다. ② 상표사용인은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상품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급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미등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속여 사용한 경우 또는 미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이 법의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지방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이를 제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 명령을 하고, 통보한다. 위법 경영액이 5만 위	제107조 허위의 상표 등록 표시에 대한 벌칙 (1) 어느 누구도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a) 등록상표가 아닌 표장에 대해, 등록상표라는 취지의 표시 (b) 등록상표의 일부로서 분리 등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분리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았다는 취지의 표시 (c)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아닌 것에 대해, 등록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취지의 표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안 이상인 경우에 위법 경영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경영액이 없거나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을 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d) 등록부에 기재된 제한에 따라 배타적 사용의 권리가 미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등록상표의 배타적 사용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표시 (2) 규정 (1)의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3) 본 조의 적용상, 인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면서 “등록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등록을 의미하는 기타 표현, 상징 또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부에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해당 용어, 기타 표현, 상징 또는 표지가 인도 이외의 국가의 법률 하에서 등록되어 효력을 가지는 등록상표임을 문자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문자의 크기가 적어도 해당 용어 등과 같은 크기로 표시된 경우 (b) 상기 기타 표현, 상징 또는 표지가, (a)에서 언급한 등록을 표시하는 것이 자명한 경우 (c) 인도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표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가 해당 국가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사용되거나 해당 국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만 사용되는 경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7조 ① 상표의 등록출원 및 사용은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实信用原则)에 따라야 한다. ② 상표사용인은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상품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각급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109조 등록부에의 허위 기재에 대한 벌칙 등록부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허위 기재를 유도하거나 기재사항 또는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증거로서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작성 또는 제출을 유도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212조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는 개인은 형법 및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233조 또는 제2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0조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33조 또는 제234조를 위반한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 ① 대리인 또는 대표인이 수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②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출원인과 해당 타인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계약, 업무 거래 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해당 타인의 상표존재를 알고 있고, 해당 타인이 이의를 제출한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8조 ① 상표 대리기관의 행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을 내리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며,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상의 벌금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상표 사무처리 과정 중에 위조·변조 또는	제112조 통상 업무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면책 제103조 위반으로 고소된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증한 경우에는 무죄로 본다. (a) 타인에게 고용된 자로서, 자기의 통상의 업무상 타인을 위해서 상표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하거나 상표를 제조 또는 상표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타형, 판목, 기계, 금속판, 또는 기타 기구를 제작한 경우, 및 (b) 고소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고용된 자로서, 위반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이윤 또는 수수료 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 또는 기타 물건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 및 (c) 고소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위반 당시, 상표 또는 거래 표시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경우, 및 (d)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또는 고소인을 위해, 상표 또는 거래 표시를 사용한 당사자	제212조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는 개인은 형법 및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위조·변조된 법률문서, 인감, 서명을 사용한 경우 2. 기타 상표 대리기관을 비방하는 등의 수단으로 상표대리 업무를 유치하거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 대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이 법의 제19조 제3항,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상표 대리기관이 전항에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신용문서(信用档案)에 기입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해당 상표 대리 사무 처리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한다. ③ 상표 대리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위탁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상표 대리 산업조직의 당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제공한 경우 제114조 회사에 의한 위법행위 (1) 본 법에 따른 위반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 및 위반 당시 해당 직무 수행을 담당하고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은 해당 위반에 대해 유죄로 간주되어 피고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본 항은 그의 부재 중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 또는 그가 상기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한 자에게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본 법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 위반이 해당 회사의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간부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졌거나, 상기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간부도 상기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로 간주되어 피고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설명 – 본 조의 적용상, (a) 「회사」란 법인을 의미하며, 기업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b) 기업과 관련하여,「이사」란 해당 기업의 파트너를 의미한다.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	제60조 ① 이 법의 제57조에 나열한 등록상표권 침해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111조 상품의 몰수 (1) 제103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의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거나, 사기의 의사가 없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사건 처리 시, 침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면 즉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 제조·등록상표 표지의 위조에 주요하게 사용된 도구를 몰수·소각한다.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위법 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경영액이 없거나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하일 경우에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년 내에 2회 이상 상표침해행위 또는 기타 엄중한 경위가 있을 경우에 법적 한도 내에서 엄벌해야 한다.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상표인지 모르고 판매하였거나,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하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다. ③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에 대한 쟁의에 관해 당사자는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상행정 관리부서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조정서의 효력 발생 이후 불이행한	었음을 증명하여 제103조 또는 제104조 위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또는 제104조(a), (b) 또는 (c)에 규정된 사항을 입증하여 동 조 위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해당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위반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모든 상품과 물건을 몰수해야 함을 정부에 명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죄판결에 의해 몰수를 명령 받은 후, 유죄판결에 대해 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몰수에 대해서도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무죄판결에 의해 몰수를 명령 받아 그 명령과 관련되는 상품 또는 물건이 50 루피를 넘는 가치를 가질 때는, 몰수를 명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당 명령이 있던 날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4) 유죄판결에 의해 몰수를 명령이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은 몰수한 모든 물품을 파기하거나 해당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경우에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12조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는 개인은 형법 및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부칙 <제14689호, 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3조 ① 이 법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63년 4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한 「상표관리조례」는 폐지한다. 기타 관련 상표관리 규정은 본 법과 저촉될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1조 (1) 본 법은 1999년 상표법이라고 칭한다. (2) 본 법은 인도의 전 지역에 걸쳐 적용된다. (3) 본 법은 중앙정부가 관보 고시를 통해 지정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본 법의 서로 다른 조항들에 있어서 다른 일자가 지정된 경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에는, 당해 조항상 본 법의 시행에 관한 여하한 참조문이 당해 조항의 발효에 관한 참조문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제6조 법률, 행정 법규에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은 반드시 상표 등록출원을 해야 하며,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20조 상표 대리 산업 조직은 당헌(章程)규정에 따라 가입 회원의 조건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고, 업계의 자율규범을 위반한 회원을 징계해야 한다. 상표 대리 산업 조직은 가입 회원 상황과 회원의 징계상황을 즉시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24조 등록상표가 해당 표장을 변경해야할 경우, 다시 새로운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제28조 상표의 등록출원과 관련해서 상표국은 상표 등록출원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하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초보심사 결정을 공고한다.		
	제37조 상표 등록출원과 상표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50조 등록상표가 취소, 무효선고를 받거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갱신되지 않은 경우, 취소, 무효선고 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해당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록출원에 대해 상표 등록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51조 이 법의 제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지방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등록출원 하도록 명령하며, 위법 경영액(违法经营额)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 위법 경영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 경영액이 없거나 위법 경영액이 5만 위안을 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 이 법의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 내리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8조 타인의 등록상표, 미등록된 유명상표를 기업의 명칭의 상호로 사용하여 공중의 오인, 부정당한 행위를 조성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 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61조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권리가 있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2조 ①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이미 취득한 위법 혐의의 증거 또는 고발을 근거로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처리 할 때에 다음의 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1.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타인의 등록상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권 침해와 관련한 현황을 조사하는 것 2. 당사자의 침해활동과 관련한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하는 것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권 침해 활동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 4.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 검사.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물품을 차압 또는 압류하는 것 ②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한 직권을 행사하는 때에 당사자는 협조·협력해야 하며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③ 상표 침해 사건 조사과정 중에 상표권 존재에 관한 쟁의가 존재하거나, 동시에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사건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 소멸한 후, 사건 조사 과정이 회복 또는 종결되어야 한다.		
	제70조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건전한 내부감독 제도를 건립하고 상표등록·관리와 심판업무에 책임에 있어 국가기관 업무자의 법률·행정법규 집행과 규율의 준수상황을 감독·감사해야 한다.		
	제71조 상표등록·관리와 심판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담당자는 직무를 소홀히 하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나 직권남용, 사리를 도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법 상표등록·관리 및 심판업무를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재물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3조 상표등록관 및 기타 직원의 임명 (1)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를 통해 특허·디자인·상표에 관한 검사원장을 임명해 알리며, 검사원장은 본 법의 목적상 상표등록관이 된다. (2) 중앙정부는 상표등록관이 당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본 법상 상표등록관의 기능을 상표등록관의 감독·지시 하에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당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공무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상표등록관의 사건철회 및 이전 권한 등 제3조(2)항의 일반원칙을 침해하지 않고서, 상표등록관은, 서면 명령에 의하여 당해 명령에 기록된 사유들을 근거로, 제3조(2)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에게 계류 중인 여하한 사안을 철회하고 해당 사안을 스스로 처음부터 혹은 그 사안이 철회된 단계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으며, 이전 명령에 따른 특별 지시에 의거해 해당 사안을 처음부터 혹은 그 사안이 이전된 단계에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임명된 다른 직원에게 해당 사안을 이전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5조 상표등록청 및 상표등록사무소 (1) 본 법의 목적상, 상표등록청을 두어야 하며, 1958년 상거래상품표장법에 의거해 설치된 상표등록청이 본 법에 따른 상표등록청이 된다. (2) 상표등록청의 본부은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두며, 상표등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들에 상표등록청의 사무소들을 설치한다. (3)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를 통해 상표등록청 사무소가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 지리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상표등록청 인장을 두어야 한다.	
		제7조 상품·서비스 분류 (1) 상표등록관은 상표등록의 목적에 따라, 가능한 한 상품 및 서비스 국제 분류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분류하여야 한다. (2) 여느 상품이나 서비스가 속하는 분류에 관해 야기되는 여하한 문제는 상표등록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표등록관의 결정은 최종적이어야 한다.	
		제8조 알파벳 순서 색인의 발행 (1) 상표등록관은 제7조에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대한 알파벳 순서 색인을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 및 서비스 알파벳 순서 색인에서 여하한 상품이나 서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스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는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상표등록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10조 색채와 관련한 제한 (1) 상표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여하한 색채의 조합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당해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할 시에 이러한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2) 상표가 색채에 관한 제한 없이 등록되는 한, 당해 상표는 모든 색채에 대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5조 상표의 부분 등록 및 연속 상표의 등록 (1) 상표의 소유자로서 상표의 일부를 분리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 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다. (2) 각 분리 상표는 독립된 상표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 및 그 부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복수의 상표에 대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는 상이한 상표들에 대해 그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할 때는 1개의 연속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a) 각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b) 수, 가격, 품질 또는 산지명의 표시 (c) 상표의 동일성에 본질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 비식별적인 기타 사항 (d) 색채	
		제16조 연합상표의 등록 (1)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 중인 상표가 동일 또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소유자 명의의 다른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 중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면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관은 언제라도 해당 상표를 연합상표로서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복수의 표장이 동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 경우에는 동일 또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출원 중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수의 상표로서 출원된 것으로 보아 상기 규정 (1)을 적용한다. (3) 상표 및 그 상표의 일부가 제15조(1)의 규정에 따라서 동일 소유자의 명의로 분리 상표로서 등록되었을 경우, 그러한 상표는 연합상표로 간주되고, 연합상표로서 등록된다. (4) 제15조(3)의 규정에 따라 연속 상표로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1 등록된 모든 상표는 연합상표로 간주되고, 연합상표로서 등록된다. (5) 연합상표로서 등록된 2 이상의 상표등록 소유자에 의해 소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청에 대해 등록관이 어떠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가 어떤 사람에 의해 사용되더라도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합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등록부를 보정할 수 있다.	
		제17조 상표의 부분에 대한 등록의 효과 (1) 상표가 복수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등록은 소유자에게 해당 상표 전체로서의 사용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표인 경우에는, 그러한 상표의 등록은 그 등록상표의 전체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a) 다음의 일정한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 (i) 소유자에 의해 상표등록을 위해 분리 출원된 부분이 아닌 부분 (ii) 소유자에 의해 상표로서 분리하여 등록된 부분이 아닌 부분 (b) 거래에 있어 통상인 사항 또는 식별력이 없는 사항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9조 수리의 취하 상표등록출원의 수리 후 해당 상표의 등록 이전까지, 등록관에 대한 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관은 출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문한 후 해당 수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수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a) 잘못 수리된 출원인 경우 (b)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 되거나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 또는 제한이 필요하거나 추가 조건이 필요한 출원임에도 수리된 경우	제116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취하 1.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이 보호권의 허여 또는 거절을 통지할 때까지, 출원인은 자신의 명의로 또는 출원의 취하 권능에 대해 위임장에 명백히 기재된 경우에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통해서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취하를 할 수 있다. 2. 출원인이 등록 출원의 취하를 하는 순간, 출원에 관한 모든 추가적인 절차는 중단될 것이며, 아직 실행되지 않은 절차에 대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비용은 요청에 의해 출원인에게 환급될 것이다. 3. 공표 전에 취하된 또는 취하 간주되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등록 출원 및 취하된 표장 등록 출원은 우선권의 기초로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제24조 공유 상표 (1) 본 법은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상표를 독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2 이상의 사람의 등록을 공유자로서 허여하지 않는다. (2) 1 상표에 대해 2 이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 중 1인과 나머지 사람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은 공유자로서 등록을 받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을 수 있도록 하며, 본 법은 이들이 가지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 1 인에 의한 상표등록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a) 양자 또는 전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b) 거래과정에서 양자 또는 전원이 관련을 가지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사용하는 경우	
		제26조 갱신 수수료의 불납에 의한 등록 말소의 효과 갱신 수수료의 불납으로 인해 상표가 등록부에서 말소되었을 경우 말소일로부터 1년간은 다른 상표 등록출원과의 관계에서는 등록상표인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심판위원회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a) 말소된 상표에 대해, 그 말소의 직전 2년간에 선의의 업으로서의 사용이 없었던 경우 (b) 말소된 상표의 종전 사용에 근거하여 등록출원상표의 사용과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	
		제27조 미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한 소송 불능 (1)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침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금지 또는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본 법의 어떤 규정도 타인의 상품 또는 타인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를 사칭하여 상품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 또는 그에 관한 구제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30조 등록상표의 효력의 한계 (1) 제29조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용은, (a) 공업 또는 상업과 관련한 선의의 관행에 따르는 사용이어야 하며 (b) 등록상표의 식별력 또는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그것을 해칠 정도의 사용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 (2)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a)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의도하는 목적, 가치, 원산지, 상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의 시기 또는 그 외의 특성을 표시하는 경우 (b) 조건 또는 제한이 첨부된 등록상표에 있어, 상기 조건이나 제한에 의해 등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판매되거나 기타 거래되는 상품 또는 그러한 지역으로 수출되는 상품 또는 그러한 인도의 국내외에서 사용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c) 상표의 사용이 다음의 각목과 같은 경우 (i) 상표의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와 거래상 관련있는 상품에 대해서, 등록 소유자 또는 허락 사용에 따른 등록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하며, 상기 등록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또는 그 사용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경우 (ii) 상표의 소유자 또는 허락 사용에 따른 등록 사용자로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며, 상기 상표 사용의 목적 및 효과가 상기 서비스가 상표의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에 의해 수행된 것임을 표시하는 경우 (d) 본 법에 근거해 등록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표가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을 예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를 형성하는데 적합하거나 그에 부속하는데 적합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가 그처럼 적합하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해당 상표의 사용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상표의 사용의 목적 및 효과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상 관련을 표시하는 이외의 무엇도 표시하는 것이 아닌 경우 (e) 본 법에 근거해 등록된 2 이상의 동일 또는 서로 유사한 상표 중 한 상표의 사용이,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본 법에 근거하는 등록에 의해서 부여된 해당 상표 사용의 권리로서 행사되고 사용하는 경우 (3)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누군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해당 상품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지시나 개입을 통해 해당 상품을 취득한 사람에 의한 해당 상품의 시장에서의 판매 또는 기타 거래는 다음의 각호를 이유로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a) 해당 상품의 취득 후에 해당 상표가 등록 소유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b) 해당 상품이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등록상표 하에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4) (3)의 규정은 소유자가 해당 상품의 추가 거래에 반대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특히 상품 상태가 시장에 나온 후 변화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1조 등록에 의한 유효성 추정 (1) 본 법에 근거해 등록된 상표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제57조에 의한 신청을 포함)에 있어, 상표의 원 등록 및 그 후의 상표의 양도 및 이전의 등록은 그 효력의 일응의 증거가 된다. (2) 앞서 본 모든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등록 상표가 등록 소유자 또는 그 전 권리자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며 등록일 당시 이미 식별력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의 증거에 관한 예외로서, 해당 상표가 제9조에 의해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가 아니라는 사실 및 식별력에 관한 증거가 등록 전에 등록관에 대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무효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제39조 미등록상표의 양도성 및 이전성 미등록상표는 관련 영업권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46조 설립 중의 법인 등에 의한 상표의 사용 예정 (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등록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a) 법인이 1956년 회사법(CompaniesAct)에 의해 현재 설립 중이며 등기를 예정하고 있으며, 출원인이 상기 법인의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을 위해 상표를 양도할 의사가 있는 경우 (b) 소유자가 그 상표 등록 후에 누군가에게 등록 사용자로서 상표를 사용하게 할 의사가 있는 경우 (2) 본 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등록된 상표와 관련하여, 제47조 (1)의 (a)에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록출원인으로서 상표를 사용할 의사는 등록출원인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등록 사용자에게 상표를 사용시킬 의사로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 (3) (1)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심판위원회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절차 비용에 대해서 출원인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적법하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4) (1)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법인에 대해서 양도할 의사를 가지는 출원인의 명의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가 등록되었을 경우, 소정의 기간 내 또는 소정의 방법에 따른 신청에 근거하여 등록관이 허가한 6개월을 넘지 않는 연장 기간 내에 그 법인이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지 않는 이상, 해당 등록은 그 기간 만료와 함께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여, 등록관은 그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	
		제50조 등록 사용자의 등록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록관의 권한 (1) 제57조의 규정을 해치는 일 없이, 등록 사용자의 등록에 대해서는, (a) 등록 소유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서면에서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그 등록을 변경할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수 있다. (b) 등록 소유자 또는 그 상표의 등록 사용자 또는 다른 등록 사용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c)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소정의 방법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i) 등록 사용자가 제49조(1)의(a)에 의한 계약서에 기재된 이외의 방법 또는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법에 의해 그 상표를 사용한 경우 (ii) 등록 신청시 정확하게 표시했거나 개시를 하였다면 등록 사용자의 등록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가 부실표시를 하거나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iii) 등록 사용자의 등록 이후 상황의 변경이 있어, 그 등록의 취소 신청시에 있어 그 등록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된 경우 (iv) 등록 신청인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계약에 의해 그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가 등록되어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경우 (d) 등록관은 그 상표의 사용과 관련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등록 소유자와 등록 사용자와의 사이의 계약조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준수되고 있지 않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은 것을 이유로, 직권에 의해 또는 소정의 방법에 의한 서면 신청에 의해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 등록관은 등록이 실효된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등록 소유자 및 상표의 각 등록 사용자(신청인 제외)에 대해 소정의 방법에 따라 본 조의 각 신청이 있던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3)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등록의 취소 전에 등록 소유자에게 청문을 받을 적절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51조 등록 사용자와 관련한 계약서에 대한 등록관의 정보요청 권한 (1) 등록관은 등록 사용자의 등록이 존속하는 동안은 언제라도 등록 소유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제49조(1)의 (a)에 의해 제출된 계약서가 계속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를 1개월 이내에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등록 소유자가(1)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1개월 이내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사용자는 상기 기간의 만료일 직후부터 등록 사용자가 아니게 된다는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55조 연합상표 또는 실질적 동일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되는 사용 (1) 본 법의 규정 하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등록상표의 사용을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록된 연합상표의 사용 또는 그 동일성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기나 변경을 가한 상표의 사용도, 심판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을 필요로 하는 상표의 사용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하나의 등록상표의 전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본 법의 목적상 그 일부이자 제15조(1)의 규정에 의해 동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도, 그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3) 제32조에 불구하고, 규정 (2)에 있어서의 등록상표의 일부의 사용은 본 법의 목적상 그 식별력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	
		제56조 수출 거래를 위한 상표의 사용 및 거래관계 변경시의 상표의 사용 (1) 인도로부터 수출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외에서 이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인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 인도로부터 수출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인도 내에서의 기타 행위로서, 상기 행위가 인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본 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 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간주된다. (2) 사용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기 사용자 또는 이전 권리자와의 사이에 다른 형태의 관계가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가 이전부터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제59조 등록상표의 변경 (1) 상표의 등록 소유자는 상표의 동일성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표에 부기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등록관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관은 이를 거절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및 제한을 첨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조에 의한 신청을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이 때 공고일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에 따른 해당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청문한 후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3) 본 조에 의해 허가를 받아 변경된 상표에 대해서는, 그 신청이 (2)의 규정에 의해 이미 공고되어 있지 않은 한 이를 소정의 방법에 의해 공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60조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의 보정 또는 대체에 수반하는 등록부 기재사항의 수정 (1) 등록관은 보정 직전의 등록상표의 (다류 지정여부 불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류 구분을 확장시키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등록을 소급시키는 효과를 야기하는 등록부의 보정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 항을 준수하면 부당한 복잡함을 유발하며, 상기 부가 또는 등록 효과의 소급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권리도 해치지 않음을 등록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록부를 보정하는 경우 소정의 방법에 의해 그 취지를 관련 상표의 등록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한다. 한편, 상기 보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상기 보정이 (1)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등록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7조 단체표장의 등록 소유자에 의한 침해 소송 단체표장의 등록 소유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침해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허락 사용자가 입은 손해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손해를 참작하여, 원고가 상기 허락 사용자를 대신하여 금전적 구제 조치를 받는 범위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72조 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관의 심사 사항 (1) 등록관은 제71조에 의한 출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a) 출원인이 등록되어야 할 표장과 관련한 지정상품을 증명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 (b) 제74조에 의해 제출된 규약 초안이 적절한지 여부 (c) 모든 상황에서 출원과 관련되는 등록이 공익에 적합한지 여부 한편, 등록관은, (i) 출원을 거절하거나 (ii) 상기 규약 초안을 수정이나 조건 없이 수리하여 승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이나 제한 또는 보정이나 수정을 첨부하여 수리하고 승인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수정이나 조건 없이 수리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인에 대해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1)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75조 증명표장의 침해 증명표장의 등록 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제74조에 근거해 제출된 규약에 의한 등록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나 해당 규약에 따라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가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증명표장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과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업으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78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76조 증명표장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1) 본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는 등록된 증명표장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a) 증명표장이 등록부에 기재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른 사용으로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상품 또는 수출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b) 표장 소유자가 증명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소유자 또는 관계 규약에 근거해 소유자의 허락을 얻은 사람이 해당 규약이 말소되거나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거나 소유자의 해당 상표 사용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 하에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c) 증명표장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이에 부속되는데 적합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에 적합함을 표시하기 위한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고, 해당 표장의 사용목적 또는 효과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장의 소유자에 의해 증명된다는 사실만을 표시하는 증명표장의 사용행위 (2) (1)의 (b)의 규정은, 증명표장출원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용이 동 규정에 의한 규약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증명표장이 본 법에 의해 등록된 동일 또는 서로 유사한 2 이상의 상표 중 하나인 경우에는, 등록에 의해서 부여된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의 행사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외의 상표의 사용에 대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 직물 중앙정부는 동 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표와 관련되는 상품의 종류(이하 「직물」이라고 한다)를 정할 수 있다. 한편 본 법의 다른 규정도,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이 장이 규정하는 상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0조 직물의 등록에 대한 한정 (1) 피륙인 직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a) 직단선(lineheading)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b) 직단선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c) 상표의 등록이 직단선의 사용에 대해 배타적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2) 직물과 관련하여, 문자 또는 숫자 또는 그러한 조합의 등록은 소정의 조건 및 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제81조 피륙, 면사 및 꼰 실의 날인 표시 (1) 통상적으로 길이 또는 분량에 따라 판매되는 피륙으로서, 1948년 공장법에 의해 정의된 공장 내에서 생산, 표백, 염색, 날염, 완성된 피륙을 모든 공정을 거쳐 판매를 위해 출하하는 경우, 각 피륙에 대해 그 실제 길이 즉, 표준 야드 또는 표준 야드와 그 미만 또는 표준 미터 또는 표준 미터와 그 미만으로 국제적 형식의 인도 숫자로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인도에서 수출을 위해 공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피륙에 대해 마지막 공정을 가한 공장 내 생산자명 또는 점유자명 또는 인도 내 해당 피륙의 도매업자명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 통상 다발로 판매되는 면사 및 제82조에 의해 제정된 규칙의 적용 제외를 받지 않는 공장에서 생산, 표백, 염색, 완성된 꼰실, 즉, 재봉실, 짜깁기 실, 뜨게실 또는 수예실에 대해서는, 상기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지 않는 한 판매를 위해 공장으로부터 출하해서는 안 된다. (a) 다발의 경우, 각 다발에 대해 야드 파운드법 또는 미터법에 따라 실의 중량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b) 다발에 포함된 꼰실 및 각 단위에 대해, 상기 규칙에 따라 필요한 방법으로 실의 길이 또는 중량을 나타내는 실의 번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c) 인도에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공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다발 또는 단위에 대해 인도 내 해당 피륙의 생산자명 또는 도매업자명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82조에 의해 제정된 규칙은 10명 이하의 종업원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으면서 한 단위의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든 공장, 협동조합에 의해 관리되는 2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공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 견본에 의한 직물의 품질에 대한 결정 (1) 본 법의 목적상, 중앙정부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균등한 수, 양, 치수, 용량 또는 중량을 가진다고 보이거나 주장되는 상품에 관해, 선택되고 검사되어야 하는 견본의 수 및 견본의 선택 (b) 제81조의 적용상, 면사 및 꼰실과 관련하여 동조에 의해 요구되는 구체적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및 일정한 공장에 있어 적용이 배제되는 면사 또는 꼰실의 생산, 표백, 염색, 또는 마무리를 위해 사용되는 사항 (c) 본 법 제 81조 및 1962년 관세법 제 11조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2)(n)의 적용상, 「통상적으로 길이 또는 분량에 따라 판매되는 피륙」에 포함되는 상품의 종류를 분명히 하는 것 (2) 견본의 선택 및 검사에 대하여, 규정 (1)에 의해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원 또는 세관은 그 상품의 수, 양, 치수, 용량 또는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에 의한 명령으로 선택하고 검사해야 하는 견본의 수 및 견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3) (1)의 규정에 의한 규칙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검사 결과의 평균치는 상품의 수, 양, 치수, 용량 또는 중량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본다. (4) (1)의 규정에 의한 규칙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견본을 선택하고 검사한 상품 또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견본을 선택하여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청서가 제출되고, 상기 신청자가 상기 추가 선택 및 검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 또는 세관에 선납한 경우에는, 본건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정한 규칙상 허용되거나 그러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세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추가 견본을 선택하고 검사하도록 하며, 견본은 규정 (1) 또는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택한다. (5) 규정 (3)에 의한 검사 및 (4)에 의한 재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사 결과의 평균치는 상품의 수, 양, 치수, 용량 중량에 대한 최종 증명으로 본다.	
		제90조 심판부의 부원 (1) 중앙정부는 심판부의 해당 직무수행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의 업무와 분야를 결정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을 심판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심판부의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의 급료 및 수당 및 취업 조건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3) 심판부의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은 심판장의 총괄적 감독하에서 소정의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3조 법원의 관할권 등의 금지 법원 또는 그 외의 당국은 제91조(1)에 의한 사항에 관한 어떠한 관할권, 권능 또는 권한도 획득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94조 심판부에의 출두 금지 퇴임한 심판장, 부심판장 또는 그 외의 심판관은 심판부 또는 등록관 앞에 출두해서는 안 된다.	
		제95조 일시 명령을 발효하는 조건 본 법의 다른 규정 또는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심판 청구에 대해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절차에 대해 일시 명령(금지명령 또는 정지 명령 또는 그 외의 방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식에 따른)은 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심판청구서 및 해당 일시 명령에 대한 신청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이 심판이 청구된 상대방에게 교부된 경우, 및 (b) 상기 상대방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 경우	
		제97조 심판부에 대한 경정 등의 신청 절차 (1) 제57조에 따른 심판부에 대한 등록부의 경정 신청은 소정의 양식에 의해야 한다. (2) 본 법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심판부의 각 명령 또는 판결의 인증 등본은, 심판부에 의해 등록관에 전달되어야 하며, 등록관은 심판부의 명령에 기속되며, 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명령에 따라 등록부의 기재를 보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제98조 법적 절차에의 등록관의 출두 (1) 등록관은 다음의 법적 절차에 출두하여 진술한 권리를 가진다. (a) 심판부에 청구된 등록부의 변경 또는 경정을 포함한 구제 또는 상표청의 업무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법적 절차 (b) 다음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등록관의 명령에 대한 심판부에의 심판청구로서, (i) 이의제기 된 바 없이, 등록관에 의해 거절된 출원 또는 일정한 수정, 변경, 조건 또는 제한을 첨부하여 수리된 출원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ii) 이의제기가 있어, 이를 심사한 결과 공익상 등록관의 출두가 필요하다고 보는 출원 한편, 등록관은 심판부의 출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두해야 한다. (2) 등록관은 심판부의 특별한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정하는 대신 쟁점과 관련하여 등록관에 의한 절차, 그 결정에 영향을 준 근거,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상표청의 관행 또는 쟁점에 관계가 있는 기타 사항 및 등록관으로서 파악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술서는 법적 절차에 있어 증거가 된다.	
		제99조 심판부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의 등록관의 비용 본 법에 따른 심판부에 대한 모든 절차에 있어, 등록관의 비용은 심판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등록관은 당사자의 비용에 대해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지는 아니한다.	
		제100조 계속 중인 절차의 심판부로의 이전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등록관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모든 심판 사건 및 등록부의 경정에 관한 모든 사건은, 중앙정부에 의한 관보 고시일로부터 심판부로 이전되며, 심판부는 처음부터 또는 이전된 이후의 단계부터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05조 재범 또는 누범에 대한 가중 벌칙 제103조 또는 제104조 위반으로 이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상기 위반으로 재차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는, 재범 및 각 누범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00 루피 이상, 20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원은 판결에 기재된 적절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금고 또는 100,000 루피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본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본 조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제81조 위반의 피륙 등의 출하에 대한 벌칙 제81조에 규정된 표시를 하지 않고, 피륙, 면사 또는 꼰 실을 동조에 의한 공장으로부터 판매를 위해 출하하거나 출하하려고 한 자 또는 출하시키거나 출하 시키려고 한 자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서 전시하거나 기타 거래 또는 생산을 위해 소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모든 피륙, 면사 다발, 꼰 실 및 그 포장에 사용된 모든 것을 정부가 몰수하고, 1,000 루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08조 영업소와 상표등록청의 관련성에 대한 허위 표시에 대한 벌칙 자신의 영업소에서 또는 그가 발행하는 서류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소가 상표청이거나 상표청과 공식적인 관계가 있다고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오인시킬 만한 용어를 사용하는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110조 면책 규정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은,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의 소유자로서, 본 법에 의해 설정되거나 인정된 권리가 있으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위, 부작위에 대해 상기 조항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a) 제기된 위반이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본 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경우 (b) 제기된 위반이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경우	
		제115조 일정한 위법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 및 경찰관의 수사 및 압수 권한 (1) 법원은, 등록관 또는 서면에 의해 등록관의 권한이 위임된 공무원이 서면으로 제기한 소를 제외하고, 제107조, 제108조, 또는 제109조의 위반사실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제107조(1)(c)의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상표가 실제로는 등록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표시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것이 등록관에 의해 교부된 증명서를 기초로 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 수도권 치안판사 또는 일급 치안판사의 법원보다 하급의 법원은, 동 법에 따른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3) 제103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이 적용된다. (4) 경시보(deputy superintendent) 또는 동등 계급 이상의 경찰관은, (3)의 규정에 의한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행위가 있는지 또는 위반의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해당 위반에 관계한 상품, 타형, 판목, 기계, 금속판, 기타 기구 또는 물건을 수사하고, 발견의 장소를 불문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모든 압수 물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급 치안판사 또는 수도권 치안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은 수사 및 압수를 하기 전에, 상표에 관한 위반에 포함되는 사실에 대해 등록관의 의견을 구하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5) 규정 (4)에 의한 압수물품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해당 압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급 치안판사 또는 수도권 치안판사에 대해 해당 물품의 자기로의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치안판사는 신청인 및 고소인을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청문한 뒤 해당 신청에 대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해야 한다.	
		제116조 해로에 의해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의 증거 해로를 통해 인도에 수입된 상품의 경우, 동 법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한 소송 또는 1962년 관세법 제111조(d)에 따라 동법 제11조(2)(n)에 의해 상품 수입에 관한 상표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고시한 상품의 몰수에 관한 동법 제112조(b)에 의한 위반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의 선적항의 증거는, 그 상품이 제조 또는 생산된 장소 또는 국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본다.	
		제118조 고소의 시효 동 법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1962년 관세법 제111조(d)에 따라 동법 제11조(2)(n)에 의해 상품 수입에 관한 상표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고시한 상품의 몰수에 관한 동법 제112조(b)에 의한 위반에 대한 제소의 경우에는, 위반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3년 또는 고소인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중 빨리 만료하는 날까지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9조 범행에 관한 정보 동 장의 규정의 시행을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은, 법원에 대해 동 법의 위반에 관해 자신이 입수한 정보의 출처에 대해 진술할 것을 강제를 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20조 인도 국외에 있어서의 행위를 인도에서 교사한 경우의 처벌 인도 내에서 해당 행위를 하면 본 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인도 국외에서 하도록 인도 내 거주자가 교사한 경우에는, 상기 교사자에 대해 그가 발견된 장소에서 해당 교사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것처럼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21조 형사 법원이 준수해야 할 허용 변량에 관한 중앙정부의 지시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상품의 경우에 형사 법원에 의해 허용된다고 인정되는 수, 양, 치수, 용량 또는 중량에 대한 변량의 한계에 관한 지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22조 선의의 행위의 보호 선의로 한 행위 또는 동 법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3조 공무원인 일정한 사람 동 법에 의해 임명된 개인 및 심판부의 각 심판관은 인도 형법 제21조의 취지에 있어서의 공무원이라고 간주한다.	
		제125조 심판부에 대한 등록부의 경정 신청 (1) 등록상표 침해 소송에 있어, 원고의 상표 등록의 효력에 대해 피고와 다툼이 있을 때 또는 피고가 제30조(2)(e)에 의한 항변을 하여 원고가 피고의 상표 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경우에는, 해당 상표 등록의 효력에 관한 쟁점은 등록부의 경정 신청에 근거해서만 결정된다. 이 경우, 제47조 또는 제57조에 불구하고, 상기 신청은 등록관이 아닌 심판부에 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의 경정 신청이, 제47조 또는 제57조에 의해 등록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록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는, 어떠한 단계에 있는 신청이든 심판부로 이송할 수 있다.	
		제126조 표장을 첨부한 상품에 대한 묵시적 보증 표장, 상표, 또는 거래 표시가 상품 판매, 상품 판매 계약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상표 또는 표장이 진정한 것이며, 허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 또는 거래 표시가 본 법의 취지상 허위의 거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매수자에 의한 계약 수락 당시 판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한 자가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 등록관의 권한 동 법에 따른 등록관에 대한 모든 절차에 있어, (a) 등록관은 증거를 수리하고, 선서를 집행하고, 증인 출두를 명하고, 서류의 개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및 제출을 명하고, 증인 심문 촉탁서를 교부할 목적으로, 민사 법원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b) 등록관은 제157조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따라, 등록관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 비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은 민사 법원의 명령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관은 증명표장의 소유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증명을 거절하거나 표장의 사용의 허락을 거절한 것에 대해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절차 비용을 명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c) 등록관은 소정의 방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다.	
		제128조 등록관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이 동 법 또는 동 법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의한 그 재량권 또는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에 대해 (소정의 기간 내에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진술한 기회를 주지 않고 그에게 불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9조 등록관에 대한 증거 동 법에 따른 등록관에 대한 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는 선서서에 의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는, 선서서에 의한 증거를 대신하거나 이에 더하여 구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 절차의 포기 등록관이 동 법 또는 동 법 시행 전에 효력을 가진 상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신청의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해태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신청인에 대한 통지로서 지정 기간 내에 해태를 시정해야 할 취지를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후 그 통지로 지정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133조 식별력에 관한 등록관의 예비적 조언 (1) 등록관은 상표등록출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상표가 일단 식별력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2) 등록관이 전항에 의해 긍정적인 조언을 한 상표에 대해 해당 조언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출원을 한 경우, 등록관이 추가로 조사 또는 심사하여 출원인에 대해 해당 상표가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통지를 했을 때는, 출원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취하통지를 한 후, 출원시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제136조 일정한 절차에 있어 기소되어야 할 등록 사용자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1) 제VII장 또는 제91조에 근거하는 각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허락을 받은 사용 방법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는 등록 사용자는, 동 장 또는 동 조에 근거하는 절차의 신청인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절차의 당사자로 취급된다. (2)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해당 절차의 당사자로 취급되는 등록 사용자는 출정하여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한 소송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제137조 등록부의 기재사항 및 등록관에 의한 사항의 증거력 (1) 등록부의 기재사항 또는 등록관이 인증하고 상표청의 날인이 있는 제148조(1)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등본은, 모든 법원 및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 입증 또는 원본의 제출을 없이 증거로 채용될 수 있다. (2) 본 법 또는 규칙에 의해 등록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그 권한을 가지는 등록 사항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하여 등록관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명서는, 해당 기재 사실 및 그 내용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일응의 증거로 본다.	
		제138조 등록부 등의 제출을 강제 당하지 않는 등록관 및 기타 공무원 등록관 또는 상표등록청의 기타 공무원은, 자신이 해당 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등록부 또는 자기가 보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중인 기타 서류의 제출을 강제 당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 법에 의해 교부되는 인증 등본의 제출에 의해 입증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않는 이상 상기 인증 등본에 기재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서 출정하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않는다.	
		제139조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요청 권한 (1)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인도 국외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어 인도에 수입되는 상품 또는 인도 국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상품으로서 고시로 지정된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고시로 정한 공포일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제조 또는 생산된 국가 또는 장소 또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의 명칭 및 주소의 표시를 첨부해야 하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2) 해당 고시에서는 그 표시 방법 즉, 상품에 표시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방법에 따르는지 여부 및 표시가 필요한 시기 및 경우 즉, 수입 당시에만 필요한지 아니면 그에 더하여 도소매를 불문한 판매 당시에도 표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3) 본 조에 의한 고시에 대해서는, 관계 상품 취급업자, 제조자, 생산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그 공포의 신청이 없는 한 또는 조사 여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부를 불문하고, 중앙정부가 고시를 공포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포하지 아니한다. (4) 1897년 일반 조항법(General Clauses Act) 제23조의 규정은, 이전에 공포된 조건에 따라 규칙 제정 또는 부칙 제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본 조에 의한 고시의 공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 본 조에 의한 고시에 대해서는, 인도 국외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어 인도에 수입된 상품으로서 수입 당시 세관장이 수출을 예정한 상품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인도에서 적재 후인지, 인도를 통과한 후인지 또는 그 외의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0조 허위 상표를 교부한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요구 권한 (1)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권자는, 상품의 수입이 제29조(6)(c)에 의해 침해를 구성할 때는, 그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할 취지를 관세 징수관에 대해서 서면에 의해 통지할 수 있다. (2) 상표 보호를 위해 1962년 관세법 제11조(2)(n)에 의한 중앙정부의 고시에 의해 수입을 금지되고 있어 수입되면 동법에 의해 몰수되어야 하는 상품이 인도에 수입되었을 경우, 세관장은 신청에 근거하여 제기 대상 상표가 허위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상품의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그 상품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취지를 명하는 한편, 그 상품에 대한 인도 전용 출하인 및 인도에 있어서의 수취인의 명칭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할 취지를 명할 수 있다. (3)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14일 이내에 전항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는 경우, 5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본 조에 근거하는 상품의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세관장은 해당 상표의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에 통지할 수 있다.	
		제141조 효력의 증명 심판부에 있어서의 등록부 경정의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상표 등록의 효력이 쟁점이 되어 등록 소유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있는 경우, 심판부는 해당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증명서가 교부된 경우, 상기 효력이 문제되는 그 후의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상표 등록의 효력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확정 명령 또는 판결을 받은 상기 소유자는, 자신의 전 소송비용, 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기 명령 또는 판결이 충분한 이유에 의해 이와 다른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42조 법적 절차에 관한 근거 없는 위협 (1) 등록상표 또는 등록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상표와 관련하여, 답장, 광고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침해 소송 또는 절차 또는 기타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 상기 협박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협을 받은 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협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고 및 해당 위협의 속행에 대한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가 받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위협한 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 및 소송에서 상기 행위로 인해 상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상기 행위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납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에 대해서는 상표의 등록 소유자 또는 제52조(1)에 의해 행동하는 등록 사용자가 상표 침해와 관련한 상대방에 대해 상당한 주위를 기울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조는 소송의뢰인을 위해서 직업상의 자격으로 변호사 또는 등록상표의 대리인에 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상기 대리인에 대해 본 조에 의한 소송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4) (1)의 규정에 근거하는 소송은 지방법원보다 하급의 법원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44조 참작되어야 할 거래 관습 등 상표에 관한 소송과 관련하여, 심판위원회는 거래의 관습 및 타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 관련 상표, 상호 또는 외장을 증거로 채용할 수 있다.	
		제146조 무권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의해 등록된 표장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위임을 받지 않고 자기의 명의로 표장을 사용하거나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때는, 해당 소유자는 출원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거나 자신에 대한 양도로써 상기 표장의 등록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등록부의 취소 또는 경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기 조치는 해당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해당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47조 색인 등록관의 지휘 감독하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보관해야 한다. (a) 등록상표에 대한 색인 (b) 등록출원이 실제로 계속 하고 있는 상표의 색인 (c)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명칭의 색인 (d) 등록 사용자의 명칭의 색인	
		제149조 의회에 제출해야 할 등록관의 보고서 중앙정부는 동 법에 의한 또는 동 법에 따른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직무수행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매년 1회, 의회 양 원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	
		제151조 제XII장의 일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 제외 제XII장의 어떤 규정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a) 동 장에 규정이 없는 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서의 면책 (b)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 대해 완전한 증거 개시를 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질문 또는 심문에 답변하는 것을 거절하는 권한의 부여. 다만, 그 증거개시 또는 답변은 동 장의 규정 위반에 대한 고소에 대해 해당하는 자에 대한 증거로 하거나 1962년 관세법 제111조(d)에 의해, 한편, 동법 제11조(2)(n)에 의해 수입상품에 관한 상표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고시한 상품의 몰수에 관한 동법 제 112조(h)에 대한 증거로 채용되지 아니함. (c) 인도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어떤 종업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였으며 고소인의 요구에 의해 또는 고소인을 위해 해당 사용자에 관한 정보 및 그 사람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한 종업원을 고소 또는 처벌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제152조 1908년 인도 등록법에 근거해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의 소유권에 관한 선언 1908년 인도 등록법에 불구하고, 등록상표 이외의 상표에 대한 어떤 사람의 소유권 또는 권원을 선언하거나 선언하는 취지로 여겨지는 서류는 동 등록법에 따라 등록 받을 수 없다.	
		제153조 동 법의 규정에 의해 구속을 받는 정부 동 법의 규정은 정부를 구속한다.	
		제156조 장애를 제거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1) 동 법의 규정을 실시하는데 장애가 생겼을 때는, 중앙정부는 관보에 고시되는 명령에 의해, 해당 장애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동 법의 규정과 상반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동 법의 시행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동 조에 의한 명령을 발할 수 없다. (2) 본 조에 의한 모든 명령은, 즉시 의회의 각 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57조 규칙 제정 권한 (1) 중앙정부는 관보 고시에 의해, 이전에 공포된 조건에 따라 동 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특히, 상기 규칙은 앞서 본 권한의 일반원칙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다음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규정될 수 있다. (i) 제6조(1)에 의해 상표등록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컴퓨터용 플로피 디스크 또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디스켓 또는 동조(2)에 의한 다른 전자 형식의 기록의 보존상 준수해야 할 안전 보호 조치 (ii) 제8조(1)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의 알파벳순서 색인의 공고 방법 (iii) 등록관이 제13조에 의한 국제적 독점불가 명칭에 해당하는 말을 공고하는 방법 (iv) 제16조(5)에 의한 연합 해제의 신청 방법 (v) 제18조(1)에 의한 상표 등록의 출원 방법 (vi) 제20조(1)에 의한 등록출원의 공고 방법 및 동조(2)에 의한 정정 또는 보정의 공고 방법 (vii) 제21조(1)에 의한 신청 방법 및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 통지 방법, 동조 (2)에 의한 답변서 송달 방법 및 동조(4)에 의한 증거 제출의 방법 및 그 기간 (viii) 제23조(2)에 의한 등록증 양식 및 동조 (3)에 의한 출원인에 대한 통지 방법 (ix) 제25조에 의한 갱신 및 회복의 신청 양식 및 해당 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 각 출원에 대한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 등록관이 동조(3)에 의해 통지를 하는 시기 및 해당 통지의 방법 (x) 제40조(2)에 의한 사정 진술서의 제출 방법 (xi) 제41조에 의한 상표의 소유자에 의한 신청 방법 (xii) 제43조에 의한 증명표장의 양도 또는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이전의 신청 방법 (xiii) 제45조(1)에 의한 등록관에 대한 권원 등록의 신청 방법 (xiv) 제46조(4)에 의한 신청을 해야 할 방법 및 기간 (xv) 제47조(2)에 의한 신청 방법 (xvi) 제49조(1)에 의한 신청서, 서류 및 해당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기타 증거 및 동조(3)에 의한 통지 방법 (xvii) 제50조(1)에 의한 신청 방법, 동조(2)에 의한 통지 방법 및 동조(3)에 의한 등록 취소의 절차 (xviii) 제57조(1) 및 동조(2)에 의한 신청 방법, 동조(4)에 의한 통지 방법 및 동조(5)에 의한 경정 통지의 송달 방법 (xix) 제58조에 의한 신청 방법 (xx) 제59조(1)에 의한 신청 방법, 동조(2) 및 동조(3)에 의한 신청의 공고 방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xxi) 제60조(2)에 의한 공고 방법 (xxii) 제63조(2)에 의해 규약에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xxiii) 제71조(1)에 의한 출원 방법 (xxiv) 제73조에 의한 신청의 공고 방법 (xxv) 제77조에 의한 신청 방법 (xxvi) 제79조에 의한 상품의 종류 (xxvii) 제80조(2)에 의한 조건 및 한정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xxviii) 제82조에 의한 견본에 의한 직물의 품질에 대한 결정 (xxix) 제88조(1)에 의한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에게 지불해야 하는 급료, 수당 및 기타 취업 조건 (xxx) 제89조(3)에 의한 심판장, 부심판장 및 그 외 심판관의 부정행위 또는 무능력에 대한 조사 절차 (xxxi) 제90조(2)에 의한 심판부의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의 급료, 수당 및 기타 취업 조건 및 동조(3)에 의한 심판부의 공무원 및 기타 직원의 직무 수행 방법 (xxxii) 제91조(3)에 의한 심판 청구의 양식, 증명 방법 및 수수료 (xxxiii) 제97조(1)에 의한 심판부에 대한 신청서 양식 및 기재사항 (xxxiv) 제127조(c)에 의한 심사의 신청 방법 (xxxv) 제128조에 의해 등록관에 대한 그 재량권 행사 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 (xxxvi) 제131조(1)에 의한 신청 방법 및 수수료 (xxxvii) 제133조(1)에 의한 신청 방법 및 동조(2)에 의한 해당 신청 취하 기간 (xxxviii) 제145조에 의해 상표 대리인 위임 방법 및 상표 대리인 등록 방법 (xxxix) 제148조(1)에 의한 서류의 열람 조건 및 동조(2)에 의해 등록부의 등록 사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항의 인증 등본 신청에 대한 수수료 (xl) 제150조에 의한 출원, 등록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수수료 및 할증 수수료 (xli) 규정을 필요로 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 (3) 본 조에 의해 부여된 규칙 제정 권한은 (2)의(xxix) 및 (xxxi)에 의한 사항에 대해 소급 효과를 주는 권한을 포함한다. 다만, 소급 효과는 본 법의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으며, 해당 규칙이 적용되는 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규칙에는 적용이 없다. (4) 동 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각 규칙은, 그 제정 즉시 개회 중인 의회의 각 원에 대해 제출하여 30일의 기간 동안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며, 해당 기간은 1 회기 또는 2 이상의 계속 회기에 걸칠 수 있으며, 해당 규칙을 제출한 회기 직후의 회기 또는 상기 계속 회기의 만료 전에, 양 원이 해당 규칙에 어떠한 수정을 가하거나 해당 규칙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합의했을 때는, 이 후 해당 규칙은 그에 따라 수정된 내용대로만 효력을 가지거나 효력을 갖지 않게 된다. 다만, 어떠한 수정 또는 무효화도 해당 규칙에 의해 이미 완료된 사항의 효력을 해치지 아니한다.	
		제158조 개정 부칙에 규정된 법령은, 그에 규정된 방법에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따라 개정한다.	
		제159조 폐지 및 유보 조항 (1) 1958년 무역 및 거래 표장법은 본 법에 의해 폐지한다. (2) 1897년 일반 조항법에 포함된 규정을 해지는 일 없이, 1958년 무역 및 거래 표장법에 의해 제정되거나 공포되거나 부여되거나 수행된 고시, 규칙, 명령, 요건, 등록, 증명서, 통지, 결정, 결의, 지시, 승인, 인가, 승낙, 신청, 청구 또는 기타 사항과 관계된 것으로서, 본 법의 시행 당시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며, 본 법에 대응하는 규정에 의해 제정, 공포, 부여되거나 수행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동 법의 규정은, 동 법의 시행 당시 실제로 계속 중인 상표등록출원, 해당 등록출원에 수반하는 절차 및 그 등록출원에 대해 부여되는 등록에 대해 적용한다. (4) 제100조의 적용에 있어, 동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본 법이 가결되지 않았던 경우와 같이 동 법원에 계속될 수 있다. (5) 동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상표의 특정 사용이 동 법의 시행 전에 등록된 상표의 침해가 아닌 경우 해당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은 동 법에 따르는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한다. (6)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의 시행 전에 등록된 상표등록의 만료일은 해당등록 또는 갱신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로 본다. 다만, 1958년 무역 및 거래 표장법 제47조에 의한 방어 상표의 등록은, 그 시행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등록 또는 갱신 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제76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호의 일반적인 요건 동일한 사업 분야 및 지역의 다른 사업체와 구분되는 상호의 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상호는 보호될 수 있다
			제77조 상호로서 보호될 수 없는 대상 국가 기관, 정책 기관, 사회·정책 기관, 사회 기관, 사회·전문 기관 또는 사업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를 나타내는 것은 상호로 보호될 수 없다.
			제78조 상호의 식별력 상호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사용의 결과로서 널리 공지된 것을 제외하고, 고유 명사로 구성될 것 2. 동일한 사업 분야 및 지역의 다른 사람에 의해 이전에 사용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을 것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3. 상호의 사용일 이전에 보호되고 있던 지리적 표시 또는 타인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을 것
			제119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처리 기한 1.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방식에 대해 심사되어야 한다. 2.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은 다음의 기한 내에 실체에 대해 심사되어야 한다. a)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 청구가 공표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발명 등록 출원의 공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실체 심사 청구가 공표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출원의 실체 심사 청구일로부터 12개월 b) 산업디자인, 표장 및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출원의 공표일로부터 6개월 3.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재심사 기한은 최초 심사 기간의 2/3이며, 복잡한 경우에는 최초 심사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될 수 있다. 4. 출원의 보정 또는 보충이 가능한 기한은 본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기재된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201조 지식재산권의 검사 및 평가 1. 지식재산권의 검사 및 평가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평가 및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이 지식재산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2. 국가 해당 기관은 그 기관들에 접수된 사건들을 취급하기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검사, 평가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3. 지식재산권 보유자 및 기타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은 그들이 법적 권리 및 이익의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의 검사, 평가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4. 정부는 지식재산의 검사 및 평가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1조 행정적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1. 이하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행정적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고객 또는 사회에 손해를 입힌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실시 b)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의해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c) 본 법의 제213조에 기재된 지식재산 위조 상품의 제조, 수입, 운반, 및 교역 또는 양도 등의 행위 d) 보호 표장 또는 보호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나 지리적 표시를 가지는 물품을 제조, 수입 및 교역하는 행위 2. 정부는 행정적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행정적 구제의 형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및 정도, 그리고 그러한 행정적 구제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특정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부정 경쟁 행위를 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법규에 규정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214조 행정적 벌칙 및 구제 1. 본 법의 제211.1조에 기재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은 침해를 중단하여야 하고 다음의 주요 구제들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이다. a) 경고 b) 벌금 2. 침해의 특성 및 정도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기관 및 개인은 다음의 보상 구제를 할 책임이 있다. a)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지식재산 위조 상품, 주로 지식재산 위조 상품의 제조 또는 교역 위한 재료, 원료 및 기구의 이용, 폐기, 분배의 강제로서, 그러한 분배 및 이용은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의한 권리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b) 침해 요소를 제거한 후에, 지식재산 위조 상품, 주로 지식재산 위조 상품의 제조 또는 교역 위한 재료, 원료 및 기구를 베트남 영역 외로 이송하거나 재수출하도록 하는 강제 4. 본 조의 제1항의 제b호에 기재된 벌금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베트남
			발견된 침해 상품의 가치와 적어도 동일하여야 하며 그 가치의 5배를 넘지 못한다. 정부는 침해 상품의 가치 결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15조 예방 수단의 적용 1. 이하의 경우에, 기관 및 개인은 행정적 구제의 적용 및 본조의 제2항에 따라 행정적 벌금을 부과할 것을 해당 국가 기관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a)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는 고객 또는 사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b) 책임을 회피하는 침해자 또는 침해 수단이 분배될 위험이 있는 경우 c) 행정적 구제의 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2. 행정적 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행정적 예방 수단은 다음을 포함 한다. a) 관련 개인의 일시적 억류 b) 침해에 이용된 수단 및 기구, 상품의 임시 거치 c) 관련 개인의 수색 d) 침해 상품, 수단 및 기구가 저장된 장소의 수색 dd) 법 및 규정에 따른 기타 행정적 예방 수단

제3장

국가별 상표 관련 판례

제1절 중국

제2절 인도

제3절 베트남

제1절

중국

중국의 상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지만, 이러한 상표 법률의 해석이나 상표 관행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표의 출원 · 등록이 이루어지는 국가로 상표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표 분쟁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례들이 상당히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의 상표 판례들은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권리침해, 유사성 판단, 상표 등록요건 등 핵심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공개된 중국 상표 판례들을 제외하고, 저명상표 희석화, 민사소송 시효,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행위 방조죄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에 관한 판례들을 선별하였으며, 이 중에서 2013년 이래 최근 5년 기간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판례들을 분석 · 수록하였다.

Ⅰ 상품의 동일 · 유사 판단 기준에 관한 봉제용 초크사건

(最高人民法院(2013)行提字第16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4조, 제35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9조, 제31조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베트남	상표법 제73조, 제90조

1. 사실관계

- 화일공사는 2003년 1월 산둥성 하이양시에 설립된 외자 투자기업(한국 자본)으로서, 2003년 3월 5일에 중국 상표국에 아래와 같은 상표(이하 "본건 상표"라고 한다)를 등록 출원함(지정 상품은 제16류 "화필". 출원 번호는 제347499호)

- A씨는 저장성 광양시 호록진화 복장기계창을 운영하며 2004년 3월 8일에 상표국에 대해 아래 상표를 등록 출원함

| 그림 3-1 |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표

<원고의 상표>

<피고의 상표>

- 계쟁상표의 초기 심사 후 공고 기간 내에 화일공사는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함. 2009년 12월 16일 상표국은 (2009) 상표이자 제22988호 재정(再定)을 내놓고, 계쟁 상표 및 본건 상표의 지정 상품은 유사하지 않으며, A씨가 악의적 누락 등록을 실시했다는 것임

- 2010년 1월 21일 화일공사는 계쟁 상표 및 본건 상표의 도형은 같고, 피고 상표의 "HWAIL"는 한국어 "화일"의 알파벳 표기로,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제기함

- 상표평심위원회는 2011년 4월 25일, "상평자(2011) 제07339호 재심사 재정"(이하" 제07339호 재정"이라 한다)을 선고하고, ① 계쟁상표와 본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각각의 지정상품이 기능, 용도, 유통채널, 대상 소비자 등에서 같지 않아, 유사상품이 아니라는 점, ② 파일공사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그 상호 및 판다의 도형상표가 중국에서 계쟁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에 이미 '재봉용 초크'등의 유사 상품에 대해 선행 사용된 한편,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기엔 부족한

점, ③ 계쟁상표 및 파일공사의 상호의 차이도 분명한 점, ④ A씨가 악의를 가지고 계쟁상표를 등록하였다는 파일공사의 주장이 사실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는 게쟁상표의 등록을 허여함

- 화일공사는 제2007339호 재정에 불복해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2. 법적쟁점

-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의 유사상품 · 유사역무 판단의 기준

3. 판시사항

1) 제1심 법원

- 제1심 법원은 본건의 쟁점은 계쟁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28조, 제31조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쟁상표의 지정상품은「재봉용 초크, 컬러초크(크레용)」등의 상품이며,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화필」과 기능, 용도, 유통채널, 대상 소비자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지 않아 유사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쟁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28조에 반하지 않으며, 상표평심위원회의 제07339호의 재정을 유지한다고 판결을 내림

- 한편 화일공사가 이의 재심단계에서 제출한 증거는 모두 계쟁상표의 출원일 이후에 대한 증거이며, 또 화일공사는 계쟁 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재봉용 초크, 컬러초크(크레용)」등의 상품에 대해서 계쟁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선사용하였다는 것과 해당 상표가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파일공사가 소송단계에서 제출한 증거는 이의재심사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이며, 이와 같은 증거는 거증의 권리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익결과를 부담하게 됨)

- 화일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였음

2) 제2심 법원

- 제2심 법원은 우선, 지정상품 및 역무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상품의 기능, 용도, 생산부문, 유통채널, 대상소비자 등이 동일한지 여부, 비교적 큰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관련 공중이 두 상표의 지정 상품 또는 역무 사이에 특정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지 여부도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시함
- 또한 「유사 상품 및 역무 구분표」는 유사 상품 또는 역무를 판단하는데 참고하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계쟁상표의 지정상품은 「봉제용 초크, 칼라 초크(크레용)」등 및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 「화필」은, 기능, 용도, 생산부문, 유통채널, 대상 소비자의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존재하고, 「유사상품 및 역무구분표」에 따르더라도 각각 다른 유사군에 속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유지하였음
- 이에 화일공사는 제2심판결에도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함

3)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법원은 재심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판결을 환송하였음
- 첫째로 본건의 쟁점은 계쟁 상표의 지정 상품 「봉제용 초크, 칼라 초크(크레용)」 등 및 본건상표의 지정 상품인 「화필」이 유사 상품인지 여부임. 이 점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 「상표권의 부여 · 권리확정에 관한 행정사건 심리에서의 약간 문제에 대한 의견」 제15조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관련 상품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기능, 용도, 생산 부문역무의 판단을 참고로 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①'구분표'는 유사 상품을 판단할 시 참고자료이나 유일한 판단기준은 아님, ② 상표의 주된 기능은 상품 또는 역무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므로 출처의 혼동을 피하는 것은 상품 또는 역무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상품의 물리적 속성만을 가지고 판단기준으로 할 수 없음. ③ 본건 상표의 화일공사 및 계쟁상표의 등록자인 A씨는 모두 의류 보조재료 업계의 사업자이며, 동시에 계쟁상표의 지정상품은, 「봉제용 초크, 칼라초크(클레용)」이며 주로 의류 보조 재료 제작과 관련한 것이므로 본건은 의류 보조 재료 산업, 의류 제조 업계 종사자

가 제품이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공중”임, ④ 본건 상표의 지정 상품은 「화필」이며, 일정한 매개에 선을 그어 적는 또는 도안을 표시하는 도구이며, 「봉제용 초크, 칼라초크(크레용) 등」과 비교하면 형상 · 재질 등의 물리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능은 기본적으로 동일함, ⑤ 따라서 의류보조 재료 산업, 의류 제조 업계 종사자에서 보면 분쟁 상표의 지정 상품 “예용 초크 컬러 초크 (크레용)” 등과 본건 상표의 지정 상품 “화필”는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로 계쟁상표 및 본건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인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해보면, 계쟁상표는 판다의 도안 및 영어 알파벳 “HWAIL”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또, 본건 상표는 판다의 도안 및 한국 문자 “화일”로 구성되어 있음. 최고인민법원에 의한 “상표 민사 분쟁사건의 심리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 제9조에 근거하면 관련 공중의 일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이격적으로 관찰해보면, 계쟁상표 및 본건상표의 주요 부분은 동일하고 전체적 구조가 유사하여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계쟁상표의 등록이 상표법 제3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히 계쟁 상표는 선행상호권 등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여야 함. 화일공사가 이의재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증거는 이의재심사 단계에서 상표평심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음. 계쟁상표의 주요 부분은 판다의 도안이며, 화일공사의 상호의 주요부분은 “화일”이라는 문자이며, 양자의 차이는 분명함. 따라서 선행상호권을 침해한다는 화일공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상표평심위원회에의한 제07339호 재정, 및 본건 제1심, 제2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표평심위원회가 다시 재심사 재정을 실시하도록 명함

4. 해설

- (검토배경) 중국에서 지정상품 · 역무의 유부를 판단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유사상품 및 역무구분표”가 기준이 되나, 구분표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아님

- (분석 및 시사점) 중국에서는 상표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사 상품 및 역무

구분표"를 기준으로 비유사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으나, 이 사건은 구분표 외에 기타 사정들을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최고인민법원이 상표평심위원회 재정, 1심 판결 및 2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점도 의미가 있음

주제어 유사상품 판단, 유사상품 · 유사역무 구분표, 상표유사 판단, 상표침해

Ⅱ 상표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에 대한 판단

(上海知的財産権法院 (2015)滬知民終字第161号民事判決書)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2조, 제108조
중국	상표법 제48조, 제57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02조
베트남	상표법 제129조,

1. 사실관계

- 개덕부(開德阜: kai de fu)사는 1998년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건축재료, 화학공업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임. 개덕부사는 2002년에 「潔水」(이하 "결수 또는 본건상표"라고 한다)라는 상표를 등록을 받았음(지정상품은 "제17류 플라스틱관, 널판장, 판자" 등. 등록번호 제1720019호). 소외 독일의 회사 아쿠아섬사는 음용수 전용 플라스틱관 및 관련 부품, 냉온수관 및 관련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제G695810호의 상표 "Fusiotherm" 및 제G698102호 상표의 "aquatherm"의 등록을 보유하고 있었음
- 2006년 4월 6일, 개덕부사는 아쿠아섬사와 독점 대리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쿠아섬사의 중국 대리점으로서 동사 제품의 독점적 대리 판매권을 취득하였으며, 2007년에는 관재제품의 총대리점으로 상하이, 난징, 산둥, 우시 등의 지역 판매점 및 복수의

건축 재료 판매 체인점에서 판매하였음. 개덕부사는 같은 해 6월부터는 잡지 '잔디정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독일 결수, 독일 완성품 수입 결수 브랜드 PP-R관 시스템" "아쿠아섬(aquatham)이 제조하는 결수 브랜드(fusiotherm)PP-R관 시스템, 다음과 같은 훌륭함이 있다""독일 결수(aquatherm)사는 1973년에 창립된" "fusiotherm은 항상 한 걸음 앞서가는 독일 결수 브랜드관 시스템"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에 게재함

- 아쿠아섬사는 2013년 5월 23일, 개덕부사에 제휴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효력은 같은 해 6월 30일자로 효력이 발생함. 동년 7월 1일에 아쿠아섬사는 ① 아쿠아섬사의 새로운 대리점은 활성사(闊盛公司)이며, 「闊盛」이라는 중국어 상표의 사용을 시작함, ② 개덕부사와의 대리관계는 6월말에 종료되었으며 개덕부사는 기존에 개덕부사가 보유한 중국어 상표 「潔水」를 사용하여 아쿠아섬의 제품을 마케팅해 왔지만, 앞으로 「aquatherm - 闊盛」(중국어 「활성」과 영어 「aquatherm」의 중국어 발음이 유사함) 제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그러나 2013년 10월, 개덕부사는 인터넷 상에 독일 결수는 이미 독일활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독일 AquathermGmbH(전 독일결수)는 중국어 표기로서는 「활성」을 사용한다, 독일결수는 개덕부사가 보유한 상표이므로 향후 개덕부사는 aquatherm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제품에 '독일 결수'를 사용해 선전할 것이므로 주의해 주세요라는 등의 정보가 대량으로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과, 중국 검색사이트 "백도"에서 "원독일결수"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로서 "「aquatherm 독일 활성」은 PP-R관의 발명자 및 리딩브랜드다"라는 표제가 노출되고, 링크가 www.aquatherm.cc로 표시됨. 또한 「독일 결수 수도관, 독일 완성품 수입 시스템의 프로」라는 표제가 표기되고 그 링크로 독일결수관, 독일로부터 완성품 수입 시스템 프로라는 표제가 나왔고 그 링크는 www.aqua-scie.com.ca로 표시되었음

- 2013년 11월 개덕부사는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한 '활성사'와 '구소사'가 불성실 광고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게 한 행위는 허위선전으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2. 법적쟁점

- 광고 문구에 타인의 상표를 표시한 것이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3. 판시사항

1) 제1심 법원

- 1심 법원은 이 사안은 ① 인터넷 상에 게재된 정보는 활성사 및 구소사와 관련이 있는지, ② 활성사 및 구소사는 본건 상표전용권을 침해했거나, ③ 활성사 및 구소사의 선전행위가 허위선전에 해당하는지 3가지가 쟁점이라고 판단함
- 1심 법원은 ①에 대해서는 피고 활성사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정보는 제3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활성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URL을 활성사 공식 웹사이트에 링크로 붙인 것은 해당 정보를 이용한 선전행위라 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함
- 1심 법원은 ②에 대해서는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적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포장 및 용기, 상품거래문서 또는 광고선전 등의 상업 활동에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임. 활성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www.aquatherm.cc)에 링크를 붙인 다른 사이트(jiaju.sina.com.cn, home.sh.soufun.com, home.focus.cn) 및 구소사가 그 대리점에 배포한 관재 및 관재시장 희망가격 등의 선전자료 내의 타이틀 및 내용에서 “결수”라는 문자가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사용은 모두 본건 상표가 개덕부사의 소유임을 표명하는 것으로, 아쿠아섬사의 중국 총대리점의 변경 및 마케팅용 상표 · 표장의 변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시함. 따라서 이와같이 사용된 “결수”는 설명 기능을 하는 것일 뿐, 공중에게 있어서는 “결수” 상표는 개덕부사의 것이며, “결수”가 활성사 및 구소사의 상표로 오인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개덕사의 청구를 기각함
- 1심 법원은 ③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 전부터는 개덕부사는 “결수”를 아쿠아섬사의 마케팅 · 판매 · 선전에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수”와 아쿠아섬사 간에 지극히 밀접한 관계를 축적하게 됨. 따라서 공중에 있어서 “독일 결수”란 아쿠아섬사 제품

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성사 및 구소사가 광고에서 아쿠아섬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독일 결수"표장의 사용을 종료하고, 광고에 "원독일 결수"나 "옛 독일 결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쿠아섬사의 중국의 총대리점이 변경되어 개독사가 이미 아쿠아섬사의 제품을 대리하지 않고, 대신에 활성사가 중국에 총대리점이 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일반인이 통상의 주위를 기울여 읽으면, 개덕부사의 제품과 활성공사 · 유럽소공사의 제품에 대해 혼동이 생기지 않고, 양자의 관계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는 일도 없다고 설시하면서, 활성사의 웹사이트 www.aquatherm.cc에 있어서, 링크된 문장의 타이틀로서 '원독결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활성사는 광고 및 마케팅에 대해 신중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소사는 선전 자료에서 소비자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양자의 브랜드 표장과 제품, 원산지 설명을 일부러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대리점 변경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음

- 개덕부사가 총대리점으로 되어 있는 사이에 '결수'와 아쿠아사무사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쌓아올린 것에 비추어 보면 아쿠아섬사의 중국 대리점이 변경되어 원래의 상표 "결수"가 아쿠아섬사의 제품에 향후에는 사용되지 않는 점은 중요사항이며, 공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이루어진 중요한 사항에 대한 광고는 공중에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아쿠아섬사, 개덕부사, 활성사는 이러한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공개해야 함. 따라서 관련 사항의 개시를 통해 이루어진 중요사항의 광고는 대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개덕부사의 청구를 기각함

2) 제2심 법원

- 2심 법원은 본건에서 ① 활성사 및 구소사의 행위가 상표권침해인지, ② 활성사와 구소사의 행위가 허위광고에 해당하는지 2가지 쟁점이 있다고 판단함

- 2심 법원은 ①에 대해서, 상표의 기본적인 기능은, 상품 · 서비스의 출처의 식별에 있음. 사업자가 상업활동에 있어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출처 식별기능을 해치고, 공중에서 상품 · 서비스의 출처

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업 활동을 하면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할 뿐이고, 또한 관련 공중에게 상품 ·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의 이러한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의 정당한 사용행위임.또 활성사 및 구소사에 의한 본건 상표의 사용은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됨

- 즉 2013년 7월 1일의 도래 전에, 개덕부사는 본건 상표를 아쿠아섬의 제품 마케팅에만 사용하였으므로, 장기간의 사용에 의해 본건 상표와 아쿠아섬의 제품 간에 안정적인 1:1의 관계가 형성되었음. 관련소비가 입장에서는 본건 상표는 아쿠아섬사의 제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음. 본건 7월 1일 이후는 아쿠아섬사 제품의 중국 대리점이 개덕부사에서 활성사로 변경되며, 개덕부사는 본건 상표를 계속 사용하였고, 그 것은 타사와의 새로운 제휴에 의한 사용이었음. 따라서 활성사와 구소사는 이점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활성사와 구소사가 광고함에 본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개덕부사의 상업적인 명성에 편승할 의사가 없고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또 활성사 및 구소사에 의한 본건 상표의 사용은 합리적이며, 관련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한편 ②에 대해서, 활성사 및 구소사에 의한 “독일활성(전 독일 결수) 변하지 않는 품질”, “전 독일 결수, 현독일활성” 등의 광고 표현은, 확실히 문자로 기술된 부분에 부정확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허위 광고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 이유로 활성사와 구소사의 광고 표현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상업광고를 접할 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므로 광고내용에 오해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지는 광고내용 전체가 공중에게 오해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특정어휘 또는 특정 문장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됨. 활성사 및 구소사는 그 광고 표현으로 제품 대리점과 브랜드 변경의 배경 등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련 공중들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광고 내용의 본의를 이해할 수 있고, 활성사의 제품 출처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없음. 따라서 법원은 활성공사 및 구소공사의 행위는 허위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2심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

4. 해설

• (분석 및 시사점) 장기간 중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함에 의해 본건 상표와 아쿠아섬사의 제품 사이에 안정된 1:1 관계가 소비자 사이에서 형성된 경우, 총대리점 변경 및 마케팅용 상표의 변경을 설명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으로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임. 본 사례는 중국의 대리점 등의 변경이나 합작 · 제휴 관계의 해소 등은 비즈니스상의 이해 대립을 발생시키고, 본건과 같은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주제어	설명적 사용, 상표침해, 상표적 사용, 허위광고

Ⅲ 상표등록 전용권 침해에 근거한 민사소송의 시효기간의 산정기준

(上海知的財産権法院(2015)沪知民終字第6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중국	상표법 제60조, 제63조, 제65조
인도	상표법 제52조, 제135조
베트남	상표법 제9조, 제125조, 제198조, 제202조, 제208조

1. 사실관계

• 버버리사는 중국에서 BURBERRY 등록상표(지정상품은 제25류 의복 등록번호는 75130호) 및 제G73385호 등록상표(지정상품은 제25류 코트, 레인코트, 블라우스, 쇼트코트, 의복 등)를 보유하고 있음. 2014년 3월 4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제G733385호 상표에 대해 의류제품에 사용되는 저명상표로서 인정함

- C는 2009년 10월에, 유흥업소 등에 버버리 상표를 부착한 모방품 의복을 저가로 판매하였고, L은 모방품을 촬영하여 C의 행위를 도왔음. 이에 공안당국은 2012년 3월에 버버리상표가 부착된 의류 329건을 압수하고, 버버리사에 확인을 구하였으며 모두 모방품으로 판명이 났음. 2009년 10월에 사건발생까지 C와 L이 판매한 모방품의 판매가액은 1,934,433위안에 달하였고, 이 가운데 버버리 상표를 부착한 모방품의 판매가액은 64,832위안에 달하였음. 2012년 5월에 상해시 양포구인민법원은 C와 L에 대하여 모방등록상품판매죄로 기소하고, 상품 범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심리중 부당이득 150,000위안을 반환하도록 하였고, 이후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만위안, L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벌금 5만위안을 선고함

- 2014년에 버버리사는 C 및 L을 상대방으로 하여 등록상표전용권침해의 민사소송을 상해시 양포구인민법원에 제기하였고, 2012년 8월에 법원은 모방등록상표상품판매죄의 형사판결서를 근거로 하여, C 및 L에게 등록상표전용권침해행위를 금지할 것과 연대하여 버버리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의 합계 100만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함

- 이에 대해 C 및 L은 형사소송에서 이미 부당이득 전액 반환하고 벌금을 지불하였음을 항변함. 또 버버리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안당국이 압수한 의복에 대해 감정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시점에서 C 및 L의 권리침해 행위를 알고 있으며 상해시 갑북구인민검찰원이 공소장에 날인하는 날(2012년 5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버버리사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2. 법적쟁점

- 버버리사의 소 제기시에는 소송시효가 경과했는지 여부 및 소송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C 및 L가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

3. 판시사항

1) 제1심 법원

- 법원은 소송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C 및 L 에게 버버리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인 15만 위안 및 합리적 비용에 대해 1.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쟁점 1에 대해 법원은 버버리사는 2012년 3월 21일 C 및 L이 범죄혐의로 공안당국에 입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권리침해행위의 관련증거 등이 인정될지 여부는 형사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음. 소송 시효기간은 해당 형사판정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인 2012년 8월 24일부터 기산되므로, 버버리사의 제소는 소송시효를 경과하지 않았음
- 쟁점 2에 대하여 법원은 본 건에 있어서 버버리사는 2014년 5월 1일 이후에 본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2년 3월 20일 이후에도 C와 L이 본건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본 건은 2013년 개정전의 상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전제하였음. 버버리사는 (2012) 양형초자제41호 형사판결서에서 인정된 피고인 C 및 L의 범죄사실을 본건 민사소송의 구체적 권리침해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버버리사가 C 및 L에 대해 권리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1심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았음. 한편 버버리사가 C 및 L에 대해 요구하는 경제적 손실의 배상 소송 청구에 관해서는 버버리사는 권리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거증할 수 없고, 또 권리를 침해받은 기간에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없으므로 C 및 L 에게 버버리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인 15만 위안 및 합리적 비용에 대해 1.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2) 제2심 법원

- 피고 C 및 L 상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4. 해설

- (검토배경) 상표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의

소제기기간의 기산점 및 손해배상의 산정과 관련한 쟁점 검토

- (분석 및 시사점) 등록상표전용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로서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용차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음. 중국에서 민사소송의 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거나 알았을 때부터 2년간이나, 본건과 같이 권리침해자의 행위가 형사 수사 수속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소송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료를 기다려 소송시효의 중단사유가 없어졌을 때에 소송시효기간은 다시 기산되므로, 권리가 침해된 것을 알거나 알았을 때부터 이미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반드시 권리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음

주제어 상표전용권침해, 시효기간, 형사소송, 민사소송, 시효의 중단

Ⅳ 상표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北京知识产权法院 民事判决书 (2017) 京 73 民终 1991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중국	상표법 제60조, 제63조, 제65조
인도	상표법 제52조, 제135조
베트남	상표법 제9조, 제125조, 제198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8조

1. 사실관계

- FILA Sports社(이하 "원고")는 제25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 "," ", "斐樂 " 상표권자와 독점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스포츠 의류 기업임

- 원고는 중위안 신발(이하 "피고1")가 생산 · 판매하고, 중위안 전자상거래(이하 "피고

2")가 운영을 담당한 징둥닷컴(이하 "피고4")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신발의 " ", " "표지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이하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2. 법적쟁점

- 원고의 등록상표 "FILA", "斐樂" 가 피고들이 사용한 표지인 "GFLA", "飛樂"와 동일·유사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여부

3. 판시사항

-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은(이하 "기층인민법원") 피고1,2,3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계쟁제품 생산·판매 금지, 계쟁제품 및 관련 포장재 폐기처분, 계쟁제품을 소개·홍보하는 웹사이트 삭제, 계쟁제품이 판매된 JD.com의 플래그십스토어 링크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명령함
- 기층인민법원은 원고의 경제적 손실 791만 위안과 침해저지 비용 41만 위안을 인정하여, 피고1,2,3에게 손해배상액 연대책임을 선고하는 한편 일간지에 침해 사실에 대한 성명을 게재하라고 명령하였음
- 다만, 기층인민법원은 피고들의 유명상품 특유포장·장식(知名商品特有的包装、装潢) 침해와 피고4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음((2017)京0102民初2431号)
- 피고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동 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함

4. 해설

- (분석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동종업계 인지도를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동종 품목에 사용한 경우 그 유사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 오인·혼동이 유발되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것임

- 침해행위의 “주관적 악의가 명백(主观恶意明显)”하고 “침해 정황 이 엄중(侵权情节严重)”하여 그 동안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최대 3배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된 사례로서 의의를 가짐

주제어 상표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베이징 지식재산법원, 주관적 악의

V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침해행위 방조에 대한 판단

(中华人民共和国上海知识产权法院 民事判决书 (2018)沪73民终277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8조
중국	상표법 제57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02조
베트남	상표법 제129조

1. 사실관계

- 원고는 제18류 가방, 트렁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제G623685호(이하 “상표①”), 제1927130호(이하 “상표②”) 상표의 권리자이다. 상표①은 1994년 7월 7일, 상표②는 2002년 11월 14일에 중국 상표국에 등록되었음
- 2016년 3월 2일, 원고는 성후이社(이하 “피고2”)와 후이양社(이하 “피고3”)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회 치안 종합처리 사무실 관할”의 지하철 상권에서 우신밍(이하 “피고1”)이 판매한 가방(이하 “계쟁상품”)을 200위안에 구매한 뒤 공증 처리하였음
-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2,3에게 i) 전면적인 상가 조사 및 MCM 상표 침해 저지를 위한 유효조치와 함께 ii) 위조상품 판매자가 더 이상 침해물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보증서 체결을 골자로 한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10일 이내 우편으로 처리 현황 공지를 요구하고, 2016년 4월 21일에 피고2,3은 해당 경고장을 수령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6년 6월 21일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자신의 상표와 동일한 표지의 가방을 200위안에 구매함

- 원고는 계쟁상품이 자신의 상표를 침해한 위조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에 소를 제기함

2. 법적쟁점

- 위조상품이 판매된 상권의 운영자가 침해행위 방조로 인한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3. 판시사항

1) 상하이 인민법원

-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이하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2,3에게 원고 상표①,②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와 함께, 손해배상액 5만 위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음
-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2,3의 상표권 침해 및 연대책임을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허가없이 상표권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및 상표권 고의침해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여 침해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상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공증서에 따르면 피고1이 판매한 계쟁제품은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였고, MCM 정품과 큰 가격차가 있어 위조상품임이 인정되므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이 피고3과 체결한 '입점 운영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매장 임대인은 매장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일지 열람 결과 임대인인 피고3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음
- 이러한 기층인민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피고들은 상하이 지식재산법원에 항소함

2) 상하이 지식재산법원

- 상하이 지식재산법원은 피고1이 계쟁상품에 대한 합법적 출처와 제공자를 입증할 수 없고, 피고2,3은 피고1이 침해물품을 판매한 지하철 상권의 운영관리자인데 원고 측에서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경과한 후 여전히 계쟁상품이 판매되고 있었음
- 피고들이 침해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타인의 침해행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함

4. 해설

- (분석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유명브랜드 상품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뿐 아니라 해당 상권 의 운영관리자에게도 상표권 침해 "방조(帮助)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부과한 사례임
- 법원은 피고1의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상표법 제57조 제3호가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 상품 판매에 해당하고, 피고2,3은 동 법률 제57조 제6호가 규정하는 타인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를 제공해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중국 상표법실시조례 제75조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위한보관 · 운송 · 인쇄제작 · 은닉 · 장소 및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 등을 상표법 제57조 제6호가 규정하는 침해행위 편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18) 법원은 피고2,3이 경고장수령 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주의의무(注意义务)를 다 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주제어 상표권 침해행위의 방조, 중국상표법 실시조례 제75조, 경고장, 주의의무

Ⅵ 선사용 상표에 대한 악의적 선점에 대한 판단

(北京市高级人民 法院民事判决书(2017)京行终 5085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99조
중국	상표법 제14조, 제32조, 제59조,
인도	상표법 제11조, 제12조, 제33조, 제34조
베트남	상표법 제75조

1. 사실관계

- 하이양 허이(和一) 복장 보조재료社(이하, 원고)는 재단용 "팬더표 초크"를 생산 · 판매하는 기업으로, 한국 화일(和一)기업사가 2003년 1월 23일에 설립한 중국공장임
- 화일기업사는 1961년 창립 이래 40년 이상 재단용 초크를 생산해왔으며, 해당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15일, 원고는 본 사건 제3자(詹云霞, 이하 상표 출원인)가 제16류 (재단용)초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熊猫+그림"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을 발견하고, 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선고를 청구하였음
- 2016년 5월 19일, 상표평심위원회는 계쟁상표 출원 전에 원고와 본 사건 제3자가 대리관계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상표법(2001년 개정) 제15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자료로는 원고가 이미 중국에서 재단용 초크 또는 그 유사상품에 "熊猫", "PANDA" 상표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상표가 일정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동 법률 제31조가 규정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한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2. 법적쟁점

- 상표출원인의 계쟁상표가 타인의 선사용 상표에 대한 악의적 선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시사항

-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무효선고청구를 기각한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을 파기하고, 해당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음
- 고급인민법원은 ⅰ) 원고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업체목록, 박람회 간행물 및 영수증, 해관수출신고서, 원고 거래처의 설명 및 구매발주서 등을 참조할 때, 원고가 계쟁상표 출원일 전부터 이미 중국 대륙에서 재단용 초크상품에 "PANDA" 상표를 사용하고 상품 홍보 시 "熊猫牌"划粉(팬더표 초크)라고 칭하였으며, "PANDA", "熊猫牌"划粉가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고급인민법원은 상표출원자의 계쟁상표와 원고의 선사용상표가 비록 전체적인 시각 측면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있으나, ⅱ) 문자와 도형 구성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일반대중이 "재단용 초크" 상품에서 계쟁상표를 접할 경우 쉽게 원고의 선사용 상표를 연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 · 혼동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고급인민법원은 ⅲ) 상표출원인이 원고와 동종업계 종사자로 마땅히 원고의 선사용 상표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용 초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계쟁상표를 출원한 것은 악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4. 해설

- (분석 및 시사점) 상표법(2001년 개정) 제31조는 "타인의 선권리 침해 금지 및 부정한 수단으로의 미등록상표 선점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현행법(2013년 개정) 제32조에 해당함
- 고급인민법원은 타인의 선권리 침해 및 악의적 선점(抢先)이 성립되기 위해선 네

가지 요건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시

- 이 판결은 주지성 있는 한국 기업의 상표를 중국의 동종업계 종사자가 유사한 표지로 출원하여 선점한 사례에 해당함
- 중국 법원이 상표법(2001년 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우리 기업 상표를 선사용상표로 인정하고, 상표출원인의 계쟁상표 등록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주제어 선사용, 중국 상표법 제31조, 주지성, 상표평심위원회

Ⅶ 저명상표 희석화에 대한 판단 기준

(北京知识产权法院 民事判决书(2014) 京知民初字第 143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4조, 제108조
중국	상표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57조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1조, 제29조, 제102조
베트남	상표법 제73조, 제75조, 제129조

1. 사실관계

- 원고 엑슨모빌社(이하 원고)는 제1류 화학원료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①, ②, ③, ④, 제5류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⑤, 제4류 연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⑥, ⑦의 권리자임
- 2014년 4월 27일, 원고는 중국 산둥성 서우광(寿光)시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의 중커농업기술社(이하 피고2) 전시부스에서 화학비료 및 농약제품을 구입하였음
- 원고는 해당 제품들에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지가 사용되고, 전시부스에 배치

된 홍보자료에는 베이농 궈신社(이하 피고1)의 사명과 함께 피고1의 회사소개 및 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웹사이트 역시 "美孚"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 2014년 12월 17일에 피고1,2,3,4를 상대로 하여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액 450만 위안과 신용회복청구를 위한 성명 발표, 계쟁제품 폐기처분 및 몰수를 청구함

2. 법적쟁점

- 저명상표(驰名商标)에 해당하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시사항

-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1,2,3,4에게 원고의 등록상표 침해 금지를 명령하였음
- 다만 고급인민법원은 기존에 피고1,2,3에게 선고된 손해배상액 450만 위안을 300만 위안으로 조정하여 선고하는 한편, 신용회복청구를 위하여 3개월간 성명을 발표하라고 명령한 4개의 웹사이트 중, 이미 폐쇄되거나 이용 불가능한 2개의 웹사이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신용회복청구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4. 해설

- (분석 및 시사점) 저명상표 사법해석 제9조는 "타 지정상품과의 혼동행위(跨类混淆情形)" 및 "희석화 행위(淡化情形)"에 대한 내용인데,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본 사안이 동 사법해석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희석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희석화 행위는 크게 ⅰ) 계쟁제품 을 접한 일반대중이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방면에서 유일하게 저명상표와 권리자를 떠올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일대일 대응관계, ⅱ)

계쟁상표를 보고 일반대중이 원고의 저명상표를 연상할 수 있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사 관계, iii) 일반대중이 계쟁상표와 저명상표를 접하고 이는 서로 무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이 때 세 번째 정황의 경우 일반대중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급, 경영특징, 해당 저명상표 권리자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으로 식별할 수 있음
- 이 판결은 주지 저명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지정상품이 다른 제품에 사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된 사안임
-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이 선정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전형적인 판결사례임

주제어 주지성, 저명성, 상표권 침해, 저명상표사법해석

Ⅷ 기업 명칭의 약칭에 대한 모용출원이 문제된 상표행정분쟁 사건

(最高人民法院(2013)行提字第23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99조
중국	상표법 제32조
인도	상표법 제12조, 제33조, 제34조
베트남	–

1. 사실관계

- 혼다기연공업주식회사(本田技研工業株式会社)는, 1980년에 「혼다(本田)」상표를 출원해 등록(등록번호 163473)을 받았고, 지정상품은, 제12류의 「비행기(양서), 차량, 자전거, 기선, 자동차브레이크, 전동승용차, 차량용엔진, 승용차, 이륜차」 등임. 또 이 회사는 1987년에 「혼다」상표를 출원해 등록(등록번호 314944)을 받음. 지정상품

은, 제12류의 「비행기, 선박, 차량 그 외의 운송수단, 비행기, 선박, 차량의 부품 그 외의 운송 수단의 부품」등임(상기 2건의 등록상표를 합해, 이하 「혼다상표」라고 함)

- 한편, 임엽공사(林葉公司)는 2003년에 「광본(広本) GUANGBEN」(「GUANGBEN」는 중국어 「광본(広本)」의 병음표기이다. 이하 「피이의상표」라고 한다)를 상표 출원하였고, 지정상품은, 제12류의 「자동차, 자전거」 등임
- 법정의 이의신청기간 중 광저우혼다공사(広州本田公司)와 혼다기연공사(本田技研公司)는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표국은 2008년에 결정을 내려 「광본」은 광저우혼다공사의 기업명칭의 약칭이며, 오랜 사용을 거쳐 사회 일반에 높은 지명도를 가지므로 임엽공사가 「광본」을 상표의 중요한 일부로서 출원하는 것은 공중에게 오인을 일으키고 사회도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유로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이의제기를 인정하여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음
- 임엽공사는 상기의 결정에 불복해 상표평심위원회에 행정재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법 제31조의 「선행권리」(중국어 원문에서는 「재선권리(在先權利)」)는 미등록의 기업약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광저우혼다공사가 적용을 주장한 상표법 제31조의 적용을 부정한 다음 동법 제28조를 근거로 피이의상표는 혼다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결국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림
- 이에 임엽공사는 상기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적쟁점

- 기업명칭의 약칭이 상표법 제31조(현 상표법 제32조)의 「선행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시사항

-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을 유지함
- 제1심 법원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한 점은 문자의 형태, 발음, 의미 또는 도형외관의

유사에 의해 판단되는데,「광본」은 광저우혼 공사의 기업명칭의 약칭이며, 관계하는 공중에게 있어서 이 약칭과 광저우혼다공사 간에는 대응관계가 있어, 관계하는 공중이 피이의상표를 보면 광저우혼다공사의 혼다상표를 연상하여 혼동 · 오인이 야기됨. 따라서 피이의상표는 혼다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28조에 의해 등록을 불허해야 함

- 제2심 법원도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에 의해 상표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판시함
- 최고인민법원은 제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의 결론을 지지했지만 다음의 이유로 상표법 제28조가 아니라 동법 제31조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판시함
- 즉,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광본 GUANGBEN」는 혼다상표와 비교하여 문자형태, 발음, 의미 및 그 각 요소의 조합의 전체적인 구조로부터 유사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 유사상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러나「광본」은 광저우혼다공사의 기업명칭의 약칭이며, 광저우혼다공사는 1998년의 설립 이래「광본」을 기업명칭의 약칭으로서 수년에 걸쳐 사용해 왔다고 인정되고 있음. 일정한 시장지명도를 가지고, 관계하는 공중에게 숙지되고 있는 상호 또는 기업명칭의 약칭에 대해서는 기업명칭에 준해 법적 보호를 해주어야 하며, 상표법 제31조의 선행권리에 해당함. 광저우 소재 기전기업으로 임엽공사는「광본」이 광저우혼다공사의 기업명칭 약칭임을 당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광저우혼다공사의 주요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상에 피이의상표의 출원을 실시한 것은 광저우혼다공사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므로 피이의상표의 출원등록을 불허해야 함

4. 해설

- (검토배경) 본 건은 중국의 기업명칭의 약칭이 기업명칭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즉, 기업명칭의 약칭이 상표법 제31조의 선행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건임
- (분석 및 시사점) 본건 재심 판결은 기업 스스로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기업명칭의 약칭을 수년에 걸쳐 사용해 왔다고 인정되어 해당 약칭이 일정한 시장지명도를 가지고, 관계하는 공중에게 숙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칭은 상표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법 제31조의「선행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명칭에 준

해 법적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을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음

주제어 기업명칭의 약칭, 선행권리, 재선권리

Ⅸ 외국에서 작성 · 공증한 상표 사용의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의 판단

(最高人民法院(2013)行提字19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17조, 제119조
중국	상표법 제43조, 제44조, 제49조
인도	상표법 제47조
베트남	상표법 제96조, 제136조

1. 사실관계

- 일본특수도업은 중국에서 1991년 10월 15일에 「NTK」(이하 「본건상표」라고 한다)를 상표출원하고, 1992년 10월 11일에 상표등록을 받았는데(등록번호는 제613608호), 이의 지정상품은 제9류의 「산소센서, 도기여과기(통신설비에 사용된다)」임
- NEWTEC는 3년간 연속불사용을 이유로 본건상표의 취소를 상표국에 신청함
- 상표국은 1996년 12월 3일부터 1999년 12월 2일의 3년간(이하 「대상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해 본건상표를 사용한 것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2001년 3월 2일 본건상표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림
- 일본특수도업은 상기의 결정에 불복해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일본특수도업은 증거로써 본건상표의 지정상품의 판매의 영수증 및 그 공증서, 잡지 「통신세계」의 복사, 본건상표가 사용된 카탈로그 등을 제출함. 또한 추가 증거로서 본건상표의 지정상품판매 영수증 및 그 공증서의 인증 및 중국어 번역, 일본특수도업

(홍콩)유한공사(이하 「홍콩특수도업」이라고 한다)의 1997년도 ~ 1999년도의 회계보고 및 그 공증서 및 인증 및 중국어 번역 등을 제출함

- 상표평심위원회는 대상기간의 본건상표의 사용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상표법 제44조 제4호, 상표법실시조례 제39조의 취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본건 상표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림
- 이러한 결정은 일본특수도업이 1999년 9월부터 10월에 모토로라 중국공사에 대해 본건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산소센서)을 판매하고, 관련된 상품은 일본특수도업(미국)유한공사가 하송인으로서 나고야항으로부터 중국 톈진에 발송된 점, 또 1997년 5월부터 7월에 홍콩특수도업은 모토로라 중국공사에 도기여과기를 판매했으며, 관련 상품들은 일본에서 중국 톈진에 발송된 점, 일본특수도업은 홍콩특수도업의 유일한 상품공급자이기 때문에 관련 상품에 본건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에 따른 것임
- NEWTEC는 상기 재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적쟁점

- 홍콩에서 작성된 증거를 일본에서 공증한 경우에 이를 상표 사용의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시사항

- 제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을 취소함
- 제1심 판결에 따르면, 대상기간에 일본특수도업이 본건상표를 사용했다고 상표평심위원회가 판단한 근거는 재심사절차에서 증거로서 제출된 판매영수증 등이나, 홍콩특수도업이 발행한 영수증들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 또한 일본특수도업이 발행한 영수증은 일본특수도업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기타 보강증거도 없기 때문에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대상기간에 있어서 일본특수도업이 본건상표를 사용한 증거는 없음

- 제2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본특수도업 청구를 기각 및 제1심 판결을 유지함
- 제2심 판결에 따르면, 일본특수도업은 행정재심사 절차에서 영수증 및 공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영수증은 홍콩에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공증이 이루어짐. 이것으로는 증거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채용할 수 없고, 이에 대상기간에 있어서 본건 상표가 사용되었다는 입증은 존재하지 않음
-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 및 제2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표평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함
-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대상기간에 있어서 산소센서 또는 도기여과기에 본건 상표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임. ① 일본특수도업이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에는 대상기간에 대한 관계영수증이 있는데, 해당 영수증에는「하송인 : 일본특수도업(미국) 공사, 하수인 : 모토로라(중국)전자유한공사, 운송방법 : BAX GLOBAL을 통해 일본 나고야에서 중국 톈진으로, 상품 : NTK 산소센서」라고 기재되어 있음
- 제2심에서 일본특수도업은 운송회사 BAX GLOBAL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들 증거는 본건상표가 사용된 산소센서가 대상기간에 중국시장에 들어갔음을 증명할 수 있음. ② 홍콩 자회사인 홍콩특수도업이 발행한 대상기간의 판매영수증 수십매에 의해 홍콩특수도업이 중국대륙에「NTK 도기여과기」를 판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또한 홍콩특수도업의 연도회계보고를 통해 일본특수도업이 홍콩특수도업의 유일한 출자자 및 상품공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음
- 즉, 홍콩특수도업이 판매한「NTK 도기여과기」는 일본특수도업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③ 제2심에서 일본특수도업이 세관에 증거제출명령을 하도록 요구한 것, 운송회사 BAX GLOBAL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보강 증거로 제출한 것 모두 합리성이 있음

4. 해설

- (검토배경) 본 건은 중국의 법역외(일본, 미국 등의 외국 외, 홍콩, 마카오 및 대만도「중국의 법역 외」에 포함됨)에서 작성된 자료(예를 들면, 영수증)를 중국법원의 소송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증서 및 공증서에 대한 소재국 · 지역의 중국영사의 인

증 등이 필요함을 나타낸 사건임

- (분석 및 시사점) 상표사용의 사실 등 과거사실의 증명에는 곤란함을 수반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예를 들어, 본건 사안과 같이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관계서류 작성 장소에 대한 문제로 증거능력이 문제시되며,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장차 중국의 소송에서 주장 · 입증할 것에 대비하여, 적절히 증거자료를 작성 · 보관하는 것과 특히, 중국이외의 나라 · 지역에서 생긴 증거에 대해서는 그 국가 · 지역에서 공증 · 인증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주제어 영수증, 공증, 상표사용의 증거, 증거능력

X 행정법규 위반이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의 권리주장에 미치는 영향

(天最高人民法院民事裁定書(2013)民申字第723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8조, 제109조, 제119조
중국	상표법 제57조, 제60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52조, 제135조
베트남	상표법 제129조, 제198조

1. 사실관계

- L씨는 2004년 10월에 항저우소무지공사(杭州小拇指公司)를 설립해 법정대표자로 취임했고, 항저우소무지공사의 경영 범위는 자동차의 유리보수(수선)기술개발, 차량도장의 속도회복기술개발, 도매판매 · 소매판매, 자동차 부품으로 되어 있음

- 항저우소무지공사는 2008년 3월에 제35류에서 상표「소무지(小拇指)」의 등록출원을 실시해, 2011년 1월에 등록을 받았고(등록번호는 제6573882호), 지정역무는 프랜차

이즈 경영관리, 라이선스 경영관리, 비즈니스 경영컨설팅, 광고임. 또한 L씨는 2008년 3월에 제37류에서 상표 「소무지」의 등록출원을 실시해, 2011년 4월 14일 등록을 받았고(등록번호는 제6573881호), 지정서비스는 자동차의 보수 · 수리, 자동차의 세차, 자동차에 대한 윤활유의 충전, 차의 주유소, 차의 방취처리, 비행기의 불도장 서비스 등임. L씨는 자신이 소유한 등록상표 「소무지」(등록번호 657381)에 대해, 항저우소무지공사에 독점적 라이선스를 실시했음

- 한편, 톈진화상공사(天津華商公司)는 '전준산(田俊山)'이 1992년 11월 23일에 설립한 회사이며, 경영범위는 「자동차부품, 유리, 윤활유, 타이어, 차량장비, 세차유지 · 관리, 전기시스템 유지 · 관리, 페인트, 택배대리, 정보컨설팅, 보통화물」임

- 항저우소무지공사는 2008년 4월에 상무부에 프랜차이즈 경영신고를 했고, 2008년 6월에 톈진화상공사와 항저우소무지공사는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했음. 동 계약 중에서 톈진화상공사는 항저우소무지공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무지」 또는 기타 관련된 표장을 기업명칭에 포함시켜 등기하지 않도록 약정함

- 그런데 2008년 10월 16일에 田俊山은 톈진소무지공사(天津小拇指公司)를 설립했고, 톈진소무지공사의 기업명칭에는 「소무지」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톈진소무지공사의 경영범위는 미니버스수리, 자동차의 유지 · 보수, 간단수리, 출장수리, 전문수리임. 톈진소무지공사의 경영장소는 톈진화상공사의 등 주소와 동일하고, 톈진화상공사의 웹사이트의 정보내용은 모두 톈진소무지공사 웹사이트 (www.tjxiaomuzhi.net)와 동일함

- 이후에 톈진소무지공사 및 톈진화상공사는 차량수리서비스 및 웹사이트 상 광고에 있어 「소무지」의 문자를 사용하고 또한 도메인명의 일부로서 「tjxiaomuzhi」(「tj」는 톈진의 약칭, 「xiaomuzhi」는 「소무지」의 병음표기)를 사용하고 있었음

- 이에 L씨 및 항저우소무지공사는 톈진소무지공사 및 톈진화상공사의 상기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상표사용정지, 사죄, 손해배상 63만 위안 및 합리적 비용 2.4만 위안의 지불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톈진소무지공사 및 톈진화상공사는 ① 항저우소무지의 경영범위는 프랜차

이즈경영 및 차량수리 등을 포함하지 않고, 차량수리허가도 받지 않은 위법한 경영이며, 그 권리는 법적 보호할 가치가 없고, ② 피고가 사용하는 「소무지」표장은 합법적이므로 상표권침해는 아니고, ③ 항저우소무지는 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와는 상업적 경쟁관계가 없으며 또한 유명기업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항변함

2. 법적쟁점

- 경영범위의 일탈이라는 행정법규위반이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3. 판시사항

1) 제1심 법원

- 제1심 판결은 본건 상표의 사용의 정지 및 상표권침해의 손해배상으로서 5만 위안의 지급을 명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설시함
- 즉 제1심 판결에 따르면, 텐지소무지공사 및 텐진화상공사가 「tjxiaomuzhi」를 포함한 도메인명을 취득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L씨 및 항저우소무지공사는 아직 상표 「소무지」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tjxiaomuzhi」를 포함한 도메인명의 취득 및 사용은 L씨 및 항저우소무지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텐진소무지공사 및 텐진화상공사는 그 광고자료에 있어서 L씨 및 항저우소무지공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표법 제52조 제1호 및 최고인민법원의 「상표민사분쟁사건의 심리에 대한 법률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제12조를 위반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단, L씨 및 항저우소무지공사는 차량수리의 경영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차량수리업자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은 차량수리업계에서 구체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텐진소무지공사 및 텐진화상공사의 행위는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제2심 법원

- 제2심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에 동의하였지만, 부정경쟁에 대해서는 제1심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함. 이에 제1심 판결이 명한 상표사용정지 및 손해배상에 더해 톈진소무지공사의 기업명칭에 「소무지」의 사용정지 및 부정경쟁의 손해배상으로 3만 위안의 지급을 명한다고 판결함

- 제2심 법원에 따르면, 경쟁관계의 존재는 동업 및 동종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확실히 항저우소무지공사의 경영범위에는 자동차 수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 수리 업무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나, 항저우소무지공사의 경영범위에는 차의 유리 수리, 차량 페인트의 속도회복 등의 기술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저우소무지공사는 그가 소유한 기업표장, 등록상표, 특허 및 노하우 등을 직영점 및 가맹점에 사용하여 「소무지」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

- 그 프랜차이즈 경영은 자동차 수리에 관련된 경영이기 때문에 항저우소무지공사는 자동차 수리시장의 관련 사업자라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만약 항저우소무지공사에 경영범위의 일탈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한 것은 행정법규에 대해서이며, 그의 합법적인 민사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톈진소무지공사는, 항저우소무지공사가 그 기업 명칭에 「소무지」를 포함하여 전역에 프랜차이즈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소무지」을 자신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악의성이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위배됨. 또한 톈진소무지공사가 설립된 당시 항저우소무지공사는 이미 관련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톈진소무지공사가 그 웹사이트 및 광고자료에서 「소무지」및 「톈진소무지(天律小拇指)」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관계하는 공중에게 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3항에 위배됨

- 제2심의 구두변론 후에 톈진소무지공사는 저장성(浙江省)행정기관이 작성한 저장성 지명상호에 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고, 행정기관에 의해 지명상호로 인정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해당 상호가 지명인지 아닌지를 법원이 인정하기 위한 법정요건이 아님

4. 해설

- (검토배경) 본 건은 중국의 기업에 대한 경영범위의 해석, 경영범위의 일탈로 인한 행정법규위반이 상표권침해와 같은 민사적 권리행사에 미치는 영양,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건임
- (분석 및 시사점) 중국에서 기업이 법인으로서 등기할 때 「경영범위」의 기재가 필요한데, 「경영범위」는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경영범위의 일탈은 행정처분을 포함한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짐
- 그러나 경영범위를 넘어서서 이루어진 사업 활동에 대해 행정법규위반의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민사권리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 사업자가 동업자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밝힘
- 즉, 상표권리자 측에 어떠한 법률상의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식재산권의 행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주제어	등록상표권, 지명상호, 경영범위일탈, 행정법규위반, 상표권침해, 부당경쟁

XI 상표권 침해상품을 판매한 점포의 임대인에 대한 연대책임의 인정 여부

(広州市中級人民法院(2014)穗中法知民終字第707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8조
중국	상표법 제57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베트남	상표법 제129조

1. 사실관계

- 프랑스 샤넬사는 등록상표 「CHANEL」(등록번호 제759777호, 지정상품 제3류의 화장품) 및 「 」(등록번호 제329129호, 지정상품 제3류의 화장품, 비누, 클리너(합하여 「본건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임
- Q씨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2012년 6월 20일 사이에 천마공사(天馬公司)가 경영하는 「천마국제패션도매센터(天馬国際ファッション卸センター)」의 점포를 빌려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향수 그 외 소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 2012년 6월 20일 광저우시공상행정관리국 수월(秀越)지국은 Q씨가 소지하는 판매예정의 본건상표 침해상품인 향수 38병을 압류해 Q씨에 대해 본건상표 침해상품의 판매정지, 점포경영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실과 관련해 샤넬사는 천마공사에 「상표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서한」을 발송함
- 2013년 3월 13일 샤넬사는 공증사무소에 공증신청을 한 뒤, 「천마국제패션도매센터」 내에 있는 Q씨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본건상표를 부착한 위조품의 향수를 발견해 구입했고, 샤넬사는 해당 공증을 가지고, Q씨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정지 및 손해배상을 천마공사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 법적쟁점

- 임대점포에서 상표권 침해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 판매행위를 묵인한 점포 임대인도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

3. 판시사항

1) 제1심 법원

- 제1심 법원은 Q씨에 대한 청구는 인용, 천마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제1심 법원에 따르면, Q씨에 의한 본건상표를 사용한 향수의 판매는 상표법 제52조 제2호를 위반하고, 샤넬사의 본건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임. 침해행위의 형태, 계속기간, 경영규모 및 본건상표의 지명도 및 샤넬사가 권리침해행위의 적발을 위해서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에 비추어 Q씨는 샤넬사에 3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함
- 한편, 천마공사는 시장감독을 하는 행정부문이 아니어서 Q씨의 경영행위에 간섭할 권한은 없고, Q씨의 판매행위를 방지할 수는 없음. 천마공사는 본건상표를 침해하는 향수를 도매한 것이 아니고, 「창고,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의조건을 고의적으로 제공」(상표법실시조례(2014년 개정 전) 제50조 제2호)한 것도 아님
- 천마공사는 본건상표를 침해하는 향수판매에 대해서 Q씨와 공동침해행위를 하는 고의 또는 의사연락이 없고, 이에 천마공사에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2) 제2심 법원

- 제2심 법원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Q씨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으나, 천마공사에 대한 청구기각을 파기하고 천마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1만 위안을 샤넬사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으며, 연대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 제2심 법원에 따르면, 천마공사는 「천마국제패션도매센터」의 경영자로서 점포의 대여는 하지만 물품의 판매행위는 하지 않는 상황에서 Q씨의 권리침해행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천마공사가 샤넬사로부터 「상표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서한」을 수령한 시점에서 천마공사는 Q씨의 권리침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천마공사는 「천마국제패션도매센터」의 경영자로서 Q씨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Q씨가 장기간에 걸쳐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판매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용인하므로 합리적인 관리 및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 제52조 제5호, 상표법실시조례 제50조 제2호에 해당함. 천마공사는 Q씨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실시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없어 연대책임은 지지 않지만, 천마공사는 Q씨가

실시한 본건상표 침해행위에 대해 임대점포의 경영자로서의 관리 및 주의 의무를 해태한 책임은 져야 함

4. 해설

- (검토배경) 본 건은 상표권침해상품을 판매한 소매점과 그가 입주한 패션도매센터의 경영자의 공동상표권침해행위 및 연대책임의 성립을 판단한 사건임
- (분석 및 시사점) 중국 상표법 제52조 제5호는「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끼친 것」을 상표전용권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 있어서 점포임대자는 점포임차인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판매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바, 이는 점포임대자로서 관리 및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상표권침해책임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점포임대자는 점포임차인과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실시하려고 하는 주관적 의도가 없었으므로 공동권리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에 점포임대자의 책임은 연대책임이 아닌 단독 책임임을 확인한 사례임
- 공동권리침해행위에 근거한 연대책임의 성립을 결정하는 요건은「공동으로 위법행위를 실시하려고 하는 주관적 의도」의 유무에 있으나, 그 판단은 법관의 심증에 걸려 있어 지극히 미묘함. 상기의 점에 관해 본 건과 지극히 유사한 다른 사안은 테넌트와 건물관리자의 공동권리침해행위에 근거한 연대책임을 인정함

주제어 경영관리 및 주의의무, 연대책임, 공동상표침해행위, 상표권침해행위

XII 상표의 선사용 항변에 관한 분쟁

(北京市朝陽区人民法院(2014)朝民初字第25490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99조
중국	상표법 제32조, 제59조
인도	상표법 제12조, 제33조, 제34조
베트남	-

1. 사실관계

- T씨는 2014년 1월 14일, 「상단니(尚丹尼)」의 상표등록(등록번호는 제11358870호)을 받았으며 지정상품은 제44류 마사지, 미용원, 이발업, 화장사, 아로마요법, 동물사육, 정원설계, 안경점, 위생설비리스 등임

- 한편,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北京尚丹尼美髪センター)는 2008년 1월에 미용실로 설립되었고,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는 그 설립 이래 베이징시 중심부에서 2011년 5월 3일에 제1호 지점, 2013년 3월 29일에 제2호 지점, 2013년 5월 27일에 제3호 지점을 냈음.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가 운영하는 본점 및 3개 지점의 경영범위는 모두 이발업이며, 점포의 간판 및 점포부근의 안내판에는 「상단니조형(尚丹尼造型)」(「상단니스타일(尚丹尼スタイル)」이라는 의미)의 문자가 표시되어 있음

-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는 그 설립시부터 웹사이트 「대중점평(大衆点評)」을 통해 각 점포의 광고를 하고 있으며, 특히 본점은 해당 웹사이트에 1960회의 입소문을 얻고, 그 서비스는 별 다섯개라는 평가를 받음. 또한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는 「신랑 미니블로그(新浪ミニブログ)」를 통해 「미니블로그카드 기업판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 미니블로그 팬들을 향해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의 점포홍보활동을 벌였음

- 이에 더해 T씨의 배우자인 '소건국(邵建国)'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기간 중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의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있었음

- T씨는 상표전용권침해를 이유로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에 대해 「상단니」상표의 영업 및 광고에서의 사용정지 및 손해배상 185,000위안 및 변호사비용 및 공증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15,000위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법적쟁점

- 상표권 침해로 소가 제기된 상표의 선사용자의 선사용 항변의 주장 가능성

3. 판시사항

- 베이징시 차오양구인민법원(北京市朝陽区人民法院)의 제1심은 T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
- 제1심 법원에 따르면, 중국 상표법 제59조 제3항은 「상표등록자가 상표등록출원 전에 타인이 이미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상표등록자보다 먼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동시에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등록상표전용권자는 해당 사용자가 원래의 사용 범위 내에서 해당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않지만 단, 적당한 구별표지의 부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에 있는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는 2008년 설립된 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미등록상표로써 「상단니조형」이라는 표장으로 서비스를 광고하고, 그 점포의 간판 및 안내판에도 「상단니조형」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는 2008년 설립 후 장기에 걸쳐 「상단니」를 비즈니스상의 표장으로 사용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확실히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는 「상단니」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는 2008년 이후 웹사이트의 「대중점평」 및 「신랑 미니블로그」를 통해 광고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어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가 「상단니」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일정한 영향을 가지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음. 또한 분명히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는 본 건 등록상표의 지정역무인 이발업과 동일한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지만 북경상단니미발센터에 관련된 사용은 T씨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몇 년 전부터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임

- 한편, T씨는「상단니」등록상표를 아직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상의 기술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본 건은 상표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며, T씨의 상표사용 정지 및 손해배상의 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단, T씨가 주장하듯이 등록상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 있으므로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또한 T 씨는 베이징상단니미발센터에 대해 관련된 상표를 사용할 때는 서비스 출처를 구별하는 표지를 부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설

- (검토배경) 본 건은 상표등록자 보다 먼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동시에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표의 선사용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중국의 상표법(2013년 개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해 상표 선사용자의 보호 가능성을 판결한 최초 사건임
- (분석 및 시사점) 중국 상표법은 선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상표 출원 · 등록을 선행할 것을 권함. 만일 상표가 제3자에게 먼저 출원 · 등록되어 버린 경우, 해당 제3자로부터 상표전용권침해를 이유로 제소될 우려가 있음
- 그런데, 중국 상표법의 2013년 개정으로 제59조 제3항이 추가되어 상표의 선사용에 관한 원칙이 확립됨. 즉, 중국의 상표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선원주의가 채용되고 있지만 상표의 선사용자와 상표권자의 이익의 조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상표법 제59조 제3항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선사용자가 상표권자보다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동시에 그 사용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종래의 사용범위 내의 계속적인 사용이 인정됨
- 본 건은 상표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을 통해 상표의 선사용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주제어 상표전용권침해, 등록상표전용권, 상표등록출원, 상표의 선사용

XIII 유명상표가 보호되는 상품의 범위에 관한 분쟁

(京市高級人民法院(2014)高行終字第661号)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4조
중국	상표법 제13조, 제14조
인도	상표법 제11조
베트남	상표법 제75조

1. 사실관계

- 제3자인 K씨는 2004년 3월 19일에 「왕로길(王老吉) WANGLAOJI」(이하 「피이의상표」라고 한다)의 상표등록을 출원했는데, 지정상품은 제25류의 복장, 신생아용 의복 세트, 수영복, 축구신발, 운동화, 모자, 양말, 넥타이, 복장벨트(옷), 장갑(복장) 등이었음
- 이에 대해 광저우의약공사(広州医薬公司)는 피이의상표의 등록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광저우의약공사 「왕로길」이라는 저명한 상표를 표절 · 모방한 악의등록이라는 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상표국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인정하지 않음
- 광저우의약공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상표평심위원회(商標評審委員会)에 재심사를 심청함. 그러나 상표평심위원회는 다음의 이유로 재심사제기를 기각하고, 상표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
- 즉, 광저우의약공사의 「왕로길」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는 「량차(涼茶)」등의 상품상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치명(유명)상표가 되고 있었다고 증명하기에는 부족함
- 또한, 「량차」상품의 효능, 용도, 고객층, 판매채널 등의 면에서 피이의상표의 지정상품인 「복장(服装)」등과는 꽤 큰 차이가 존재해, 쌍방의 상표가 시장에서 공존해도

소비자에게 오인 · 혼동을 용이하게 일으키지 않음

- 광저우의약공사는 상기의 재심사결정에 불복해 베이징시제1중급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광저우의약공사는 인용상표가 치명(유명)상표임을 추가하는 증거로 인용상표의 실제사용상황, 수상이력, 관계상품 판매상황, 보호를 받은 상황, 광고위탁계약, 영수증, 가공위탁계약, 판매계약, 권리보호가 인정된 별소의 판결 등을 제출함

2. 법적쟁점

- 논알콜음료에 대해 높은 지명도를 가진 치명(유명)상표는「복장」등의 상품에 대해서도 보호가 미치는지의 여부

3. 판시사항

1) 제1심 법원

- 제1심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결정을 다시 하도록 판결함

- 제1심 법원에 따르면, (1) 인용상표가 논알콜음료 등의 상품에 있어서 피이의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치명(유명)였다고 말할 수 있는지의 아닌지에 대해서 관련하는 공중의 인식의 정도, 해당 상표사용의 계속기간, 해당 상표의 광고의 계속기간, 정도 및 범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2) 광저우의약공사가 재심사 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수상의 증명서, 제조 및 판매상황, 프로모션 및 광고의 상황, 보호를 받은 기록 등의 증거는 상호 뒷받침이 되는 것이며, 인용상표가 피이의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중국에서 이미 장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광고되어 온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관련하는 공중에서 지극히 높은 지명도 및 영향력을 가져, 이미 상표법 제 13조 제2항에 정해진 치명(유명)에 해당한고 할 수 있음

- (3)「왕노길」은 중국어에 원래부터 있는 어휘가 아니고, 비교적 강한 현저성을 가짐.

문제가 된 상표는 중국어의「왕로길」및 그 병음표기로 조합되어 있으며, 치명(유명)상표인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을 완전히 포함하는 동시에 문제가 된 상표의 출원자는「왕로길」에 대한 어떠한 합법적 권익을 가진 증거도 없음. 따라서 문제가 된 상표는 인용상표의 표절 · 모방으로 인정됨

- (4) 치명(유명)상표에 대해서 유사하지 않는 상품에 있어 그 사용금지 범위를 확정할 때는 보호되는 정도 및 그 지명도, 현저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함
- 인용상표는 비교적 높은 지명도 및 현저성을 가지는 지명(유명)상표이며, 동시에 해당 치명(유명)상표의 관련하는 공중은 일반 소비자이고, 논알콜음료 및 복장 등의 상품은 모두 일용품으로 고객층이 상당한 정도로 중복됨. 관련되는 공중이 문제가 된 상표를 그 지정상품으로 사용할 때, 우선 관련하는 상품은 인용상표와 관련되고, 또한 광저우의약공사와 관련되므로 장기에 걸쳐 인용상표의 현저성을 희석화시켜 치명(유명)상표의 정당한 권익에 손해를 주게 됨
- 상표평심위원회는 ① 광저우의약공사가 재심사수속의 단계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치명(유명)상표인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② 피이의상표는 인용상표와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되므로 치명(유명)상표를 희석화시킬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함

2) 제2심 법원

- 제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 제2심 법원에 따르면, (1) 상표행정소송사건에서는 통상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에 의거해 상표평심위원회에 의한 결정이 타당했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송단계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 특히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증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택하지 않음
- 단, 만일 당사자가 제출한 추가증거가 그 행정절차에 있어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며, 또한 추가증거가 소송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고려할 수 있음

- (2) 피의의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인용상표는 량차의 상품에 대해 장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선전광고에 투입된 비용은 거액이며, 한편, 연속된 수년 동안 국가급, 성급, 시급의 영예칭호를 다수 획득해 판매수량, 판매수입, 주요업무수입 등은 모두 업계에서 최대급으로, 상표국, 공상행정 관리부문 및기타 법률집행기관에 의해 중점적으로 보호를 받아왔음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광저우의약공사가 재심사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각종 증거를 결부시켜 인용상표가 치명(유명)상표라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함

- (3) 최고인민법원의 「상표권의 부여 · 권리확정에 관한 행정사건의 심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11조는 중국에서 이미 등록된 치명명(유명)상표에 대해서 유사하지 않는 상품상에 있어서의 그 보호범위를 확정할 때에는 그 치명(유명)의 정도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함

- 본 건에 있어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및 피이의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일용품이며, 고객층, 소비그룹의 중복정도가 높음. 관련된 공중은 복장 등의 상품상에 피이의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용이하게 인용상표를 연상하고 동시에 양자 사이에 모종의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거나 또는 양자의 제공자 사이에 투자, 제휴 등의 관련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해 인용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사이의 관련성을 약화시켜 광주의약공사가 인용상표에 획득해 온 명성 및 시장에 있어서의 신용 등의 이익을 해칠 수 있음

4. 해설

- (검토배경) 본 건은 치명(유명)상표가 등록상표이기도 한 경우에 그 지정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해 치명(유명)상표의 보호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그 보호의 범위를 나타낸 판결임

- (분석 및 시사점) 이는 치명(유명)상표의 지정상품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도 치명(유명)상표의 가치희석화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치명(유명)상표의 보호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 또한 상표행정소송사건에서는 통상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상표평심위원회에 의한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를 소송단계에서 법원에 추가 제출하려고 해도 해당 증거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새로운 증거가 아닌 한 원칙으로서 채용되지 않는 것에 주의가 필요함
- 따라서 본 건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심사단계까지 해당 사안에 관련된 증거는 모두 제출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주제어 상표평심위원회, 치명(유명)상표, 상표행정분쟁, 지명도, 현저성

제2절

인도

Ⅰ Freudenberg Gala Household Product Pvt. Ltd. vs GEBI Products

(The Bombay high Court(2017))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4조, 상표법 제89조, 제107조, 제108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제56조,제57조, 제60조, 제65조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28조, 제29조, 제78조, 제102조, 제135조
베트남	

1. 사실관계

- 원고(Freudenberg Gala Household Product Pvt. Ltd.)는 인도 내에서 걸레, 빗자루 등 가정용과 공업용 청소도구를 제조 · 판매하는 기업으로, 1995년부터 "LAXMI"라는 상표를 자신들의 청소도구에 사용하였으며, 2003년에 해당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음
- 원고는 원고와 동일하게 가정용 및 공업용 청소도구 제조 ·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GEBI Products)가 2015년 초에 "MAHALAXMI"라는 명칭을 피고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피고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함
- 원고는 피고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후에,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동일 ·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고의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그러나 인도 법원은 2016년에 원고의 임시적인

금지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인도 봄베이 고등법원에 항소함

2. 법적쟁점

- 힌두교 신들의 이름을 상표로서 동록 ·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힌두교 신들의 이름이 일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시사항

- 인도 법원은 동 사건에 관한 임시적 중간 판결에서, 피고가 "MAHALAXMI"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과 사칭통용 소송을 모두 기각함. 법원은 Bhole Baba v. Parul Foods 판결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LAXMI"라는 명칭은 인도에서 보통의 여성 이름이면서 힌두 신들의 이름이고 따라서 원고에 의해 독점될 수 없는 상표라고 설시함. 또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LAXMI"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서로 다른 독특한 표장을 각자의 라벨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 또한 인도 법원은 중간판결에서, "LAXMI"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상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는 도형상표 또는 도형라벨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해당 라벨에서 사용된 일반 명칭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시함. 그리고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문제가 된 일반 명칭에 약간의 수정만을 첨가 혹은 삭제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원고의 상표로부터 분리되어 성립될 수 있는 충분한 식별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특히 법원은 Bhole Baba v. Parul Foods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제품을 즉각적으로 소비자가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2차적 식별력, 즉 사용에 의한 식별력 등을 획득해야만 해당 일반 명칭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시함. 그러나 동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수많은 경쟁사 청소도구 제품들이 "LAXMI"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반 명칭인 "LAXMI"가 원고의 제품에 관련되었다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원고의 등록상표가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그리고 실제로 법원이 확인한 바로는, 어느 누구도 힌두교 신 또는 여성의 이름을 참조함으로써 청소도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함

- 한편 법원은 사칭통용 행위와 관련하여, 사칭통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허위표시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경쟁사의 상품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칭통용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논거는 분명하다고 설시함

-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한 이후 항소심 합의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모두 인정함.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심 재판에서, 중간판결 단계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유효성을 심사하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원고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일반 명칭에 대하여도 상표권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함. 또한 원고는 1심 법원이 중간판결 단계에서 원고의 금지청구를 인정할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나 명칭이 동일한지 여부, 피고가 기만적 의도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라벨상표가 원고의 단어 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상표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 간에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 상표가 일반적인 평균인의 지식으로 불특정 소비자 사이에서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는 원고의 상표에 사용된 “LAXMI”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는 해당 상표의 주요 형상, 즉 요지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LAXMI”라는 명칭은 일반 명칭에 해당하므로 약간의 수정이 부가된다면 소비자의 인식 속에서 충분히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함

- 항소심 재판에서 제기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 봄베이 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이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된 두 개의 상표들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살펴본 결과,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구성 및 디자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상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라벨 상표가 기만적으로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측면도 없다고 설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피고의 라벨 상표가

원고의 단어 상표와 구별되는 다른 상표라고 판단함

- 특히, 법원은 문제가 된 두 개의 상표들 간에 차이점은 평균적인 소비자 인식과 불완전한 연상(imperfect recollection) 속에서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힌두교 신들의 이름은 배타적인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 당사자에 의해서 독점될 수 없는 것이라고 천명함

- 결국, 항소심 법원은 관련 법리를 무시하거나 임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중간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

4. 해설

- (검토배경) 동 사건은 2017년 8월의 인도 고등법원 판례로서, 상표등록 거절의 사유로서 일반 명칭의 사용, 상표권 효력이 제한되는 일반 명칭의 범위 등에 관해 다음의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판시함
  ①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한 구제로서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제135조 (1)항)
  ②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제29조)
  ③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로서, 일반 명칭의 사용 및 일반 명칭의 범위(제9조 (2)항)
  ④ 사용의 결과로써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나 주지상표의 상표등록 가능성(제9조 (1)항)
  ⑤ 상표권의 효력으로서, 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해석(제29조)

- (향후전망) 인도에서 힌두교 신들의 이름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 사건은 종종 있었는데, 동 판례는 신들의 이름이 상표권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천명함

  - 그러나 1심 법원은 중간판결에서 문제가 된 상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별력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바, 이는 신들의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면 인도 상표법 제9조 (1)항에 따라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김

- (분석 및 시사점) 인도에서는 신들의 이름과 관련한 상표권 침해 사건이나 분쟁이

종종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판례들은 정형적으로 신의 이름에 대하여는 배타적 권리 혹은 독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천명하여 이와 관련한 인도 상표법상 원칙이 확립되어 옴

- 즉, 대개의 경우 인도에서는 일반적인 단어나 문장을 상표권을 통해 독점할 수는 없고, 이러한 일반 명칭 등이 지정 상품과 분리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상표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과거에 성인의 이름(spiritual leader)이 개인적 독점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종교적 형상과 관련하여 그에 대해 상업적 독점을 허락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었음
- 그런데 인도의 동 판례에서 살펴볼 때, 신들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과 유사하게 일반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신들의 이름이 상표법상 일반 명칭으로서 개인의 성명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주제어 일반 명칭, 2차적 식별력, 주지상표, 종교, 신의 이름

Ⅱ Sunil Mittal & Anr. vs. Darzi on Call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2017))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4조, 제108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제57조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29조, 제102조
베트남	

1. 사실관계

- 원고는 Mr. Sunil Mittal and Darzi (India) LLP라는 회사이고 “The Darzi: The Suit People, 1981”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표장에 대한 등록된 상표권자임. 원고는 피고에게 “Darzi”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는 “Darzi”라는 단어의 사용이 상표침해와 사칭통용 행위가 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와 같이 양복점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Darzi on Call”이라는 표장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상표등록을 2015년에 출원한 상태임.

| 그림 3-2 | 달러 멘디의 실사와 “달러 멘디 인형”

< 원고의 상표 >

< 피고의 상표 >

- 2016년 10월, 법원은 피고에게 “Darzi”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유는 피고의 표장에서 사용된 “D”가 원고의 상표에서 사용된 “D”와 동일한 스타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임. 그러나 2016년 12월, 법원은 중간 임시판결을 통해서 피고가 “Darzi”라는 단어 없이 스타일이 적용된 알파벳 “D”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2. 법적쟁점

-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
- 일반 명칭 또는 단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경우 상표보호 가능성
- 상표의 요지 보호 여부

3. 판시사항

- 기술적 상표의 구별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결에서 맨 처음 언급한 것은 'tailors' 또는 'drapers'란 단어들이 양복점업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이고, "Darzi"는 명확하게 일반명칭이 아니라는 것임
- "Darzi"는 구어체에서 우르두/힌두 단어로 사용되었고 전문가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님.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식별력은 단어가 상표에 사용된다면 그 단어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상표적 기능을 위해 단어 자체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봄. 만약 최초로 어떤 사람이 이전부터 서비스를 설명하는 것으로만 사용되어 왔던 단어를 상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상표로 사용한 창의적 발상은 상표보호를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 더 나아가 법원은 'tailors', 'drapers', 'master'란 단어들은 양복점업에 포함된 기술적 단어라고 볼 수 있지만 "Darzi"이란 단어는 따라서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 "Darzi"라는 단어의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의 가장 중요한 항변은 "Darzi"라는 단어는 양복점업 분야에서 일반적인 명칭으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보호될 수 없는 것임. 법원은 2011년 대법원 판례 T.V. Venugopal v. Ushodaya Enterprises Ltd.를 언급하면서 "Today"를 텔루구어로 번역한 "Eenadu"라는 단어가 문제된 사례에서 "Eenadu"는 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 지역에서 영업신용과 명성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함

- 피고는 "Darzi"라는 단어가 오직 델리 지방 같은 곳에서 재단사(tailor)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케랄라 지역에서는 기술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예를 들어 법원이 판단하길 단어가 특정한 지역에서 인식되어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특정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여부, 즉 기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심사해야 한다고 하였음

- 법원은 "Darzi"라는 단어는 재단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구어체로 사용되어져 왔지만 양복점업을 설명하는 것을 의도하면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이것이 법원

판단의 기본적 이유였음. 추가적으로 법원이 지적한 것은 피고는 “Darzi”가 일반 명칭이라는 논쟁을 그만두었는데 피고가 “Darzi”라는 단어를 포함한 상표를 출원한 때부터 논쟁을 그만두었다는 점임

- 일반 명칭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적 보호에 관하여 법원은 과거에도 이 사건을 다루었음. 즉, 이미 일반화된 명칭 또는 개념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상표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위에서 언급한 Eenadu 사례가 좋은 예시인데, 델리 고등법원은 2002년 Info Edge (India) Pvt. Ltd. v. Shailesh Gupta 사건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었음. 이 사건은 naukri.com 라는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naukri라는 단어가 포탈인터넷 사업의 기술적 부분으로서 일반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법원은 만약 기술적 명칭을 달고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장소에서 제품이 판매되었고 이 행위에 따라 제품이 주지성(명성)을 얻게 되었다면, 다른 경쟁제품과 구별되는 그 명칭은 기술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추가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은 양복점업은 상당히 지역적 제한을 받는 영업이고 따라서 델리에서 영업을 행하고 있는 원고는 다른 도시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영업적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 그래서 법원은 상호로서 “Darzi”의 사용뿐만 아니라 이 명칭에 대한 페이스북 찾기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상표등록의 온라인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이 자료들에서 지역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음

-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의 표장은 라벨이고 단어 상표가 아니다. 법원은 이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양 당사자들 상표의 요지부분은 “Darzi”라는 단어라고 언급하였고 피고 상표의 ‘on call“ 부분과 원고 상표의 ’the suit people’ 부분은 상표에 대한 구별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게다가 양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그 심사기준은 특정한 사회/도시에서 인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추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음. 법원은 적용되어야 할 기준은 인간의 판단이고 다른 사회와 관련된 법서적에 근거해서 판단기준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법원은 피고 측의 부정행위성 그리고 원고의 저명성에 피고들이 무임 승차하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원고의 시장에 무임승차하거나 소비자를 오인 · 혼동시켜려는 행

위를 살펴보았는데 명확한 사실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기 전부터 20년 정도 시장에 진입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입증했고 원고에게 임시 금지명령을 인정함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표등록과 관련한 온라인 기록물을 살펴보는 것을 거부하였는데 법원이 왜 상표등록에 관한 온라인 기록물들을 고려하지 않는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아무리 다른 사람이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표권자가 상표를 통해 영업을 하는 것 대신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봄. 판사가 생각하길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 동일한 상표가 사용됨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제기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러한 판단은 상표 선점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만약 상표권자가 외형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상표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임.

4. 해설

- (검토배경) 기술적 상표와 일반 명칭을 번역한 단어의 상표보호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

- (향후전망) 일반명칭이라고 번역된 경우 상표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술적 단어라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봄

- (분석 및 시사점)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단어의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 받게 됨. 그러나 일반적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상표로서 선점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고 상표법적 분쟁을 가져오게 됨. 이 사건에서 문제된 Darzi라는 단어는 재단사의미의 단어를 번역한 단어였음. 법원은 재단사는 식별력이 없지만 번역된 Darzi라는 단어는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흥미로운 것은 기술적 상표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로 사용하려는 단어가 상품 또는

서비스르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단어 자체를 상표로 사용하려고 했는지를 구분해서 단어 자체로 사용했다면 상표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함. 즉 어떠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최초로 상표로 사용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창의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봄

- 또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요지부분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 법원도 마찬가지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상표 또는 라벨의 요지부분만을 추출하여 비교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요지부분을 Darzi라는 단어로 판단한 것은 평균인의 일반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라고 함

주제어 기술적 표장, 상표 요지, 번역, 식별력

Ⅲ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vs M/S Prius Auto Industries Limited

(THE SUPREME COURT OF INDIA(2017))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4조, 제107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제60조, 제65조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35조
베트남	

1. 사실관계

- 원고(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는 피고인 부품공급업자(spare parts suppliers)가 자신의 상표인 “Toyota”, “Innova”, “Prius”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청구를 제기함
- 세 가지 상표 중에서 앞선 두 가지 상표 “Toyota”, “Innova”는 원고에 의해 상표등록

이 된 상태이고,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원고의 금지청구를 인정함. 피고도 앞의 이 두 가지 상표에 대하여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었던 것은 "Prius"(프리우스)라는 상표임. "Prius"라는 상표는 원고가 그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표이지만, 원고는 이 "Prius"라는 상표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2002년에 "Prius"라는 단어를 상표등록하여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에 의한 "Prius"라는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상표는 원고가 1997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피고의 등록보다 우선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가 이 상표에 관한 최초 사용자라고 주장함. 따라서 피고가 "Prius"라는 동일 상표를 인도에 등록한 것은 위법하고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함

2. 법적쟁점

- "Prius"라는 상표가 피고에 의해서 선등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Prius" 상표의 선사용자로서 피고에게 사칭통용(passing off)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Prius" 상표가 인도 국내에서 주지상표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판시사항

- 동 사건에 대해 인도 대법원은 만약 속지주의 원칙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면, 이미 판시하길 원고가 인도 시장에서 "Prius"라는 브랜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신용(good will)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함
- 이러한 판단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는데, 인도 대법원은 원고가 인도 시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Prius" 상표에 대한 저명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즉, 인도 대법원은 비록 인도 상표법 체계에서 국제적 저명성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저명성은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판사가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어야 하고, 또한 인도의 지역적 범위 내에서의 저명성이 입증되어야 함

- 요컨대, 비록 "Prius" 상표가 해외에서 매우 유명한 저명상표라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도의 국내적 환경에서 저명성이 반드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해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Prius" 상표가 인도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으로 주장하는 날짜인 2001년이면 인터넷의 사용이 많이 보급된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Prius"라는 상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함

- 법원은 또한, 자동차 잡지 및 국제 비즈니스 잡지에서 노출되는 광고들, 위키디피아 등 인터넷 정보포탈, 온라인 브리테니카 사전 등을 통해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원고가 "Prius"라는 상표가 인도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주장하는 2001년경에 인도 시장에서 "Prius"라는 제품의 필수적인 영업신용과 저명성의 존재를 입증하기에는 완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 법원은 더 나아가 뉴스가 보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상표의 모형만으로는 해당 상표의 저명성을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시함. 즉, 일본에서 프리우스의 런칭과 관련된 뉴스 콘텐츠는 일본 Economic Times에만 단독으로 실렸는데, 이 기간이 1997년 3월 27일부터 1997년 12월 15일까지 실렸음. 법원은 그러나 해당 광고가 인도 시장에서 프리우스라는 브랜드 명칭에 대한 영업신용과 저명성이 존재하고 형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함

- 결국 법원은 "Prius"라는 자동차 브랜드 명칭이 인도 시장에서 시장 관련자와 인도 국민으로부터 주지성을 얻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문제가 된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에 원고가 "Prius"라는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미 등록된 상표권자, 즉 피고에게 사칭통용(passing off)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함

- 한편, 동 사건과 관련된 개별적인 판단 사유를 추가로 살펴보면, 인도 대법원은 "Prius"라는 상표를 피고가 채용함에 있어 피고의 부정한 목적(dishonest)이 존재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을 거부함. 이와 관련해, 피고는 자신이 크롬으로 도금된 악세사리 제조 분야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해 왔으며 자신의 이러한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을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라틴어로 "첫 번째로 오다"라는 의미인 프리우스(PRIUS)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내었고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프리우스 상표를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그 자체로 원고가 "Prius"라는 상표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한편, 인도 대법원은 동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 제기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이제 와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 지연은 원고의 침묵이 유지된 채 지나간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등록된 상표로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피고에게 일정한 편견을 갖게 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음

4. 해설

- (검토배경) 동 사건은 2017년 12월의 최신 대법원 판례로서, 인도 상표법상 선행상표의 침해 및 상표의 선사용과 관련해 다음의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룸
  ①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한 구제로서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제135조 (1)항)
  ②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로서, 업으로서 사용되는 미등록상표의 보호(제11조 (3)항)
  ③ 미등록상표의 선사용자가 제기하는 상표등록 이의신청(제11조 (5)항)
  ③ 주지상표의 판단 기준(제11조 (6)항 및 (7)항)

- (향후전망) 동 판례는 최근에 제3자에 의한 상표사용을 무제한으로 통제하려는 상표권의 경향에서 상표권자의 권리와 "소비자 혼동" 간에 균형을 잡기 위한 정교하고 확고한 판결이라고 평가됨

  - 또한 동 판례는 상표법상 근본적인 원칙으로 "상표의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주지상표의 저명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동 판결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가지는 상표권자가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자신

의 상표권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trans-border reputation doctrine)을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음

• (분석 및 시사점) 동 사건에서 인도 대법원은 사칭통용을 이유로 한 상표 침해 소송에서 단순히 국제적으로 기대되는 상표의 주지성만으로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함

- 따라서 외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상표권자일지라도 인도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도에서 일정한 소비자가 형성되어 최소한의 정도로 "영업신용(goodwill)"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자신의 상표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제어 사용금지 청구, 선사용, 주지상표, 미등록상표, 상표등록 거절 사유

Ⅳ Industria De Diseno Textile Sa vs. Oriental Cuisines PVT Ltd. & Ors.

(2015. 5.19,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CS(OS) No.1472/2013)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4조, 제107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제60조, 제65조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35조
베트남	

1. 사실관계

• 원고(Industria De Diseno Textile Sa)는 스페인에 기반을 두고 생활 · 패션 용품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국제적으로 저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ZARA"라는 상표의 상표권자임. 원고의 "ZARA" 상표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0대 브랜

드 중에 50위권 안에 속하는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로 인정받고 있음. 한편, 원고는 인도에서 Inditex Trent Retail India Private Limited라는 이름의 Trent Limited of the Tata Group 회사와 공동사업체(joint venture) 형식으로 영업을 운영하고 있음

| 그림 3-3 | "ZARA" 상표와 "ZARA TAPAS BAR" 상표

< Industria De Diseno Textile Sa >

< Oriental Cuisines PVT Limited >

- 피고(Oriental Cuisines PVT Limited)는 인도 콜카타(Kolkata)와 첸네이(Chennai) 지역에서 "ZARA TAPAS BAR"라는 이름의 스페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2003년에 "ZARA TAPAS BAR" 레스토랑을 창업함. 한편, 피고가 최초로 "ZARA TAPAS BAR" 레스토랑을 창업할 당시에, 원고는 이미 전세계 44개국에 지점을 오픈하였고 연 30억 불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상표인 "ZARA TAPAS BAR"에 대한 임시적 금지청구를 법원에 요구하였음. 근거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자신들의 영업신용(good will)과 "ZARA"라는 상표의 저명성에 무임 승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표권에 대한 희석화 현상 그리고 상표침해와 사칭통용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음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ZARA"라는 단어를 197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38년 전에 스페인의 라코루냐에서 첫 판매점을 개장하였음. 원고에 따르면, 피고는 2005년에 니스 분류 16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상품으로 "ZARA TAPAS BAR"라는 상표출원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상표출원 신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며 동 이의제기 신청절차는 현재 진행 중임. 2012년 4월에 원고는 피고의 해당 상표에 관한 또 다른 상표출원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다시 피고의 상표출원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임

- 원고는 “TAPAS”라는 단어는 스페인 요리법에서 스낵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ZARA”의 사용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TAPAS”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는 스페인 문화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원고는 “ZARA”라는 단어가 오직 원고 상표의 인기와 영업신용을 이용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넓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법원 재판과정에서 부정행위(unclean hands)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인도뿐만 아니라 해외 몇몇 지역에서는 “ZARA” 상표 또는 “ZARA”를 구성으로 하는 상표들이 원고의 상표인 “ZARA”와 함께 사용되고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원고가 법원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피고는 또한, 원고의 상표가 유럽연합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부연함

- 또한 피고는 원고에 의해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이 25류(의류, 신발, 모자), 3류(헤어로션 기타 등등), 그리고 18류(가죽 및 모조가죽 등)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의사에 기반한 것이고, 피고의 상표인 “ZARA TAPAS BAR”의 상표등록 출원 직후 2개월 내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묵인에 가까운 중요한 소송지연을 야기했다고 주장함.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2002년에 영업허가를 받고 2003년부터 영업광고를 시작하였고 2005년에 상표출원이 공개되었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함

2. 법적쟁점

- 피고의 상표인 “ZARA TAPAS BAR”와 원고의 상표인 “ZARA” 사이에 기만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 “ZARA TAPAS BAR”라는 상표의 사용이 부정하거나 사기적 행위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이고 피고는 상표에 대한 공존하는 사용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ZARA”라는 상표가 많은 기업들에 의해 사용되고 결국 공공재(publici juris)가 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소송을 늦게 제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이 피고의 상표사용을 원고가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판시사항

- 원고는 피고가 자신들의 홈페이지(www.zaratapasbar.in)를 통해 스페인 스타일의 제품과 서비스를 "ZARA"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영업을 기획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ZARA" 상표의 사용일 뿐만 아니라 "ZARA TAPAS BAR" 상표의 사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TAPAS BAR"와 레스토랑은 그 자체로 "ZARA" 상표로부터 그들의 상표를 구별시킬 수 있는 서로 다른 이종상품(서비스)이었나 아이러니하게도 피고 홈페이지의 스크린샷에서 노출되는 모든 사진들이 "ZARA"라는 단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TAPAS BAR"라는 단어는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읽기도 힘들었다고 주장함

- 동 사건에서 법원은 "ZARA TAPAS BAR" 레스토랑의 광고에서 "ZARA" 단어의 크기가 다른 광고에서 사용된 단어들보다 약 10배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것은 마치 "ZARA"를 자신들의 영업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하고, 피고가 "ZARA"라는 상표를 자신들의 광고에 사용한 방식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와 피고의 상표 사이에 기만적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함

- 두 번째 쟁점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가 "ZARA"라는 이름의 관련성과 독립성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함. 예를 들어, "ZARA"라는 단어는 힌두어에서 "어느 정도"라는 의미가 있고, 우르두어에서는 "새벽"이라는 의미와 여성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었음. 또한 아랍어에서 "zahrah" 는 "개화한 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피고가 확인함. 그리고 간접적으로 북부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와 스페인 문화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ZARA"와 스페인의 연결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함이었음. 그러나 법원은 결국 만약 피고가 원고 상표의 명성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피고는 "ZARA TAPAS BAR" 상표에서 "ZARA" 부분만이 두드러지도록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함

-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 피고는 법원에서 Hearst Communications, Inc. v. Dinesh Varyani & Anr. (ILR (2009) 4 Del. 799) 사례를 주장했는데 이 사례에서 인도 법원은 일반적인 보통의 영어단어의 사용을 근거로 사칭통용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ZARA"라는 단어는 스페인 언어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아직 일반화된 단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네 번째 쟁점에 대해서 비록 원고와 피고의 협상이 2011년 2월부터 진행되었고 최초의 소제기가 2013년에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은 원고가 권리행사를 태만하게 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며 따라서 원고는 상표사용에 대한 금지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함
- 결과적으로 법원은 전적으로 피고의 상표인 "ZARA TAPAS BAR" 상표사용 행위는 부정하고 기만적인 상표사용 행위이고, 만약 원고의 상표가 보호받지 못하고 피고가 "ZARA TAPAS BAR" 상표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수행하도록 인정해 준다면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원고의 상표에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금지청구를 요구하는 원고의 가처분을 인정함

4. 해설

- (검토배경) 국제적인 저명성을 가지는 상표와 관련된 상표분쟁 사례임
- (향후전망) 이 사건을 통해 인도 내에서 외국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분석 및 시사점) 이 사건은 ZARA라는 국제적 저명성을 가지는 상표가 문제된 사건이지만 피고의 행위를 분석해 보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발생시키고 또는 피고의 무임승차 행위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표침해 사건임. 인도 법원이 언급하길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며 최소한 21세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함. ZARA는 중상위급 브랜드이고 인도 소비자들은 원고의 기업과 제품들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상표 ZARA의 지정상품과 피고의 서비스는 서로 다른 이종

간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이지만 인도법원은 상표침해를 인정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선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선등록된 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 상표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대비됨. 이 사건을 바탕으로 혼동과 장래의 상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항상 신규 사업자들은 도메인 운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제어	저명상표, 기만적 유사성, 상표권 침해, 선사용자에 의한 이의신청

V D.M. Entertainment Pvt. Ltd. vs. Baby Gift House and Ors.

(2010. 4.29,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CS(OS) No.893/2002)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4조, 제108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제57조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29조, 제102조
베트남	

1. 사실관계

- 원고(D.M. Entertainment Pvt. Ltd.) 회사는 1996년에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기업명에서 "DM"은 인도의 유명한 가수인 "달러 멘디(Daler Mehndi)"의 이름에서 앞 글자를 따온 것임. 원고 회사는 가수 "달러 멘디"의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동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달러 멘디는 1996년 11월 13일에 자신에 대한 퍼블리시티권과 "달러 멘디(DALER MEHNDI)"라는 상표,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형성된 영업신용 등을 모두 원고 회사에게 양도함

- 피고(Baby Gift House and Ors.)는 가수인 달러 멘디를 모델로 하여 값싼 이미테이션 제품인 인형을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판매하는 인형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판매되었음. 피고가 판매한 인형들은 특정 장치를 이용해 예술가들이 작곡한 멜로디가 몇 소절 가량 재생되도록 제작되었으며, "달러 멘디 인형"이라는 호칭으로 판매됨

- 원고는 피고가 달러 멘디를 모방한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구적 금지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피고가 달러 맨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칭 혼동 행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피고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함. 한편, 피고는 소송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결국 재판에 참가하지 않아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음

- 동 사건에서 원고는, 문제된 인형들이 달러 멘디가 가지는 외형적 모습의 재산적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달러 멘디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해 원고는 달러 멘디의 페르소나(persona, 외형적 인격의 모든 것)는 달러 멘디의 동일성과 연관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준재산권적인 중요한 권리라고 부연하면서, 예술가적인 영업과 그의 퍼블리시티권은 그가 유명해진 이후부터 기하급구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달러 멘디의 페르소나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피고의 행위는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가 원고 혹은 스폰서, 라이선서, 양수인으로부터 제공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일반대중과 사업자들에게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그리고 원고는, 이렇게 무단으로 모방된 표식들은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에 의한 사칭통용 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특별한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원고의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킴으로서 원고의 권리에 대한 희석화를 야기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용허락 없이 달러 멘디의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한 사람에게 막대한 부당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만약 유명한 사람의 페르소나, 즉 외형적 모습이나 그의 개별적인 인격적 모습이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 의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유명인사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림 3-4 | 달러 멘디의 실사와 “달러 멘디 인형”

< 달러 멘디의 실사 >

< 달러 멘디를 형상화한 인형 >

2. 법적쟁점

- 상표법에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여부

3. 판시사항

- 동 사건에 대하여 인도 법원은, 원고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무단 사용 행위 자체 혹은 피고의 행위로 나타난 결과물이 원고와 연관되었다는 인식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서 검토한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중요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설시함
- 다음으로 법원은 2차적인 고려사항으로서, 피고가 달러 멘디를 상징하는 본질적인 요소 또는 페르소나를 도용하였다는 점을 충분하고 적절하며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의 사용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법원은 판결에서,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과 연예인의 동일성 혹은 연관성을 혼동시킴으로서 제품의 판매를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동 사건에서 피고가 달러 멘디의 퍼블리시권 또는 그의 페르소나를 피고의 제품에 투영시켜 달러 멘디의 영업신용을 미끼로 인형들을 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함
- 특히 법원은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이름 또는 외형을 판매할 수는 없고, 오리지널

제품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즉, 모방 대상인 사람의 형상과 모방 결과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방행위가 면제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시함

- 한편 법원은 법리적 관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적인 사권(私權)이고 퍼블리시티권자의 인격적 성향 또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권리자의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강하게 보호하다보면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한 민주적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부연함

- 즉, 법원은 예를 들어, 개인의 인격적 특징을 반영하는 형상을 나타내는 캐리커처, 풍자, 패러디 그 외에 이런 것들과 유사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이와 같은 캐리커처나 풍자, 패러디 등이 상표권 침해를 비롯한 권리침해에 해당된다면 모든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시함. 또한 법원은 캐리커처, 풍자, 패러디 등이 신문의 만화 칼럼, 마임, 연극, 영화, 음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 형식은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질 수 없고, 만약 이런 표현의 형식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 폄하되거나 조롱거리가 된다면 명예훼손, 비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추가로 법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는 자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제품과 퍼블리시티권자의 개성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소비자들을 오인 · 혼동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권리자의 동일성을 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동 사건의 경우에, 피고는 자신이 만든 인형 제품과 연관성을 이용해 원고 이름을 상업화할 목적으로 달러 멘디의 페르소나, 즉 외형적 모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법원은 그리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지는 권리자의 독특한 특징, 개성을 희석화시키는 행위가 분명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부적절한 행위로서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법원은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상표를 비롯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이와 사용허락과 관련된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사칭통용 소송에서, 피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파는 제품이 원고와 관련성을 가지는 제품이라고 인식하도록 디자인되거나 계산된 형상의 물품을 판매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함
- 한편으로 법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저명상표 혹은 상표를 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 서비스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이런 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상품 ·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의 식별력을 희석화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명상표의 가치에 손해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법원은 또한, 무단 사용자가 희석화의 목적으로 상표권자의 지정상품과 다른 이종상품에 유명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고 이러한 사용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인 ·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무단 사용자는 유명상표의 영업신용을 이용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시함
- 이에 따라 법원은 동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영구적 금지청구를 인정함

4. 해설

- (검토배경) 인도법상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공정이용의 충돌 부분 그리고 상표의 희석화 행위와 퍼블리시티권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향후전망) 퍼블리시티권의 상표법적 보호와 사칭통용 소송을 통한 보호의 기준을 확인 할 수 있음
-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은 판례를 통해 보호되고 있는 권리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유명 연예인의 형상을 보장한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를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판결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퍼블리시티권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공정이용 제한과 반비례적 관계에 있음. 이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근거와 보호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함

-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4항 (c)호에 희석화 금지가 규정되어 있음. 등록된 상표가 인도에서 저명한 상표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저명상표를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저명상표의 명성을 훼손시키거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함. 퍼블리시티권은 상표적 권리를 포함한 유명인의 동일성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재산권임
-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퍼블리시티권의 소유자인 개인의 동일성을 모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이 발생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방행위 자체가 퍼블리시티권을 가진 자의 개성을 약화시키거나 명성의 훼손하는 희석화 행위에 해당된다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됨

주제어 퍼블리시티권, 희석화, 오인혼동

Ⅵ P.K. Sen vs. Exxon Mobile Corporation And Anr.

(2017. 1. 4,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FAO(OS) No.290/2016 & CM No.37465/2016)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95조, 제109조
중국	상표법 제43조, 제64조
인도	상표법 제48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베트남	

1. 사실관계

• 원고 1은 Exxon Mobile Corporation(이하 엑손이라고 함)으로 엑손 상표에 대한 등록상표권자임. 그러나 인도 안에 영업소(사무실)가 존재하지 않음. 원고 2는 원고

1의 자회사로 델리에 영업소를 두고 있음. 그리고 해당 상표(엑손)에 대한 승인된 사용권자이다. 상표에 대한 사용권자 또는 실시권자란 해당 상표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고 해당 상표를 문자 그대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임 (실시권자의 개념과 유사)

- 피고는 등록상표 “Exon Engineering Corporation”의 등록상표권자이고 콜카타에 영업소를 두고 있음. 인도 상표법(1999년) 제134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는 다음을 근거로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 2가 델리에 영업소를 두고 있기 때문임. 동 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상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길 델리 고등법원은 해당 상표침해 소송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함

-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크게 2가지 요점으로 나누어 짐. 첫 번째, 인도 상표법 제52조를 언급하는 것은 상표의 등록된 사용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자로부터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상표 침해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두 번째, 상표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승인된 상표 사용권자에 의한 상표 사용은 등록된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라고 원고들은 주장하였음. 즉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원고 2와 같은 승인된 상표 사용권자가 델리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 2의 상표 사용이 원고 1이 델리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임

-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사업은 콜카타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델리에 있는 법원은 현재 상표 침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인도 상표법 제53조 내용에 따르면 명백히 승인된 사용자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2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함. 결국 원고 1이 델리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134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 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상표법 제134조 제2항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포괄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함. 이 사건에서 승인된 사용권자는 134조 제2항에 규정

된 'person'의 개념에 포함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따라서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봄

- 인도 대법원 Exphar SA versus Eupharma Labratories 판결에서 인도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2가 델리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음. 결국 1심법원 판사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 1이 자신의 자회사인 원고 2가 상표를 델리에서 사용한 것을 근거로 원고 1도 델리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러한 1심법원의 판단에 피고가 항소함

2. 법적쟁점

-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 상표 실시권자가 상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시사항

- 델리 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1심 법원 판결이 언급했던 대법원의 Exphar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작함. 델리 고등법원은 1심 법원 판결이 언급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가 현재 사례에 인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함. 저작권법과 상표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에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인된 사용자(permitted user)", "등록된 사용자(registered user)", "상표등록권자(proprietor of the registered trademark)"라는 개념들은 저작권법에는 없고 상표법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이러한 것이 저작권법에 근거한 배타적인 실시권자와 비교하여 상당한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개념이고 동일한 개념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상표법 제53조의 문언적 의미를 해석해 볼 때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권자는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함

- 그리고 등록된 사용권자와 승인된 사용권자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인도 상표법 제52조 제1항은 등록된 사용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승인된 사용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델리 고등법원이 판단함
- 따라서 상표법 제1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개념은 반드시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된 사용권자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되어함. 만약 이와 반대로 해석한다면 명백하게 제53조에서 동일한 내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해석이라고 판단함
- 원고 2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승인된 사용권자이기 때문에, 델리 고등법원은 원고 1에 의해 제기된 침해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했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델리 고등법원은 Ultra Home Construction versus Purushottam Kumar Chaubey 사건을 언급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표법 제134조와 저작권법 제62조 사이에 존재하는 4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판단하였음
- 결국, 원고는 인도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델리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인(cause of action)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적으로 이 사건은 델리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함. 그리고 앞서 언급한 비교 판례에 의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델리 고등법원은 관할권 없음으로 원고의 상표 침해 소송을 각하함

4. 해설

- (검토배경) 실시권자가 등록상표권자와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존재함
- (향후전망) 인도 이외의 국가에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록상표권자의 경우 인도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등록된 실시

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함

• (분석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인도에 영업소가 없는 등록상표권자가 허락된 실시권자의 영업소가 인도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지만 허락된 실시권자가 상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에 영업소가 없는 등록상표권자도 침해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진 것임.

- 인도 상표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와 실시권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던지간에 등록된 실시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서 상표침해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음. 상표법 제134조에 따르면 상표침해 소송을 비롯한 기타의 상표관련 소송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등록상표권자와 등록된 실시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상표법상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이 모두 특허청에 등록이 가능하지만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실시권자가 직접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인도 상표법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통상실시권인지 전용실시권인지 구별하지 않고 실시권의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함. 그리고 인도에서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영업소가 있어야 함

주제어	침해소송, 관할권, 원고적격, 상표권자, 등록될 실시권자, 허락된 실시권자

Ⅶ Philip Morris Products S.A & Anr vs Sameer & Ors.

(2014. 3.10,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중국	상표법 제57조, 제60조, 제65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02조, 제135조
베트남	

1. 사실관계

- 원고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Products S.A.)는 인도에서 담배 "말보로(Marlboro)"에 대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2003년부터 인도에서 "말보로(Marlboro)" 상표를 사용해 말보로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영업신용과 주지성을 쌓아 왔음

| 그림 3-5 | Philip Morris Products S.A. "말보로(Marlboro)" 상표 및 지정 상품 분류

No.	Trademark	Reg. No.	Class	Reg. Date
1.	MARLBORO	390938	34	24th April, 1951
2.	MARLBORO	390940	34	6th October, 1956
3.	MARLBORO(LABEL)	375001	34	22nd April, 1981
4.	MARLBORO(LABEL)	198954	34	9th November, 1960
5.	MARLBORO LIGHTS	374853	34	18th April, 1981

- 2010년 5월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말보로(Marlboro)"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 담배를 판매 · 저장 · 유통시키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였으며, 생산 회사의 허락 없이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회색시장(Grey Market)에서 원고의 진정 상품, 즉 정품 제품들을 판매 ·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 이에 따라 원고는 법원에 피고에 대해 임시적인 금지명령을 청구하였고, 당국은 위조상품들을 압류하기 위해 피고의 영업 장소를 방문할 두 명의 지방 조사위원(commissioner)을 지명함

- 법원은 피고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궐석재판으로 조사위원들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심사함. 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말보로 담배 위조상품을 유통 ·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정 상품도 유통 · 판매한 것으로 드러남. 그리고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원고의 "말보로(Marlboro)"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상표침해 행위는 명백한 것이었음

- 그러나 회색시장에서 유통된 진정 상품 담배의 경우, 원고는 회색시장에서 유통된 진정 상품이 인도에서 판매될 것으로 의도된 상품이 아니고 피고가 당해 담배의 판매

에 관한 허락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해,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항은 등록된 상표의 무단 사용은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고, 이는 진정 상품과 위조상품을 달리 구별하지 않음.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품을 인도에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법 제29조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또한 원고는 비록 문제가 된 담배가 인도에서 판매되기 위해 생산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포장 및 표시와 관련한 인도 규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요컨대, 원고는 피고가 유통 · 판매한 담배의 포장에는 "담배는 당신의 육체적 건강을 해 한다"라는 그림과 서술이 없었고,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관한 기재사항이 인도의 상품 표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함
- 한편,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불법적인 회색시장 수입 · 유통 행위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되고 관세와 판매 세금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침해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테러리스트 집단 또는 마피아와 관련성이 있다고 부연함

2. 법적쟁점

- 상표권의 국제적 권리소진 원칙이 인도 상표법상 인정되는지 여부
- 상표권의 권리소진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관한 판단

3. 판시사항

- 동 사건에 대해 법원은 먼저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30조 제3항과 제4항을 해석하면서, Kapil Wadwa v Samsung 사건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하여 상표권의 국제 권리소진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설시함. 요컨대, 어떤 상품이 판매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매 · 구매된 경우, 이렇게 구매한 상품을 인도에서 판매하는 것은 인도에 등록된 상표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법원은 그러나 해당 상품이 합법적으로 판매 · 구매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입업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수입업자인 피고는 "말보로(Marlboro)"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문제가 된 상품이 당해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권리자에 의해서 세계 어느 시장에서 한번이라도 판매된 적이 있다거나 혹은 수업업자인 피고가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문제가 된 상품을 합법적으로 소유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함

- 동 사건은 피고가 참가하지 않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항변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문제가 된 상품을 합법적으로 구매 · 소유했다는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음. 이와 관련해, 지방 조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는 확인되지 않은 유통업자, 친구로부터의 선물, 외국 관광객 등으로부터 문제가 된 상품들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합법적으로 문제가 된 상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임시적인 금지명령을 인정함

4. 해설

- (검토배경) 동 사건은 상표권의 권리소진에 관한 인도 상표법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2014년 3월의 최근 판례로서,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병행수입의 요건 등과 관련해 다음의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룸
  ①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재135조)
  ②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제29조)
  ③ 상표권의 국제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해석(제30조 제3항 및 제4항)
  ④ 상표권의 권리소진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제30조 관련)

- (향후전망) 동 판례는 인도 법원이 상표권에 대하여 국제 권리소진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향후에 인도에서 병행수입과 관련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병행수입의 합법성에 관한 입증 책임을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임

- (분석 및 시사점) 병행수입이란 상표가 부착된 진정 상품을 해외에서 구입하여 상표

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이는 상표권자로부터 상품 유통 · 판매에 관해 허락을 받은 유통 채널과 병행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유통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서 보통 회색시장(grey market) 수입이라고도 불림

- 병행수입은 회색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이 진정 상품이고 합법적으로 구매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불법적인 암시장(black market)에서의 상품 거래와 구분되지만, 대부분의 상표권자들은 이러한 병행수입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품을 구매 ·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시킴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이전에도 2012년 Kapil Wadwa v Samsung 사건에서 병행수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상표권의 국제소진 원칙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2014년 말보로 담배 병행수입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함
- 델리 고등법원은 최근에 이렇게 상표권의 국제 권리소진 원칙을 지지 · 재확인하면서, 병행수입의 합법성, 즉 해외에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법리적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자에게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향후에 인도에서 상표권자가 병행수입을 한 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또는 금지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된 병행수입 제품이 진정 상품이 아니라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품이라는 것을 상표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 수입업자가 자신의 병행수입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병행수입 문제와 관련한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주제어 권리소진, 병행수입, 사용금지 청구, 상표권 침해

Ⅷ Tata Sons Limited v. Greenpeace International

(2011. 1.28,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CS(OS)1407/2010)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7조, 제108조
중국	상표법 제57조, 제60조, 제65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02조, 제135조
베트남	

1. 사실관계

- 원고의 회사인 Tata Sons Ltd. 는 100개나 넘는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회사 중의 하나임. 원고는 보통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사칭통용 소송을 의미함)

- 원고는 상표권 침해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명예훼손에 따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피고에게 제기하였음. 피고는 Greenpeace International 라는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임. 피고에 따르면 원고가 Dhamra 항구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은 Olive Ridley 바다거북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피고는 Pacman 이라는 유명한 오락 게임을 베이스로 해서 Turtles v. Tata 이라는 게임을 만들었고 이 게임에서 바다거북이들이 원고 회사의 로고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으로 묘사함

- 원고는 명예훼손을 근거(희석화)로 이 게임 제공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을 신청하였음. 원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명예훼손이 발생할 것은 확실하고 이러한 손해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임시 중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잘못된 의사표현에 의해 야기되는 이러한 손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예와 영업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중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러한 청구에 대한 판단은 사용되는 미디어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인터넷은 그 영향력이 출판물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주장함. 피고는 바다거북의 자연 서식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언급했는데 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음. 피고는 항구가 바다거북의 서식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 이 캠페인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저항이어서 이 소송은 '공공의 참여를 위한 전략적 소송(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으로 보았음. 피고들은 이 소송이 원고회사의 명예훼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표 침해 소송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상표법은 상표의 비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임. 마지막으로 피고는 명예 훼손의 증거가 없는 그러한 중지 명령은 공정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법의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함

| 그림 3-6 | 피고 게임의 스크린샷

GREENPEACE.IN With Turtle vs. Tata, Greenpeace India hopes to transform online gamers into concerned citizens. Above, a screenshot from the popular game.

2. 법적쟁점

- 본질적으로 비판, 공정이용과 패러디를 위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의 기준

3. 판시사항

- 법원은 명예 훼손 사건에서 재판 시작 전에 일시적 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통법(Common law)을 근거로 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음. 표현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임시 중지 명령 청구의 거절을 고려하면서 바다거북의 서식지 상실에 대한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피고인 환경단체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인도 정부의 충돌에 대해 의사 표현이 악의적 의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 다른 환경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과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 위원회의 자료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없음을 보여주었음. 이러한 맥락에서 표현의 진실성 여부나 거짓가능성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분명함. 또한 법원은 인터넷 출판물에 대해 다른 판단 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을 거절하였음. 명예 훼손의 본질은 출판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출판물의 영향력/독자층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터넷의 파급력은 명예 훼손 사건에서 별개의 판단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표현의 자유와 지식재산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요소들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판단함

  - 표현이 상업적 이라기보다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표현이 패러디적 사용인지 여부

- 패러디 이외의 수단이 사용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봄.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표의 단순한 사용은 그 상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법원은 명예 훼손 소송에서 패러디의 영향 또는 매체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명예 훼손의 입증이 없는 경우, 임시적 금지 명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4. 해설

- (검토배경) 인도 상표제도에서 상표 패러디에 관한 법리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임

- (향후전망) 저명상표를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상표 패러디의 요건을 살펴볼 수 있게 됨
- (분석 및 시사점) 원고의 상표침해 소송에 항변하여 상표 패러디를 인정받기 위해서 상표 패러디는 명확하게 묘사되어야 함.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한 관객을 목표로 삼을 만큼 저명하고 잘 알려져 있어야 함. 패러디는 패러디 대상물를 복제하는 수준으로 행해서져서는 안되고 새롭게 패러디 대상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만약 패러디가 사람들에게 원본을 연상시킬 수 있게 하지만 원본과 적절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상표 패러디는 상표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위트나 유머가 아무리 많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패러디물이 원본과 오인혼동을 발생시킨다면 상표 침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따라서 패러디는 충분한 명석함과 위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원 상표권자(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상표의 상표권자)가 연관되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거나 패러디를 인정하게 될 것임. 만약 오인혼동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패러디 항변은 인정될 수 없음. 그리고 패러디는 저명상표에 희석화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주제어 상표 패러디, 공정이용, 패러디, 상표 침해

Ⅸ Sri Krishna Sweets Private Limited. v Mr.M.Murali

(2017. 8.23, CMA. No.2266 of 2017, THE HIGH COURT OF JUDICATURE AT MADRAS)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3조, 제34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32조
베트남	상표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80조

1. 사실관계

| 그림 3-7 |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표

- 1948년 소외인 Mahadeva Iyer는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이고 코임바토르 Tamil Nadu란 곳에서 Sri Krishna Bhavan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였음. 1979년 장남인 M. Krishnan(이하 원고)는 'Sri Krishna Sweets' 라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의 어머니, 이모와 함께 공동영업을 하였음. 이 공동 영업 관계는 곧 해소되고 원고인 아들이 모든 사업을 승계해 경영하면서 그는 상호를 Sri Krishna Sweets Pvt. Ltd으로 사용함. 또한 원고의 이름으로 3가지의 상표를 등록하였는데 (1) Lord Krishna의 이미지 (2) 스타일이 적용된 Lord Krishna 단어 (3) 블록글자로 만들어진 Lord Krishna 임. 이 3가지 상표 모두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고 니스 분류 30류를 지정상품을 하고 있음

- 1990년 차남인 Murali(이하 피고)는 SKS Restaurant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시작함. 그리고 1996년 피고는 첸나이에서 "Kovai Sri Krishna Sweets"로 알려진 사업을 시작하였고 거기서 'SKS'라는 로고를 사용하였고 또한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업 캐치프레즈인 "Divine Sweets, Divine Taste"란 문구의 사용허가를 받았음

- 2002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들이 원고의 배우자인 Mrs. Usha Krishnan에게 모두 양도되었음. 또한 이와 유사한 시기에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자(director)가 되었음. 그 이후 2010년 피고는 경영진을 사임하고 피고 자신의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M.K. Mahadeva Enterprises Private Limited"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인도

와 해외에 몇 개의 분점을 개장하였음

- 문제는 2015년에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배우자 Mrs. Usha Krishnan이 자신의 모든 상표권을 원고 회사에 다시 양도하였음. 중요한 점은 회사가 공유하는 모든 것들은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임. 양도합의가 끝난 후 원고는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편지를 써서 상호이면서 상표인 "Sri Krishna Sweets"를 피고가 사용하는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하자고 피고에게 요구함. 그러나 피고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호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공동상속재산이라고 반박하면서 우리 형제 모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이 상호를 사용할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가 원고에게 정식으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자 원고 회사가 상표침해를 근거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함. 지방법원 판사는 원고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마드라스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음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Sri Krishna Sweets" 이란 명칭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1979년에 원고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함.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가 설립한 것은 오직 "Sri Krishna Bhavan"란 이름의 식당밖에 없다고 주장함.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상속자들간 재산분할을 하였지만 그 대상에 "Sri Krishna Bhavan"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명칭에 대한 상표권은 공동으로 상속될 수 없다는 것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조차 이 명칭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원고와 피고가 다툰 것은 단어 상표인 Krishna가 이미 상표등록 된 이후부터 "Sri Krishna Sweets"의 전체적인 상표적 형상은 모두 원고에게 속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문제된 상표에서 "Sri" 와 "sweets"은 일반명칭이기 때문에 Krishna란 단어가 상표의 요부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가장 잘 인식될 수 있고 기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임

- 또 따른 원고의 주장은 1996년 이후부터 구두로 피고에게 상호와 다른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을 하였다는 것임. 또한 미국과 두바이 등지에 음식점 분점을 설립하기 위해 양당사자들 사이에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음. 이것은 즉, 원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모든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에 관한 합의도 있다는 것임. 따라서 명백한 것은 피고가 해당 상표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점을 피고가 알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임

-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다음과 같음.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형제들이 합의한 것은 “Sri Krishna Sweets” 라는 명칭과 스타일이 적용된 형식의 “SKS”란 로고 이 두 개가 선친에 의해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 이것들은 공동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함. 즉, 피고는 문제된 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원고가 주장한 구두에 의한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 공동상속재산에서 근거한다고 주장함. 또한, “Sri Krishna Sweets” 상표는 피고에 의해서 등록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상표는 원고에 의해 라이선스 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사실 문제된 상표가 등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표침해 소송이 성립될 서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웹사이트에서 스크린샷과 영수증 복사본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Sri Krishna Sweets” 란 명칭이 사실 1948년부터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임. 그리고 원고 자신들이 이 명칭의 기원을 (역자 :최초 사용자 의미)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임
- 피고의 마지막 주장은 오랜기간 원고가 피고의 상표 사용을 묵인해 왔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행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에게 로고와 케치프레이즈 사용을 20년간 허락하였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고가 제기하는 금지청구는 피고들 자신들의 사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

2. 법적쟁점

- 상표와 상호가 상속 재산이 된 경우 법률관계
- 가족간의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사용금지 처분의 정당성

3. 판시사항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금지청구 소송을 기각함. 법원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고등 법원은 지방법원 판사 행한 재판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없었다고 함

- 이른바 가족 상표[1]를 법원이 언급한 것은 기록과 증거로 명확하게 "Sri Krishna Sweets"란 명칭이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가 1948년부터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라는 점임. 즉, 법원은 선친과 관련된 그 어떠한 사업명칭의 연상이라도 존중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Narasus's Coffee Company v. Narasu's Roller Floru Mill 사건에 따르면 가족들 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상표권 분쟁을 상표분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친족상속법 관점에서 다룰 것이라는 점임

- 이와 유사한 사례로 봄베이 고등법원 Parle Products v. Parle Agro 사건을 들 수 있음. 법원은 외부 사람들에 대한 상표침해 소송과 가족 구성원 한명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제기하는 상표침해 소송은 구별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음. 법원은 피고에게 "Parle"를 그들의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원고의 상품과 상표와 기만적으로 유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할만한 아무런 기록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임.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길 당사자들 제품의 출처들이 포장용기에 명확하게 구별되게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임. 결국 봄베이 고등법원은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상표침해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원칙을 따랐다고 보임

-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두에 의한 라이선스를 주장하였음. 앞 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문제된 상표에 관해당사자들의 권리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문서들이 있음.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러한 문서가 전혀 없었고 구두 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확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임.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당사자들이 각각 문서와 라이선스, 리스 또는 심지어 사업협상 중의 양도협의까지 문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라이선스가 구두로 이루어 졌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와 협상과정을 고려할 때,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가족들 간의 상표분쟁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최소한 가처분 단계에서, 가족 구성원들간의 영업적 관계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봄. Shri Ram Educational Trust v. SRF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권리자가 동일한 가족 구성원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금지청구를 받아들

1) 가족상표(trademark family)란 대표적인 상표가 존재하면 그 상표의 접두어, 접미사, 음절 또는 기타의 형상을 부가 또는 삭제하여 각각의 상표가 같은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이지 않았음. 특별히 가족들간 상표분쟁에서 발생하는 경우 문제된 상표는 적어도 몇 년간 가족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되어왔을 것임. 따라서 가처분으로 얻은 권리자의 이익과 그 반대이익의 균형을 생각해 볼 때(Balance of convenience & status quo)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법원은 보았음. 이러한 점은 다음의 사실에서도 뒷받침 되는데, 이 사례에서 원고는 거의 20년 동안 피고의 행위를 묵인해 온 것으로 판단됨. 즉, 동생인 피고가 자신의 사업에 "Sri Krishna Sweets"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임시적인 금지명령 가처분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판단함

- 결국 모든 고려사항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균형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판단함.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의 위법함에 대한 심사 없이 법원은 피고에게 금지청구 명령을 내리지 않음.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진실로 이 사건은 비례성측면을 생각하지 않은 친족들 간의 경쟁에 관한 사례로 생각함.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4. 해설

- (검토배경) 이른바 가족들이 상표의 일부 또는 변형된 상표를 공동의 사용하면서 가족 영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경우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표가 공동상속인에 의해 사용되어 진 후 상표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표법의 논리보다 상속에 관한 특별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인도 법원의 특이한 논리를 확인한 필요가 있음

- (향후전망) 가족들 간의 상표분쟁은 대부분 오랜 기간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해왔다는 점과 가족들 간의 분쟁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상표침해 소송의 논리와 차별적인 구분이 필요함

- (분석 및 시사점)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사실 간단한 것임.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가 특정 표장을 상표와 상호로 사용하여 왔고 그것을 두 아들이 이어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상표등록을 하고 있었던 것임. 따라서 원고인 형이 동생에게 상표에 관한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고인 형한테 사용허락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임

- 이 사건에서 인도법원은 가족 구성원간의 상표분쟁과 가족 구성원들이 제3자에게 제기하는 상표침해소송은 구별되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상표분쟁은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함. 특히 가족상표의 경우 오랜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관한 판단에 앞서 현재의 상태유지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함. 따라서 가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임

주제어 가족상표, 상속, 상표권, 공동상속, 실효

X Bhole Baba Milk Food Industries Ltd. v. Parul Food Specialities (P) Ltd.

(2011.10.17, FAO(OS) 109/2011, 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3조, 제34조, 제89조, 제108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제56조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78조
베트남	상표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80조, 제93조, 제123조

1. 사실관계

| 그림 3-8 |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표

< 원고의 상표 >

< 피고의 상표 >

- 원고 Bhole Baba Milk Food Industries Ltd.는 1992년부터 우유와 유제품 관련된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임. 이들은 인도 상표법에 따라 상품 분류 제29류에 "KRISHNA"라는 상표를 등록하였음. 해당 상표는 lotus라는 꽃 가운데 Krishna 신이 서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임. 피고 Parul Food Specialties (P) Ltd.는 우유를 제조하는 업체이며, 이들은"PARUL'S LORD KRISHNA", "Parul's" 그리고 "Lord"라는 브랜드로 버터를 판매하는 기업임. 문제가 된 사항은 피고의 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브랜드가 너무 작게 표기되어 있는 반면, "KRISHNA"가 현저하게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임
- 원고는 증거로 제출한 상품의 모형과 같이 피항소인의 버터 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Krishna'가 2차적 식별력을 갖는 상표적 기능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항소인 측에 대하여 그들의 유제품에 'Krishna'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구함

2. 법적쟁점

- 힌두교 신의 이름이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3. 판시사항

- 하급심에서 델리 고등법원의 Rajiv Shakhdar 판사는 추정적 증거(prima facie)에 따

라 원고의 금지청구를 기각하였음. Rajiv Shakhdar 판사는 상표법상 상표의 2차적 의미의 식별력이란 수요자가 상품을 보고 즉각적으로 판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함. 법원 판사는 힌두교나 가족과 관련된 이름인 KRISHNA에 대하여 상표로서 2차적 의미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그는 Lord Krishna이라는 단어가 어린이들에게 버터나 다른 유제품으로 흔히 알려져 있었고 여전히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함. 따라서 하급심 법원은 Lord Krishna라는 단어와 유제품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상표로서의 독점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그러나 항소심 법원도 하급심의 판결과 같이, 신의 이름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독점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항소심 법원은 만약 신의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게 되면 유제품에 대한 Krishna와 관련하여, 등록 상표의 희석화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언급함. 다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같이, 피고에게 원고 제품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KRISHNA" 외에 "PARUL'S LORD"라는 문구가 보이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등록한 상표가 단순히 KRISHN라는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식별력 있는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법원은 원고가 등록한 상표는 전체로서 식별력을 가지므로, 등록한 상표의 일부 단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함

4. 해설

- (검토배경) 힌두 신들의 이름이 2차적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향후전망) 일반 명칭과 같이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들이 사용으로 인해서 식별력을 얻는 경우 2차적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데 애초에 사용으로 2차적 식별력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판단함
- (분석 및 시사점) 인도에서 신들의 이름은 상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과는 별개로 상표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됨. 이 사건에서 원고의 등록산표는 표장 전체로서 상표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KRISHN란 단어는 상표로서 보호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였음. 중요한 점은 현재 KRISHN란 단어는

여러 상품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단어에 원고의 상표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종 상품에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석화를 근거로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함. 그리고 신들의 이름이 사용으로 인한 식별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함. 따라서 신들의 이름을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됨

주제어 일반 명칭, 2차적 식별력, 상표 부등록 사유, 성인, 신

XI Cartier International Ag vs. Gaurav Bhatia

(2016. 4. 1, CS(OS) No.1317/2014, 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89조, 제110조
중국	상표법 제9조, 제56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인도	상표법 제28조, 제52조, 제53조, 제78조
베트남	상표법 제93조, 제123조, 제198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1. 사실관계

-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원고들은 침해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품제조 행위를 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들의 상품을 침해 사이트에서 판매하지도 않았음. 그러나 문제가 된 인터넷 판매 사이트는 모조품을 95%까지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
- 둘째, 피고들은 그들의 웹사이트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쇼핑을 제공하기 위한 100%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라는 소비자 기만적인 문구를 게재하였음. 또한 그들은 모조품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막대한 할인 가격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피고 측 웹사이트의

모조품이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었음

- 셋째, 압수된 막대한 양의 명품 브랜드(Louis Vuitton, Burberry, Hermes, Chanel, D&G, Prada, Givenchy, Dior, Bvlgari, Fendi, Bottega Veneta 등)를 보면 피고 측이 빈번하게 이름 있는 상품을 위조한 침해자임을 알 수 있음. 나아가 침해 행위는 기만당한 수백 명의 소비자들이 제기한 불만에 의해서도 입증됨
- 넷째, 원고는 일반 수요자들이 그들의 제품과 피고의 모조품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여긴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피고가 원고들에 의해 만들어진 명성과 신용을 이용하기 위해 원고의 상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 다섯째, 원고들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출하였음. 그들은 웹 사이트 방문자 수(약 1만명/월)를 근거로 수익이 판매가에 1%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각 판매 당 수익은 10000 루피이고 이에 따라 지난 2년간의 이익액을 추정하면 36억루피에 달한다고 주장함. 만약 상표를 부착하는 비용이 전체 수익액에 10%라고 보더라도 피고들의 부당이익은 3천600만 루피에 해당할 것임
- 원고는 또 다른 손해액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음. 피고가 각각의 브랜드 마다 1000개 이상의 위조품을 판매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총 4000개의 모조품이 실제로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은 해당 웹 사이트에서 판매된 전체 모조품의 불법적 거래 수에 따라 6만3천 루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2. 법적쟁점

- 피고의 부재로 인해 권석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결
- 상표권 침해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결의 가능성

3. 판시사항

- 법원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고 측에게 원고들의 상표 이용 및 기만이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상표의 이용을 금지할 것을 명령

하였음

- 법원은 Time Incorporated v. Lokesh Srivastava & Anr. 사건에서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에 대한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함. 법원은 또한 침해자들에게 권리자의 권리 침해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그들의 이익보다 손해배상액으로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침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함

- 한편 피고들은 의도적으로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부당 이익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하지 않았음.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판 절차에서 대응하지 않은 피고 측에 대하여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결국 법원은 피고 측에 손해배상액 천만 루피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림

4. 해설

- (검토배경) 징벌적 손해배상과 원고가 제기한 상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에 관한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전망) 법원은 해당 사건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액보다 높게 책정됨을 보여줌. 이것은 인도 법원이 범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높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음. 다만, 해당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3분의 1이었음. 이것은 선례를 위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도 있었지만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부과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인도의 전자상거래관련 산업이 확대되면서 해당 사건과 같은 문제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모조품의 유통을 저지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석 및 시사점) 모조품은 대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특히,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산업에서는 모조품에 의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심각하며,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 모조품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음. 모조품 거래 시장은 저렴하게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확대됨. 모조품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저명한 제품으로 보이도록 속이는 위조 상품임. 모조품을 판매하는 자들은 기존 브랜드 또는 상표의 영업신용을 이용하는 것임. 해당 사례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나 피고가 원고의 제품에 대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문제된 것임

주제어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 산정방법, 저명상표, 침해자 이익

XII Coca-Cola Company & Anr vs Glacier Water Industries Ltd.

(2018. 2.28, CS(COMM) 1290/2016 THE HIGH COURT OF DELHI AT NEW DELHI)

| 관련조문 |

한국	
중국	상표법 제13조, 제14조
인도	상표법 제11조
베트남	상표법 제75조

1. 사실관계

- 원고인 코카콜라는 영구적인 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칭통용과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것은 “원고 1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거나 그 상표가 사용된 제품과 오인혼동을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메인 명칭 아니면 그 부분, 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 상표 또는 상표의 일부로서 원고의 등록상표인 “KINLEY”와 오인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거나 기만적인 상표 그리고 문제된 상표를 사용하는 어떠한 방식하에서 제조, 판매, 판매청약, 마켓팅, 광고,

프로모션, 전시 등의 방법으로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것임

- 이 중에서도 특히 원고가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금지명령을 청구한 사항은 원고의 상표를 도메인 네임인 “kinley.in” 와 “kinleyro.com”를 사용하는 것임. 델리 고등법원은 금지청구 가처분 소송(ex-parte ad interim injunction)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함

2. 법적쟁점

- 희석화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검토
- 저명상표와 주지상표의 희석화 규정의 적용 가능성

3. 판시사항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방적 절차와 희석화에 관해서 주된 판단을 하였음. 우선 일방적 절차와 관련된 판결에서 일방적 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확실한 것처럼 원고가 제기하고 추가한 증거들이 진실되고 정확하다고 인정됨. Ramesh Chand Ardawatiya Vs. Anil Panjwani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하길 명백한 진술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이 별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함 . 소인을 구성하는 관련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면 족하고 법원은 원고가 법률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구제수단을 피고에게 명령할 것임. 일방적 재판ex parte)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규칙 14에 해당되는 문제에 구속되지 않고 규칙 20 제5호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판할 수 있음.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이용할 수 있는 당사자 변론과 자료들을 정확히 확인해야만 하며 추가되는 증거를 고려해야만 함. 그리고 판단해야 하는 쟁점을 잘 가려내고 해당 문제에 대한 이슈를 하나하나 다루면서 일반적 재판의 판단을 구성하고 진행해 나아가야 함. 단순히 피고가 궐석이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 가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봄
- 희석화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함. 원고 1은 니스 상품분류 제32류에 속하는 것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임의 상표인 KINLEY의 등록상표권자이면서 이 상표는 대표적으로 음료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것임. 원고가 언급하길. 피고에

의해 “KINLEY”란 표장의 사용이 중복 되었음. 문제된 상표는 역삼투 과정을 사용하는 물 정화 시스템과 관련 있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 1의 인도 자회사인 the Coca Cola India Pvt. Ltd.과 합작하여 자신들의 물 정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그 어떤 공동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원고에 의해 시행된 조사보고서에서 피고 1은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상품을 광고하였고 KINLEY란 상표가 광고 전단지 또는 유인물 등에 우선적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임. 그리고 원고에 의해 시행된 상표등록에 관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발견되었는데, 피고 1이 여기서도 KINLEY에 대해서 상표출원을 시도했다는 것임. 즉, 2011년 1월 이후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을 주장하면서 제11류, 물정수. 음료 공급과 위생목적을 위해서 출원하였다고 함

-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는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사용허락을 받은 데로 사용하지 않은 자가 상거래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상표침해가 발생하는데 (a)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b) 등록상표에 지정된 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c) 등록상표가 인도에서 저명상표이고 그 상표의 사용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이유가 있거나 그 상표를 해하거나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경우임

4. 해설

- (검토배경) 저명상표와 주지상표 침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희석화와 오인혼동이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향후전망) 희석화 규정은 오인혼동과 관련 없이 저명상표가 이종간의 상표에 적용되는 경우도 상표침해로 인정됨. 그러나 오인혼동이론의 경우 소비자들의 혼동이 발생하는가에 따라 상표 침해 행위가 인정됨. 따라서 희석화 이론의 경우 주지상표 중에서도 높은 저명성을 가지고 있는 상표에게만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임
- (분석 및 시사점) 델리 고등법원은 Bloomberg Finance LP v Prafull Saklecha 사건에서 인도에서의 상표보호에 대한 희석화 범위를 확대시켰고 따라서 그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함.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희석화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음.

상표가 희석되는 경우는 상표의 독특함 즉 저명성과 같은 것이 저명상표에 지정된 상품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저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임. 주지상표의 경우에도 오인혼동 관련 기준만이 문제됨. 희석화는 매우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저명상표에 관해서만 발생함. Bloomberg 판결에 앞서 명성을 가진 상표(mark with a reputation)와 저명상표 간의 애매모호함이 존재하였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것은 주지상표에 대해서 희석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주제어 희석화, 저명상표, 주지상표, 오인혼동, 상품유사

XIII Lupin Ltd. v Johnson & Johnson

(2014.12.23, LAWS(BOM)-2014-12-148, HIGH COURT OF BOMBAY)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4조, 제99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제59조
인도	상표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3조, 제34조
베트남	상표법 제73조, 제75조, 제80조,

1.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의약품을 제조, 판매, 마켓팅하는 기업으로서,원고는 등록상표인 LUCYNTA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의 사용상표인 NUCYNTA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표침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 피고는 이 소송에서, 피고의 상표는 원고의 상표가 인도에서 상표등록되기 훨씬 전부터 인도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였음. 결과적으로 피고가 주장한 것은 원고는 기만적인 유사한 상표를 채용한 것이고 따라서 침해소송

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임

- 양 당사자 변론 이전에 법원은 중간판결 단계에서 법원이 상표 등록의 유효소송에 관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논의를 침해소송과 사칭통용소송의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았음

2. 법적쟁점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선사용자와 등록상표권자 간의 충돌

3. 판시사항

- 먼저 법원은 인도 상표법 제27조, 28조, 29조 제31조를 중점적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본 다음 법원은 사칭통용소송에서 법원이 중간판결(가처분 소송)의 단계에서 상표등록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이 관점에서 법원은 우선 2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 사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것이 상표법 제27조 제2항에서처럼 상대방이 제기한 사칭통용 주장에 대한 항변의 근거가 되지 않고 상표의 선사용자는 후사용자(그것이 등록된 실시권자여도)에게 사칭통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사례로 R.Dongre v. Whirlpool Corp (SC) and Marico Ltd. v. Agro Tech Foods Ltd. (Div. Ben. Delhi HC)를 들 수 있음. 또한 이 판결에서 등록상표의 유효성은 가처분 소송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상표법 제31조에 의해 발생하는 등록상표의 우선권은 이의제기가 가능한 우선권이라는 점을 인정함. 따라서 등록상표권의 우선권은 절대적 우선권아라고 볼 수 없음
- 이러한 판례대로라면 법원은 사칭통용소송에서 상표의 선사용자가 심지어 등록된 사용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화 된 것으로 보임. 사칭통용소송에서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등록상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등록된 사용자에 대해서 금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상표침해소송 단계에서 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단계에서 등록상표의

유효성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였음.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법원의 선례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소송 중에 상표권자가 금지청구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등록된 상표의 유효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또한 상표가 등록된 채로 남아있는 한, 심지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 상표와 유사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규칙들은 법원에 모순적 상황을 만들었음. 왜냐하면 한편으로, 법원은 사칭통용소송에서 금지청구 가처분 단계에서 상표 등록에 대한 유효성 문제를 심사할 수 있도록 되었고 등록된 사용자에게 금지청구를 명령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등록된 사용자는 선사용자를 등록상표 침해를 근거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고 그리고 만약 위 법원의 판단을 따른다면, 법원은 선사용자에게 상표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려야하기 때문임

-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자, 봄베이 고등법원 전원합의부는 Abdul Cadur Allibhoy v. Mahomedally Hyderally 사건을 인용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상표를 모방한 원고는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 이것은 형평법상의 원칙인데 법원이 언급하길 침해소송과 사칭통용소송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함. 따라서 가처분 소송 단계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사칭통용소송이든 상표침해 소송이던지 상표 등록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은 상표법 제28조 제1항의 문언적 의미를 다시 살펴보았고 다음 문장에 주목하였다. “ 이 법의 다른 조항과 관련하여” 그리고 “만약 유효하다면” 즉, 상표보호는 오직 상표등록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또한 상표법 제31조의 우선권에 관한 관점에서 법원은 Marico Limited v. Agro Tech Foods Limited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등록상표의 우선권은 부정될 수 있는 우선권이고 상표등록이 일단은 무효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상표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음

- 사칭통용소송에서 법원이 언급하길 문제는 누가 인도에서 처음으로 상표를 사용하였는가가 아니라 전세계에서 누가 처음으로 상표를 사용하였는가가 문제라고 하였음. 결국 원고의 상표침해 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음

4. 해설

- (검토배경) 상표에 관해 선상용자가 존재하지만 후 사용자가 상표등록을 받아 버린 경우 둘 간의 권리충돌이 인도 상표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확인이 필요함
- (향후전망) 등록 상표권자라고 할지라도 상표의 등록이 유효함을 전제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상표권자가 제기하는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은 근거가 있다면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무효임을 언제지든지 다툴 수 있다고 생각됨
- (분석 및 시사점) 상표에 관해 해당 상표의 선사용자와 등록권자의 권리충돌은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킴. 따라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에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에 반해서 만약 상표가 등록된 경우 그리고 무효 사유가 있는 등록 상표를 근거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은 권리남용의 항변으로 등록상표권자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게됨. 인도의 경우도 이 판례를 통해 등록된 상표라는 것은 유효한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등록 상표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상표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는 등록상표권자의 상표등록에 관한 무효성을 다툴 수 있다고 봄

주제어 선사용자, 상표등록, 등록무효, 사칭통용,

제3절

베트남

Ⅰ 관용상표에 해당하는 등록상표 권리행사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33조
중국	상표법 제1조
인도	상표법 제9조
베트남	상표법 제74조

1. 사실관계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물건 「기와」에 대해 등록상표(기와의 도형과 전통적인 사찰문의 도형을 조합한 도형요소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기와의 생산에 대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
- 피고의 기와는 품질에 비해 원고보다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유사한 상표의 기와생산업무에 대한 사용의 금지 및 128,300,000동(약 48만 엔)의 손해배상(소송제기에 드는 비용, 가격차에 따른 손해, 판매감소, 생산정지를 포함한다) 및 600,000동(약 2260엔)의 감정비용의 배상을 청구함

2) 피고의 주장

- 피고의 상품에 부착된 상표는 전통공예촌에서 얻은 견본에 기초한 것이고 원고의

상표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전통공예촌에서는 전통적 모티브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차이는 각 생산자의 이름이 붙여질 뿐임.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하지 말아야 함

2. 법적쟁점

- 관용상표에 해당하는 등록상표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3. 판시사항

- 제1심 빈딩성 인민재판소는 2006년 4월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피고의 기와생산을 금지하고, 피고는 감정비 600,00동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113,000,00동돈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함
- 원고측의 항소에 따라 제기된 항소에서, 다난시 최고인민법원은 2006년 8월에 1심 판결 일부 파기, 항소인(제1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피항소인(제1심 피고)에 대하여 87,200,000 동(약 32만 8천 엔)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함
- 제2심 판결 후, 피항소인(제1심 피고)의 청구를 받아 2008년 6월 9일자 결정에서, 최고재판소 장관은 제2심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관 평의회에 의한 감독심에서의 제2심 판결의 재검토 및 파기하여 제1심 재판소로 환송함. 문제된 상표의 도형요소는 원래 몇 세대에 걸쳐 이어져 전통공예마을의 공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모티브라는 것이 그 근거임

4. 해설

- 이 사건은 2006년 7월 1일의 베트남 지식재산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분쟁이지만, 감독심 결정일이 2008년 8월 28일부로, 지식재산법 재220조에 근거하여 지적재산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권리의 무효판단에 대해서는 출원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법에 따름

Ⅱ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9조
중국	상표법 제60조
인도	상표법 제52조, 제53조
베트남	상표법 제198조

1. 사실관계

- 2003년 5월 30일에 시장관리국 호치민시 지부 5A 부대 및 현지경찰에 의해, 공업소유권 침해품을 판매한다고 여겨진 Lan Hương 화장품에 대한 행정조치(사찰)가 이루어짐
- 그 결과, 상표권 "Miss"(상품: 향수, 상표권자: 사이공 화장품 회사)의 모방품, 향수병의 의장권의 모방품이 발견되었고 공업소유권청(현재의 지적 재산청)의 판정에서도 침해가 인정됨
- 사찰을 실시한 시장관리국 호치민시지부 5A 부대는 Lan Hương 화장품의 공업소유권 침해를 인정하고, 본건 처리기간을 2003년 7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연장하도록 시장관리국 호치민시 지부에 신청하여 부지부장에 승인을 얻음
- 시장관리국 호치민시지부는 2003년 7월 31일에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본건 처리책을 상신하였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의장명으로 결정 3272/QD-UB가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75,000,000동의 벌금, 영업허가증 1년 정지 등의 행정벌을 Lan Hương 화장품 소유자에게 부과함

2. 판시사항

- 제1심에서, 2003년 10월 20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Lan Hương 화장품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의 청구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장 결정 3272/Q-UB

무효, 손해배상의 청구였으며, 이에 대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2004년 3월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제2심에서,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에 Lan Hương 화장품 소유자가 항소하였는데, 호치민시 최고인민법원은 2004년 8월에 제1심 판결을 파기, 원고측 청구를 인용하여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의장 결정 3272/ Q-UB를 무효로 판결함
- 그 후, 2005년 1월 31일자 결정에서, 최고인민법원 장관은 제2심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관 평의회에 의한 감독심 판결의 재검토 및 파기해 제1심 재판소로 환송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자료로부터, Lan Hương 화장품의 공업소유권 침해 행위는 명확하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의장 결정 3272/Q-UB는 필요했다. 사찰을 실시한 시장관리국 호치민 시지부 5A 부대에 의한 처리기간의 연장절차는 불비가 있고, 처리뿐만 아니라 처분을 연장했어야 했다는 문제점은 있다. 그러나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적절한 사후 대응책을 취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규정이 있어(행정처분법령 56조 1항 후단),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의장 결정 3272/Q을 무효로 하는 항소심판결은 법령위반이다"
- 2005년 4월의 감독심결정은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환송을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거의 최고인민재판소 장관에 의한 감독심 제기의 근거(기술)와 같음. 또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의장 결정 3272/Q사슬-UB를 무효로 하는 것은, 공업 소유권의 보호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3. 해설

-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침해자측이 행정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툰 점인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측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의 위법성이 문제가 됨
- 결론은 행정측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명백한 침해행위의 처분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시되어 있으며,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단, 모방품에 대한 행정조치가 개시(2003년 5월 30일)된 후부터 감독심결정(2005년 4월 26일) 나올 때까지 약 2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즉, 그 이전에는 행정벌이 침해자에 부과되지 않았던 상태가 계속 되고 있었던 것임

Ⅲ 상표「Tan Tan」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8조
중국	상표법 제57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02조
베트남	상표법 제129조

1. 사실관계

• Chau Chanh Vans가 운영하는 Tan Tan Enterprise는 문케이크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1975년 4월 30일부터 상표「Tan Tan」을 사용해 왔으며, 1982년에 이 상표를 등록함

• 한편 Tran Quoc Tan이 운영하고 있는 Enterprise Tan Tan은 튀김 땅콩 및 튀김 캐슈너트 제품을 제조해 왔으며, 1987년 이래 이들 제품에 상표「Tan Tan」을 사용해 옴

• 공업소유권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회사가 Tan의 Enterprise Tan Tan에 상표를 등록하는 동시에, Tan을 대신해 Van이 경영하는 회사가 침해한 공업소유권에 대해 관할 당국과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컨설팅회사는 이들 조치를 취하기 이전부터 Van의 회사가 상표「Tan Tan」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1997년 6월, 새우의 도안에 Tan Tan의 문자를 합친 상표「Tan Tan and figure of a shrimp」를 소유한 Tan의 회사는, 튀김 땅콩 및 튀김 캐슈너트가 속하는 국제분류 제30부류의 제품으로서 인정된 등록증명서 제1986호에 대한 침해행위 대응절차를

컨설팅회사에 위임함

- 1997년 6월 30일 국립공업소유권국(NOIP)은 상기 회사가 상표「Tan Tan」에 대해 제출한 조사신청서에 대해 서면 답변하였고, 이어 1997년 8월 11일, 당국은 Van의 회사에 의한 상표「Tan Tan and figure of a shrimp」의 침해에 관한 정식서신을 송부함
- 이에 대해 Van의 회사는 Tan의 회사야말로 자사의 페닉스의 무늬에 Tan Tan의 문자를 합친 상표「Tan Tan and figure of Phoenix」를 침해하고 있다고 당국에 진술함
- 1997년 8월 14일, 당국은 Van의 회사 앞으로 Tan이 소유한 등록증명서 번호 제1986호를 Van이 침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식 공문을 송부함
- 1999년 1월 14일 상기의 컨설팅 회사는 호치민시 치안부에 Van 포장을 파기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1999년 8월 13일 이 회사는 또 시장관리부에도 상표「Tan Tan」의 침해행위를 중지하고,「Tan Tan」이 인쇄된 포장제품 전부의 처분을 강제해 달라고 요청함

2. 판시사항

- 호치민시 인민법정은 Van의 회사 요구에 따라 1999년 8월 28일 제1심을 열고 상표「Tan Tan and figure of phoenix」의 침해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림
- 동 법원에 따르면, Tan의 회사는, 상표「Tan Tan」를 사용한 튀김 땅콩 및 튀김 캐슈너트의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데, 1990년 국립공업소유권국에 새우 문양에「Tan Tan」의 글자를 합친「Tan Tan and figure of Shrimp」의 상표 등록을 거쳐 제1986호로 인정받고 있음
- Tan은 Van의 회사가「Tan Tan」의 상표로 튀김 땅콩을 제조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시점에서, 튀김 땅콩에 사용되고 있는「Tan Tan」은 Tan에게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상표에서「Tan Tan」을 삭제하도록 Van에 요구하였고, 등록증명서 제86호를 가진 Tan의 회사는 경찰, 시장관리 및 공업권소유국 등 관할당국에 Van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 Tan이 취한 절차는 컨설팅회사를 통해 Van의

회사 제조공정에 막대한 피해와 악영향을 끼침

- 호치민시 인민법정은 상표조사에 관하여 공업권소유국이 발행한 1997년 10월 24일 보고서 제2060호 HB/NH/CTNH를 당국이 양사에 대해 1990년 12월 5일자등록증명서 제2144호 및 1990년 12월 15일자 등록증명서 제1986호로 인정한 증거로서 수령하고, 1999년 8월 28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
- 이에 따르면, Van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 「Tan Tan and figure of phoenix」는 문케이크나 다른 케이크용이고, Tan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 「Tan Tan and figure of shrimp」는 튀김땅콩과 튀김 캐슈너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표에서는 제30류에 속함
- 각각의 상표를 자세히 보면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Tan Tan」이라고 하는 문구는 다른 위치에 인쇄되어 있어 각각 페닉스의 무늬나 새우의 무늬에 맞춘 구성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소비자는 이러한 차이에 따라 양사의 제품을 구별할 수 있음
- 단, 양쪽 모두의 상표로 「Tan Tan」의 부분은 큰 문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이 점에서는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는 어느 쪽의 제품을 다른 한쪽의 회사가 제조했다고 생각해 구입하게 됨
- 상표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분류에 속하는 제품으로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분별하는 표시가 상표이며, 더욱이 이러한 표시는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 됨
- 이번 소송에서는 두 회사의 제품이 국제분류의 같은 부류에 속하며, 더욱이 두 회사의 상표는 유사해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느 한쪽을 보호하고 합법화하면, 다른 쪽은 사용을 제한받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함
- 상표의 사용기간과 등록시기를 고려할 때 Van은 일가족이 1975년 4월 30일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고, Van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Van은 적어도 1982년 이래 이 상표를 사용해왔고 상표등록을 신청함

- 한편 Tan의 건의에 따르면 Tan 일가족은 상표「Tan Tan」을 1987년부터 사용했으며 법정에서 그의 대표자가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하기 전에「Tan Tan」이라는 명칭의 회사가 조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함. 그럼에도 그는「Tan Tan」이라는 같은 용어에 의한 상표가 인가될 전망이 적은 것을 알면서도 등록신청을 하였고, 게다가 상표조사서에는 공업소유권국이 발행한 1997년 7월 27일자 제2060HB/NH/TCNH호에 의하면, Van의 회사는 상표「Tan Tan」의 등록 신청을 1990년 9월 14일에 제출한 기록이 있고, 이것은 Tan의 제출일인 1990년 10월 17일에 보다 빠름

- 즉, Van은「Tan Tan」의 등록신청서를 Van보다 빨리 제출해서 인정받아, 공업소유권국은 이를 받아 회람장 제932/KN호를 Binh Chanh Plant Sheed사에 송부하여 이하를 확인함

- 독일 BAYER AG사의 현지 대리점에서 호치민시에 소재한 BAYER AGRITECH사는 국제등록번호 R359936호의 합법적인 소유자이고, Institute for Tropical Biology에서 Binh Chanh Plant Seed사에 대한 잎비료「BIFOLIAR B.C.(BIFOLAN)」일명 상표「Bimix TOP96-BIFOLAN」의 제조와 관계되는 기술 이전은, BAYER AG사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임. 공업소유권국은, Binh Chanh Plant Seed사에 대해, 동사의 사업활동으로 상표「BIFO LAN」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함

- 1998년 1월 13일 호치민시의 과학기술부 지적소유권부는 Binh Chanh사의 대표자에게 상기사항을 통보하고 상표「BIFOLAN」의 사용중단을 요구함

- 결론적으로, Binh Chanh Plan Seed사는 상표「BIFOLAN」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 1998년 1월 22 일자의 정식서장 제114/CV-CONG TY호에 의해서 해당 상표의 침해행위를 사업 활동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약속함

Ⅳ 상표 「BACTRIM」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6조, 제230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57조, 제60조, 제67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베트남	상표법 제129조, 제199조, 제200조

1. 사실관계

1) 상표권자

- 스위스에 소재한 F. Hoffman La Roche A.G.은 국립공업소유권국에 국제분류 제5류의 상품으로 등록된 국제상표등록 제349140호 「BACTRIM」의 독점소유자이며, 이 상표는 베트남에서 현재 유효함

2) 상표권 침해인

- The Central Pharmaceutical Enterprise No.24, Ho Chi Minh city
- The Da Nang Central Pharmaceutical Enterprise, Da Nang city
- The Central Pharmaceutical Company I, Ha Noi city
- The Pharmaceutical Company of Binh Thuan Province
- The Pharmaceutical and Medical Supplies Company of Tien Giang Province (TIPHRCO)

3) 상표권 침해행위

- The Central Pharmaceutical Enterprise No.24은 상표 「ERY BACTRIM」을 사용하여

위조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하였고, The Da Nang Central Pharmaceutical Enterprise 은 상표「BACTRIM FORT」을 사용하여 위조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하였으며, The Central Pharmaceutical Company I 은 상표「BACTRIMED」을 사용하여 위조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하였음. 그리고 The Pharmaceutical Company of Binh Thuan Province 은 상표「BACTRIM」을 사용하여 위조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하였고, The Pharmaceutical and Medical Supplies Company 은 상표「BACCOTRIM」을 사용하여 위조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함

- La Roche Company의 F. Hoffman의 요청을 받아 INVENCO는 조사를 행해, 침해의 사실을 밝혀냈고, 이어 보건성의약부와 대책회의를 열어 사태규명을 추진함. 호찌민, 하노이, 다난, Binh Thuan시에 있는 약국에서「BACTRIM」의 상품명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을 모았는데, Tiphaco와 Mekophar 외에 3개사가 상표「BACTRIM」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 이러한 불법제조는 Ha Dong의 Phu la에 있는 Trinh의 집, 하노이의 Tu Liem, Hamlet 2에 있는 Phuong과 Liem의 집, Thanh Xuan Bac.의 Xom lieu에 있는 Vuong의 아파트 등 도처에서 행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표권 침해자인 Pham Thi Ngoc Loan, Nguyen Le Thuy, Tran Thi Thanh Xuan, Vuong Thi Thuy, Nguyen Thi Oanh, Vu Thi Chinh는 1995년 1월 6일부터 7일에 걸쳐 위조 타이어를 판매한 불법행위로 체포됨

4)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당국의 조치

- 1995년 1월 5일 Do Quoc Tuan과 Nguyen Ngoc Trang은 위조 타이어 및 튜브의 운송 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같은 날에 경찰은 Toan의 위조제품을 만들고 있는 Toan의 임대주택을 봉쇄하고 위조제품의 제조용으로 있던 물품들을 압류함

- Pho Hue구의 경찰은 1995년 1월 6일부터 7일에 걸쳐 오토바이와 자전거용 부속부품을 거래하고 있는 소유자를 수사하여 Pham Ngoc Loan의 상점, Nguyen Thi Thuy의 상점, Vuong Thi Thuy의 상점, Nguyen Thi Oanh의 상점에 있던 위조상품 튜브와 타이어들을 압수함

• 1995년 6월 4일 형사과학연구소가 압수한 튜브와 타이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2. 판시사항

• 1995년 12월에 본건은 하노이인민법정에 제출되었으며, 피고 Do Quoc Toan, Do Quoc Toan, Do Quoc Vuong, Do Ngoc Trang은 위조품 제조죄로 공판에 회부됨. 그리고 Toan와 Trang은 형법 제167조, Do Quoc Vuong은 동법 제167조에 의해 재판에 회부됨

• 법원은 피고들의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해당 위조상품을 모두 몰수하고, 9개월~48개월의 구금 및 벌금 50만~200만통을 부과함

V 상표 「NEU PAPSIN」에 대한 위조의약품 수입 사건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6조, 제230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57조, 제60조, 제67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베트남	상표법 제129조,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1. 사실관계

1) 상표권자

• 인도에 소재한 RAPTAKOS BRETT CO. LTD.(INDIA)는 1998년 6월 6일자로 공업소유권국이 발행한 상표등록증명서 제27187호에 의한 제3류의 의약품 상표 「NEU PAPSIN」의 합법적인 소유자이며 이 상표는 베트남에서 현재 유효함

2) 상표권 침해인

- Central Pharmaceutical Company, No.24 Nguyen Thi Nghia street, Ben Thanh Ward, District I, Ho Chi Minh city
- Hong Phuc Pharmaceutical Co. Ltd., No.158A, Dong Ho, Ward 8, Tan Binh district, Ho Chi Minh city
- Quang Da Pharmaceutical Company, Da Nang, Quang nam, Da Nang province

3) 상표권 침해행위

- 상기의 침해인들은 상표를 위조해 제조한 의약품을 베트남에 수입해 불법이익을 얻음

4)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당국의 조치

- 베트남 당국은 상표위조에 따른 의약품「NEU PAPCIN」의 수입을 정지시키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NEU PAPCIN」을 부정사용한 상품을 압수하여 폐기를 추진함
- RAPTAKOS BRETT CO. LTD.는 INVENCO에 본 건의 해결을 위임하였고, 당국은 국립공업소유권국(NOIP)에 소장을 송부해, 본 건의 검토 및「NEU PAPCIN」이 부정사용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면 하는 취지를 요청함
- 그 결과, 당국은 서면에 의해서 Central Pharmaceutical Company II는 상표「NEU PAPCIN」를 위조한 의약품을 수입 · 판매해 구매자에게 혼란을 일으켜 속이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상표소유자의 독점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판단함
- 또한 국립공업소유권국은, 과학기술환경성, 의약관리부, 경제경찰, 시장관리과, 관세국 등의 관할당국에게 상표「NEU PAPCIN」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2. 판시사항

- 베트남 시장관리과는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200만통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조품을 몰수함

Ⅵ 상표 「BUDGET」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6조, 제230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57조, 제60조, 제67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베트남	상표법 제129조, 제199조, 제200조

1. 사실관계

- Nghia Sai Gon Enterprise는 제8류에 속하는 손톱깎이, 손톱줄, 미용 가위 제품에 대한 상표 「BUDGET」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am Tu Enterprise는 「BUDGET」라고 하는 용어가 인쇄된 용기 및 제품에는 상표 「DURLIN」을 사용함
- Nghia Sai Gon Enterprise는 Cam Tu enterprise의 침해행위를 발견하고, 공업소유권국(NOIP)에 호소하였으며, 공업소유권국은 1998년 12월 11일 서한1089호/KN을 Cam Tu사에 송부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함
- 공업소유권국(NOIP)은 Cam Tu사가 제품의 대량판매 및 시장획득을 목적으로 용기에 「BUDGET」를 사용함과 동시에 「DURLIN」을 사용해 두 회사 제품 간에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주었다고 판단함

2. 판시사항

- 1998년 12월 15일 호치민시 과학기술부 지적재산권부는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두 회사를 소환하였고, Cam Tu사의 경영자인 Pham Cong Hieu는 자사의 제품용기에 「BUDGET」를 사용하는 것이 Nghia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함
- 이에 따라 Pham Cong Hieu는 자사의 손톱깎이, 손톱줄, 미용가위제품에 상표 「BUDGET」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Ⅶ 상표 「TRUNG DUONG」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6조, 제230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57조, 제60조, 제67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베트남	상표법 제129조, 제199조, 제200조

1. 사실관계

- Pham Thi Ton은 1976년 이래 「TRUNG DUONG」을 간판으로 하여 사진관을 운영하였는데, 1994년 2월 11일 Pham Thi Ton과 Nguyen Phuoc Vinh Trung은 인민법정의 결정에 따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속함
- 이혼 후에 Trung은 「TRUNG DUONG & HINH」를 간판으로 하여 사진관을 개점하는 동시에 공업소유권국에 상표를 등록하였고, 이 상표는 1994년 10월 3일자 증명서 제13550호에 의해 인정받음
- Ton과 그의 아들인 Phong은 상표 「TRUNG DUONG & HINH」에 대한 증명서 제13550호의 취소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업소유권국은 1998년 1월 7일자 서장 제22/KN호에 의해 이 요청을 거부함
- Ton은 공업소유권국의 조치에 불복해 호치민시 인민법정에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이 소송을 반려하면서 과학기술부에 호소하라고 조언함
- Ton는 공업소유권국이 Nguyen Phuoc Vinh Trung에 준 증명서가 사실과 반하고 있어, 실행불가능하고 비합법적이라고 호소하였는데, 그 근거가 되는 이유는 이하와 같음
- (1) 「TRUNG DUONG」라는 명칭은 Ton이 1976년에 440 Bis August Revolution Road에서 작성한 것임. Ton은 그 증거로 호치민시 Precinct 11, District 3을 관할하

는 경찰의 확인서 및 District 11의 인민법정이 발행한 동지구의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부된 서장 제47호, 즉 1995년 6월 17일자 통지서 제59/TB-UB호에 의한 실시 정지에 관한 서장을 제출함

- (2) 관계자 간에 주고받은 약속에 관한 1994년 2월 11일자 결정 제23호에는 「Ton은 이하의 물품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01 카메라 M7, 03조면, 01 촬영용 유리판, 01 탁상용 선풍기, 01 간판, 01 소파 …. Trung은 01 파손된 엔진 10.000U, 01 간판, 01 유리판, 01 선풍기 ….」라고 기술되어 있음

- Ton의 주장에 의하면, 공업소유권국이 상표 「TRUNG DUONG」에 대해서 등록증명서 제13550호를 인가했을 때, 당국은 간판 「TRUNG DUONG」라고 하는 명칭이나, 전술한 호치민시 인민법정이 발행한 이혼결정서를 상세히 살피지 않음

2. 판시사항

-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

- (1) Ton이 간판 「TRUNG DUONG」을 사용해 개점한 사진관 및 당 지구관할의 경찰에 의한 확인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는 그녀의 사업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로서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업면허를 취득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그녀가 거주하고 있어 사진관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경찰의 확인은 이번의 경우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음

- (2) 이혼에 대한 결정 및 호치민시 제11구 인민법정이 발행한 서장에 대하여, 1994년 2월 11일자 결정 제23호에서는 단지 Ton과 Trung이 각각 간판을 소유한다고만 언급되었고, 제11구 인민법정이 발행한 1995년 7월 20일자 서장 제47/CV-TA호는 「재산을 둘로 나누고, 양측이 동일하게 명칭 「TRUNG DUONG」의 간판을 소유하기로 합의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양측의 간판이 카메라, 탁상선풍기 등과 같이 가치 있는 자산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상기의 판결에서는 간판의 상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다음의 서장에 추가되고 있을 뿐이며, 또한 상표의 소유권은 관할 당국에 의해서 정식으로 인가된 경우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임

- (3) 기타 증거들에 대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는 Ton이 Trung과 결혼하기 전에

TRUNG DUONG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서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아들인 Nguyen Thanh Phong이 사진업을 하며, 이혼 후 사업인가를 취득한 것임. 그러나 그의 사업인가에는 간판의 상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4) Nguyen Phuoc Vinh Trung에 인정된 상표 「TRUNG DUONG」에 대한 1994년 10월 3일자 등록번호 제13550호 및 이에 대한 Ton의 취소요구거부에 대하여, 당국은 공업소유권국에 의한 등록인가는 규정된 법률에 따르고 있고, Ton이 상기와 같이 호소한 이유를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인가를 부적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고소신청에 대한 재정도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함

Ⅷ 상표 「MILIKET」 등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6조, 제230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57조, 제60조, 제67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베트남	상표법 제129조, 제199조, 제200조

1. 사실관계

- COLOMEX Co. Ltd.는 상표 「MIKIMEX」 및 「IKIMEX」의 즉석면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들 상표는 MILIKET Food & Foodstuff Processing Factory가 소유한 「MILIKET」 「MILLI」 「VIMEX」와 유사하였고, COLOMEX사의 포장에도 Factory사의 포장을 본뜬 표시가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킴
- 상표를 침해한 제품은 상표 「MILIKET」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Da Lat, Lam

Dong 및 서부의 성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어 막대한 손해를 상표소유자에게 야기함

- MILIKET food and foodstuff processing factory는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INVENCO를 통해 공업소유권국에 침해를 확인하는 소장신청서를 송부하였고, 1997년 6월 11일 공업소유권국은 INVENCO 앞으로 「COLOMEX사에 의한 상표 MIKIMEX & IKIMEX의 사용은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포고 제21.1조 및 상표에 관한 법령 제14.1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상표등록소유자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업소유권국은 COLOMEX사에 대해 사법조치의 시행 전에 즉시 상표 MIKIMEX 및 IKIMEX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기술한 내용의 회람장 제307/KN호를 발행함
- INVENCO는 이 서장에 기초하여 Can Tho 및 Lam Dong성의 관할당국과 협력하여 침해에 대처함

2. 판시사항

- 과학기술환경성(DOSTE)과 Can Tho성의 시장관리국은 COLOMEX사에 대해 상표 「MIKIMEX & IKIMEX」에 의한 즉석면의 제조를 중지하고, 또 상표가 인쇄된 포장으로 미사용 부분을 모두 파기하도록 명령함
- 과학기술환경성 및 Lam Dong성의 시장관리국은 MKIMEX & IKIMEX의 마크가 들어간 즉석면을 싣고 Can Tho에서 Lam Dong으로 운송중이던 트럭을 알아내어 제품을 몰수하였고, 방송을 통해 상표를 모방한 제품을 사지 말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함
- COLOMEX사는 인쇄된 포장의 파기 및 MIKIMEX와 IKIMEX 마크를 사용한 생산을 중지하하는 것에 합의함. 다만, 이미 매장에 나와 있는 1,0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허가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였는데, 과학기술환경성은 인쇄된 포장을 파기해 MILIKET Factory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마크와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를 승낙함
- COLOMEX사는 1997년 8월 30일 이후 MILIKET Factory사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과학기술환경성 및 시장관리국의 감시 하에 모든 포장을 파기함

Ⅸ 상표 「TRYMO」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

| 관련조문 |

한국	상표법 제106조, 제230조
중국	상표법 제7조, 제57조, 제60조, 제67조
인도	상표법 제2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베트남	상표법 제129조, 제199조, 제200조

1. 사실관계

1) 상표권자

- Raptakos Brett & Co. Ltd.는 국제분류 제5류에 속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1996년 7월에 인정된 상표 「TRYMO」, 상표등록증명서번호 제21674호의 소유자임

2) 상표권 침해인

- Hiep Phat Pharmaceutical Co. Ltd.
- Nam Ha Pharmaceutical Co.
- Samsung Co.(한국기업)

3) 상표권 침해행위

- 상기의 3사는 베트남 시장에 있어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상표 「TRYMOGAST」에 의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계약을 서로 교환해 불법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들 기업에 의한 침해행위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Nam Ha Pharmaceutical Co.는 한국의 DAE IL PHARM IND.CO. Ltd.가 제조하고 있는 상표 「TRYMOGAST」에 의한 의약신제품 합법 수입업자인데, 상표 「TRYMOGAST」는 인도의 Raptakos Brett & Co. Ltd.이 소유하고 있는 「TRYMO」와

유사함. Hiep Phat Pharmaceutical Co. Ltd.와 Samsung은 베트남「TRYMOGAST」제품의 유통업자임

- 1997년 12월 19일, Raptakos Bret & Co. Ltd는 한국의 DAE IL PHARM IND.CO. Ltd.가 제조하고 있는 상표「TRYMOGAST」의 의약품이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시점에서 관할당국에 침해행위를 호소하는 대리인으로서 INVENCO를 지명함
- 1998년 1월 3일, INVENCO는 공업소유권국(NOIP) 앞으로 상표「TRYMO」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장 제01/BKN호를 송부하였고, 1998년 2월 20일 공업소유권국은 상표「TRYMOGAST」의 사용은 상표「TRYMO」의 소유자인 Raptakos Bret & Co. Ltd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확인하는 공식 서장 제114/KN호를 발행하여 경제경찰, 시장관리국, 무역성 등의 관련 부처에 송부함
- 1998년 2월 20일자 서장에 기초하여 INVENCO는 이들 송부처 및 호치민시의 과학기술환경성 조사부에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요구함

2. 판시사항

- 1998년 3월 10일, 시장관리국은 Nam Dinh의 시장관리부와 협력하여 Nam Ha Pharmaceuticals사에 조사원을 2명 파견해, 조사기록의 작성, 문서의 조사, 상표「TRYMOGAST」가 붙은 제품 리스트의 작성을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를 통해 Nam Ha Pharmaceuticals사는 한국의 DAE IL PHARM IND.CO. Ltd.가 제조하고 있는 상표「TRYMOGAST」에 의한 의약신제품의 합법적인 수입업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장관리부는 Nam Ha사에 침해상표에 의한 제품수입을 중지하도록 약속할 것을 요구함
- 1998년 3월 21일, 호치민시에 있는 과학기술환경성의 조사부는, 동성, 시장관리부, INVENCO, Hiep Phat Pharmaceutical Co., Ltd. 및 Sam Sung Co.의 대표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이하의 대응을 토의함
- (1) 한국의 SamSung사가 상표「TRYMO」제품과 유사한 상표「TRYMOGAST」제품

을 수입한 것은 베트남에서 인정된 상표「TRYMO」의 등록증명서 제21674호 소유자인 Raptakos Brett & Co., Ltd.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2) 호치민시에 소재한 Samsung사의 주재사무소에 대해 한국의 SamSung사로부터 상표「TRYMOGAST」제품의 수입중지를 요구하고, 베트남에 남은 제품에 대한 해결을 요구함
- (3) Hiep Phat Pharmaceutical Co. Ltd. 및 Sam Sung Co.가 걸리는「TRYMOGAST」재고품에 대해서는 시장관리부가 재수출하기 위해 전량 몰수함
- 3개월간 Hiep Phat Pharmaceutical Co. Ltd.의 상표「TRYMOGAST」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엄격하게 관리했고 그 이후에는 수출인가 정지, 침해대상제품 몰수 및 재수출, 시행되는 법률에 따른 침해자에 대한 벌금을 조치함
- 하노이 인민법정 제1심 법정에서 1996년 6월 25일 내린 판결 제323호에 의해 Tran Dinh Quy에 구금 4년, 5,500,000동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Nguyen Van Nam은 위조죄로 구금 2년 및 960,000동의 벌금이 부과됨

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제4장

국가별 상표 관련 정책동향

제1절 중국

제2절 인도

제3절 베트남

제1절

중국

Ⅰ 중국 상표국, '제6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 발표

- 2018년 9월 20일, 중국 상표국은 '제6차 상표수리창구 설립 비준에 관한 공고(关于批准设立第六批商标受理窗口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2016년 7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의 대대적인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을 공포하고 상표출원 채널 다양화, 출원 절차 간편화, 심사 효율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제1차 상표수리창구) 2016년 9월에 최초로 하얼빈시 등 15개 지역의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함
  - (제2차 상표수리창구) 2017년 3월 1일, 베이징시 차오양구 등 41개 지역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함
  - (제3차 상표수리창구) 2017년 6월 19일, 라오닝성 판진시(辽宁省盘锦市) 등 20개 지역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하고 6월 20일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함
  - (제4차 상표수리창구) 2017년 10월 17일,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스징산 지국 등 29개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함
  - (제5차 상표수리창구) 2018년 1월 29일,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펑타이(丰台) 지국 등 18개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수리창구를 설립함

- (주요내용) '지방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 등록출원 수리를 위탁하는 것에 관한 임시규정'에 근거하여 베이징시 통저우구(通州区) 등 지역에 총 31개의 상표수리창구를 추가 설립함

- 이번에 설립된 상표수리창구는 2018년 9월 20일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으며 상표 등

록출원 접수업무를 담당함

Ⅱ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난(济南) 상표심사협력센터 설립

- 2018년 9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 상표심사협력센터(济南商标审查协作中心, 이하 '지난 센터')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거행함

- (배경) 2018년 5월 기사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중국의 상표 출원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하여 연 내에 8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은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칭 외에도 지난 및 정저우에 상표심사협력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함2)

  - 2017년 말 기준, 지난시의 유효 상표건수는 약 11만 건,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는 165건, 지리적 표시 상표 34건, 저명상표(驰名商标) 59건, 중화 라오즈하오(中华老字号)3) 12개, 산동 명품상품(山东名牌产品) 133개를 기록함

- (주요내용) 지난 센터에서는 상표출원에 대한 현장 접수, 심사, 상표 법률 홍보 및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지난 센터의 설립 전, 지난시의 상표 출원인은 전자 출원 방식 또는 베이징을 직접 방문하여 상표를 출원하여야 했음
  - 지난 센터는 산동성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표출원 접수창구의 설립을 강화하며, 산동성 및 주변 기업의 각종 상표 업무를 위한 고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산동성의 상표전략 실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해 상표심사센터에 의탁하여 상표심사 실무를 강화하고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상표이론 연구를 적극 수행하여 상표 분야의 고품질 연구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지난 센터를 중국 내 상표이론 연구의 중요기지로 만들고자 함

Ⅲ 중국 상표국, 상표사용 증거 제출에 관한 설명 발표

- 2018년 8월 13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중국 상표법상 상표사용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
- (주요내용) 상표국은 상표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형식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중국 상표법상의 상표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열거함

1. 지정 상품에서 상표사용의 구체적인 형식

- 직접 부착 · 인쇄 · 낙인 · 편직 등의 방식을 통해 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 용기, 라벨 등에 부착하거나 상품에 추가한 마크, 상품설명서, 카탈로그, 가격표 등에 사용
- 상품 판매 거래, 영수증, 어음, 인수증, 상품수출입 검역검사증명, 통관서류 등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품 판매와 관련된 거래문서상에 상표를 사용
- 라디오, 텔레비전 등 매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공개적으로 발행된 출판물을 통해 발표되는 경우와 광고판, 우편광고 또는 기타 광고방식으로 상표 또는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를 진행
- 전람회,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해당 상표가 사용된 인쇄품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하여, 전람회 및 박람회에서 상표를 사용
-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표 사용형식

2. 지정 서비스에서 상표사용의 구체적인 형식

- 서비스장소에 직접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서비스의 카탈로그, 서비스장소 간판, 매장 장식, 직원 복장, 포스터, 메뉴판, 가격표, 쿠폰, 사무용 문구, 편지지 및 기타 지정 서비스와 관련된 물품에 사용되는 경우 포함)
- 서비스와 연관된 문서자료에서의 상표 사용(영수증, 입금 전표, 제공 서비스 계약, 유지보수 증명 등)

- 라디오, 텔레비전 등 매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공개적으로 발행된 출판물을 통해 발표되는 경우와 광고판, 우편광고 또는 기타 광고방식으로 상표 또는 상표를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광고 홍보를 진행
- 해당 상표가 사용된 인쇄품 및 기타 자료를 전람회 또는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람회 및 박람회에서의 상표 사용
-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표 사용형식

3. 상표법상 상표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 상표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상표등록인이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향유하는 전용권에 대한 성명
- 공개된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 경품으로만 사용
- 양도 또는 허가 행위만 있을 뿐 실제사용은 없는 경우
- 상표등록 보호만을 목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된 경우
- (기타내용) 이 밖에도 상표국은 상품판매계약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 서면 증언, 시청각 자료, 홈페이지 정보, 실물과 복제품 등의 증거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상표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함

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8년 상반기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통계 발표

- 2018년 7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8년 3분기 정례 언론발표회를 개최하여 2018년 상반기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등의 통계 데이터를 발표함
- (개요) 이는 올해 3번째로 개최된 언론발표회로서 SIPO 개편 이후 처음으로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등 지식재산 관련 통계 데이터를 종합 발표하는 자리임
- (주요통계) 2018년 상반기 중국의 주요 지식재산권 지표는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

1) 특허

- 특허 출원건수는 75.1만 건, 특허 등록건수는 21.7만 건이었으며 그중 중국 국내 특허 등록건수는 17.1만 건을 기록함
- 중국 국내 특허 등록건수 중, 직무발명이 15.9만 건으로 93.2%를 차지하였고 非직무 발명은 1.2만 건으로 6.8%의 비중을 차지함
- 2018년 6월 말 기준, 중국 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특허 보유건수는 147.5만 건이며, 인구 만 명당 특허 보유건수는 10.6만 건임
- SIPO가 수리한 PCT 국제 특허 출원은 2.3만 건으로 동기 대비 6.3% 증가함

2) 상표 및 지리적 표시

- 상표 출원건수는 358.6만 건이며, 완료된 상표 심사건수는 306.5만 건을 기록함
- 2018년 6월 말 기준, 중국의 상표 출원 누계는 3,142.8만 건, 등록 누계는 1,939.5만 건, 유효 등록 상표는 1,680.7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시장주체 6.1개가 상표 1건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신청은 10건, 지리적 표시 상품 등록 승인은 46건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지리적 표시 상품 누계는 2,359건(중국 국내 2,298건, 국외 61건)을 기록함
- (주요특징) 2018년 상반기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관련 통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창출 · 활용수준 향상) 중국 국내 특허 등록건수 및 보유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19.5% 증가했고, 상표 출원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5% 증가함
  - (중국기업의 혁신주체 지위 공고) 중국 국내 특허 등록건수 및 보유건수에서 기업이 각각 63.8%와 67.2%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국기업의 특허 5년 이상 유지율은

71.2%를 기록함

- (중국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출원 증가) 2018년 1월~6월, PCT 국제 특허 출원 100건 이상인 중국기업은 17개이며, 2018년 1월~5월 마드리드 상표 국제 출원은 2,2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69% 증가하여 마드리드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함
-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개선) 2018년 상반기 전국에서 특허 행정집행을 통해 처리된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하였는데, 그중 특허 분쟁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1.0% 증가하였고, 상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는 1.36만 건(2.1억 위안 가치)을 기록함

V 중국 상표국, 마드리드 국제등록 전자출원 개시 공고

- 2018년 6월 20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위한 전자출원 시스템을 6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공고함
- (배경) 2017년 중국 출원인에 의한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출원은 4,810건으로 전년 대비 59.6% 증가하여 마드리드 동맹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하는 등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 상표국은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이래로 마드리드 출원 및 심사의 전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주요내용) 상표대리기구 및 중국 국내 출원인은 '상표 온라인 출원 시스템(商标网上申请系统)'의 '국제등록출원(国际注册申请)' 항목에서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출원이 가능하며, 마드리드 전자출원 시스템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음

1.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의 주요 조치

- 온라인 시스템의 운영은 국무원(国务院)의 '간정방권(简政放权)' 정책 및 상표 브랜드 전략의 수행을 위한 주요 조치임
- 또한 이는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구현하는 것이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2. 중국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의 중요한 이정표

-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위한 전자출원 시스템은 상표국과 국제국(国际局) 간의 양방향 전자통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출원인에서 상표국으로, 상표국에서 다시 국제국으로 향하는 전 과정의 전자화를 실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업무수준이 향상됨
- 마드리드 동맹의 주요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고 중국 내 마드리드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마드리드 동맹 내에서 중국의 지위 및 발언권을 제고함

3.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 2017년 8월과 2018년 1월에 상표국은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출원의 간소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등록출원 절차를 더욱 규범화하고 간소화함
- 국제출원의 전자화를 통해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
- 전자출원 시스템은 서면처리의 중간단계를 생략함으로써 국제우편 송달 시간을 절약하고 출원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업무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해외에서 중국 상표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함

Ⅵ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3개년 계획 발표

- 2018년 4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언론발표회를 개최하고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문제해결 3개년 계획(2018-2020년)(商标注册便利化改革三年攻坚计划(2018-2020年))'을 발표함
- (배경) 2016년 7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의 대대적인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을 공표하고 상표 출원채널 다양화, 출원절차 간편화, 심사 효율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상표국은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중국 공산당 19대 보고서의 '지식재산권 창출 · 보호 · 활용 강화'를 실현하며, '정부 업무보고' 중 제시한 '상표 등록기간의 대대적인 단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 계획을 수립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상표 등록기간 단축'을 주요 목표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말까지 상표 등록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OECD 국가의 평균 심사기간 대비 짧은 심사기간 달성
- 2020년까지 우수한 품질과 고효율의 상표 등록 시스템을 구축
- 상표 출원채널을 다양화하고 상표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상표 등록과 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상표심사협력센터를 합리적으로 배치
- 상표 등록출원(국제등록 심사 포함) 심사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
- 심사효율 제고, 심사체제 완비, 출원절차 간소화,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 기술 지원 강화, 법률 개정 추진 등을 개혁의 주요임무로 규정

• (관련성과) 상표국 관계자는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 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상표국은 2016년 7월부터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실시한 이래로 베이징 외 상표심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지방 상표수리창구를 증설하며 상표 등록과정을 최적화하고 상표 등록 전 과정의 전자화 추진 등의 조치를 통해 상표 심사체제를 완비하고자 노력함
- 또한 동 개혁을 통해 상표등록 심사기간이 9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됨

Ⅶ 중국 국무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개편

• 2018년 4월 1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설립하고 현판식을 개최함

• (배경) 2018년 3월 17일, 국무원이 제청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이 심의에 통과함

- 국무원은 정부 역할을 발휘함에 있어서 체제상 폐해를 방지하고 중점 분야에 대한 정부기관의 기능을 더욱 최적화하고자 국무원 기구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동 개혁에는 국가지식산권국(SIPO) 개편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등 지식재산 주무부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동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담당하던 상표 관리업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지리적 표시 관리업무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SIPO가 총괄하게 됨

• (목적) 국무원은 시장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장 감독 · 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며,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출범함

• (주요직책)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치되어 시장 종합 관리감독을 주요 직책으로 하며, 상세한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기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직책,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직책,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직책,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감독 및 반독점 집행 직책,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 반독점 집행,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판공실 등의 직책을 담당함
- 시장주체 등록, 정보 공시 및 공유체제 수립, 시장 감독관리의 종합적인 집행업무, 반독점에 대한 통일적인 집행, 시장질서의 보호 및 규범화, 품질강국 전략 조직 · 실시, 산업제품 품질 안전, 식품 안전, 특수설비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계량표준, 검사, 인증인가의 통일적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함

• (관련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설치되면서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은 폐지 · 재편성됨

-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약품, 화장품, 의료기계의 등록과 실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요 직책으로 함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출입국 검역 관리 직책은 해관총서로 귀속됨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와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국가시

장감독관리총국이 담당함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직책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귀속되며 대외적으로 기관명은 유지함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폐지함

Ⅷ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상표 등록기간 단축 계획 소개

• 2018년 3월 9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 장마오(张茅) 국장은 양회(兩會) 부장통로(部长通道) 인터뷰에서 2018년 연내에 상표 등록기간을 현재의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배경) 양회 부장통로는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개최되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회의 전 주요 기관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인터뷰 장소임

• (주요내용) 동 인터뷰에서 장마오 국장이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사제도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시장주체가 증가하였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도 제고됨
- 중국의 상표 출원건수는 매년 대폭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55% 증가하여 약 574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상표 출원건수의 80%에 해당함
- 2017년,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기간이 9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되었으나,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는 다시 8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임
- 상표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표심사 시에 하나의 상표 도형을 여러 건의 유사 도형과 대조해야 하는 등 대조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며, 공상총국은 빅데이터와 정보화 수단 활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임
- 현재 전자출원 비중은 80% 이상이며, 향후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더욱 강화하여 등록 전 과정의 전자화를 추진할 예정임

Ⅸ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 발표

• 2017년 9월 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11개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外商投资企业知识产权保护行动方案)'을 발표함

• (배경) 2017년 8월 31일, 상무부는 국무원의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실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특별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17년 9월~12월, 12개 기관은 동 행동방안에 근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 (주요내용) 동 행동방안은 11개항의 임무와 임무별 책임기관을 명시함

임 무	책임기관
영업비밀 침해 위법행위 단속	공상총국, 고급인민법원
유명브랜드 도용 등 상표권 침해 위법행위 단속	공상총국
특허, 상표, 디자인권 침해 위법행위 단속	국가지식산권국
인터넷 해적판 등 저작권 침해 위법행위 단속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
식물신품종권 침해 위법행위 단속	농업부, 임업국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의 수출입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해관총서
우송 절차 안전 관리감독 강화	우정국
권리 침해 및 위조 범죄의 엄격한 단속	공안부
관리감독 강화	고급인민검찰원
사법심판 강화	고급인민법원
대외홍보 강화	상무부

• (업무계획) 향후 동 특별행동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9월~12월) 각 지역 유관 기관은 동 행동방안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업무 영도소조(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 이하 '영도소조')에 보고해야 함

- (2017년 12월 31일 이전) 각 지역 유관 기관은 특별행동에 대해 총 결산하여 영도소조 판공실(办公室)에 특별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X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 발표

- 2017년 8월 31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동 특별행동은 2017년 8월 7일에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를 실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특별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동 특별행동은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 · 판매 단속업무 영도소조(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 판공실(办公室)과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유관부처는 동 특별행동을 위해 사전에 대대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을 청취함

- (주요내용) 상무부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에 관한 문건의 초안을 작성 중이며, 동 특별행동은 다음의 3가지 분야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함

  - (영업비밀 보호) 재중(在中) 외국기업의 관심이 비교적 높은 영업비밀의 보호수준 강화
  - (상표권 보호)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및 유명브랜드 위조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 (인터넷 저작권 보호) 인터넷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분야의 저작권 침해를 집중 단속

- (향후계획) 상무부 대변인은 특별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XI 중국 국무원, 2017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발표

• 2017년 6월 2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7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2017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5가지 중대업무에 대한 103개 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음

1.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점 총체방안' 실시, 국가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집결발전시험구 및 시범구 건설 추진
- (지식재산권 중대정책 완비 개혁) '중국 국민경제 계산체계(2016)' 실시, 지식재산권 평의(评议) 정책 및 평의서비스 관련 표준 제정, 지식재산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혁신구동 발전 평가체계 수립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방관복(放管服)' 개혁 심화) 특허 및 상표대리기구 관리감독 강화, 상표대리 신용관리 임시방법 및 지식재산권 자산실사 규범 제정

2.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 (법률 · 법규 등 완비) 특허법 제4차 개정 및 특허대리조례 입법 추진, 저작권법 제3차 개정 추진
- (장기적 효과체제 수립 강화) 민사 · 행정 · 형사 사건 심판의 '삼합일(三合一)' 업무 추진,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독려, 검찰기관의 지식재산권 사건 전문성 제고
- (중점 분야의 특별관리 개시) 상표전용권 보호 강화, 인터넷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 (일상 관리감독 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업무 규정 제정, 비즈니스모델 등

신흥업계의 혁신성과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발표

3. 지식재산권 창출 · 활용 촉진

- (지식재산권 창출 품질 제고) 특허 품질 향상 프로젝트 실시, 중점산업의 특허 출원 집중심사 전개
- (지식재산권 종합활용 강화) 과학기술 성과 전환 지원체제 완비, 전국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 출시
- (지식재산권 정보 이용 강화) 산업지식재산권 공동활용 추진활동 실시, 상표 전자출원 추진

4.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 및 협력 심화

- (중점 산업의 해외 구조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해외 지식재산권 환경 연구 추진,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실무 경영지침' 제정, 일대일로(一路一带) 인근국가와 세관협력 추진
- (지식재산권 대외협력 수준 제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과 교류협력 강화

5.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

- (정책 제정 및 추진 강화)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정보업무 관리방법 개정,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평가제도 연구,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 실시 10주년 평가업무 추진
- (인재 양성 및 홍보 강화) '지식재산권 인재 13 · 5 규획' 제정 및 상응하는 실시방안 제정,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프로젝트 실시

XII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 전자출원 서비스대상 확대

- 2017년 3월 10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은 상표 전자출원 서비스의 이용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배경) 동 조치의 시행 이전에는 상표대리기구에 한해서만 전자출원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했으며 온라인에서는 출원 접수서비스만 제공했음

  - 2016년 7월, '공상총국의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工商总局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을 발표하여 전자출원 서비스 대상을 전체 출원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출원, 온라인 자문, 온라인 공고, 온라인 비용납부의 '4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요내용) 동 개혁에 따라 3월 10일부터 상표대리기구를 비롯한 국내 출원인, 중국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외국인(외국기업)은 전자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종전에는 중국 상표망(中国商标网) 사이트에서 상표출원만 가능했으나 자문, 공고, 비용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됨
  - 공상총국은 이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상표 전자출원 임시시행규정', '상표 전자출원 지침', '상표 온라인 출원 시스템 이용자 협의' 등을 제정함

- 공상총국은 2017년 한 해 동안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을 심화 실시하여, 2017년 말까지 전자상표등록증, 전자송달을 실현하고 상표등록 전 과정의 전자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XIII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거래센터 설립

- 2017년 1월 13일,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은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연석회의(上海市知识产权联席会议)와 공동으로 상하이 지식재산권 거래센터(上海知识产权交易中心)를 설립함

• (배경) 2016년 1월~11월 상하이시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은 약 10만 5천 건으로 동기 대비 22.6% 증가하였고, 그중 특허 출원은 47,000건을 초과하여 동기 대비 19.3% 증가함

- 상하이시는 현재 현금화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가치실현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 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임

• (주요내용) 상하이 지식재산권 거래센터의 역할 등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하이시의 관련 기관은 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상하이 지식재산권 거래센터의 조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며, 거래 시스템 · 제도 · 인재조직을 구축하고 시장화 운영체제를 수립할 계획임
- 또한 시장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식재산권 거래를 유도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 실현을 촉진할 것임
- 동 센터는 전문화 · 시장화 · 국제화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각종 지식재산권의 양도 · 거래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특히 지식재산 권리확정 평가, 상장, 양도 오퍼, 거래 감정, 결산 정산, 위탁관리 등기, 항목 융자, 항목 추천, 정책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향후계획) 관계자는 동 센터가 시장 운영방식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공익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소기업 지원) 정식 운영을 개시한 이후 중소기업에게는 원가 수준의 최소 비용만 받거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지식재산권 평가 · 위탁관리 · 투자 및 융자 등 다원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XIV 중국 상표국, '상표 심사 및 심리 표준' 개정

- 2017년 1월 4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商标局)은 개정된 '상표 심사 및 심리 표준(商标审查及审理标准)'을 공표함

- (배경 및 목적)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는 상표법 제3차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층 더 규범화하여 상표 심사 및 심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 표준을 개정함

  - 동 표준은 해외국가의 심사표준을 참고하고 다년간의 상표 심사 및 심리 실무경험을 취합하여 작성되었으며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됨

- (구성) 동 규정은 '상표 심사 표준'과 '상표 심리 표준'으로 나누어져 있음

  - (심사 표준) 상표가 될 수 없는 표식의 심사, 상표 식별력의 심사, 상표의 유사성 심사, 소리상표의 심사 등 11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 (심리 표준) 타인의 치명상표(驰名商标)를 복제 · 모방 · 번역한 것에 대한 심리 표준, 피대리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는 것에 대한 심리 표준 등 10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 (개정 내용) 동 규정은 소리상표의 심사 표준, 심사의견서 활용과 관련된 표준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리상표의 심사표준 추가
  -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견서의 활용 표준 추가
  - 상표법 제19조 4관, 제50조의 적용 표준 추가
  - 상표법 제15조 2관의 심리 표준 추가
  - 관련인의 이익 및 손해에 대한 인정 표준 추가
  - 상표법 제10조의 심사 표준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
  - 심사 판례를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

XV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누적 상표출원 건수 등 천만 건 돌파 발표

- 2016년 8월 12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은 제2회 「중국-아세안 공상포럼(中国-东盟工商论坛)」 언론발표회에서 중국이 역대 최초로 '누적 상표출원 건수, 누적 상표등록 건수, 유효상표 등록 건수'의 3개 부문에서 모두 천만 건을 돌파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은 최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과 시장 진출, 지식재산권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2015년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규모는 4,722억 달러이며, 양측의 누적 투자금액은 1,56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에서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이로 인해 상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중국은 아세안 지역과 상표 보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회에서 논의된 상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6월 기준, 중국의 누적 상표출원 건수는 2,015만 3천 건, 누적 상표등록 건수 1,325만 7천 건, 유효상표 등록 건수 1,122만 3천 건을 기록함
  - 2015년 전국 상표출원 건수는 287만 6천 건으로 14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함
  - 전국의 각급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 기관은 상표브랜드 전략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상총국은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 「중국 브랜드 발전보고(中国品牌发展报告)」를 발표함
  - 상사제도(商事制度)의 개혁 이후, 중국 내 기업의 수는 대폭 증가했으며, 기업의 상표브랜드 의식 제고, 상표 브랜드 설립의 성과 향상 등 현저한 효과가 나타남
  - 「중국-아세안 공상포럼」은 2016년 9월 12일 광시성(广西省) 난닝시(南宁市)에서 개최될 예정임
  - 동 포럼에서는 각국 상표브랜드 보호 및 발전 영역의 최신동향에 대한 심층토론과 교류를 통해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임

XVI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에 관한 의견 공표

- 2016년 7월 14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은 「공상총국의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工商总局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을 공표함

- (배경) 2002년 이래로 중국의 상표출원 건수는 14년간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심사 역량의 한계, 상표 심사 시스템의 낮은 정보화 수준, 상표출원 채널의 부족 등 문제가 존재함

  -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상총국은 지방 관련 부처, 기업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조치를 연구 · 제정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의 실시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총 5가지 분야의 22개 조항으로 구성됨

1. 상표출원 채널을 다양화하여 출원인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점차 더 많은 지방 관련 기관에 상표출원 수리업무를 위탁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상표 출원인에게 비교적 낮은 비용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 베이징시(北京市) 이외의 지역에 상표심사협력센터를 건설하여 상표출원 심사업무를 일부 분담
- 이전에는 상표대리기구에게만 전자출원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서비스의 대상을 모든 출원인으로 개방하고, 서비스의 항목을 종전의 상표출원 신청에서 상표 갱신 · 양도 · 취소 · 변경 등으로 확대

2. 수속의 간편화를 통해 출원인에게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

- 상표출원 신청 수리 통지서 발송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기존의 서면 출원 위주의 방식을 개선하여 상표출원의 전 과정 전자화를 추진

3. 상표심사체제를 완비하여 상표 심사 효율 제고

- 「공상총국의 상표심사체제 완비 및 심사업무 효율 제고에 관한 의견(工商总局关于完善商标审查机制、提高审查工作效率的意见)」의 시행현황 분석 및 2016년 내 전체 조치의 시행 착수
- 상표 심사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주기 단축

4. 상표 신용 관리감독 강화 및 상표 브랜드 전략의 심화 실시

-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상표 관리감독 업무 강화

5.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조치의 지원

- 상표 업무 및 정보화 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연간 상표출원 건수 현황에 따라 상표심사협력센터 및 상표수리처의 운영 경비를 지원
- 상표 정보화 업무 체계 건설, 우수한 심사 인력 육성, 홍보활동 등 업무 지원

XVII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국 최초 소리상표 등록 결정

• 2016년 7월 7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SAIC) 상표국(商标局)은 중국 최초로 중국국제방송국(CRI)의 소리상표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증서를 발급함

• (배경) 중국에서 소리상표는 최근에 상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등록절차 및 심사기준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4년에 개정된 「상표법」 제8조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동 조항에 따라, 게임의 배경음악,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곡 및 엔딩곡, 광고 음악,

어플리케이션 배경음악 등이 고유의 특성 및 식별가능성 등 소리상표의 요건을 갖추면 소리상표로 등록하여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주요내용) CRI는 방송 프로그램 시작곡을 소리상표로 등록함
  - CRI의 시작곡은 1998년 7월 1일부터 사용되었으며 총 40초 분량임
  - 동 시작곡은 우렁찬 트럼펫과 부드러운 선율의 현악으로 도입부가 시작되어 아나운서의 나레이션으로 마무리되며, 신중국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CRI의 취지를 대변하는 곡으로 평가받고 있음
  - CRI는 시작곡의 소리상표 등록을 위해 2014년 초부터 준비 작업을 개시하여, 총 2년 반 동안 상표 등록을 위한 작업을 수행함
  - 2016년 2월 13일 CRI의 소리상표가 상표국 초보심사에 통과하였고, 최근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중국 최초로 소리상표 등록에 성공함

XVIII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쓰촨성 등에 지방 최초의 상표출원수리처 설립

- 2016년 7월 5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이하 공상총국) 상표국(商标局)은 쓰촨성(四川省) 야안시(雅安市)와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에 지방에서는 최초의 상표출원수리처(商标注册申请受理处, 이하 상표수리처)를 설립함

- (배경)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방관복(放管服)' 정책의 실행을 위해 공상총국은 상표등록의 편리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설립은 그 개혁의 일환임

- (주요내용) 동 상표수리처는 베이징시(北京市)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초로 상표 수리의 권한을 부여받아 설립된 것으로, 관할지역 내의 자연인 · 법인 및 기타 기관의 상표출원의 수리를 담당함
  - 주요 업무로는 상표출원 문건의 접수 및 수리, 형식 심사, 상표등록에 관한 자문 제공 등이 있음

- 종래 상표출원은 상표국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여 출원인이 베이징시로 가서 직접 접수하거나 대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했고 접수에서 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상표수리처에서는 출원서를 접수한 다음날 수리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야안시 및 타이저우시 공상국 관계자는 지역 내 상표수리처의 설립으로 인해 상표 출원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임

XIX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등록증명 발급방식 변경에 관한 공고」 발표

• 2016년 4월 2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은 「상표등록증명 발급방식 변경에 관한 공고(关于改变出具商标注册证明方式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종전의 상표등록증명 발급은 신청 접수, 심사, 스캐닝, 입력, 재심사, 서명 등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신청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상표국은 신청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방식을 간소화하기로 결정함

- 상표등록증명은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증명서류 중 하나로, 기업의 상장 · 양도 과정 등의 상황에서 상표등록 원본 혹은 공인이 찍힌 등록증명 문서가 반드시 필요함
-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증명 외에도 중국상표국 홈페이지(中国商标网)에 있는 등록공고 및 상표 등록증을 통해 자신의 상표권을 증명할 수 있음

• (주요내용) SAIC 상표국은 4월 22일부터 동 공고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증명 발급방식을 간소화하여 실시함

- 동 공고에 따르면 신청자가 신분증명서류와 상표등록번호를 구비하여 상표등록 창구에 직접 접수하면 즉시 수리가 가능하고, 우편으로 접수 시에는 상표국의 업무일 기준 5일 내로 처리하여 발송됨
- 변경된 상표등록증명 문서의 인쇄본에 '상표등록증명 전용도장'이 추가됨

- 상표등록증명 발급 비용은 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단, 신청자가 종전의 방식에 따른 상표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시에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수리하며, 기간은 약 1개월이 소요됨

XX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이스라엘과 상호 협력에 합의

• 2016년 1월 6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은 이스라엘 정부와 상호 교류 ·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 (배경) 2013년 시진핑(习近平) 정부의 출범 이후, 양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늘리고 무역 등 영역에서 관계를 강화하기로 함

- 최근 양국은 특히 IT, 바이오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주요내용) 양국은 동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반독점, 소비 추진 등 양국의 거래 전반에 관한 사항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 SAIC 상표국의 류준천(刘俊臣) 부국장은 2013년 이후 중국의 기업 친화적인 상사제도 현황을 소개함

- 기업의 설립을 위한 편의가 향상되었으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창업을 독려함
- 매일 신규 설립되는 기업이 약 1만 개에 달하며, 이에 따라 상표 등록 건수도 급속히 증가함
- 2015년 중국에서의 상표 출원 건수는 약 1,200만 건이며, 유효 등록건수는 약 1천만 건임
- 또한 중국 정부는 상표 보호를 위한 전문 단속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내 · 외 상표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이스라엘은 중국의 상사제도의 개혁 추진과 상표 보호 노력의 강화, 법치화, 외국인 투자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동조하며,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장래에 중국이 발전하는데 많은 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언급함

제2절

인도

I 인도 델리 최고법원,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게 루이비통 위조상품 검사의무 명령

- 2018년 11월 6일, 인도 델리 최고법원(The high court of Delhi)은 인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Darveys社에게 동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루이비통 상품 전부에 대해 위조상품 여부를 검사하라고 명령함

- (사건배경) 루이비통社는 Darveys.com에서 판매되는 루이비통 위조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arveys社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Darveys社는 section 79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개인 면책조항(safe harbour to intermediaries)'를 근거로 항변하였음
  - 동 Sec. 79는 인터넷 중개인이 제공하는 플랫폼 상에서 제3의 사용자가 행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해 동 인터넷 중개인은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판결요지) 2018년 11월 2일, 델리 최고법원은, Darveys社의 정책을 살펴보면 동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Darveys社가 '완전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Darveys社는 중개인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음

  - 델리 최고법원은 Darveys社가 판매자를 지정하고, 판매자를 동 판매사이트 상에서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단순한 중개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음
  - Darveys社를 중개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론을 근거로 델리 최고법원은 다음의 명령을 내렸음
  - Darveys社는 루이비통社에 루이비통 제품 판매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루이비통 제품에 관하여는 위조상품 여부를 검사해야 함

- Darveys社는 모든 루이비통 판매자로부터 판매되는 제품이 정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함
- 루이비통 판매자가 인도 내에 있는 경우, 판매 상품이 정품임을 담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특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판매자가 인도 외에 있는 경우, Darveys社는 루이비통社로 부터 판매 동의를 받아야 함
- Darveys社가 루이비통 위조상품이 판매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Darveys社는 동 판매자를 특정하고 해당 메타 태그를 삭제해야 하며, 해당 판매자가 판매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루이비통社에게 고지해야 함

Ⅱ 인도 특허청, '2015-2016 연례보고서' 발표

• 2017년 4월 3일, 인도 특허청(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CGPDTM)은 '2015-2016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2015-2016)'를 발표함

• (목적) CGPDTM은 2015-16 회계연도(FY)2)의 업무 및 성과 현황 파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식재산환경에 발맞추고 지식재산관리의 투명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체계를 수립하고자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 · 발표함

• (주요내용) 인도의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16(FY)에도 전년(262,638건) 대비 30% 증가한 341,086건을 기록함

- (특허) 특허는 전년(42,763건) 대비 10% 상승한 46,904건이 출원되었고, 등록 건수 또한 총 6,326건을 기록하면서 전년(5,978건)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16(FY)에는 출원 시스템의 컴퓨터화 · 자동화를 통해 보다 빠른 고품질의 심사가 용이해짐
- (디자인) 디자인 출원은 전년(9,327건) 대비 19% 상승하여 총 11,108건을 기록했으며, 등록 건수 또한 전년(7,147건)보다 다소 증가하면서 7,904건을 기록함
- (상표) 상표 출원은 전년(210,501건) 대비 34.47% 증가하여 총 283,060건을, 등록 또한 전년(41,583건) 대비 56.42% 증가하여 총 65,045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외국

기업에 의한 상표 출원이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15,670건을 기록함

- (지리적 표시) 2003년 9월 15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총 543건의 지리적 표시가 출원되었으며, 2015-16(FY)에는 모두 17건이 출원되었고 26건이 등록됨
- (특허권자 순위) 국내 특허권자의 경우 Council of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113건), Samsung R&D Insitute社(55건), Bharat Heavy Electricals社(45건), 외국인 특허권자의 경우 GM社(252건), Qualcomm社(212건), LG전자社(89건)가 순서대로 상위를 차지함

| 표 4-1 | 인도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구 분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특 허	43,197건	43,674건	42,951건	42,763건	46,904건
디자인	8,373건	8,337건	8,533건	9,327건	11,108건
상 표	183,588건	194,216건	200,005건	210,501건	283,060건
지리적 표시	148건	24건	75건	47건	14건
총 계	235,306건	246,251건	251,564건	262,638건	341,086건

Ⅲ 인도 산업정책진흥정책국, 2017년 상표 규칙 공표

- 2017년 3월 6일, 인도 산업정책진흥정책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은 2017년 상표 규칙(Trade Marks Rules 2017)을 공표함
- (배경 및 목적) 인도 상표 출원의 증가2)에 따라 상표 출원 프로세스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 상표 출원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비즈니스 용이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2017년 상표 규칙을 공표함
- (주요내용) 동 상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상표 규칙은 공표하는 즉시 발효되며 기존의 상표 규칙(Trade Marks Rules 2002)을 대체하게 됨
  - 상표 출원 양식의 수가 기존 74개에서 8개로 감소함
  -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타인을 대리하여 신규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과 같은 일부 특정 조치에 대한 상표 등록 수수료가 인상됨
- 온라인으로 출원서 작성 시 10%의 수수료 할인을 제공함
- 개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상표 신규 출원자에게 50%의 수수료 할인을 제공함

Ⅳ 인도 산업정책진흥국, 영국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2016년 11월 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은 양국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 (목적) 동 양해각서는 지식재산 관련 활동에 관한 양자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양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력할 예정임

- 특허 · 상표 · 디자인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모범사례 교환
- 집행당국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 기술 교환
-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보호에 관한 비즈니스 자문을 포함한 지원 활동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 영국 Baroness Neville-Rolfe 에너지 · 특허 국무상(Minister of State for Energy and Intellectual Property)과 인도의 Sir. Dominic Asquith KCMG 영국고등판무관(British High Commissioner)은 동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최근 몇 년간 인도의 지식재산 제도는 빠르게 변화해왔으며 혁신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식재산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양국이 지식재산 관련 모범사례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임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내 창조 및 혁신 사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V 인도 산업정책진흥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과 산업재산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16년 10월 4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과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은 산업재산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배경) IPOS와 DIPP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위해 싱가포르의 Lee Hsien Loong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의 Shri Narendra Modi 총리와 함께 참석하여 체결이 이루어짐

- (주요내용) 동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POS와 DIPP는 공동조정위원회(Joint Coordination Committee)를 설립하여, 양국 간 혁신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인도 기업의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지식재산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함
  - IPOS와 DIPP는 다음과 같이 협력함
    ① 기관 직원의 산업재산권 능력 증진 교류
    ② 지역 산업재산권과 비즈니스 커뮤니티 양성
    ③ 산업재산권 프로세스 관리 향상을 위한 현대화 프로젝트 협력
    ④ 모범사례, 산업재산권 인식제고에 관한 활동 및 프로그램의 경험과 지식 교류
    ⑤ 학계 및 R&D 기관의 인재를 포함한 커뮤니티 확대를 위한 산업재산권 행사 개최
  - DIPP의 Shri Ramesh Abhishek 위원장은 동 양해각서를 통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였다고 밝힘
  - IPOS의 Daren Tang 청장은 동 양해각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정보 및 기술의 상호 교류를 통해 혁신주도 경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Ⅵ 인도 특허청, 상표출원 접수증의 발행 절차 자동화 발표

- 2016년 7월 28일, 인도 특허청(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CGPDTM)은 상표출원 접수증(registration certificates for applications)의 발행 절차를 자동화한다고 발표함
- (개요)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상표등록을 위해 출원 후 발급받는 접수증의 발행 관련 절차가 전적으로 자동화되며, 이러한 내용은 2015년 11월 인도 상표공보(Trade Marks Journal No. 1720, 2015.11.23.)에 게재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원의 사본은 상표등록소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함
  - 출원 접수에 수수료나 대리인 등의 요건이 불필요함
  - 모든 상표출원에 있어서 대리인이나 관련된 출원인은 상표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접수증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등록된 이메일로 전송되며, CGPDTM의 웹사이트(www.ipindia.nic.in)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출원인의 요구에 따라 다운로드와 출력이 가능함
  - 자동화된 등록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경우, 현행 상표제도에 의해 뭄바이 상표등록소(Trade Marks Registry, TMR)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Ⅶ 인도 상무부, 새로운 국가지식재산정책 발표

- 2016년 5월 12일,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새로운 국가지식재산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을 발표함
- (목적) 동 정책은 지식재산권 교육, 연구 및 실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 촉진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조성, 지식재산권 행정의 현대화 및 집행 · 분쟁 심판에 대한 효과적 메커니즘 제공 등 7가지 목표 달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효용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담당기관) 인도 산업정책촉진부(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향후 지식재산권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지재권 관련 부서를 신설함
- (평가) 동 정책은 인도 내부 제도는 새로 정비했으나 강제실시권 유지 및 에버그리닝 전략 견제 등 신약 발명에 대한 제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주요내용) 동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인식, 교육, 창조 및 사업화	· 전통지식디지털도서관 설립을 통한 공공 • 민간 기관 연구 촉진 · 지식재산권 연구 및 상업화 장려를 위한 조세 혜택, 금전적 지원 및 대출담보 제공과 공공연구기관 재정지원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행위 활성화
법적 • 행정적 프레임워크	·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책 마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공유네트워크인 CASE(Centralized Access to Search and Examination) 및 DAS(Digital Access Services) 참여 가능성 검토 ·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원칙에 따른 표준필수특허(SEP)의 가용성 보장 · 의약품 안전성 및 효능을 저해하지 않는 제조 및 마케팅의 신속한 승인을 위한 규제 과정 간소화 · 인도 지식재산권법 개정 검토와 특허 • 상표 등록 및 이의신청기각 기간의 재산정
집행	· 부정표시(misbranded), 부정불량(adulterated) 및 위조 의약품의 판매 및 제조 억제를 위한 강경대응 개시 · 지식재산권 분쟁의 상사법원을 통한 재결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장려

Ⅷ 인도의 연속(시리즈) 상표 제도

- 인도에서는 상표법 제15조(3)에 근거해 연속(시리즈) 상표제도가 설치되어 있음
  - 연속상표는 동일 혹은 유사한 지정상품 및 지정역무와 관련된 복수의 상표로서 상표의 주요 특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상표의 차이점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상표 전체에서 본질적인 상표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출원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전체적인 시각적, 발음상 및 관념상의 동일성을 가져오는 식별력이 없는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

• 인도의 연속상표에 대해서는 1999년 상표법 제15조(3)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음

- 상표법 제15조 (상표의 부분등록 및 연속상표의 등록) (3)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 또는 동일 혹은 유사한 종류의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되는 수개의 상표로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유사하지만(유사하다면) 다음에서 언급하는 상표에 대해 그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들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는 연속상표로서 1건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a) 각개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표시 또는
(b) 수, 가격, 품질, 혹은 산지명의 표시 또는
(c) 상표의 동일성에 본질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 비식별성의 그 외의 사항 또는
(d) 색채
연속 상표의 예로는 이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예) : MANGO
Mango

Ⅸ 인도의 미등록 주지상표의 보호

• 인도에서는 미등록 주지상표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주지상표」라는 용어는 1999년 인도상표법(1999년 법률 제47호 개정 2003년 9월 15일 시행)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음

•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주지 상표』란, 해당 상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받는 공중의 실질적 대부분에 있어서 주지가 되고 있는 표장이며,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해당 표장의 사용이 그들 상품 또는 서비스와 처음에 기술한 (『주지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자와의 사이의 거래과정 혹은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의 결합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

- 상기 조문에 대해 예를 들면, 어느 가전 메이커의 상표 A(사명)가 널리 주지되고 있어 다른 회사가 이 상표 A를 가전 이외의 상품에 사용했을 때에 이 가전 메이커와 해당 다른 회사와의 사이에 자본관계나 제휴 관계가 있다는 혼동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상정(가정)될 수 있음
- 상표법은 표장이 주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해당 표장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지만, 외국의 주지상표에 대한 보호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도재판소는 관련된 분야의 공중에 의한 주지상표의 인식, 국경을 초월한 명성, 파급효과, 광범위한 사용, 광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함

X 인도에서 외국어(일본어) 상표의 취급

- 2017년 인도 상표규칙의 규칙28은 외국어로 표시된 상표의 출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음역 및 번역 - 상표가 힌디어 또는 영어 이외의 문자에 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 또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에 있어서 관련된 각 단어 및 숫자의 영어 또는 힌디어에 의한 정확한 음역 및 번역을 제시하고, 해당 단어 또는 숫자가 속한 언어를 명기해야 한다.』
- 그러므로 외국어로 표시된 상표의 출원에 있어서 음역 및 번역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위의 요건이 출원 시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지령서에서 음역 및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어로 표시된 상표가 등록단계로 나아가려면 규칙 28의 준수가 필수요건임

| 표 4-2 | 상표출원서류의 형식(서식TM-A 제6항)

6.	힌디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에 의한 상표의 경우 :	
	언어 :	
	해당상표의 로마자에 의한 음역 :	
	힌디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에 의한 상표의 경우, 해당상표의 로마자에 의한 음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상표의 영어에 의한 번역 :	
	힌디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에 의한 상표의 경우, 해당상표의 영어에 의한 번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XI 인도의 상표이의신청제도

- 인도에서는 상표출원이 상표공보에 공고된 지 4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이유는 주로 절대적 거부이유 및 상대적 거부이유를 근거로 삼아야 함. 출원인은 등록관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출원인이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대상의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 인도에서의 상표이의신청절차는 2010년 상표(개정)법의 제21조 및 2002년 상표규칙의 규칙 47~57에 규정되어 있음.

XII 인도에서의 상표의 콘센트(동의)제도

- 인도의 콘센트(동의)제도는 이전부터 상표실무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2003년에 상표법 제11조 (4)에 있어서 명문화됨
- 동의서제도는 인용례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이다. 동일상표이면서 동일 상품

· 역무에 대한 콘센트(동의), 저명 · 주지상표에 관한 콘센트(동의)도 제도로서는 가능함

- 또 상표규칙 제59조에 근거해 동의서에 의해서 등록허가된 상표는 그 사실이 등록부에 게재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다. 다만, 등록상표의 검색 데이타베이스상에는 그 취지의 정보는 나타나지 않음

XIII 인도의 상표 라이선스계약의 유의점

- 현행 상표법하에서는 상표 라이선스의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사용권자에 의한「사용」은 상기 조건 및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 한 상표권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임
- 즉,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이 상술된「허락사용」의 범위 내에 있는 한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해당 상표를 취소하는 일은 없으며, 한편으로 상표국에 라이선스 등록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음
- 상표법에 근거한 사용권자로서 등록하는 메리트는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전제이지만, 등록된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와 같이 자신명의의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권자는 이 이익을 향수할 수 없는 것에 있음

XIV 인도의「상표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케팅 캠페인」조사보고서 발간

- 2016년 3월 31일,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상표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케팅 캠페인」조사 보고서를 발간함
- 2015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WIPO 관계자와 인도 산업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동 조사 보고서의 작성을 공지하며 시작되었으며, 약 30개의 기업이 조사에 참여함

•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한 응답 : 시범 조사 결과

- 조사에 응한 기업 중 73 % 이상이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기업 내 상표 등록을 결정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59 %의 기업들이 이사회나 CEO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함
- 이러한 기업 중 국제등록을 하는 경우는, 마드리드 시스템 또는 직접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로 나뉘며, 대다수의 기업이 절차(33 %)에 대해 모르거나, 비용(27 %)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함
- 65%의 기업이 상표 등록에 있어 '제품인지도'가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73 %의 기업이 상표 등록의 이유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을 선택함

2. 인도에서 마드리드 절차를 증진시키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의 전략적 방향

- 인도에서 추진 중인 'Make in India' 프로그램 하에 국가적 브랜드 구축을 위해 국가의 전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동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도록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한 인식 증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업 및 협회 등과의 파트너십, 출원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홍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사례 연구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음

제3절

베트남

Ⅰ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소,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과 협력 각서 체결

- 2018년 7월 25일,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과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소(VIPRI)는 지식재산 인재 육성 분야에서의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미래 시대에 대응한 일본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 일본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환경에 맞추어 지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 기관과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함

  - INPIT는 중국 지식재산권연수센터(CIPTC)1),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2)과 지식재산 인재 육성 분야에서의 협력을 하는 등 세계 각국의 관계기관 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VIPRI은 2007년에 설립된 베트남 과학기술부 관할 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조사, 집행기관(경제경찰, 세관 등)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수, 침해 사건과 행정 집행 등에서 문제되는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INPIT는 일본 기업의 관심이 높은 베트남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 기관인 VIPRI와 새롭게 지식재산 인재 육성 분야에서의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각서에 따라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공유,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이 진행되며, 향후 베트남에서 지식재산 환경이 더욱 정비된 후 일본에 베트남 관련 정보의 보급이 추진됨
  - 양측의 제휴를 통해 일본과 베트남 모두에게 이점이 되는 협력 사업을 기획하여 실시할 예정임

- 일본 기업의 원활한 베트남 사업 진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Ⅱ 한국 특허청, 정부 간 협력으로 베트남의 지식재산 한류 보호

• 2018년 5월 29일, 한국 특허청은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서 베트남의 특허청,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국과 지재권 협력과 보호에 관한 MOU 통합 체결식을 개최함

• (개요) 한국 특허청 차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차장급이 참석한 동 체결식에서는 총 세 개의 한-베트남 지재권 협력 MOU가 체결됨

• (주요내용) 동 체결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베트남에서 위조상품 단속 등 지재권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및 밀수방지조사국과는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협력 MOU」를 각기 체결함
- 이번 MOU에는 베트남의 지재권 단속기관들과 한국 특허청이 함께 'IP 보호 협의회'를 발족시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위조상품 정보 등 지재권 단속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핫라인을 두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또한, 한국과 베트남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와 특허행정 정보화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략적 지재권 행정협력 MOU'를 체결함
-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는 1국에서 '특허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은 출원을 다른 나라 특허청이 1국의 특허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특허를 한국 특허청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양 기관은 준비 작업을 거쳐 2019년 6월 1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함

Ⅲ 베트남 국가지식재산청, 프랑스 지식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

- 2018년 3월 26일, 프랑스 지식재산청(INPI)과 베트남 국가지식재산청(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양해각서를 체결함
- 동 양해각서는 1994년부터 형성돼온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더욱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양국의 과학, 기술, 혁신, 경제의 발전을 달성하는 데에 목적을 둠
- 동 양해각서는 다음의 내용을 양 기관이 공유 · 협력하기로 함

  - 지리적 표시 제도의 보호와 관리
  -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자산에 관한 마케팅
  -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 및 지식재산권자들을 위한 훈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보 등

Ⅳ 베트남 특허청, 일본 농림수산성과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각서 서명

- 2017년 6월 2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產省) 농림수산성 식품산업국과 베트남 특허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Geographical Indication)'에 서명함
- (개요) 농림수산성에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지리적 표시법(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물 · 식품에 관한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35개 상품이 등록되어 있음

  -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특허청이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협력각서는 양국이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의 중요성 및 지리적 표시 상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리적 표시 상호 보호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기 위하여 합의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촉진
  ① 지리적 표시 상품을 상호 출원 및 보호하는 시범사업 실시
  ② 지리적 표시 관계자의 상호 방문
- 상호 지리적 표시 제도에 관한 정보 교환
-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급 · 계발에 노력
- 사무방식에 대한 양국 회의 창설

V 베트남 과학기술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MOU 체결

• 2017년 3월 22일, 베트남 과학기술부(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베트남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배경 및 목적) 베트남은 최근 지식재산권과 과학 기술 전반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을 중점으로 두었으며 지식재산권을 사회·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바꾸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음

- 동 MOU의 체결을 통한 베트남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MOU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베트남 지식재산권국(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은 WIPO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특허 출원에 대한 검색 도구 지원을 요청함
- 베트남과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은 베트남 지식재산권 실태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하여 베트남 정부에 제출할 초안을 작성할 것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베트남의 구체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지식재산 권에 관한 단기·중기·장기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임

Ⅵ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 국제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가 발표한 2017년 재산권 지수(IPRI)에 따르면,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4.93을 기록해 전체 12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77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 19개 국가 중에서는 16위를 차지

  * 재산권 지수(IPRI)란 한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써, 한 국가의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진국지수임. 각 항목은 0~10점까지 점수가 매겨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산권 보호가 잘 되는 것을 의미

- 특히 베트남은 법 · 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식재산권 3개 항목 중에서 법 · 환경 항목 점수가 4.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 표 4-3 | 2017 베트남 재산권 지수(IPRI)

구분	베트남	세계 평균
종합지수(IPRI)	4.93	5.63
LP (법 • 정치적 환경)	4.48	5.17
PPR (물적 재산권)	5.79	6.23
IPR (지식재산권)	4.52	5.50

Ⅶ 베트남의 유명상표 인증 절차

- 베트남에서의 유명상표 인증 고려 요소는 이하와 같음

- 마크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을 통해 상표를 알았던 관련 소비자의 수
- 표시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지역.
- 제공되는 상품의 판매 또는 표시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제공된 판매 또는 서비스의 수량
- 마크의 지속적인 사용 기간;
- 상표가 붙은 재화 또는 용역의 넓은 평판;
- 표장을 보호하는 국가 수;
- 마크를 잘 알려진 마크로 인식 한 국가 수;
- 상표의 배정 가격, 라이센스 가격 또는 투자 자본 기여도.

• 베트남에서의 유명상표 인증 절차는 이하와 같음

- 유명 상표는 지식재산법 제75조 및 산업재산권 보호 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법에 의해 보호됨
- 유명상표의 권리는 등록 절차없이 보호되고 상표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소유주는 이 Circular의 Point 42.3에 명시된 문서를 사용하여 상표의 소유권을 입증하고 상표가 잘 알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증명할 수 있음
- 상표의 소유권 및 명성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상표의 사용 범위, 규모, 수준 및 연속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상표의 기원, 역사 및 연속 사용 시간에 대한 설명을 포함
- 표장이 잘 알려진 표로 등록 또는 인정 된 국가의 수; 마크가 있는 재화 및 서비스 목록; 표식이 유통되는 영토 지역, 판매 된 제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의 매출액; 제조 또는 판매 된 마크가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수량; 상표의 재산 가치, 상표의 양도 또는 면허 가격 및 상표 형태로 출자 한 투자 자본의 가치; 투자
- 국내 및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마크의 광고 및 마케팅 비용 및 지출; 법원 또는 관할 기관의 권리 침해, 분쟁 및 판결 또는 판결; 판매, 구매, 사용, 광고 및 마케팅을 통해 마크를 알고 있는 소비자의 조사 된 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또는 대중 매체에 의한 상표의 평판에 대한 평가 및 평가. 마크에서 수여되는 상품 및 메달; 지적 재산 심사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결과
- 민사 절차 또는 NOIP의 승인 결정에 따라 잘 알려진 표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명한 표식은 NOIP에 보관 된 잘 알려진 표의 목록에 기록되어야 함

Ⅷ 베트남에서 한글상표 등록[2)]

• 우리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글 조합의 상표는 베트남에서 문자상표와 도형상표 어느 것으로도 등록하기 어려움

• 베트남 지재권법 74조 2항에 따라 현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틴문자)가

2)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5420&searchNationCd=101084.

아닌 경우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등록이 불가능함. 한국어는 베트남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언어에 포함

- 한글 문자로만 등록받기 위해서는 세 글자 이내의 구성이 필수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구성이 요구됨
- 일반 글씨체가 아닌 디자인이 가미된 글씨체의 경우 상표 구성이 일반 한글 글자체가 아닌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표장은 등록 가능성이 있음
- 일반 한글 글씨체로 구성된 상표는 앞서 언급한 지재권법 제74조 2항 a에 따라 식별할 수 없는 언어에 해당됨으로 등록 가능성이 없음. 다만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예외적으로 식별 가능한 도형 혹은 특별한 디자인 등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표 등록이 가능함
- 한편, 과학기술부 Thong tu 01/2007/TT-BKHCN 제39조 3항 A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표를 식별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베트남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기억할 수 없는 언어(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는)
  - 라틴 문자가 아닌 문자(아랍어, 슬라브어, 산스크리트,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태국어 등)
  - 다만, 도형 · 특별한 디자인 등 다른 식별 가능한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그림 4-1 | 베트남에서 출원 가능한 한글 디자인 글씨체

- 상표에 영문(라틴문자)을 추가한 상표의 경우 일반 한글 상표에 영문(다른 라틴 문자도 가능)을 같이 넣는 경우 등록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표장에 있는 라틴 문자는 반드시 한글 문자와 크기와 동일하거나 커야 함.

또한 표장에 있는 영문은 제품 묘사를 띄지 않는 다른 의미여야 함

- 베트남 지재권법 제74조 2항 C, D에 따르면, 시간, 장소, 제조방법, 종류, 수량, 품질, 성질, 성분, 효능, 가치, 그리고 상품 · 서비스를 묘사하는 특징적인 사인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음. 단 만약 상표가 출원 이전부터 사용되어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 그림 4-2 | 출원 가능한 영문추가 된 한글 표장

- 그림(Design)이 추가된 한글상표의 경우 만약 일반 글씨체의 한글 상표는 그림을 추가해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음
- 이 때 표장에 포함된 그림(Design)이 중요하며, 이 경우 등록된 상표는 표장 전체로써 보호되며, 한국어 개별로는 보호받지 못함
- 또한 베트남 상표 출원 신청서에 표장에 포함된 한국어가 어떤 의미인지 작성해야 함

| 그림 4-3 | 그림이 추가된 한글 상표

Ⅸ 베트남에 있어서 외국어 상표의 취급

- 2005년 베트남 지재법 제74조 2항 a에 의하면, “통상 사용되지 않는 문자, 숫자, 기호”를 사용한 표장은, 널리 사용되어 상표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별성이

부족하다고 간주함

베트남 지재법 (제72조 2항 a)

다음과 같은 표장은 식별력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됨
① 단순한 모양 및 기하학적 숫자
② 통상적이지 않은 문자, 언어, 숫자
단, 많이 사용되어 식별할 수 있는 상표의 경우는 제외함

- 통상 사용되지 않는 언어에 의한 상표의 보호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통달 01호 제39조 3항 a에 나타나 있음

  - 첫째, 이 규정에는 '통상 사용되지 않는 문자'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라틴어에서 유래하지 않는 문자(아랍어, 슬라브어,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태국어 등) 등 일반 베트남인 소비자가 판독하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할 수 없는 언어에 의한 문자 표장(숫자, 문자, 기호)은 식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됨
  - 둘째, 지재법에 규정된 '넓게 사용되며 상표로서 인정되고 있는 표장'과 같은 예외적 보호 이외에, 통달 01호 제39조 3항a는 해당 표장이 '다른 구성요소와의 조합에 의해 식별성을 갖는 표장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혹은 '도형, 기타 특별한 형상에 의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표장에 사용되는 있는 문자나 기호가 라틴어 유래가 아니어도 식별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보충하고 있음

X 베트남에서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근거한 상표출원과 직접 출원의 동향

- 베트남 국내에서 상표의 보호를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외국인 출원인에 있어서는 마드리드 제도에 근거하는 출원이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출원인에게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몇몇 소수의 국가에만 상표를 등록하고 싶은 상표권자나, 권리승계자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상표등록을 자유롭게 양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상표권자는 개별국가의 상표당국에 따른 각국 내부 루트에 의한 직접 출원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마드리드 제도에 근거한 상표출원 심사에 필요한 기간

- 마드리드 제도에 근거한 상표출원 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이 지정국 상표당국에 해당 국제출원을 통보한 지 12~18개월이며, 마드리드 제도에 근거하는 출원의 경우, 상표권자는 스스로가 보호를 요구하는 각 체약국의 상표 당국이 상표 등록을 인정하는 결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는 점이 이점임. 또한 상표 당국이 소정의 기한까지 상표의 등록 거절을 상표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던 경우, 그 상표는 해당 체결국에 있어 자동적으로 보호되게 됨
- 이와 비교하여, 베트남 지재법은 국내 출원 · 심사에서 등록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12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원 절차 완료에는 1824개월 걸리는 것이 보통임. 그러나 국내 출원시에서는 대리인이 베트남 특허청과 직접 절충해 심사 수속을 신속화하는 케이스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베트남 국내 루트가 마드리드 제도보다 신속하고 편리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마드리드 등록 및 갱신 수수료

- 마드리드 제도에 근거한 출원에 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점의 하나는, 국내 루트에 의한 출원에 비해, 출원, 등록 갱신, 회사명/주소 변경 및 양도의 등록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 번역 비용에 더하여 현지 대리인의 보수에 이르는 제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복수의 법역에 대해서 국내 출원을 이용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개개의 법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요금(오피셜피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어, 그 금액은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요금을 상회하게 됨
- 마드리드 제도에 근거한 출원인은 갱신에서도 비용 삭감을 향수할 수 있음. 복수의 법역에 있어 갱신이 필요한 국내 등록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나라에서 현지 대리인에게 갱신 수속을 의뢰해야 해야함. 그러나 국제 등록을 가지는 상표권자는, 스스로가 지정한 나라 모두에 대해 1회의 갱신만으로 끝마칠 수 있으며, 이러한 마드

리드 등록의 갱신은, WIPO의 웹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 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상표권자의 비용과 시간은 절약이 가능함

XI 상표의 선사용권

- 베트남 지재법에 대해서는, 발명과 디자인권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상표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음(지재법 제134조 제4항)
- 출원 전부터 해당 상표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먼저 출원을 한 자가 우선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음
- 사전에 사용된 상표가 있고, 유명해진 경우에는 새로 출원한 자에 대해 해당 상표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법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가능여부가 불명확함)
- 또, 이미 유명해진 상표의 권리자는 나중에 등록한 사람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음

XII 베트남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 시장규모의 성장, 다양한 브랜드 간의 첨예한 경쟁, 시장개방 추세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도 상표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동시에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자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반행위 발견를 발견하더라도 해당 업체는 복잡한 법적 절차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함
- 베트남 내에서 가능한 상표침해에 대한 구제행위는 민사, 행정처분으로만 가능하며, 손해배상이나 처분의 수위가 낮음
- 과학기술부 수사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상표침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전제로 됨

- 밀수조사방지국(Anti-counterfeit smuggling and IPR enforcement)은 베트남 세관 총국 산하 기관으로, 세관 내 지재권 관련 업무를 수행함
- 2017년 말부터 모조품 생산 방치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 내에 생산되는 의류, 가방 등 봉제기업 위주로 지재권 사용권 위임여부를 조사 시행 중

법·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상표법)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1544-8080 Fax : 042)489-0194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 02)2189-2694 http://www.kiip.re.kr

ISBN : 978-89-6199-257-2
DOI : 10.8080/P9788961992572